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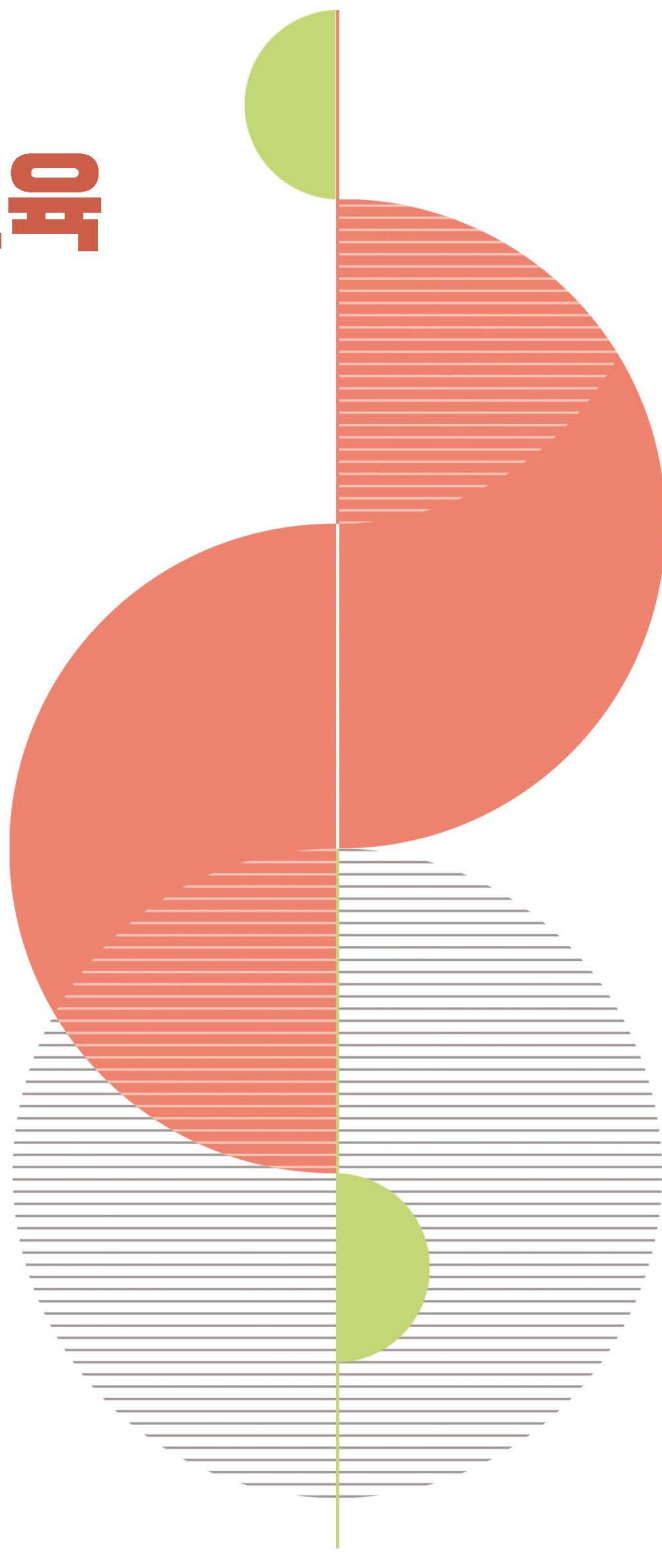


2026학년도

학생 생활교육 기본계획



부산광역시교육청
BUSAN METROPOLITAN CITY OFFICE OF EDUCATION



CONTENTS

목차

- 2026학년도 학생 생활교육 기본 계획 주요 변경 사항 / 4
- 2026년도 단위학교 의무교육(연수) 현황 / 6
- 2026학년도 학생 생활교육 월별 추진계획 / 8
- 원클릭 생활교육 홈페이지 운영 안내 / 13

Chapter 01

자율과 책임 중심의 생활교육

학생 생활교육 기본 계획 수립	16
인성중심 생활교육	40
지구별 생활교육협의회 운영	47
학생 봉사활동 안내	56
청소년단체 활동 안내	62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64
학생도박 예방교육	72
교복 학교주관구매제도 및 교복나눔운동 활성화	76
유관기관 연계 사업 안내	82
학생 생활교육 관련 Q&A	88

Chapter 02

교육공동체 상호존중교육

교육공동체 인권교육의 기본 방향	94
학교 구성원 인권 보호 및 인권교육 활성화	98
자율적 참여와 소통의 학생자치활동	105

Chapter 03

존중과 배려의 학교폭력예방 및 관계회복 지원

학교폭력 예방 및 회복 치유 역량 강화	114
특별교육 프로그램 운영	170
학교폭력 관련 Q&A	172

Chapter
04

모든 학생의 마음돌봄을 위한 학생 맞춤형 마음건강 지원

예방·발견·치유·회복을 위한 맞춤형 통합 지원 강화	178
생명존중 및 사회정서 교육 강화	199
학교상담 활성화 지원	202

Chapter
05

공존과 협력의 양성평등 문화조성

양성평등 문화조성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	216
학교 성폭력 근절 및 안정화 지원	218
성사안처리 관련 Q&A	222
성사안처리 참고 서식	227
성사안 피해 전문 상담기관 현황(행위자 교육기관 포함)	234

Chapter
06

아이들을 지키는 관심과 용기 아동학대예방

아동학대 개념 및 유형	238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242
아동학대 사안처리 개요	249
아동학대 대응 절차별 학교의 역할	251
아동학대 관련 주요 제도 및 정책	256
아동학대 관련 Q&A	260
아동학대 관련 각종 서식(예시)	264

Chapter
07

학교부적응 및 다문화 학생 학교 적응 지원을 위한 학업중단 예방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274
학업중단 예방 및 숙려제 운영	279
학업중단 숙려제 Q&A	288

2026학년도 학생 생활교육 기본 계획 주요 변경 사항



쪽	구분	신구대조표		비고
		2025학년도	2026학년도	
64	유해약물 예방교육	- 유해약물 사용 학생 교육 및 상담 지원	- 유해약물 사용 학생 교육 및 상담지원 - 유해약물 관련 특별예방교육 지원 (흡연예방, 음주예방, 약물 오남용 예방)	확대
65	유해약물 예방교육	- 희망교 300회 지원	- 희망 600교(회) 지원	확대
72	학생도박 예방교육	-	- 필수 운영(2시간) - 찾아가는 도박예방교육(20개교)	추가
108	단위학교 학생자치활동 기반 조성	-	- 학생 자치회 출마시 교사추천서 제출 폐지 권장 (※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 및 학교 상황을 반영하여 학칙 개정)	추가
111	학생자치 프로그램 활성화	-	- 고등학생 토의·토론 한마당 운영 - 대상: 희망 고등학생 20여팀 - 시기: 추후 공문 안내	신설
151	초등 1~3학년 관계회복 숙려제 실시	-	- 초등 1~3학년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관계회복 숙려제 실시	신설
201	찾아가는 생명지킴이 교육	- 희망 운영(2시간, 대면)	- 필수 운영(2시간, 대면)	변경
202	사회정서교육(5월) 및 생명존중교육(10월) 주간 운영	-	- 학생 참여형 체험활동 운영: 관계회복 수업, 감정표현 워크숍, 생명존중 역할극, 마음건강 캠페인 등 - 아침대화 프로그램, 교과연계 수업, 창의적 체험활동 활용 - 동아리(마음챙김, 토래상담), 한끼상담, 생명존중프로그램 등과 연계 운영 가능	신설

쪽	구분	신구대조표		비고												
		2025학년도	2026학년도													
219	학생상담지원단 운영 활성화	- 개인상담(매월) 및 집단상담(종결 후) 활동카드는 학생상담지원단이 제출	- 개인상담(매월) 및 집단상담(종결 후) 활동카드는 학교 담당자가 제출	변경												
220	학교성폭력근절 및 안정화 지원	- 학교 내 성고충심의위원회 운영	-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 전체를 시교육청으로 이관 운영	변경												
292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	- 학교 내에서 학업중단 예방 - 다양하고 특별한 교육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일반학급과 구분하여 대안교육 프로그램 운영(초·중·고 10교)	신설												
283	학업중단숙려제 적용 대상	- 초·중·고등학생	- 초·중·고·특수학생 ※ 특수교육 대상자가 학업중단 숙려제를 희망하면 특수교육 관련 전문가가 포함된 학업중단예방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확대												
285	학업중단숙려제 출석기준	- 숙려제 프로그램 참여 · 모두참여: ‘출석인정결석’ 처리 · 일부참여; 불참일 ‘미인정결석’ 처리 · 모두불참: 전체 ‘미인정결석’ 처리	- 1주 2회, 4시간 이상 이수 시 주단위로 출석인정 - 1회 숙려제 상담·프로그램 참여 출석인정 기준: 2일 또는 3일로 설정 - 출석인정 기준 요일은 학업중단예방위원회에서 결정 (예시) <table><tr><th>숙려 상담</th><th>참여 여부</th><th>출석인정 기준요일</th><th>출결처리</th></tr><tr><td>월</td><td>참여</td><td>월, 화, 수</td><td>3일 출석인정결석</td></tr><tr><td>목</td><td>불참</td><td>목, 금</td><td>2일 미인정결석</td></tr></table>	숙려 상담	참여 여부	출석인정 기준요일	출결처리	월	참여	월, 화, 수	3일 출석인정결석	목	불참	목, 금	2일 미인정결석	변경
숙려 상담	참여 여부	출석인정 기준요일	출결처리													
월	참여	월, 화, 수	3일 출석인정결석													
목	불참	목, 금	2일 미인정결석													

2026학년도 단위학교 의무교육(연수) 현황



※ 학교급: 초·중·고·특수

※ 세부내용: 2026 부산광역시교육청 주요업무계획 186~189쪽 참고

연번	영역	대상 및 교육시간			관련법률(지침)
		학생	교직원	학부모	
1	인성교육	-	연간 1시간 이상	-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4조
2	생명존중 교육	연간 6시간 이상	연간 1시간 이상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7조 및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3조 및 제14조
3	학교폭력 예방교육	학기별 1회 이상	학기별 1회 이상	학기별 1회 이상	「학교폭력예방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2항
4	학교폭력 예방교육	-	(대상) 학교장, 교감 (횟수) 연1회 이상 ※ 교육감이 시행	-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제13항
5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6개월에 1회 이상, 연간 8시간 이상	(학교의 장과 종사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연간 1시간 이상	연간 1시간 이상	「아동복지법」 제26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6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딥페이크 불법합성 등 디지털성폭력 예방교육 1시간 포함) 연간 3시간, 성매매 예방교육	성희롱, 성폭력 (딥페이크 불법합성 등 디지털성폭력, 스토킹) 성매매예방교육 영역별 연간 1시간 이상 (통합운영 가능, 대면 1회 이상 필수 포함)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연번	영역	대상 및 교육시간			관련법률(지침)
		학생	교직원	학부모	
7	고위직 대상 맞춤형 별도 교육	-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분야 연간 1시간 이상 운영 필수 *성매매, 가정폭력예방 교육은 기존 교직원 연수로 인정가능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조 폭력예방교육 지침
8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초 5차시 중 6차시 고 7차시 (학기당 1회 이상)	연간 1시간 이상	연간 1시간 이상	「학교보건법」 제9조의3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2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제6,8조
9	학생도박 예방교육	연간 2시간	-	-	「학교보건법」 제9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8조의4

2026학년도 학생 생활교육 월별 추진계획



월	일	업 무 명	대 상	비고(일)
1	12.~16.	◦ 인성교육 시행계획 안내	전 체 학 교	22일
	19.~23.	◦ 학생 마약류 예방교육 담당교원 직무연수	희 망 업 무 담 당 자	
2	9.~27.	◦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사안처리 컨설팅단 구성	희 망 교 사	
		◦ 학교폭력예방 선도학교 공모	희 망 학 교	
		◦ 2026학년도 학생 생활교육 계획 안내 및 연수	전 체 학 교	
		◦ 학교전담경찰관 학교폭력 예방교육 신청(2.26.~3.13.)	희 망 학 교	
		◦ 학생 봉사활동 운영계획 안내	전 체 학 교	
		◦ 아동학대·가정폭력 예방 추진계획 안내	전 체 학 교	
		◦ 학생도박 예방교육 시행계획 안내	전 체 학 교	
		◦ 학교 내 특별교육 이수기관 운영계획 안내	전 체 학 교	
		◦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학교 선정·알림	희 망 학 교	
		◦ 2026학년도 마음챙김 동아리 공모 안내(21팀)	희 망 학 교	
		◦ Wee클래스 구축 공모사업 신청 안내	초 · 중 · 고	
		◦ 2026학년도 양성평등교육환경조성 시행계획 안내	전 체 학 교	
		◦ 2026학년도 성희롱·성폭력예방교육 계획 수립 안내	전 체 학 교	
		◦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계획 안내	전 체 학 교	
		◦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전문강사 신청 안내	전 체 학 교	
		◦ 유해약물 사용 학생 교육 및 상담, 특별예방교육 신청 안내	희 망 학 교	
		◦ 학교폭력 예방 대책 및 시행계획 안내	전 체 학 교	
		◦ 2026학년도 학생 생활교육 계획 · 사안처리 가이드북 연수	전 체 학 교	교육 연수원 주관

월	일	업 무 명	대 상	비고(일)
2	9.~27.	◦ 학교폭력 제로센터 운영 계획 안내	전 체 학 교	
		◦ 초등저학년 관계회복 숙려제 운영 안내	초 등 학 교	
		◦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 프로그램 및 지원기관 안내	초 · 중 · 고	
		◦ 2026 가족스캐치 프로그램 신청 안내	초 · 중 · 고	3월 ~ 11월
		◦ 2026학년도 관리자 대상 학교폭력·성폭력예방 및 자살예방교육 (1기) 신청안내	전 체 학 교	
3	3.~6.	◦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턴트 운영 안내	전 체 학 교	
		◦ 찾아가는 도박예방교육 운영 안내	희 망 교	
		◦ 학교폭력 사안처리 현장지원단 운영 안내(초·중-지원청, 고-본청)	전 체 학 교	
		◦ 학업중단숙려제 및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 지침 안내	초 · 중 · 고	
		◦ 2026학년도 학생상담지원단 개인상담·집단상담 신청 안내	전 체 학 교	
		◦ 2026학년도 성희롱·성폭력예방지침 개정 안내	전 체 학 교	
		◦ 학교 상담활동 계획 수립 및 신학기 상담주간 (자율)운영	전 체 학 교	
		◦ 학생 인권(교육) 담당자 지정 및 기본 계획 수립·운영	전 체 학 교	
		◦ 단위 학교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 계획 수립·운영	전 체 학 교	
	9.~13.	◦ 2026학년도 학생상담지원단 개인상담·집단상담 선정학교 안내	해 당 학 교	
		◦ 2026년 성고충상담원 역량강화 연수 신청 안내 -대상: 연수 이수 후 3년 경과된 자	해 당 교 사	
		◦ 2026 가족스캐치 프로그램 관리자 위기대응 워크숍 안내	희 망 교 장	4월 중
	16.~20.	◦ 2026학년도 학생상담지원단 개인상담·집단상담 운영학교 연수	해 당 학 교	
		◦ 찾아가는 (디지털)성폭력 예방교육 신청	희 망 학 교	
		◦ 2026학년도 주제가 있는 다함께 배움교실 신청	희 망 초 · 중 · 고	
		◦ 2026학년도 관리자 대상 학교폭력·성폭력예방 및 자살예방교육 (1기) (3.17.~3.18.)	전 체 학 교	초,중등 분리

월	일	업 무 명	대 상	비고(일)
3	23.~27.	◦ 2026학년도 청소년단체 활동 계획 안내(학교 내 청소년단체 조직)	희 망 학 교	
		◦ 2026학년도 인성교육 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 안내	희 망 교 사	
		◦ 찾아가는 양성평등 문화·예술 콘텐츠 신청	희 망 학 교	
		◦ 자해·자살 위기학생 전담지원기관 위탁운영 안내	전 체 학 교	
		◦ 2026학년도 사회정서교육 컨설팅 신청 안내	희 망 학 교	
4	3.30. ~4.3.	◦ 생활교육 실천사례 연구대회 안내	희 망 교 사	
		◦ 기초질서 및 준법생활 중학교 연극 경연대회 운영계획 안내	중 학 교	
	6.~10.	◦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 운영계획 안내	고 등 학 교	
		◦ 2026년 성고충상담원 역량강화 연수 (4.6.~4.7.) - 대상: 연수 이수 후 3년 경과된 자	해 당 교 사	
		◦ 찾아가는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체험부스 신청 안내	희 망 학 교	
	13.~17.	◦ 상반기 지구별 생활교육협의회	전 체 학 교	2주간
		◦ 2026년 제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전 체 학 교	4주간
		◦ 2026학년도 인성교육 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 계획서 제출	희 망 교 사	
		◦ 신규 교직원 성희롱·성폭력예방교육 실시(2개월 이내)	해 교 직 원	발령 후 2개월 이내
	5	4.27.~ 5.1.	◦ 자존감 회복을 위한 가족치유크amp 1기 안내(초등)	초 희 망 교
4.~8.		◦ 2026학년도 1차 위기학생 관리 현황 제출	전 체 학 교	5. 8.
		◦ 체험형 유해약물 오·남용예방 교육자료 대여 신청 안내	희 망 학 교	
		◦ 학생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공모전 안내	전 체 학 교	
11.~15.		◦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 운영	전 체 학 교	5. 11. ~ 5. 15.
		◦ 2026학년도 청소년 단체활동 조직 현황 제출	해 당 학 교	
26.~29.		◦ 생활교육 실천사례 연구대회 계획서 제출	희 망 교 사	5. 29.
		◦ 학업중단예방학교 교원협의체 운영	해 당 교 원	
		◦ 학생 유해약물 오·남용 실태조사 안내	전 체 학 교	

월	일	업 무 명	대 상	비고(일)
6	1.~5.	◦ 마약류 예방 학생지도 역량강화 직무연수	생 활 지 도 담 당 자, 관 리 자	
	9.~27.	◦ 사이버폭력예방 교육주간 운영	전 체 학 교	
	15.~19.	◦ 회복적생활교육 역량 강화 과정 운영	희 망 교 사	
	22.~26.	◦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뮤지컬 신청 안내	희 망 학 교	
7	6.29. ~7.3.	◦ 학생참여 토의·토론 한마당 운영 안내	희 망 고 등 학 교	
8	3.~7.	◦ 전문상담교사 및 교원 대상 상담 역량강화 연수	희 망 교 사	
	18.~21.	◦ 2026학년도 2차 위기학생 관리 현황 제출	전 체 학 교	
		◦ 자존감 회복을 위한 가족치유크림 2기 안내	희 망 중 . 고	9월 중
	24.~31.	◦ Wee클래스 구축 결과 보고서 제출	해 당 학 교	
		◦ 2026학년도 관리자 대상 학교폭력·성폭력예방 및 자살예방교육 (2기) 신청안내	해 당 학 교	교육 연수원 주관
9	1.~4.	◦ 학교폭력예방 교육 주간 운영	전 체 학 교	
		◦ 양성평등교육 주간 운영	전 체 학 교	
		◦ 학업중단예방 집중지원교,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교 컨설팅	해 당 학 교	9월 ~ 10월
	14.~18.	◦ 2026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실시	해 당 학 교	4주간
		◦ 언어문화개선 교육주간 운영 안내	전 체 학 교	9월 4주~ 10월 2주
		◦ 2026학년도 인성교육 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 보고서 제출	희 망 교 사	
	21.~30.	◦ 언어문화개선을 위한 「말·글·맘」 공모전 운영 안내	전 체 학 교	
		◦ 하반기 지구별 생활교육협의회	전 체 학 교	2주간
		◦ 2026학년도 관리자 대상 학교폭력·성폭력예방 및 자살예방교육 (2기) (9.21~9.22.)	해 당 학 교	초,중등 분리

월	일	업 무 명	대 상	비고(일)
11	2.~6.	◦ 2026학년도 3차 위기학생 관리 현황 제출	전 체 학 교	
		◦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만들기 결과 보고서 제출	해 당 초 · 중 · 고	
	16.~20.	◦ 생활지도 실천사례 연구대회 보고서 제출	해 당 교 사	11. 20.
		◦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실시 결과 제출 안내	전 체 학 교	
	23.~30.	◦ 2026학년도 학교폭력예방 및 기여교원 승진가산점 대상자 제출	희 망 학 교	
12	1.~4.	◦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현황 제출	전 체 학 교	
		◦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실시현황 제출	전 체 학 교	
	7.~11.	◦ 2026학년도 학교폭력예방 및 기여교원 승진가산점 대상자 명단 통보	해 당 학 교	
		◦ 2026학년도 청소년단체 운영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해 당 학 교	
		◦ 학교폭력예방사업(어울림중점학교, 어깨동무학교) 및 푸른꿈교실 정산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	초 · 중 · 고	
		◦ 학교폭력예방 선도학교 정산서 제출	해 당 학 교	
	12.	◦ 부·울·경 인권친화적 학교문화만들기 성과 보고회 운영	희 망 학 교	
	14.~18.	◦ 학업중단예방사업(집중지원학교, 학교 내 대안교실) 정산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	해 당 학 교	
'27. 2.	2.~6.	◦ 2026학년도 4차 위기학생 관리 현황 제출	전 체 학 교	
		◦ 2027학년도 학생 생활교육 기본 계획 및 연수 안내	전 체 학 교	
	23.~27.	◦ 2027학년도 학생생활교육 기본 계획 수립	교 육 청	
		◦ 성교육 및 보건 선택교과 채택 현황 제출	전 체 학 교	
	27.~31.	◦ 2027학년도 학생생활교육 기본 계획 및 연수 안내	전 체 학 교	
		◦ 2027학년도 학생상담지원단 신청 공문	해 당 학 교	

※ 상기 일정은 업무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원클릭 생활교육 홈페이지 운영



원클릭 생활교육 홈페이지 <https://home.pen.go.kr/oneclick/main.do>

- 학생 생활교육 전반에 대한 내용을 포괄(생활교육, 인성교육, 학교폭력, 학생상담, 생명존중, 봉사활동 등)하는 통일된 정보제공
- 경로: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 사용자별맞춤메뉴 → 교직원 → 생활지도포털서비스원클릭

자율과 책임, 존중과 배려 학교 문화 확산을 위한 의견제안	인성교육 배움길 고문집, 호외 메일 등 인성교육 등의 정보공유 860-0393	생활교육 아동학대 예방, 선도위촉회, 선도조각, 교역(860-0397) 860-0394	학교폭력 학교폭력예방교육(860-0412), 사안처리 과정(860-0413), 학교감 재제대결제 860-0412, 0413	학생상담 학술형 학생상담, WeeGo에스, 상담지원봉사에 참여 정보공유 860-0414
	생명존중 자살예방교육, 자살사안처리 과정, 성명순종교육 등의 정보공유 860-0414	봉사활동 봉사활동 안내, 봉사터전, 캠페인 등 정보공유 860-0394, 395	대안교육 학업중단예방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학업중단예방 집중지원학교 지원 860-0408	스쿨119, 숙려기관 학업중단예방 상담 및 프로그램 지원 지원정보공유 및 신청방법 안내 860-0408

학교폭력
회복조정지원센터
 푸른나무재단
(형예단)
 교원보호상담센터
(교원활동센터)
 (디지털)
성폭력·성매
예방 지원기관
 학생 출연/음주/
마약류 등 유해약
물
오남용 실태조사
 출연예방교육





Chapter

01

자율과 책임 중심의 생활교육

• 학생 생활교육 기본 계획 수립	16
• 인성중심 생활교육	40
• 지구별 생활교육협의회 운영	47
• 학생 봉사활동 안내	56
• 청소년단체 활동 안내	62
•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64
• 학생도박 예방교육	72
• 교복 학교주관구매제도 및 교복나눔운동 활성화	76
• 유관기관 연계 사업 안내	82
• 학생 생활교육 관련 Q&A	88



학생 생활교육 기본 계획 수립

1 학생 생활교육 계획 수립·시행

➤ 학교 실정에 맞는 월별·주제별 생활교육 계획 수립·시행

- 교·내외 생활교육, 기초질서, 깨끗한 환경, 생활예절, 등·하교 안내, 생활교육 관련 연수 계획, 비행 및 부적응 예방,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생명존중, 봉사활동 등 학교 실정에 맞게 수립
- 세부내용, 시기, 역할 분담 등을 포함

➤ 학생 실태 파악 및 학교 환경을 고려한 생활교육 주제 설정

➤ 생활교육 관련 시스템(각종 규정 및 위원회, 유관기관 연계 체계 등) 구축 및 정비

➤ 특색 있는 생활교육 사업 지정 운영(1학교 1특색 사업)

- 바른말 고운말 쓰기 운동, 또래조정(상담) 활동, 상·벌점제 운영, 학생 자치법정, 자치활동 동아리 운영, 특색 있는 입학식·졸업식 운영, 학교문화 개선, 수업 전·후 5분 대화 나누기, 조·종례 20분 확보를 통한 생활교육, 예방과 체험 위주의 선도 프로그램 등



2 학생 스스로 만들어 가는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의 절차

절 차	추진내용	세부 추진내용
제·개정 위원회 구성과 활동	제·개정위원회 구성	▶ 학생, 학부모, 교원으로 구성
	제정·개정안 발의	▶ 학교구성원 집단(교육공동체)의 발의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	▶ 학급회의, 학생회, 교직원회, 학부모회 등 ▶ 설문조사, 스티커 붙이기 등 활용 ▶ 토론회 개최 ▶ 상위 법령 개정(지침 포함), 단순한 표현·자구 변경 경우 (의견 수렴 절차 생략)
	시안 마련	▶ 구성원 의견 수렴을 통해서 시안 마련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최종 시안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제·개정안 확정
공포·시행	학교장 승인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과인 제·개정안 승인
	공포와 시행	▶ 학교규칙 공포(시행시기 명시) ▶ 홈페이지 탑재 및 가정통신문 발송 등
	제·개정 규정 안내	▶ 학교구성원 대상 규칙 안내 및 연수 ▶ 학교구성원의 규칙 준수 서약식
	적용 및 환류	▶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 및 분석 ▶ 학교구성원의 학생생활규정 준수 및 실천 정도 평가

➤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 규칙) 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② 학칙의 기재 사항과 제정·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① 법 제8조에 따른 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7. 학생 포상, 징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법, 학업 중단 예방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9. 학칙개정절차 10.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④ 학교의 장은 제1항제7호(학업 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방침

- 학생·학부모·교원의 의견수렴(설문조사, 토론회 등)을 통한 학교의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 제정된 학교의 학생생활규정이 철저히 지켜지는 학교문화 조성
 - 새학년 초 학생 대상 학교의 학생생활규정 교육으로 자율·책임 강조
 - 학생 스스로 자신의 언행에 대하여 책임의식을 갖도록 지도
 - 교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생활교육 실시
 - 학생·학부모·교원 학칙 준수 선포식, 캠페인 등 실시
- 비현실적이거나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학생생활규정 개정
 - 과도한 복장규정(속옷이나 스타킹 색상 제한, 겹옷 색상 제한 등), 과도한 두발 제한, 이성교제 금지 등의 인권침해, 단속 위주의 교문지도 등 비현실적 요소, 자치 활동 침해 등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통한 인권친화적 생활교육 지향
-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정보 공개
 - 학교알리미 탑재, 학교 홈페이지 탑재, 가정통신문 발송, 교원 및 학부모 대상 연수 등

3

고시에 따른 학생생활지도 안내

▶ 학생생활지도의 법적 근거

법률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제20조의4부터 제20조의 7	▶	교원의 생활지도권 보장
시행령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3과 제40조의5	▶	생활지도 분야·방법 및 체벌 금지 명시
고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교육부고시 제2026-00호	▶	생활지도의 범위, 방식 등에 관한 기준
학칙	학교 규칙(학칙)	▶	고시에서 위임한 구체사항 등
학급규칙	학급 규칙	▶	학급별 세부 내용 규정

- 초·중등학교 교원이 이 고시에 따라 행한 학생생활지도는 법령과 학칙에 의한 정당한 교육 활동에 포함됨
- 상위법에서 정한 바에 위배되는 사항이 하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 이는 효력이 없고 그에 근거한 행위는 위법임(상위법 우선의 원칙)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 요약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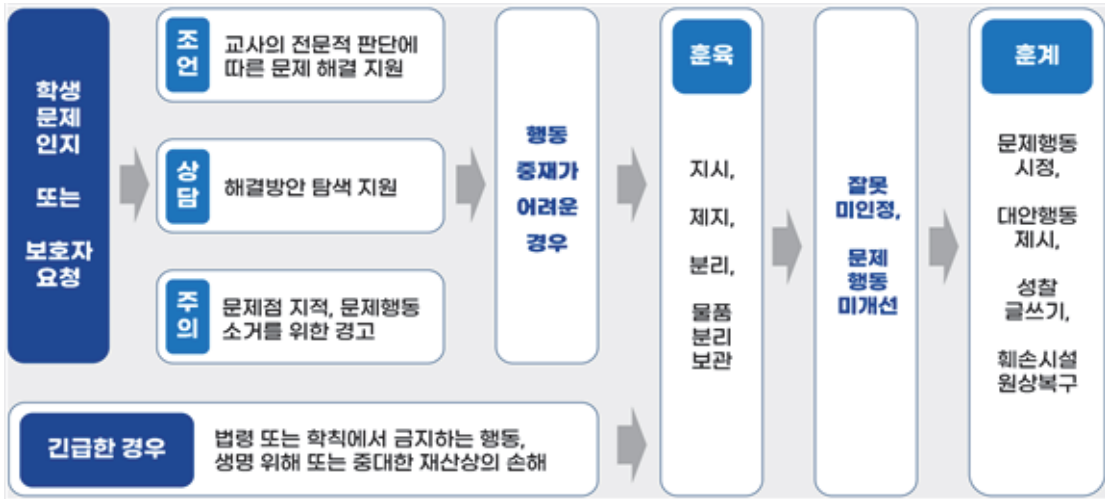
구분	내용
용어 정의	- 학생: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 특수교육대상자: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 - 교육활동: 「학교안전법」(등·하교 시간 - 학교교육과정 운영 시간 - 체험학습 등 귀가길) - 학생생활지도: 교육활동 과정 학생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지도행위
교육 3주체의 책무	- 학생: 학칙 준수, 교원 생활지도 존중 - 학교장, 교원: 학내 질서유지 노력,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지원 - 학교장: 학생, 교원, 보호자의 상호소통 증진 노력, 생활지도를 위해 시설, 인력 등 제반여건 지원 - 보호자: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 존중, 학생 학칙준수 지도, 원활한 교육활동 진행 협력
생활지도 분야	범위
학업 및 진로	교원수업권·학생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면학분위기 영향 물품 소지 및 사용, 진로진학사항
보건 및 안전	자신·타인의 건강·안전, 건전한 성장발달 위협·위해 행위
인성 및 대인관계	전인적 품성·예절, 언어사용 및 의사소통, 학폭예방대응, 학생간 갈등조정 및 관계개선
기타	특수·다문화학생 인식 및 태도, 용모·복장, 비행·범죄예방,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의 올바른 사용, 그 외 학칙위반사항

1) 2026. 3.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 개정 예정
(개정 내용: 개별학생교육지원,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각종 서식, 기타)

생활지도 방법	개념	방식
조언	말과 글로 정보제공·권고 행위	- 사생활 비공개,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 권고
상담	학생문제해결을 위한 일체 소통활동	- 문제해결, 원인분석, 대안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3주체 누구나 요청가능 - 수업 외 시간 실시 원칙(진로·상담교사, 보호자-학교장 상담 제외) - 비밀엄수, 사전예약제, 상담요청 시 응대의무 * 비예약자, 직무외, 근무시간외 거부가능, 폭언·협박·폭행 시 중단 가능 및 도움·신고요청 가능(교직원, 주변학생)
주의	학생행동 위험성, 위해성, 법령 및 학칙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경고 행위	- 수업 중 휴대전화 및 부적합 물품 사용 시, 미변화 시 훈육·훈계, 주의 무시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해 교사 면책
훈육	지시, 제지, 개별학생교육지원, 물품조사 및 분리보관	- 조언·주의에도 미개선 시 - 과업부여, 행위 지시 - 법령과 학칙 금지 행동 중지하도록 제지 - 긴급한 경우 제지 가능(학생·교직원 도움 및 신고 요청 가능), (제지 시 학교장보고, 보호자알림) - 개별학생교육지원 ²⁾ (①교실내 좌석 ②교실내 지정위치) ③수업 중 교실외(지정장소) ④수업외시간 특정장소(③, ④경우 학교장 보고, 보호자 알림) - 분리 거부, 1일 2회 이상 분리에도 방해 행동 지속 시 보호자 인계 및 가정 학습 요청(서식9) - 소지품 조사 기능(타인 생명 신체 위해, 재산 손해 우려 합리적 의심 시) - 물품 분리 보관 가능(2회 이상 주의 시, 안전건강위험물품, 학생구매불가물품, 학칙소지금지물품, 스마트기기 등) - 물품 분리 보관 시 학교장 보고, 보호자 알림 - 담임교사 학급생활규정 운영 가능
훈계	바람직한 행동 위한 문제행동지적, 잘잘못을 깨닫게 하기	- 조언, 주의 훈육에도 불구하고 잘못 미인정, 연행 미개선 시 실시 - 과제부여(대안행동, 성찰문작성, 시설물품 원상복귀(청소포함))
보상	바람직한 행동 장려 목적 유·무형 동기부여 행위	- 칭찬, 상 등
기타사항	특수학생 생활지도	- 통합교육 시 교직원 대상 연수, 통합학급 학생 수 감축, 특수교사 담임 간 협력 노력 - 심각한 특수학생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중재 지원사항 포함
	생활지도 불응 시	- 교육활동 침해 조치 가능 - 지속적 생활지도 불응 시 징계요청 가능
	이의제기	-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생각할 경우 이의제기 가능(14일 이내 제기) - 학교장 답변 의무(14일 이내) - 동일한 내용 2회 이상 답변 시 답변 거부 가능

2)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생을 일시적으로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교육지원을 하는 것

▶ 학생생활지도 절차



▶ 112신고 시 정당한 생활지도의 판단 기준

- 법령과 학칙
 -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제20조의4부터 제20조의7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3과 제40조의5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 학칙 및 그 외 관련 법령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
- 학급 규칙 및 교육주체 간의 협약
- 교원-학부모와의 사전 협의 사항 등

4

학생 중심의 생활교육 충실

▶ 학생 교육 시 체벌(간접적 체벌 포함) 및 비교육적 언행(폭언, 욕설 등) 금지

- 교권침해 예방과 지도의 정당성 확보

▶ 복장 및 용모 지도

- 교원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용의 및 복장 지도 지양
- 학생들의 반감을 초래하는 두발·복장에 대한 비교육적 지도 방법 지양

- 특정 종교·인종·집단에 대한 혐오를 과도하게 표현하는 복장 착용하지 않도록 지도
- 과도한 노출 등 학교가 추구하는 문화에 부적합한 복장 착용을 하지 않도록 지도
- 회복적 생활교육, 관계개선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적 지도 방안 강구
- 학부모와 함께하는 생활교육: 법정 보호자의 책무성 강화
- 학생의 의사·표현 적극 수렴: 학생 의견수렴 창구 다양화
- 학급회, 학생회에서 수렴된 학생들의 의견과 건의 사항 등은 교육활동에 적극 반영

5. 처벌 위주의 상·벌점(생활평점)제 개선

- 학생·학부모·교원 의견 수렴을 통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상·벌점제 운영
- ‘칭찬 점수’와 ‘벌점 점수’가 균형을 이룬 상·벌점제 운영
 - 전 교원의 공정한 상·벌점 부여(일부 교사만 부여 등의 상벌점 부여 지양)
 - 벌점 항목 축소 운영: 3개 내외로 권장(많은 벌점 항목으로 상벌점 적용 시 혼동 야기)
 - 상점 항목 확대 운영
- 벌점 상쇄를 위한 다양한 자율 프로그램 운영
 - 수업태도, 과제제출, 인사(예의), 선행사례 등을 발굴하여 상점 부여
 - 학생자치법정 등 학생자치활동을 통해 내실 있게 운영
- 선도(징계) 규정과 상·벌점 규정의 이중 처벌 금지(학생생활규정 정비)
- 학교폭력 관련사항(학생 간 폭행, 폭언, 욕설 등)의 삭제(학교폭력으로 처리)
- 학생 신고에 의한 상점부여는 비교육적이므로 삭제 권고
- 상·벌점제 대체 프로그램 활용: 회복적 생활교육, 관계개선 프로그램 등

6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지도

➤ 수업 중 휴대전화를 포함한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관련 법적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20조5(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등)
 - ①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이하 “스마트기기”라 한다)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수업 중에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장제4조(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전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제2장제7조(학생의 권리와 책임)
 - ② 학생은 교육활동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책임을 가진다.
 3. 학생은 휴대전화를 학교장이 정한 장소에 등교시부터 하교시까지 보관하여야 할 책임. 단, 장소와 방법 등은 학칙으로 정하며,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음.

➤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 지도

- 디지털 시민성을 함양을 위한 지도
- 디지털 조절 역량 강화를 위한 지도
- 소액 자동결제 등 과도한 소비를 예방하기 위한 합리적 소비생활지도
- 게임 과몰입 및 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통한 학습 분위기 조성
- 부정행위 및 불법 촬영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및 학교폭력 예방
- 스마트기기를 통한 사이버 도박 등 유해 행위 예방교육 강화
- 스마트기기 과의존으로 인하여 건강 및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지도
- 휴대전화를 포함한 정보통신 기능을 가진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태블릿 PC, 노트북, 스마트링 등) 전반에 대한 사용 지도

▶ 교내 스마트 기기 사용 제한의 예외

-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 의사소통 또는 정보전달 용도, 신체·감각 기능 보완 용도
 - 1형 당뇨병이나 환자 학생이 사용하는 치료용 보조기기 등
- ‘스마트 기기 사용 허가 신청서(서식10)’ 제출 후 허용할 수 있음

▶ 규정 위반에 따른 장기간 압수 금지: 학생생활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학생의 안전 확보를 위해 가급적 보호자 상담 후 반드시 당일 반환토록 조치함

▶ 휴대폰 일괄 수거, 보관 시 분실·파손 사고의 보상

- (보상 기구) 학교안전공제중앙회(<http://ssif.or.kr>)의 학교배상책임공제
- (보상 범위 및 내용)
 - 학교의 학생생활규정에 따라 학교가 일괄 수거, 보관
 - 시건장치가 부착된 지정된 보관 장소, 교사 확인 철저
 - 수거 시 교사·학생 함께 확인 절차 운영
- (파손 사고)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실제 수리 비용 보상
- (분실 사고) 실제 구입 가격을 한도로 감가상각 후의 금액을 산정하여 보상
- (보상 한도) 1학교당 연 2천만원, 1대당 최대 100만원, 최저 5만원 보상

학교배상책임제 보상절차

- 사고발생 통지[학교 → 중앙회]
 - ▶ 사고 발생 후 지체없이 통지
 - ▶ 중앙회 공제사업 업무처리시스템 접속(<https://ssifins.schoolsafe.or.kr:4443/>)
 - ▶ 사고발생통지서 작성
- 사고통지 접수 [중앙회]
 - ▶ 사고통지 접수보완·반려 여부 처리
- 공제급여 청구 [청구인 → 중앙회]
 - ▶ 중앙회 공제사업 업무처리시스템을 통해 청구 서류 제출 및 파일 첨부
- 심사 및 지급 여부 결정 [중앙회]
 - ▶ 중앙회에서 청구서류 접수일로부터 일 이내 결정 14
 - ※ 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기일만큼 연장 가능
- 공제급여 지급 [중앙회 → 청구인]
 - ▶ 제출된 청구서에 기재된 입금 계좌로 지급
 - ▶ 학교에 결정 내역 통보(공문 발송)

7

선도(징계) 조치의 적법성·합리성 제고

▶ 선도(징계) 조치의 법적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 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5. 퇴학처분(의무교육 제외)

▶ 징계 운영 방안

- **학교 내의 봉사**: 1일 부과 시간 및 최대 부과 시간 범위를 정하여 시행
- **사회 봉사**: 1일 부과 시간 및 최대 부과 시간 범위를 정하여 시행
- **특별교육 이수**: 최대 부과 시간의 범위를 정함, 일수는 특별교육 위탁교육기관³⁾과 협의
-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징계 이행에 따른 학습결손 대책 마련(출석정지에 따른 학습권 보장)
 - 미인정 결석 처리(출결 특기사항 ‘공란’ 처리⁴⁾)
- **퇴학**
 - 퇴학처분 사유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이 잦은 자
 3. 기타 학칙을 위반한 자

3) '학교 내 특별교육기관 이수기관'으로 지정된 학교는 자체계획 수립 후 교내 특별교육 이수 가능

4) 출석정지 징계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출결사항 기재 안내(인성체육급식과-16900, 2025. 8.21.)

- 퇴학처분 전 일정기간 동안 가정학습 실시 가능(10일 이내)
- 퇴학처분 시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 데 노력

➤ 징계의 기본 방침

- 개전의 기회 제공
-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
- 징계 사유 및 경위 등을 고려, 사안의 경중에 비례하여 단계별 적용
- 선도위원회 개최 전 학생과 보호자에게 징계 사유 및 의견을 진술할 기회와 방법 안내
- 선도(징계)위원회 구성 시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인사(학부모 등) 2인 이상 포함하여 구성(권장)
- 선도위원회 심의 대상자, 심의 내용 및 결과 등 공고 금지
(예시: ○학년 ○반 김○○ 학생 교내흡연으로 교내봉사 4시간 조치를 받음)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에 명시된 선도(징계) 조치 이외의 처분은 위법
(예시: 전학, 자퇴 또는 전학을 전제로 한 퇴학처분, 대안학교 위탁교육기관 위탁 등)
- 병과 조치 및 학부모 특별교육 불가

➤ 불복절차 및 방법⁵⁾

구분	재심의 ⁶⁾	재심(퇴학)	행정심판	행정소송
주 체	선도위원회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	(국립)중앙행정심판위원회 (공립)부산광역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법원
불 복	↓		↓	↓
국·공립	행정심판·행정소송		행정소송	상소
사 립	민사소송			

※ 재심 또는 행정심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시: 조치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선도위원회 조치는 보류됨

5) 관련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2,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행정절차법」 제26조

6) 재심의: 법정 사항은 아니며, 학생생활규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가능, 원 조치 절차와 같이 재심의를 하며, 재심의의 결과가 원조치보다 가중될 수 없음

▶ 조치 결과 통보

- 선도위원회 개최 후 조치 결과(불복절차 안내 포함)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

※ 사회봉사 기관 안내

소속	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부산광역시 교육청	퇴직교직원센터 (갈매길 동행)	부산진구 전포대로 209번길 26	601-6491
지역	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중 구	중구사회복지관	중구 망양로 309	464-3137~8
영 도 구	영도구사회복지관	영도구 산정길 138	413-4661
부 산 진 구	개금사회복지관	부산진구 백양관문로77번길 140	893-5034~5
	전포종합사회복지관	부산진구 전포대로190번길 35	802-6383
동 래 구	동래사회복지관	동래구 시실로107번길 151	531-2460~1
북 구	화정사회복지관	북구 효열로 76	362-0111~3
해 운 대 구	영진사회복지관	해운대구 반여로 165	529-0005~7
	운봉장애인주간보호센터	해운대구 신반송로 200	543-3281(543-3282)
사 하 구	다대사회복지관	사하구 다대로 440	264-5420
	두송종합사회복지관	사하구 다송로 59	265-9471~4
금 정 구	금정구사회복지관	금정구 반송로490번길 47	532-0115~8
연 제 구	연제구거제사회복지관	연제구 아시아드대로 46번길 45	507-8171
수 영 구	부산사회복지관	수영구 금련로43번길 54	755-3367~9
사 상 구	모라사회복지관	사상구 모라로110번길 129	304-9877~8
	학장사회복지관	사상구 학감대로49번길 28-70	311-4016~7

➤ 학생 선도(징계)조치 시행 절차

처 리 절 차	주 요 처 리 내 용
사안발생 및 사안조사	◦ 사실 확인서 작성<서식1> ◦ 관련 학생 조사 및 객관적인 증거자료 확보 ※ 학생의 인권,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수업시간 이외의 시간에 조사) ◦ 정확한 사실관계를 통한 조사보고서 작성
사안보고 및 보호자 상담	◦ 학교장에 사안 보고<서식2> ◦ 보호자 연락 또는 내교 통지 ▶ 관련 사안 통지 ※ 보호자 상담기록 유지: 일자 및 시간, 내용 등
선도위원회 개최여부 결정	◦ 선도위원회 개최 여부 결정(전자문서) ※ 단, 위임전결규정에 의해 담당부서에 위임된 사항은 담당부서에서 결재를 통해 조치 시행 ◦ 관련 학생 자료 보강(지도 노력 등 추가 자료)
선도위원회 개최에 대한 서면통지	◦ 해당 학생 및 보호자에게 선도위원회 개최에 따른 출석 및 의견 진술 요청 서면 통지<서식3-1, 3-2> ※ 서면통지 시 반드시 우편(내용 증명)으로 발송 ◦ 선도위원회 위원 대상 회의 개최 통지<서식4>
선도위원회 개최	◦ 개최(정족수 확인, 위원회 절차 및 규칙 안내) ◦ 안전 상징 및 사안 보고(사안별 쟁점 사안 사전 논의 등) ◦ 관련 학생 및 보호자 의견 진술(의견 진술 기회 반드시 부여) - 전결규정에 따라 개최되는 소위원회(학년부 소위원회 등)의 경우에도 반드시 진술기회 부여 ◦ 참고인 진술(생활태도, 본건 관련교사 의견, 상담교사의 의견 등) ◦ 징계 심의 - 양정기준 제시 - 징계의 공정성과 형평성 제고(동일 사안 심의결과 안내) - 사안의 경중과 당사자의 반성 정도 등을 고려 ◦ 심의 사항 확인(조치결과, 시행방법 및 일정 등) ※ 징계유형, 시행방법, 기간, 장소를 회의록에 명시 ◦ 폐회
학교장 결재 및 조치결과 통보	◦ 선도위원회 결과 및 조치이행계획 결재(회의록 등)<서식5> ※ 보호자가 회의록 공개를 원할 경우 실명 삭제 후 공개 (단, 목격자 진술서 등 그 외의 서류는 비공개) ◦ 보호자에게 조치결과를 반드시 서면 통지<서식6>, <서식8> ※ 불복 절차(통지 시 명기사항) 반드시 안내
조치시행 및 추수지도	◦ 선도 조치 시행(징계 대장 기록 등)<서식7> ◦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적 노력(상담 등)

사실 확인서

※ 작성 요령 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지를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② 정확한 사실만을 기록합니다.(추측이나 불확실한 내용 제외)	
1. 누가?	
2. 언제?	
3. 어디서?	
4. 무엇을?	
5. 어떻게 했나?	
6. 왜?	
7. 목격한 사람	
8. 작성 일시/장소	2000년 0월 0일(0요일) 00:00(장소:)
9. 진술(목격)자	☐ 관련 학생, ☐ 목격 학생, ☐ 기타: 소속: 학교(제 학년 반 번) 성명: (인)
10. 보호자 주소 및 연락처	※ 해당 학생만 기록합니다.(목격자는 해당 사항 없음) 주소: (우편번호:) 보호자 성명: (연락처:)
11. 조사자(입회인)	소속 직위 성명 (인)

※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강압)적인 확인서 작성은 아동학대 의심 사례로 해석될 수 있음

※ 수업시간 작성 등은 학습권 침해로 해석될 수 있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학교장 결재를 득하여 실시하되 가급적 수업시간 이외의 시간 활용

서식3-1

()학생 보호자 귀하

선도위원회 개최에 따른 출석 및 의견 진술 요청서

위 학생은 우리 학교 학생 생활규정 제○조 ○항의 규정에 의한 선도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선도위원회를 개최하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의견 진술의 기회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득이 출석이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고 출석하지 않는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합니다.

개최 일시			연번(사안번호)	
개최 장소			대기 장소	
개 최 사 유	관련 학생 성명		학년/반	/
	사안 발생 일시			
	사안 발생 장소			
	위반 행위 내용			
	관련 규정			
담당자	교원 ○○○	연락처	051-○○○-○○○○	
※ 참고사항 1. 출석하실 때는 진술요청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시되, 기타 소명 자료 제출 또한 가능합니다. 2. 관련 학생·보호자께서는 회의 당일 출석이 어려운 경우 첨부한 서면 의견서(별지 양식)를 작성하여 ○○학교 담당 교원에게 선도위원회 심의 전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문의 사항 및 의견제출 기관/주소: ○○학교/○○시 ○○구 ○○길 00-00, 위 담당자 2000년 월 일 ○○학교장 (직인)				

서식3-2

()학생 보호자 귀하

학생·보호자 서면 의견서

연번(사안번호)			
소속 학교		학생 성명	
학년 / 반	/	보호자 성명	
상기 본인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선도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기에 아래와 같이 서면으로 의견을 대신하고자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 사안에 대한 소명, 요구사항 등의 의견을 자유롭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진술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0 년 월 일 학생 (서명) 보호자 (서명) ○○학교 선도위원회 귀중			

서식4

()위원장님 귀하

선도위원회 개최에 따른 참석 요청서

우리학교 학생 생활규정 제○조 ○항의 규정 위반 학생에 대한 선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 하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20○○년 ○월 ○일(○요일) ○○:○○
2. 장 소: 우리학교 회의실(1층)
3. 진행순서

- 개회
- 사안보고(사안보고, 관련법률 및 규정 안내)
- 당사자 진술
 - 학생 또는 보호자 진술기회 반드시 부여
 - 가능한 모두에게 진술기회 부여
- 관련 교사 의견 진술(생활태도, 본건 관련교사 의견, 상담교사의 의견 등)
- 징계 심의(양정기준 제시, 동일 사안 심의결과 안내, 사안의 경중과 당사자의 자세 등을 고려하여 판단)
- 심의 사항 확인(조치결과, 시행방법 및 일정 등)
- 폐회

4. 담당자: (T. 051-○○○-○○○○)

20○○년 ○월 ○일

○○학교 선도위원회 위원장(직인생략)

(우 00000) 부산광역시 00구..... 주소 기재

서식5

선도위원회 회의록

일시	2000년 0월 0일(0요일) 00:00	장소		기록자	
회의 안건					
참석 인원	위원장수: 00명, 참석위원: 00명, 불참위원: 00명				
회의 내용	○ 회의 내용 - 발언 순서에 따라 기재 - 회의 내용의 핵심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최대한 빠짐없이 작성 - 회의 내용에 따라 분량 조절 ○ 예시 000: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회의록 공개: 사안 당사자(보호자)가 공개를 원할 경우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제외 후 공개함 (그 외의 목격자 진술서 등은 공개불가)				
회의 결과	○ 조치(처분) 내용, 시행 기간, 방법 등 ※ 전학을 전제로 한 퇴학이나 출석정지 처분 금지(법령 위반) 잘못된 조치의 예) 00일까지 전학을 가지 않으면 '퇴학' 조치, '퇴학' 처분을 결정하고 '전학'을 허용하는 경우 등				
확인	위원장 000 (인) 위 원 000 (인) 위 원 000 (인) 위 원 000 (인) 위 원 000 (인) 위 원 000 (인)				

○ ○ 학교

서식6

()학생 보호자 귀하

선도위원회 개최에 따른 조치결과 통지

제 학년 반 번
성 명: ○ ○ ○

위 학생에 대한 선도위원회 회의 결과 다음과 조치가 같이 결정 되었기에 이를 통지합니다.

1. 회의 일시: 20○○년 ○월 ○일(○요일) ○○ : ○○
2. 징계 조치 사유:
3. 조치 결과(선도 처분):
4. 근거: 학생생활규정 제○조제○항의○
5. 징계 기간: 20○○. ○. ○. ~ 20○○. ○. ○.(일간, 1일 ○○시간)
6. 방법(또는 장소):
7. 담당자: ○○○ (☎051-○○○-○○○○)

• 불복 절차 안내 •

처분내용	대상	불복 절차 및 방법	담당기관
퇴학	모든 학교	퇴학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 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3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2)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 (인성체육급식과)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	국립	학교장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심판법 제27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음(행정소송법 20조)	중앙행정 심판위원회
	공립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예산기획과)
	사립	학교장의 조치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법원

※ 이 통지서는 「행정절차법」 제24조에 따라 서면(등기 등)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동법 제26조에 따라 해당 조치에 대한 불복절차를 반드시 안내하여야 함.

20○○. ○. ○.

○○학교장(직인)

(우 00000) 부산광역시 00구..... 주소 기재

서식7

학생 징계 대장

○○학교

연번	학번	성명	징계조치 (처분내용)	징계기간	징계사유	징계근거

서식8

Chapter
01

학교 내 재심의 신청서

청구인	성명		연락처	자택)		관계	본인 ()
			휴대전화)				보호자 () 학생과의 관계
	주소						
	학생	성명		소속	()학교 ()학년 ()반		
선도위원회 개최일		년 월 일		징계 조치 결정 통지일		년 월 일	
징계 조치결정 통지서 수령일		년 월 일		징계 조치 결정 통지서 수령방법		년 월 일	
재심의 신청 취지							
재심의 신청 이유							
20 년 월 일 학생 (서명) 보호자 (서명) ○○학교 선도위원회 귀중							

서식9

개별학생교육지원기 학생 관리 대장

날짜 (교시)	분리시간	지도교사	개별학생 교육지원 장소	개별학생교육지원 사유	대상학생 (학번, 이름, 누적횟수)
				학습지원 내용	
0월 0일 (2교시)	10:00~10:20 (20')			2회 전자기기 무단사용 깨워도 계속 누워있음 수업에 참여하지 않음	10101, 장00(1회)
				학습지원프로그램(교과서 요약, 학습지 제공, 교과 연계 활동 등)	
1. 10101 장00, 무선이어폰을 이용하여 음악을 듣는 등 특별실(성찰실) 규칙 위반으로 물품을 분리 보관하여 담임교사에게 인계함					
2. 10101 장00. 주어진 과제 미수행으로 시간 연장됨을 2교시 교과수업담당 교사에게 알림					

7) 기존의 '분리지도' 를 '개별학생교육지원'으로 개정

서식10

스마트 기기 사용 허가 요청서

학생 성명		학년 / 반	
신청 물품			
사용 신청 일시	년 월 일		
사용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용 목적	※ 학생의 정보통신 기능 휴대용 전자기기 종류, 구체적인 사용 행위와 목적 등 구체적으로 기술		
증빙 자료			
◆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에 따라, 수업 중 스마트기기의 사용을 허용받고자 함 ◆ 스마트 기기 보관 및 사용에 따른 책임은 물품 소유자 개인에게 있음 ◆ 기존 목적에 맞지 않게 스마트 기기 사용 또는 불법적 사용에 따른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 ◆ '스마트 기기'라 함은 휴대전화를 포함한 정보통신 기능이 있는 기기를 의미함			
20 년 월 일 학생 (서명) 보호자 (서명) ○○학교장 귀하			



인성중심 생활교육

1

인성교육의 개념과 부산 다(多)품은 인성교육

- 「인성교육진흥법」에 제시된 가치와 덕목을 바탕으로 중점 가치(존중, 배려) 및 5개 실천 역량(자기존중감, 생명존중, 공감·소통, 다양성, 협력)으로 명료화하여 제시, 인성교육 정책 이해도 제고
-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부산 다(多)품은 어울림 인성교육』 추진 기반 마련
- 생활교육의 전 과정을 인성교육의 핵심 가치·덕목에 기반하여 설계·운영하는 ‘인성중심 생활교육’ 추진

➤ 인성교육 개념

-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
 - (인성교육의 정의)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 (핵심 가치·덕목) 예, 효,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 (핵심 역량) 지식, 의사소통능력, 갈등해결능력이 통합된 능력
- (2022 개정 교육과정)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다양성을 이해하고 서로 존중하며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 협력을 실천하는 더불어 사는 사람
- (개념의 해석) 인성은 개인의 내면적 특성이면서도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며 공동체 속에서 조화롭게 행동하는 능력을 의미

➤ 부산 다(多)품은 인성교육

- 존중과 배려가 체화된 전인격적 인재 양성

어디(학교, 가정, 지역사회)에서나 실천할 수 있는 인성교육 실현

- 활동·실천 중심, 총체적 자원 동원(다양한 독서활동, 예술·체육 활동 등)
- 학교·가정·지역사회·언론·시민단체의 참여를 통한 인성교육 실현

과제	부산 다(多)품은 인성교육
환경 인프라	1학교 1인성 브랜드 연계 인성교육 계획, 휴식과 놀이가 있는 학교 운영 학생참여형 언어순화운동 운영, 인성교육통합플랫폼, 『학생인성교육원』 환경 개선
학생 인성교육	독서·인문교육, 체육교육 활성화, 문화예술 프로그램(공연, 전시, 축제), 체험형 학생 인성동아리 운영, 청소년단체 활성화, 성장 단계별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가정·지역 사회 연계	부모님과 함께하는 존중·배려 체험 프로그램, 대화가 있는 밥상, 인성교육통합플랫폼 앱을 통한 교육 서비스 제공, 서원·향교 프로그램 참여, 인성·리더십 키움 프로젝트
교원 역량제고	인성교육실천사례연구발표대회, 전통기관 연계 교원 연수, 인성교육 콘텐츠 개발, 인성교육 전문 인력 양성 및 자료 개발·보급

2

학교 인성교육 계획 수립·시행

▶ 학교 인성교육 계획 수립

- 학교·지역사회 여건을 고려한 자율적이고 특색 있는 학생 생활교육계획
 - 수립 방법: 학교 교육 전반(교과, 교육과정, 학교특색)을 통한 계획 수립
- 단위학교 생활교육 속 인성교육 계획 예시(안)

목표 및 성취기준	교과교육 연계 인성교육	창의적체험활동 연계 인성교육	가정·지역사회 연계 인성교육
2015 개정 교육과정 및 2022 개정 교육과정 반영 학교급별 (초·중·고) 수립	• 인성교육중심 수업 활성화 • 문·예·체 교육 활성화 • 도덕, 사회과 교육	• 자율·자치 활동(적응, 행사, 특색) - 학예회, 운동회, 수련 등 • 동아리 활동(문화예술, 스포츠 등) • 봉사·진로활동 연계 운영 • 학교 교육 여건과 실정을 고려한 동물 학대 예방교육 계획 수립·시행 •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교육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	• 가족/지역단위 인성체험 활동 - 밥상머리교육 - 가족캠프, 봉사 - 가족독서 - 지역봉사 - 부모님과 함께하는 존중·배려 체험(초) - 서원·향교 체험 프로그램(초·중·고) - 인성·리더십 키움 프로젝트 (초·중·고) - 인성교육 캠페인

- 1학교 1인성 브랜드 연계 교육과정 계획 수립(전 학교)
 - 교육 주체가 참여하는 인성교육 개념 및 방향 설정, 인성교육 목표설정, 인성교육 내용 및 방법에 대한 이해와 공유를 통해 실행력 제고
 - : 교육공동체 회의, 학생자치회 등을 통한 학교 인성교육 계획 방향 설정
 - 1학교 1인성 브랜드 운영사례 홈페이지 탑재(선택사항)

– 단위학교 학교교육계획 수립 시 반영

구분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필수 운영	• (초) 휴식과 놀이가 있는 학교 운영 – 매일 20분 이상 놀이 활동 시간 운영 권장 – 점심시간 50분 이상 확보 권장 – 공간 확보(운동장, 여유 공간 활용) – 관련 프로그램 운영 (동아리,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등) – 학교스포츠클럽 연계 운영	• 언어문화개선 프로그램 운영 – 교과 교육과정 연계 바른 언어 사용 교육 강화 (국어·사회·도덕: 학기별 1회 이상 실시) –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 교육 반영 (동아리 활동, 각종 행사 활동 연계 운영) – 학생참여형 바른 언어사용 교육 활성화 – 욕설, 차별, 편견, 비난, 혐오 언어 금지 등 바른 의사소통 및 비폭력대화교육으로 확대
선택 운영	• 효교육(효의 날, 효의 달 등), 예절교육 – 학교별 특색 있는 실천중심의 효·예절 프로그램 운영 • 바른 말 고운 말 쓰기 • 말·글·맘 공모전 참여	• 인성교육 관련 교내 행사 운영 • 단위학교 맞춤형 인성교육 특색 사업 • 말·글·맘 공모전 참여

➤ 교원의 인성교육 관련 연수(연 1시간 이상 이수)

- 직무연수, 학교단위 교내연수, 교직원 워크숍, 교사인성동아리 운영 가능

➤ 인성교육 기반 구축

- 인성교육 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 지원
 - 목적: 부산 자체대회 운영으로 인성교육 실천 우수사례 발굴 및 일반화
 - 운영 방침: 전국인성교육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 부산지역 예심 운영 지원
 - 최종보고서 제출 후, 사실 확인, 표절심사, 현장실사 등으로 전국대회 운영 지원
- 인성교육 연구학교 운영
 - 연구학교 운영을 통한 인성교육 교수·학습 방법 개선 및 현장 중심의 인성교육 우수사례 발굴·확산
 - 인성교육의 연구학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비 지원(2/2년차)

➤ 해양 미래 리더 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

- 국립한국해양대 연계 해양체험프로그램 운영(5 ~ 9월)
- 중·고등학생 2,500명 대상 1일형 프로그램

고운 말·좋은 글·행복한 맘 「말·글·맘」 언어문화개선활동

“고운 말·좋은 글·행복한 맘 「말·글·맘」이란

고운 말과 좋은 글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활동을 통해 욕설이나 비속어로 흐린 맘이 ‘맑은 맘’으로 변화하여 삶 속에서 고운 말, 좋은 글이 생활화되는 학생 주도적 언어문화개선 활동

➤ 학생자치활동, 학생동아리, 학교 교육과정 연계를 통한 언어문화개선 활동 활성화(연중 운영)

- 교육공동체의 참여를 통한 언어문화개선 추진
- 언어문화개선 1학교 1개 학생동아리 운영(연중, 전 초·중·고교)

➤ 언어문화개선 교육주간(9월 4주 ~ 10월 2주) 운영

- 각 학교는 학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실정에 맞게 운영
- 학교 언어순화운동 연계, 관계기관 교육자료 활용

➤ 학교자율사업선택제(학교언어순화운동) 연계 운영

➤ 고운 말·좋은 글·행복한 맘 「말·글·맘」 프로젝트

<「말·글·맘」 운영 방법 예시>

- 학생 자치활동을 통한 참여형 언어순화 개선 활동
- 학생자치 및 생활협약 연계: 우리가 만들고 지키는 언어규칙 제정, 학생 주도 고운 말 쓰기 캠페인
- 「바른말 지킴이」 봉사동아리 등 운영
- 바른말 온도계: 바른말 및 욕설 빈도에 따른 교실 게시형 온도계
- 언어순화 교내 UCC 대회, 캠페인 운영

➤ 학교 언어문화개선을 위한 「말·글·맘」 공모전 운영

- 목적: 학교 언어문화개선 및 올바른 언어사용 생활화
- 운영 방침: 교육공동체의 적극적 참여, 실천사례 중심 공모전 운영을 통한 언어문화개선
- 대상: 부산시 관내 초·중·고등학생 및 교사, 시민(개인 또는 단체)

➤ 대화가 있는 밥상 운영

- 『대화가 있는 밥상』(가정 내 대화법) 자료
- 『존중 받는 아동, 행복한 가정』(가정 내 인성교육) 교육영상 활용
- 월 1회 ‘대화가 있는 날’ 운영 권장

3 지역사회 연계 학교 인성교육 지원

▶ 지역사회 연계 학교 인성교육 지원

- 전통문화 인성 체험 프로그램 운영(4~10월, 초·중·고)
 - 학교 교육과 상호 보완을 위한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 전통기관 위탁 운영을 통한 학생 인성 역량 강화 및 공동체 인식 함양
- 전통교육기관 연계 청소년 인성·예절 체험교실 운영(4~10월, 초·중·고)
 - 미래세대의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한 인성·예절교육 지원
 - 전통기관 위탁 운영을 통한 존중과 배려의 인성 역량 강화
- 부모님과 함께하는 존중·배려 체험 프로그램 운영(5~11월, 초)
 - 부모세대와 학생 간 공감과 참여를 통한 인성 역량 강화
 - 유관기관 연계 전래놀이교육·다례문화교육 지원체계 구축
- 인성교육 특색사업 운영(교육지원청)
 - 모두가 함께하는 서부 올(ALL)바른 인성교육
 - 바른 인성으로 함께 성장하는 남부「온마음」인성교육
 - 핵심 덕목을 내면화하는 북부 인성교육
 - 조화로운 문·예·체 체험으로 함께하는 동래 인성교육
 - 지혜로운 인재로 키우는 인성교육(해운대)

▶ 『학생인성교육원』인성체험 교육과정 운영 활성화

- **인성티움** 자기이해력을 길러주는 인성티움 교육과정 **초**
 - 바른말 사용, 인사하기 등 어디에서나 접목될 수 있는 기본 인성교육
 - 프로그램: 마음깨움 과정, 마음열림 과정, 가족힐링 인성캠프, 수상체험 과정, 희망 마중물 교실
- **인성채움** 공동체적 사회성을 높여주는 인성채움 교육과정 **중**
 - 체험형 인성교육으로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인성역량 함양 과정 운영
 - 프로그램: 인성자람 체험과정, 숲속 음악회, 몸마음 튼튼 교실
- **인성피움**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는 인성피움 교육과정 **고**
 - 소통·배려·협력의 인성체험 활동으로 인성역량을 갖춘 시민 육성 과정
 - 프로그램: 고등학교 리더십 아카데미, 리더키움 역사문화탐방, 둥근세상 만들기 캠프

- [특색사업] 등산과 캠핑 활동 중심의 가족 기반 인성교육 과정
 - 가족 친화력 향상을 위한 가족 기반 인성교육(가족간 바른말 사용)과정
 - 가족과 함께하는 「금정산 가족사랑 등산학교」(2월, 초·중학생 포함 가족단위, 2기, 80명)

인성·리더십 키움 프로젝트를 통한 인성교육 활성화

“인성·리더십 키움 프로젝트”란

사랑, 정성, 정의, 자력의 삶의 가치 실천 및 이순신 정신 배움을 통한 학생 인성·리더십 함양 프로젝트

➤ 찾아가는 이순신 인성·리더십 키움 교실

- 중·고등학교 대상 학급별 2시간 교육프로그램
- 이순신 정신 및 리더십 교육 전문 역량을 갖춘 강사 지원
- 사랑, 정성, 자력의 이순신 정신 배움을 통한 정의문화 확산 및 공동체 역량 강화

➤ 이순신 해전 전적지 순례

- 중·고등학생 대상 1일형(전일제) 체험학습
- 이순신 정신 및 리더십 교육 전문 역량을 갖춘 현장 해설 강사 지원
- 옥포승첩과 부산대첩 전적지 답사를 통한 이순신 리더십 함양 교육

➤ 이순신 해전 골든벨 대회 운영

- 이순신 정신과 가치에 관심 있는 고등학생 대상
- 이순신 관련 도서를 통한 퀴즈대회 문제 출제 및 입상자 시상, 학생 참가 내용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재

서식

2026학년도 1학교 1인성 브랜드 운영 결과

○○학교

브랜드 /주제									
추진 결과	※ 특색 있는 추진 실적(성과) 제출: 원클릭생활교육_인성교육_우수사례 탑재 가능 사진자료가 있는 경우(2~3장 이내) 삽입, 없는 경우 삽입X, 개조식으로 간단히 기록 - 1학교 1인성 브랜드 사업 - 놀이와 휴식이 있는 학교(초), 언어문화개선 프로그램(중) - 효 예절 교육 - 가정 및 지역사회 연계 인성교육 ※ 1페이지 내에서 작성, 폰트 및 사진 사용 시 저작권 및 초상권에 위배되지 않도록 유의 <table border="1" data-bbox="315 1079 1229 1373"> <tr> <td data-bbox="315 1079 619 1334"></td><td data-bbox="619 1079 923 1334"></td><td data-bbox="923 1079 1229 1334"></td></tr> <tr> <td data-bbox="315 1334 619 1373">사진자료(1)</td><td data-bbox="619 1334 923 1373">사진자료(2)</td><td data-bbox="923 1334 1229 1373">사진자료(3)</td></tr> </table>						사진자료(1)	사진자료(2)	사진자료(3)
사진자료(1)	사진자료(2)	사진자료(3)							
언어문화 개선 추진결과	- 고운 말·좋은 글·행복한 맘 「말·글·맘」 언어문화개선 관련 - 언어문화개선 동아리 <table border="1" data-bbox="919 1432 1233 1762"> <tr> <td data-bbox="919 1432 1233 1722"></td></tr> <tr> <td data-bbox="919 1722 1233 1762">사진자료</td></tr> </table>				사진자료				
사진자료									



지구별 생활교육협의회 운영

1

사업 목적

- 학교급별·지구별 학교 간 정보 공유를 통한 효과적 생활교육 방법 모색
- 학교급별·지구별 학교 간 공동 사고를 통한 자율과 책임의 생활교육 방법 모색
-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학교-유관기관과의 협조 방안 모색

2

기본 방향

- 초·중학교는 교육지원청, 고등학교는 시교육청에서 조직 운영: 〈서식1〉 참조
 - 단위 학교별 생활교육 책임성 강화
 - (초·중학교) 교육지원청 학교급별 3개 지구(총 30개 지구) 운영
 - (고등학교, 특수학교, 평생교육시설학교) 시교육청에서 12개 지구 운영
- 지구별 생활교육협의회 개최
 - 지구별 간사학교와 소속 학교의 업무 협조로 일정 진행
 - 생활교육 실천사례 발표 및 토론, 주제중심 토론 및 협의
 - (간사학교) 협의회 결과(회의록)를 1주일 이내에 소속 교육청에 보고
 - 초·중학교: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은 시교육청에 보고)
 - 고·특수학교: 시교육청
-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강화: 〈서식2〉 참조
 - 교육지원청: 유관기관(경찰서, 단체, 상담기관 등)에 생활교육협의회 참여 안내
 - 생활교육협의회 개최학교(혹은 간사학교)는 지구별 유관기관에 일정 안내

3 운영 계획

▶ 연간 추진 계획

시기	주요 내용	세부 계획 수립 및 협의 내용
4월	1학기 초 생활교육	학년 초 생활교육 계획 수립 운영, 학교폭력예방, 학생상담 등
9월	2학기 초 생활교육	전반기 생활교육에 대한 개선 방안 검토, 2학기 생활교육 등

▶ 생활교육협의회 운영

- 생활교육협의회 운영 시 유의사항
 - 강사 초청 연수회 개최 지양, 주제 토의 및 사례발표(공유)를 중심으로 운영
 - 전달 사항은 간략하게, 궁금한 내용은 기타토의 시 질의·응답
 - 유관기관 참석자는 협조사항 안내 후에 가급적 퇴장
- 생활교육협의회 식순

식순	내용	비고(담당)
등록	학교명단 및 서명 등록부 준비, 회의록	간사학교
개회선언		개최학교 생활교육부장
국민의례		개최학교 생활교육부장
참석자 소개	유관기관 참석자 소개	개최학교 생활교육부장
학교장 인사	학교장 인사	개최학교 학교장
유관기관 협조사항 안내	경찰, 보건소, 상담기관, 청년회, 학부모 등	장학사
우수사례 공유	생활교육 우수사례 소개	개최(간사)학교
주제토론	주제관련 학교별 의견 제시 및 토론	장학사
전달사항 및 질의응답	전달사항 요점 안내 및 질의응답	장학사 및 각 학교 생활교육부장
건의사항	건의사항 조치 및 추후 응답 안내	장학사
기타토의	기타 토의	장학사
장학사 지도조언	협의회 전체에 대한 지도조언	장학사
폐회	폐회	개최학교

▶ 지구별 생활교육협의회 운영비 지원: 간사학교에 목적사업비로 교부

▶ 자체 및 합동교외지도 실시 계획

- 학교 주변 자체교외지도 강화
 - 학교별 자체 지도계획 수립하여 학교장 결재 후 실시
 - 지도시간을 07:00~09:00, 17:00~19:00 등으로 기록
- 합동교외지도: 필요시 교육청 또는 지구별 간사학교에서 계획하여 실시
 - 특별교외지도 시간 운영: 생활교육협의회일, 불꽃축제, 졸업식 전후, 이벤트 행사 등 특별 교외지도가 필요할 때 시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계획하여 간사 학교와 협의 후 실시
 - 학생 대상 흡연예방, 담배판매 업소 계도 강화
 - 학교, 경찰서, 관할구청, 청년연합회 등과 연계지도

행정사항

◆ 시교육청

- 생활교육협의회 운영계획 수립 후 교육지원청 및 고등학교로 안내
- 지구별 생활교육협의회 회의록 취합: 〈서식3〉
- 지구별 생활교육협의회 운영비 정산서 취합: 〈서식4〉
- 합동교외지도 일정 간사학교 등과 협의

◆ 교육지원청

- 시교육청 운영계획 참고, 자체 계획 수립 후 각 초·중학교로 안내
- 지구별 생활교육협의회 운영결과 시교육청 보고: 〈서식3〉 취합 보고
- 지구별 생활교육협의회 운영비 정산서 시교육청 보고: 〈서식4〉 취합 보고
- 합동교외지도 일정 간사학교와 협의

◆ 지구별 간사학교 및 개최학교

- (간사학교) 지구별 생활교육협의회 개최 관련 업무 추진
- (간사학교) 지구별 생활교육협의회 일정 교육(지원)청과 협의 확정
- (간사학교) 생활교육협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고: 〈서식3〉, 1주일 내
- (개최학교) 지구별 유관기관 관계자 참석 요청: 〈서식2〉

◆ 지구별 생활교육협의회 정산서 제출: 〈서식4〉

- 제출 일시 및 방법 안내

서식1

지구별 생활교육협의회 조직표

〈초등학교 지구별 생활교육협의회 조직〉

지구별	초등학교		
	간사학교	소속학교	학교수
서 사 하 구	감천초	감천초, 괴정초, 구덕초, 남부민초, 대신초, 동신초, 부민초, 사하초, 서천초, 송도초, 승학초, 아미초, 알로이시오초, 옥천초, 천마초, 토성초, 화랑초	17
영 도 구 중	봉학초	광일초, 남성초, 남향초, 대교초, 대평초, 동삼초, 보수초, 봉래초, 봉학초, 상리초, 영도초, 절영초, 중리초, 청동초, 청학초, 태종대초	16
사 하 구	신촌초	구평초, 낙동초, 다대초, 다선초, 다송초, 당리초, 물운대초, 보림초, 사남초, 사동초, 신남초, 신촌초, 신평초, 을숙도초, 응봉초, 장림초, 중현초, 하남초, 하단초, 효림초	20
부산진구	양정초	가남초, 가야초, 가평초, 개금초, 개림초, 개원초, 개포초, 개화초, 당감초, 당평초, 동양초, 동원초, 동평초, 부암초, 성전초, 성지초, 양동초, 양성초, 양정초, 연지초, 연학초, 주례초, 초읍초	23
남 구	문현초	대남초, 대연초, 대천초, 동천초, 동향초, 문현초, 백운초, 분포초, 석포초, 성동초, 성천초, 연포초, 오륙도초, 용당초, 용문초, 용산초, 용소초, 용호초, 우암초, 운산초, 신연초	21
동 부 산 진 구	성남초	동성초, 동일중앙초, 범일초, 부산진초, 부전초, 선암초, 성남초, 성북초, 성서초, 수성초, 수정초, 전포초, 초량초	13
북 구	학사초	구남초, 구포초, 금곡초, 금명초, 금창초, 대천리초, 덕성초, 덕양초, 덕천초, 만덕초, 명덕초, 명진초, 백산초, 백양초, 상학초, 신금초, 신덕초, 신천초, 양덕초, 양천초, 와석초, 용수초, 포천초, 학사초, 화명초, 화집초, 화정초	27
사 상 구	주감초	감전초, 구학초, 덕상초, 덕포초, 동궁초, 동주초, 모덕초, 모동초, 모라초, 모산초, 사상초, 삼덕초, 서감초, 엄궁초, 주감초, 주양초, 주학초, 창진초, 학장초, 학진초	20
강 서 구	녹산초	가락초, 남명초, 녹명초, 녹산초, 대사초, 대상초, 대저초, 덕두초, 명지초, 명호초, 배영초, 송정초, 신명초, 신호초, 오션초, 천가초, 명일초, 명원초, 명문초, 대저중앙초, 강서초	21
동 래 구	낙민초	교동초, 금강초, 낙민초, 내산초, 내성초, 달북초, 명동초, 명륜초, 명서초, 명항초, 미남초, 사직초, 수안초, 안남초, 안락초, 안민초, 안진초, 여고초, 예원초, 온샘초, 온천초, 총렬초, 해화초	23
금 정 구	장서초	공덕초, 구서초, 금빛초, 금사초, 금샘초, 금성초, 금양초, 금정초, 남산초, 동래초, 동상초, 동현초, 두실초, 부곡초, 부산삼육초, 서동초, 서명초, 장서초, 장전초, 청룡초, 현곡초	21
연 제 구	과정초	거제초, 거학초, 과정초, 교대부속초, 남문초, 동명초, 연동초, 연미초, 연산초, 연서초, 연신초, 연일초, 연제초, 연천초, 창신초, 토현초	16
수 영 구 해운대구	수영초	광남초, 광안초, 남천초, 동백초, 망미초, 민락초, 민안초, 배산초, 부흥초, 상당초, 송정초, 수미초, 수영초, 신곡초, 신도초, 양운초, 좌동초, 좌산초, 해송초, 호암초	20
재 반 송 송	해강초	강동초, 무정초, 반산초, 반석초, 반송초, 반안초, 반여초, 삼어초, 섬텨초, 송수초, 송운초, 신재초, 운봉초, 운송초, 인지초, 장산초, 재송초, 해강초, 해동초, 해림초, 해운대초, 해원초	22
기 장	좌천초	가동초, 교리초, 기장초, 내리초, 달산초, 용암초, 대청초, 모전초, 방곡초, 신정초, 신진초, 월내초, 월평초, 일광초, 장안초, 정관초, 정원초, 좌천초, 죽성초, 철마초, 칠암초, 해빛초	22

〈중학교 지구별 생활교육협의회 조직〉

지구별	중학교		
	간사학교	소속학교	학교수
서 구 중 구	경남중	경남중, 대신여중, 덕원중, 부산대신중, 부산여중, 부산중앙여중, 송도중, 초장중	8
영 도 구	해동중	남도여중, 부산남중, 부산영선중, 부산체육중, 신선중, 영도제일중, 태종대중, 해동중	8
사 하 구	다대중	감천중, 건국중, 다대중, 다선중, 다송중, 당리중, 대동중, 동주여중, 두송중, 사하중, 삼성중, 영남중, 장립여중, 장평중, 하남중, 하단중	16
남 구	남천중	감만중, 남천중, 대연중, 대천중, 동향중, 문현여중, 분포중, 석포여중, 성동중, 오륙도중, 용문중, 용호중, 해연중	13
부산진구 동 구	경남여중	경남여중, 덕명여중, 동의중, 부산동여중, 부산동중, 부산서중, 부산중, 부산진여중, 부산진중, 선화여중, 향도중	11
부산진구	초읍중	가야여중, 개금여중, 개림중, 광무여중, 동양중, 동평여중, 동평중, 부산개성중, 부산국제중, 서면중, 양동여중, 초연중, 초읍중	13
북 구	만덕중	가람중, 구남중, 구포중, 금곡중, 금명중, 대천리중, 덕천중, 만덕중, 명진중, 백양중, 신덕중, 양덕여중, 용수중, 화명중, 화신중	15
사 상 구	모동중	덕포여중, 동주중, 모동중, 모라중, 신라중, 엄궁중, 주감중, 주례여중, 주례중, 학장중	10
강 서 구	녹산중	경일중, 낙동중, 녹산중, 대저중, 덕문중, 명지중, 명호중, 신호중, 지사중, 송정중, 오션중, 가락중	12
동 래 구	온천중	남일중, 동래중, 동신중, 동해중, 부산내성중, 사직여중, 사직중, 안락중, 여명중, 온천중, 유락여중, 총렬중, 학산여중, 해화여중	14
금 정 구	장전중	구서여중, 금사중, 금양중, 금정중, 남산중, 동래여중, 동현중, 부곡여중, 부곡중, 부산예중, 브니엘예중, 장전중	12
연 제 구	거성중	거성중, 거제여중, 연산중, 연일중, 연제중, 연천중, 이사벨중, 토현중	8
수 영 구	광안중	광안중, 동수영중, 동아중, 망미중, 부산수영중, 반안중, 반여중, 인지중, 장산중, 재송여중, 재송중, 한바다중	12
해운대구	동백중	동백중, 부흥중, 상당중, 센텀중, 신곡중, 신도중, 양운중, 해강중, 해운대여중, 해운대중	10
반 송 기 장	신정중	기장중, 대청중, 모전중, 반송여중, 반송중, 부산중앙중, 신정중, 장안중, 정관중, 일광중	10

〈고등학교 지구별 생활교육협의회 조직〉

지구별	고등학교		
	간사학교	소속학교	학교수
서영도구	광명고	경남고, 경성전자고, 광명고, 부경고, 부산관광고, 영도여고, 부산보건고, 부산서여고, 부산영상예술고, 부산체육고, 부산해사고, 문화예술조은학교	12
남구	세연고	대양고, 대연고, 동천고, 문현여고, 배정고, 배정미래고, 부산공고, 부산동여고, 세연고, 부산중앙고, 동명공고, 분포고, 성지고, 예문여고, 한국조형예술고, 한얼고	16
연제수영구	덕문여고	계성여고, 덕문여고, 부산남일고, 부산여상, 부산외고, 연제고, 이사벨고	7
금정구	대진전자통신고	금정여고, 금샘고, 남산고, 내성고, 대진전자통신고, 동래여고, 부산경호고, 부산과학고, 부산사대부설고, 부산예술고, 부산예원고, 부산정보관광고, 브니엘고, 브니엘여고, 브니엘예술고, 지산고, 미래학교	17
사하구	부일전자디자인고	건국고, 국제금융고, 다대고, 대광고, 대동고, 동아고, 동아공고, 부경보건고, 부산여고, 부산일과학고, 부산자동차고, 부일외고, 부일전자디자인고, 삼성여고, 성일여고, 해동고, 행복학교	17
동래구	동래고	금정고, 대명여고, 동래고, 동래원예고, 동인고, 부산전자공고, 사직고, 사직여고, 용인고, 중앙여고, 충렬고, 학산여고, 해화여고, 부산자유학교	14
해운대기장군	해강고	기장고, 반여고, 센텀여고, 부산기계공고, 부산문화여고, 부흥고, 영산고, 센텀고, 신도고, 신정고, 양운고, 장안고, 장안제일고, 정관고, 해강고, 해운대고, 해운대공고, 해운대관광고, 해운대여고, 부산예빛학교	20
북구	금곡고	경혜여고, 금곡고, 금명여고, 낙동고, 만덕고, 부산백양고, 삼정고, 성도고, 화명고, 부산온라인고, 부산강서고	11
동중구	금성고	경남여고, 금성고, 남성여고, 데레사여고, 동주여고, 부산고, 부산국제영화고, 부산디지털고, 부산컴퓨터과학고, 혜광고	10
사상구 강서구	대덕여고	경일고, 구덕고, 대덕여고, 덕문고, 명호고, 부산대저고, 부산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부산산업학교, 부산항공고, 부산조리고, 사상고, 주례여고, 부산남고, 장대현중고등학교	14
부산진구	개금고	가야고, 개금고, 개성고, 경남공고, 경원고, 동의고, 부산국제고, 부산동고, 부산동성고, 부산마케팅고, 부산미용고, 부산정보고, 부산진고, 부산진여고, 부산진여상, 성모여고, 세정고, 양정고, 한국과학영재학교, 다온학교	20
특수학교	성우학교	부산구화학교, 부산동암학교, 부산맹학교, 부산배화학교, 부산성우학교, 부산솔빛학교, 부산은애학교, 부산한솔학교, 부산해마루학교, 부산해남학교, 부산혜성학교, 부산혜송학교, 부산혜원학교	13

※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소속 담당자 협의회 참석: 부산자유학교(동래구),
다온학교(부산진구), 행복학교(사하구), 문화예술조은학교(서구), 미래학교(금정구)

서식2

지구별 유관기관 연락처

☎ 경찰서별 여성청소년과 연락처

구 분	전 화	구 분	전 화
부 산 경 찰 청	899-2448	부 산 사 상 경 찰 서	329-0348
부 산 중 부 경 찰 서	664-0348	부 산 금 정 경 찰 서	510-0348
부 산 동 래 경 찰 서	559-7348	부 산 사 하 경 찰 서	290-2348
부 산 영 도 경 찰 서	400-9348	부 산 연 제 경 찰 서	750-0348
부 산 동 부 경 찰 서	409-0348	부 산 강 서 경 찰 서	290-0348
부 산 진 경 찰 서	890-9348	부 산 북 부 경 찰 서	792-0348
부 산 서 부 경 찰 서	540-1048	부 산 기 장 경 찰 서	793-0348
부 산 남 부 경 찰 서	610-8348	부 산 수 영 경 찰 서	603-6348
부 산 해 운 대 경 찰 서	665-0348		

서식3

생활교육협의회 회의록(간사학교용)

2026년 상(하)반기 생활교육협의회 회의록(간사학교)

()지구 간사학교명 () 담당장학사()

개최 일시		2026. . () ~	장소	
참 석 현 황	참석학교명			
	불참학교명			
	유관기관명			
참석학교수/총학교수		(/)	참석인원	()명
생활교육협의회 내용				
회의 주제 및 주요 안건 (전달 사항)				
회의 내용	우수사례 및 문 제 점 (질의 사항)			
	해결 방안 (응답 사항)			
	건의 사항 (기타 토의)			
	차기 개최 학교명			

서식4

생활교육협의회 정산서 양식(간사학교용)

2026학년도 지구별 생활교육협의회 운영비 정산서

1. 사업 개요

학 교 명	() 학교	사업기간	2026. 3. ~ 2026. 12.
교 부 액		집 행 액	
담 당 자	(연락처:)		

2. 운영지원비 집행내역

항 목	집행액(원)	집 행 내 역
운영비	000,000	행사진행 및 협의회 운영
계		

2026학년도 생활교육협의회 운영비를 위와 같이 정산합니다.

2026년 12월 일

소속학교: 학교장(직인생략)

부산광역시교육감 귀하

※ 정산서 제출: 파일명(00지구_생활교육협의회_정산서.hwp)



학생 봉사활동 안내

1 학생 봉사활동시간 인정 기준

▶ 봉사활동 인정 기준의 기본 원칙

- 자원봉사의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非政派性), 비종파성(非宗派性)의 기준 충족
- 봉사활동 수행 절차에 따라 편성·운영하고 평가함
 - 봉사활동 인정기관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사전 봉사활동 계획(사전계획서 교장 결재 또는 담임 상담·지도 활동 등) 확인 강화로 내실 있는 봉사활동 추진
 - 포털 사이트⁸⁾를 이용하는 개인봉사활동 시 사전 상담을 통한 인정 기관 확인
- 인정 시간을 실제 봉사활동 시간보다 늘리거나 양도하는 것 금지
- 봉사활동 수행 절차

단계	활동 내용
(1) 사전교육	• 봉사활동에서 필요한 태도 • 봉사활동 방법 교육 및 역할 분담
(2) 현장교육	• 봉사활동 장소 및 역할 점검 • 봉사활동 현장의 상황과 그에 따른 활동상의 유의 사항 이해 • 유사 시 대책 수립 및 안전교육
(3) 실천	• 봉사활동의 실행(필요시 진행 지도)
(4) 반성 및 평가	• 봉사활동 내용 및 결과에 대한 반성 및 협의 • 봉사활동 결과에 대한 인정 및 격려

8) 1365자원봉사포털(www.1365.go.kr, 행정안전부),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www.vms.or.kr, 보건복지부), 청소년자원봉사 DOVOL(www.youth.go.kr,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봉사활동 시간 및 활동 기본 인정 기준

- 봉사활동 시간 인정은 1일 8시간 이내 인정 원칙

구분	평일	휴업일(토, 공휴일 등)
인정시간	1일 가능시간 = 8시간 - 수업시간	8시간

- 학생의 징계에 따른 봉사활동(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이나 출석정지 기간의 봉사활동은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불가
- 교외체험학습 기간 등 학교장 출석인정 결석기간의 봉사활동은 당일 수업시수와 봉사활동 시간을 합하여 8시간 이내로 인정

- 실제 봉사활동 시간에 한해 인정하는 것이 원칙

구분	출발	현장 도착	준비/ 교육	활동	식사	활동	평가	봉사활동 후 휴식	현장 출발	도착	귀가
인정			활동 인정 대상 시간								

- 봉사활동 실적은 시간 단위로 기록하는 것이 원칙
 - 학교생활기록부에는 분 단위는 절사하여 기록(단, 동일기관에서 같은 내용의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한 경우에는 학기 말 또는 학년 말에 합산 가능)
- 봉사활동 시간은 다른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의 시간과 중복하여 인정할 수 없음
 - 동아리활동(자율동아리 포함)의 일환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한 경우,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동아리활동 내용으로만 인정함

▶ 기타 봉사활동 내용별 인정(불인정) 예시

- (관련 교육 및 회의시간) 봉사활동 시작 전에 실시하는 교육 및 회의시간 등 봉사활동과 직접 관련된 시간은 인정, 봉사활동 관련 단순 영상물 시청 등은 불인정
- (행사참여) 각종 행사에 따른 안내(내빈 안내, 주차), 주변정리, 홍보 등 실질적 봉사활동은 인정, 단순 참여는 불인정
- (물품 및 현금기부) 물품 및 현금 기부는 봉사활동 시간으로 환산하여 인정할 수 없음
- (활동비를 내고 참여한 봉사활동) 어떠한 형태로든 활동비를 납부한 경우 불인정(기부금 형태, 연회비, 교통비, 식비, 재료비 등)
- (사례를 받은 봉사활동) 어떠한 형태로든 금품을 사례로 받은 경우는 인정 불가

- (캠페인 활동) 건전한 사이버문화 조성을 위한 활동(선플달기) 인정
‘선플달기’ 작성 최대 12시간 봉사활동 인정(선플달기운동본부: <https://www.sunfull.or.kr>)
※ 초 40자 이상, 중 50자 이상, 고 60자 이상으로 20건당 일주일 최대 1시간 인정
- (헌혈) 헌혈(전혈, 성분헌혈) 1회당 4시간 인정(연간 3회 이내)
 - 1일 최대 봉사활동 인정가능시간(8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음
 - 헌혈 보호자 동의서·사후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인정

2 학생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

➤ 학생 봉사활동 인정 가능한 기관

- 부산광역시교육감, 교육지원청교육장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관
- 1365 자원봉사 포털,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VMS), 청소년자원봉사 DOVOL 등에서 인정하는 기관 중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학교의 봉사활동 운영기준에 부합하는 기관
- 단위 학교별 봉사활동 장소 및 인정 기관을 학생, 보호자에게 홈페이지나 가정통신문을 통해 사전 안내 필요

➤ 학생 봉사활동 인정 불가 기관

-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단체) 예) 회사, 마트, 카페 등
- 종교적·정치적 목적이나 소속 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단체)
-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이나 단체

3 학생 봉사활동 절차

➤ 학교 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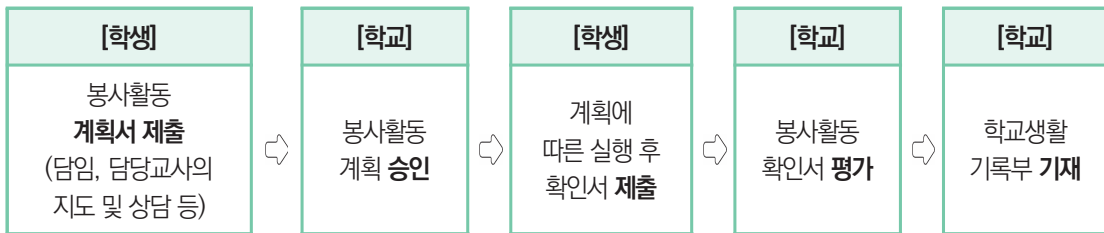
▶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절차

- 1365 자원봉사 포털, VMS, DOVOL를 이용하는 경우: 학생은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실시 전 사전 상담 필요



※ 사전상담을 통해 인정기관, 인정활동 여부 및 학생의 안전이 확보되는 활동인지 확인

- 1365 자원봉사포털, VMS, DOVOL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사전 봉사활동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이 승인한 경우에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 2026학년도 학생봉사활동 운영 계획 안내⁹⁾

▶ 학생봉사활동의 질적 평가 및 활용도 제고

- 학교 중심의 「학생 봉사활동 운영계획」 수립 운영: 지역사회 봉사활동 기관 연계 강화
- 학교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 학생봉사활동 운영과 관련한 제반 사항 검토 및 시간 인정 결정
 -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준하여 구성
 - 기준시간에 없는 세부유형의 시간 인정은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하여 등재 가능함.
- 각급 학교 봉사활동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및 우수학생 표창 권장
- 해외 봉사활동 실적은 학생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학교생활기록부에 실적 입력 금지

9) 2026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 안내(인성체육급식과-1907(2026. 2. 2.))

표 1

학생 봉사활동 활용 내용별 시간 인정 권장 기준

활동영역	세부유형	세 부 내 용	권장시간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역사회 개발발전	집짓기, 수리 보조(전기 및 보일러 수리, 도배장판, 도색 등)	6시간
		공동체 마을만들기, 아파트 공동체 실천활동, 주민자치활동	4시간
		농촌봉사활동, 텃밭 가꾸기	4시간
		알뜰시장 및 벼룩시장 봉사활동	4시간
		지역사회 바자회	3시간
		꽃길 가꾸기, 놀이터 보수활동	4시간
		지역행사 지원활동	6시간
		기타 지역사회분야 봉사활동	
	문화 관광 예술 체육 진흥	문화재·관광 가이드, 문화해설	4시간
		문화예술시설 견학안내	3시간
		문화, 예술, 체육행사 지원활동	4시간
		문화체험, 취약아동 대상 수련활동 보조지도	4시간
		문화, 예술, 체육분야에서 (보조)지도자 활동	4시간
		기타 문화, 관광, 예술, 체육 분야 봉사활동	
	민주시민 사회구현	여성차별개선활동, 아동인권보호활동	3시간
		외국인 노동자 및 결혼이민자 지원활동	3시간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 분야 봉사활동	4시간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 분야 봉사활동	4시간
		선거관련 봉사활동	4시간
		기타 민주시민사회구현 분야 봉사활동	
	민원안내 업무보조	공공기관 내 민원 안내, 사무협력, 서가정리	3시간
		장애인 및 노인 민원 접수 보조 및 안내	4시간
		병동내 및 재가세대 대상 도서대출 및 회수	3시간
		헌혈자 접수 및 안내	4시간
		김장김치 만들기	4시간
		나들이 보조	4시간
		노인·장애인 수발	4시간
		노인 놀이, 말벗 봉사	3시간
		도시락, 밀반찬, 물품 배달	4시간
		급식소 봉사활동	4시간
		보육, 음식조리	4시간
		사무보조, 장애인 직업재활작업장 보조	4시간
		청소, 빨래, 주변환경 정리	4시간

활동영역	세부유형	세 부 내 용	권장시간
지역사회 봉사활동	민원안내 업무보조	식사보조	4시간
		목욕 봉사활동	4시간
		체육 보조활동	4시간
		국제기구 및 단체 지원활동	4시간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 행사 지원활동	4시간
		기타 사회복지분야 공공행정 사무지원봉사활동	
	일손돕기 재능나눔	음식조리(제과제빵 포함)	4시간
		이·미용 봉사활동	4시간
		통·번역 봉사활동(A4용지 10페이지 기준)	3시간
		영정사진촬영 및 제작지원	4시간
		장애우 점자입력 봉사활동(A4용지 10페이지 기준)	3시간
	교통안전 활동	등하교 횡단보도 지도	4시간
		교통안전교육 지도	4시간
		아동 안전지킴이 활동	4시간
		기타 범죄 예방, 교통질서, 청소년 육성·보호 선도 봉사활동	
	지도활동 재능나눔	멘토링(멘토링사업 참가자) 활동	4시간
		학교 교과목과 관련된 학습지도	4시간
		교육관련 지도활동(예술, 컴퓨터, 언어 등)	4시간
		기타 교육상담 분야 봉사활동(또래중재, 상담 등)	
	위문공연 재능나눔	교도소, 감호소 위문(공연)활동	4시간
		공연 봉사활동	4시간
	재난관리 구호활동	피해복구활동	6시간
		피해복구참여자 대상 급식활동	6시간
		피해지역 현장사무소 업무보조	6시간
		북한동포돕기 활동	4시간
		재해예방교육 보조지도	2시간
		피해지역모니터활동	2시간
		기타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 분야 봉사활동	
자연환경 보호활동	환경보호 시설정비 활동	환경정화활동, 재활용품 수거 및 분류	4시간
		문화재지역 환경정화활동	4시간
		기타 환경보전(자연보호)분야 봉사활동	
	환경감시	환경 보호 모니터링	4시간
캠페인 활동	의식개선 활동	모금활동 및 후원 캠페인	4시간
		헌혈 거리캠페인	4시간
		청소년 보호 관련 캠페인 활동	4시간
		북한동포돕기 캠페인	4시간
		부정주차금지 캠페인	4시간
		대민안전캠페인 및 재난재해모금 캠페인	4시간
		청소년유해업소 추방 캠페인활동	4시간
		의식계몽활동, 소비자보호 캠페인활동	4시간
		문화재보호 캠페인	4시간
		건전한 사이버 문화 조성 캠페인(1년 12시간 이내)	1시간
	헌혈	헌혈	4시간



청소년단체 활동 안내

1

청소년단체 조직 운영

- 대상: 초등학교 3~6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 단원조직: 3~4월까지 가입(가입동의서 및 출석부 비치)
- 학생의 희망에 따른 다양한 조직 운영
- 청소년단체 업무는 반드시 교사의 자율성에 기반한 업무분장 실시

2

청소년단체 활동 현장 점검

- 점검 시기: 연중 수시
- 점검 내용: 청소년단체 활동 현황 점검

3

청소년단체 활동 지도 유공교원 표창

- 대상: 청소년단체 활동 지도 유공교원 18명(예정)
- 훈격: 교육감 표창
- 시기: 2026. 12월 중

4

청소년단체 활성화 지원

▶ 청소년단체활동 기본 계획 안내

- 건전한 청소년 문화 형성을 위한 청소년단체 활동 활성화
- 학생의 희망에 따라 청소년단체 활동 다양하게 조직 운영
- 청소년단체 지역화 기반으로 단체별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 권장

▶ 연간 활동 계획 수립

- 학교자체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
- 학교교육과정 및 각 청소년단체의 연간계획 등을 고려하여 계획 수립

▶ 청소년단체 학교 운영비 지원

- 사업 안내 및 모집(3~4월)
- 학교별 공모 신청 및 심사(4월, 학생 수에 따른 차등 지원)
- 교당 100만원 운영비 지원(4~11월): 신청학교에 따라 금액 달라질 수 있음
 - ※ 세부 내용(예): 청소년단체 연계 프로그램 참여 및 학교 자체 체험활동
(야영활동, 교류활동, 문화체험활동, 봉사활동 등)
 - ※ 집행 항목(예): 활동에 필요한 소모성 지출, 식비, 간식비, 외부 강사수당, 재료 구입비, 시설
사용료, 교통비, 행사용품비, 체험비
- 사업 종료 후 운영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12월)

▶ 청소년단체 학생 활동비 지원

- 청소년단체 활동 학생 활동비(야영, 교류, 문화, 봉사 등 체험비) 지원
- 부산관내 전 학교 청소년단체 가입 학생 1인당 3만원(희망 초·중·고)
 - ※ 신청학교에 따라 금액 달라질 수 있음
- 사업 안내 및 모집(3~4월)
- 학교별 청소년단체 활동 학생 수에 따라 활동비 지원(4~5월)
- 사업 종료 후 운영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12월)

▶ 청소년단체 보조금 지원

- 청소년단체 심사 및 보조금 지원
- 심사 및 보조금 차등 지원(2월)
- 운영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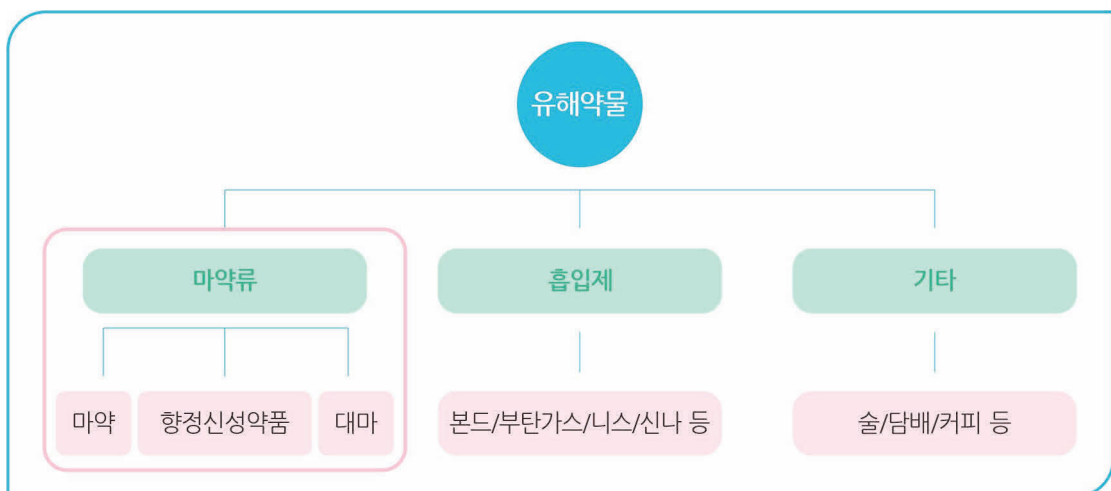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1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유해약물 예방 활동 안내

➤ 목적: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활동 및 교육을 통해 유해약물에 대한 바른 인식 함양과 경각심 제고

➤ 근거

- 「학교보건법」 제9조의3,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 「청소년 보호법」 제2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제6조, 제7조, 제8조, 제10조
- 「2026학년도 범교과 학습 주제 편성 운영 안내」(중등교육과-20590, 2025. 12. 11.)
-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표2] 학년별 안전교육의 시간 및 횟수(약물 중독 예방교육 유·초 5차시, 중 6차시, 고 7차시)



자료출처: 청소년상담 이슈페이퍼(2023 Winter 통권 4호)

청소년들이 쉽게 접하는 유해약물

1. 술, 담배(전자담배 포함)

2. 약물의 오·남용

- ADHD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 일명 ‘공부 잘하는 약’으로 잘못 알려짐
- 마약성 진통제(펜타닐 패치)
- 식욕억제제(펜터민): ‘살 빼는 약’ 또는 ‘나비약’으로 불림
- 일반의약품 과량 복용: 수면유도제, 항히스타민제, 진통제, 감기약 등

3. 기타 유해약물

- 에너지드링크(고카페인)
- 일부 근육보조제(스테로이드 함유)

➤ 마약류 예방교육 담당 교원 직무연수

- 일시: 2026. 1. 22.(목) 12:30~18:00
- 대상: (희망) 마약류 예방교육 담당 교원
- 주요 내용: 청소년 마약류 사용 실태, 약물 중독 및 재활 회복사례, 청소년 마약류 예방교육법

➤ 마약류 등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생활교육 역량강화 직무연수

- 운영 기간: 2026. 6월(예정)
- 대상: 생활교육 담당교사, 관리자(교감)
- 주요 내용: 청소년 마약류 사용 실태 및 학생 약물 사용 예방 방안 등

➤ 유해약물 사용 학생 대상 맞춤형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운영

- 신청 방법: 민주시민교육과로 신청 공문 발송
- 신청 대상: 고위험 음주 등 유해약물 오·남용 학생
- 주요 내용: 학교로 찾아가는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및 상담프로그램

➤ 유해약물 관련 사안 발생 시 특별예방교육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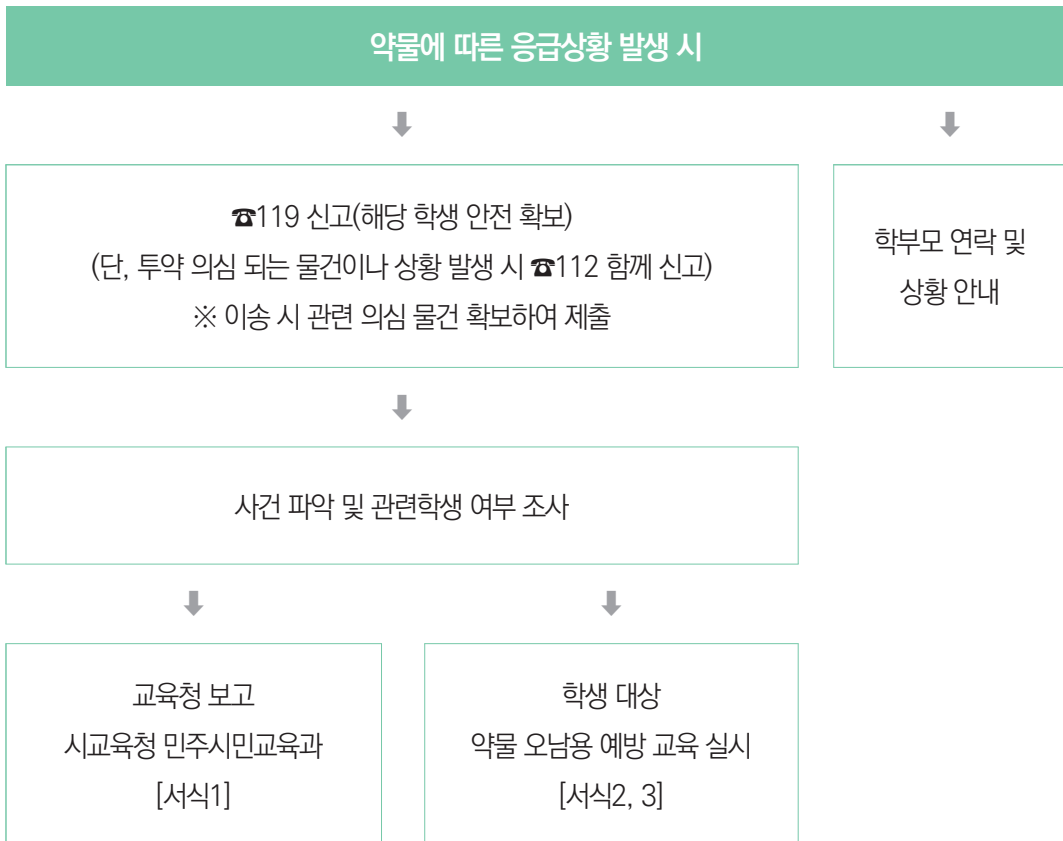
- 신청방법: 민주시민교육과로 신청 공문 발송
- 교육방법: 학급별 대면교육 또는 전교생 대상 교육

▶ 약물에 의한 응급상황 시 대응 매뉴얼

- 응급상황

- | | |
|------------------------|--------------------------|
| ① 호흡이상(억제 및 과호흡) | ② 심박동 증가 또는 감소에 따른 의식 소실 |
| ③ 온도 및 통증 감각 이상에 따른 발작 | ④ 환청 환시 등 환각 증상 |
| ⑤ 자살 및 자해 등 위해 행위 | ⑥ 타인의 위협 및 과잉행동 등 |

- 대응 매뉴얼



➤ 학생 약물 관련 사안 처리 절차

사안처리절차	관련 조치사항	비고
사안발생	· 사건 파악 · 대책 회의 소집	
↓		
위기관리위원회 개최 및 유선보고	· 위기관리위원회 등 학교상황에 맞는 위원회 개최 · 긴급 상황 공유 및 보고	▶ 학교 내 상황공유(관련자) 및 교육청 유선보고 - 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860-0492) - 인지경위, 사안처리 진행 상황 등 우선 구두보고 ▶ 필요 시 수시 개최
↓		
해당학생 면담 및 보호자 연락	· 학생 - 해당 학생 안정 유도 - 학생에 대한 적극 공감·경청 · 학부모 - 상황 안내, 협조 요청	▶ 보호자 요청시 동석하여 학생 면담 진행
↓		
사안 보고	· 교육청에 사안보고 공문 발송	▶ 공문 제출(민주시민교육과) - [서식 1] 참고
↓		
해당학생 보호자 면담	· 사안 처리 과정 및 후속 대처 안내	▶ 객관적 사실 안내와 치료·상담 등 필요 내용
↓		
추수지도 및 특별예방교육	· 해당 학생 회복지원 · 학교 정상화를 위한 후속조치 - 추수지도 및 특별예방교육 · 학교 재발방지대책 수립	▶ 특별예방교육 지원 - [서식 2] 참고 ▶ 해당 및 관련학생 교육 및 상담프로그램 지원 - [서식 3] 참고

2 유해약물 예방교육 교육 강화

➤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전문강사 지원

- 대상: 희망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기타학교
- 지원 횟수: 희망 학교(총 600회)
- 기간: 2026. 4월 ~ 11월
- 추진 시 유의 사항

-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년별로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실시(필수)
- 학기당 1회 이상으로 편성
- 강사 지원 시 가급적 반별 수업으로 편성할 것을 권장

➤ 찾아가는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체험 부스 운영

- 지원 대상: 희망 초(고학년)·중·고등학교 40교
- 신청 기간: 2026. 4월 2주
- 운영 기간: 2026. 5~11월

➤ 체험형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자료 제작 및 대여 예정

- 지원 대상: 희망 초·중·고등학교
- 신청 기간: 2026. 5월 2주
- 운영 기간: 2026. 6~12월

➤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뮤지컬 공연 지원

- 지원 대상: 중·고등학교 15교
- 신청 기간: 2026. 6월 3주
- 운영 기간: 2026. 8~11월

서식1

학생 (유해)약물 사용 인지 상황 보고

학교명	관리자 연락처		학급수	학생수
	교장	000 (휴대전화 000-000-0000)		
	교감	000 (휴대전화 000-000-0000)		
해당학생 인적사항	○ 대상학생: 000학교 0-0 김00(남/여) ※ 관련학생: ○ 발생일시: ○ 발생장소: ○ 유해약물 종류:			
인지경로				
주요내용	※ 시간대별로 상세히 기재			
학교 조치사항				
특이사항	※ 경찰수사 현황, 언론보도 등 특이사항 기재			

서식2

학생 유해약물 특별예방교육 신청서

학교명			교감	성명	
				전화 번호	
담당교사	성명		전화 번호		
희망일시			교육 주제	흡연예방/음주예방/약물오남용예방	
대상자 정보	학년 반	()명	성별	남 ()명, 여()명	
	학년 반	()명	성별	남 ()명, 여()명	
	학년 반	()명	성별	남 ()명, 여()명	
신청 사유					

위와 같이 학생 유해약물 특별예방교육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000학교장

학생 유해약물 교육 및 상담프로그램 신청서

학교명			교감	성명	
				전화번호	
담당교사	성명		전화번호		
대상자 정보	성명		성별		
	학반		연락처		
	신청사유				
희망회기	4회기() 8회기()		희망 시작일	2026. . .	
학생 및 보호자 동의	유해약물 관련 교육 및 상담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을 동의합니다.				
	학생 성명 (서명) 학부모 성명 (서명)				

위와 같이 학생 음주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및 상담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000학교장



학생도박 예방교육

1 학생도박 예방활동 강화

➤ 목적: 학생도박 예방교육을 통한 학교 내 도박문제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

➤ 근거

- 「학교보건법」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 「학교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8조의4(청소년 도박중독예방교육과 학교교육의 연계)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도박 예방교육 조례」

➤ 학생도박 예방교육 운영

학생	• 연 2회 이상(필수) • 학교 안전교육(약물 및 사이버중독 예방) 및 정보윤리교육 등과 연계하는 기존 교육 활용 가능 • 보건교육, 안전교육, 사이버중독예방교육, 사이버폭력예방교육, 정보통신윤리교육 등 단위학교 교육 과정과 연계하여 도박예방교육 운영 • 법교과 학습주제 간 통합 운영, 관련 교과 탄력운영을 재구성한 연계·운영 등 교육 활동 전반(교과, 창의적 체험활동)에 걸쳐 탄력적으로 운영 ※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안전교육, 인성교육, 도박예방교육 등 관련 주제와 통합 운영 가능
교직원	• 연 2회 이상 • 학교 자체 교직원 연수 등을 활용하여 교육 실시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서 운영하는 교원 직무연수 개별 참여
학부모	• 연 2회 이상 • 예방교육 자료 발송(가정통신문) • 학부모총회 등을 활용하여 자녀 도박 문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올바른 인지·대처방법 등 교육 실시

➤ 도박예방 교육자료¹⁰⁾(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 찾아가는 맞춤형 도박문제 예방교육
-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콘텐츠
-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교육 뮤지컬
- 가정통신문 및 동향리포트
- 조기개입 안내서
- 온라인 자가점검 및 조기개입 서비스 신청
- 교원 및 교육전문직 연수 안내
- 문화콘텐츠(방문공연, 시청각교육)
- 학교교육과정 연계 도박 예방교육 콘텐츠

2

전문기관 연계 위험군 청소년 치유 지원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및 부산울산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와 협력체계 구축
- 문제군 청소년 전문기관 의뢰를 통한 개인 및 집단상담, 병·의원 연계 등 서비스 제공
- 교육청 산하기관

Wee센터	상담전화	위치
서부	051-250-0464(~9)	서부교육지원청(서구 꽃마일로)
남부	051-640-0205	남부교육지원청(남구 못골로)
북부	051-3301-361(~6)	북부교육지원청(북구 백양대로)
동래	051-801-9190~5	연산중학교(연제구 고분로)
해운대	051-709-0481~5	해운대교육지원청(해운대구 세실로)

➤ 전문기관 비대면 상담 서비스 활용

- 1336 헬프라인(전화상담), 채팅/게시판 상담(kcgp.or.kr), # 1336 문자 정보, 카카오톡 챗봇 등 총 4개 상담 채널 제공

10) 상세내용: 2026학년도 학생도박 예방교육 시행 계획(2026. 2.) 참조

➤ 찾아가는 도박예방교육 운영

- (시기) 2026. 3.~12.
- (대상) 학생도박 문제 발생교 또는 희망교(20개교)
- (내용) 학년 전체 대면 상담 또는 소규모 집단 상담 형태, 전문상담사가 진행하는 학생도박 문제 인식 및 식별, 도박 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 선별을 통한 지속 관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추구 지도 등

➤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및 사이버 도박 문제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운영
- (교육과정) 대안교과(치유, 재활교과, 진로교과, 특성화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등
- (위탁 대상) 초등 4~6학년, 중·고등 만 13세~18세 청소년
- (운영) 1주, 2주 프로그램 구성, 연간 운영 일정표 확인
- (위치 및 전화) 전북 무주군 장무로 1559-11, 063-323-2650
- (홈페이지) <http://nyit.or.kr>

3 학생 참여 중심의 도박예방 학교문화 조성

-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 생활교육 강화
- 올바른 여가 선택 및 또래 문화 형성 지원
- 교육과정과 연계한 인터넷·스마트폰 사용 교육 강화
-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매년 5월 셋째주) 운영
-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매년 10월 ~ 12월) 협조

4

정보윤리교육(디지털미래교육과) 연계 학생 도박예방 교육 운영

➤ 학교 단위 정보윤리교육 계획 수립 및 운영

- (방법) 교육과정 연계 학기별2회 이상, 연각 10차시 이상 시수 확보
- (내용) 사이버도박(2차시) 및 디지털성폭력(1차시) 예방교육 필수 편성,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및 사이버 범죄 예방, 건전게임 등

➤ 학교로 찾아가는 정보윤리교육 특강

- (신청) 2월
- (기간) 2026. 3.~12.
- (대상) 희망 초·중·고·특수학교 학생
- (내용) 유관기관 연계 정보윤리교육 주제별(사이버 도박) 특강

➤ 도박문제 예방교육 연수 추진

대상	운영기관	시기	신청 방법 및 내용
교원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3~12월	원격(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학부모	부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부산울산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연중	자녀의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을 위한 양육원리 및 방법, 학생들의 사이버도박 예방을 위한 가정에서의 지도 및 사이버 도박에 빠진 자녀 상담 및 생활지도



교복 학교주관구매제도 및 교복나눔운동 활성화

➤ 근거: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교복 및 체육복 지원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교복나눔운동 지원 조례」

➤ 목적: 학부모 교복 구입 부담 경감 및 교복 가격 안정화

➤ 교복 학교주관구매 참여 활성화: 전체 중·고등학교

- 상급학교 진학 이전 학생·학부모 대상 제도 홍보 의무화(전체 초6·중3 대상)
- 신입생 배정·확정 이후 주관구매제도 안내문 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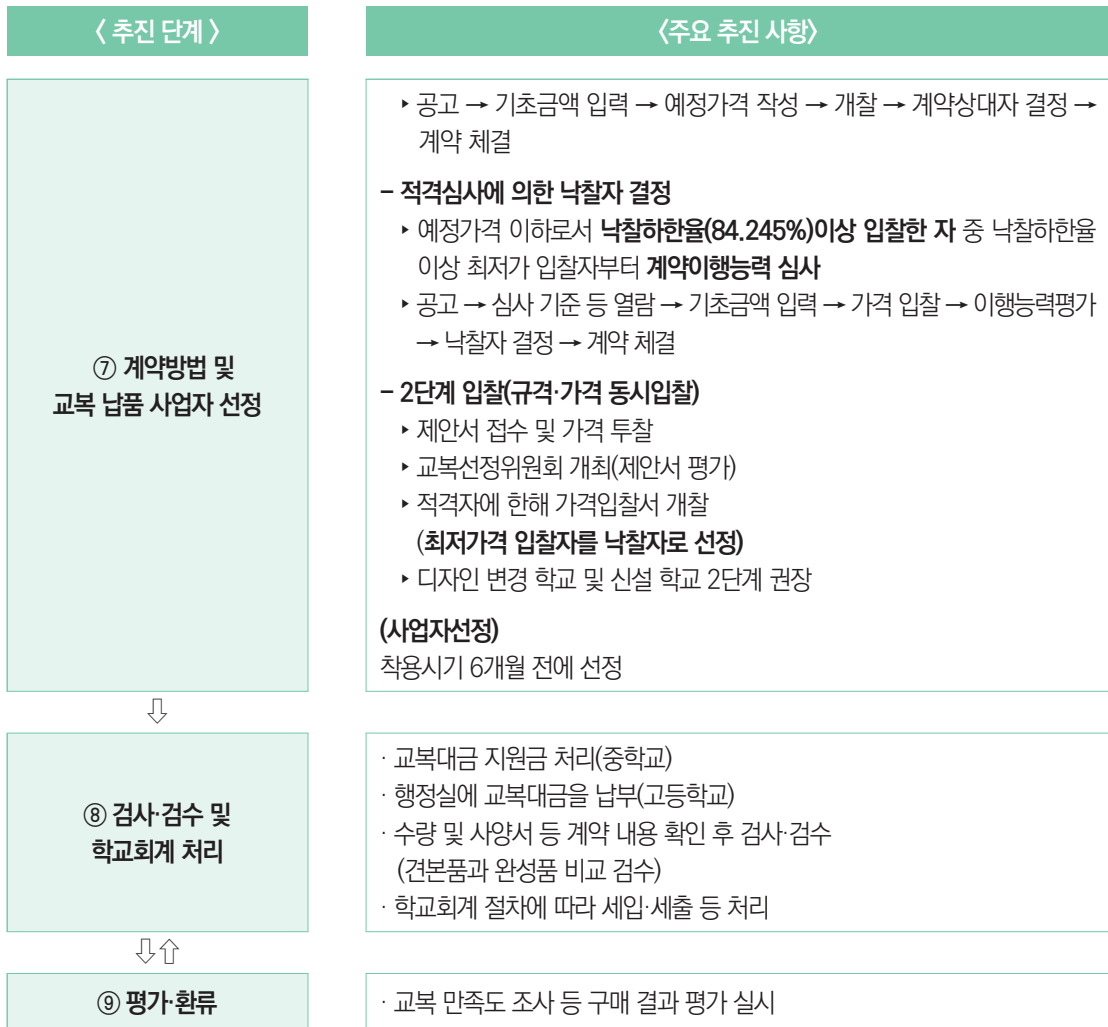
➤ 교복 학교주관구매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교복학교 주관구매 제도의 개념	학교장이 입찰 등을 통해 선정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검사·검수, 학교회계를 통한 교복대금 지급 등 학생의 교복 구매를 주관하는 제도
교복의 정의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생활복 포함): 생활편의성 제고 및 교복의 다양성 반영
계약 과정	▶ 교복구매 운영 요령 (2026 개정) 안내 ▶ 착용 시기 6개월 전 교복업체 선정: 원자재 및 교복 제작 기간의 확보로 양질의 교복 제공 ▶ 입찰 공고 시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되 다양한 계약 방식 활용 - 담합 예방: 2단계 입찰, 적격심사제, 수의계약 등 학교 실정에 맞는 다양한 계약방법 선택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는 1인 견적 수의계약 가능(시행일: 2026.1.20.) ※ 2회 이상 유찰 시 수의계약 추진 ▶ 실질적 블라인드 심사 강화: 위반 시 샘플 접수 불가 ※ 시민감사관 제도 개선 요청 사항(감사관-1647, 2024.3.7.) ▶ 납품기한 미준수 업체에 대한 피해 배상 명확화 ▶ 학교별 교복 착용시기 조정 및 학교 내 교복 착용일 통일 ▶ 불성실 업체 사전 차단을 위한 제도 보완: 품목별 가격 비율표 및 계약 이행 성실도 확인서 활용, 제안서 평가 심사 항목에 감점 항목 추가 ▶ 교육청 차원의 교복 계약이행성실도 확인 간편화: 에듀파인 업무공지게시판 탑재 ※ 학교는 확인 공문을 전 중·고등학교로 발송하지 않도록 협조(교원업무 경감 및 공문서 감축) ▶ 교복 대금 동·하복 분할 지급 실시: 업체의 자금 회전 어려움 일부 해소

구분	주요 내용
품질관리 강화	▶ 품질 수준을 객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품질 심사 기준(정량평가) 10% 이상 포함 ▶ 품질심사 시 제품하자에 대한 처리방안을 10% 이상 반영 의무화 ▶ 제조 연월, 라벨(혼용률) 표시 등 품질 검사 실시(부산행정지원본부로 품질검사 지원 신청 가능) ※ 품질검사 항목: 2025 교복구매 운영 요령 안내(p.3 ㉠, p.51 9번 참고)
교원업무 경감사업	▶ 전문용역업체를 통한 학교 납품 교복 검사 실시, 교복검사의 전문성 제고 ▶ 부산행정지원본부에서 신청 학교로 별도 공문 안내
기타	▶ 교복디자인 변경 시 상표권 침해 유의,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즉시 공개 ▶ 교복나눔(물려주기)운동 활성화

➤ 교복 학교주관구매 추진 절차

〈추진 단계〉	〈주요 추진 사항〉
① 교복디자인 선정·공개	· 학교구성원 의견수렴 후 디자인 선정 및 변경 - 디자인 선정(변경) 시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등을 통해 즉시 공개 (사전에 일정기간을 확보하여 추진)
↓	
② 교복선정위원회 구성	- 위원장 포함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단, 10학급 미만의 학교는 5명 이상 7인 이하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외부위원은 1/2 이상 포함(전문가, 학교운영위원, 학부모 가능)
↓	
③ 교복 구매 계획 수립	· 교육청이 정한 상한가격 이하의 적정한 금액을 반영하여 교복 구매 계획 수립
↓	
④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교복 구매 계획 심의
↓	
⑤ 입찰 공고	· 공고 시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 · 학교별 실정에 맞는 계약방법 결정
↓	
⑥ 교복선정위원회 개최	· 품질심사 또는 정성평가 진행, 계약부서는 가격경쟁 및 정량평가 진행
↓	
⑦ 계약방법 및 교복 납품 사업자 선정	(계약방법) - 1인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 추정가격 2,000만원이하 - 2인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 예정가격 이하로서 투찰가격이 예정가격 대비 88%(2천만원 이하는 90%)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선정



➤ 교복 학교주관구매제도 유의 사항

- 구매(총액)계약 체결 이후 물량변동으로 인한 업체-학교 간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반드시 '단가계약' 체결(확정 물량은 추후 통지)
- 주관구매 업체 선정 후 낙찰업체에 학부모 동의 없는 학생 또는 학부모 개인정보 제공 금지
- 계약 절차 위반 시 적극적인 제재 조치: 부정당 업체 등록
- 교복의 안감, 단추 등을 교복 규정에 필히 명기
- 공동수급(2개 업체 이상 공동입찰)을 통한 입찰 시 계약서를 작성할 때, 특수조건 위반 사항에 대한 업체 책임 명시(물량공급 업체 비율, A/S 등을 명시)
- 교복 업체 선정 시, 납품 실적에 기재된 학교들에 대한 모니터링(조사) 결과와 품목별 가격 비율표 및 계약 이행 성실도 확인서 참고

➤ 교복 정책 방향

- 용의 복장 등 교복에 관한 규정 및 착용 여부, 계약 등은 학교장에 위임된 사항으로 단위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
- 학생·학부모·교원이 만족하는 **생활복 적극 권장(정상형 교복 학교는 생활복으로 디자인 변경 권장)**

- 사례1: 하복을 없애고 생활복(또는 체육복)으로 대체하는 경우
- 사례2: 하복과 생활복 중 학생(학부모)이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
- 사례3: 하복의 상의를 생활복으로 대체하는 경우
- 사례4: 동복 상의를 자율화하고, 바지를 통일하는 경우
- 사례5: 동복 상의를 재킷으로 통일하고, 바지를 자율화하는 경우
- 사례6: 하의를 일정 색깔의 면바지로 대체하거나, 상의 중 셔츠(블라우스)를 일정 색깔의 티셔츠로 대체
- 사례7: 하복 하의를 반바지로 디자인하여 편의성 증대 및 에너지 절약
- 사례8: 기타 넥타이·리본 등 부가적인 구성 요소 가급적 배제

※ 교복, 생활복 등을 중복으로 구매하지 않도록 유의

➤ 교복에 대한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 지양: 학교 규칙 제·개정 필요

- 넥타이, 리본 등 부가적인 요소 배제
 - ※ 불필요한 주머니와 장식용 단추를 배제하고 일반정장과 같은 디자인
- 주름의 위치와 수, 바느질 등에 대한 과도한 규제 지양
- 교복 원단의 체크무늬 배제(가격상승 및 원단 구입의 어려움)
- 여학생 세일러(세라)복, Two주름 이상의 치마 주름 지양(통풍과 관리의 어려움)

➤ 여학생의 경우 치마교복·바지교복 중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

➤ 용의복장 규정 제·개정 시 학생·학부모·교원의 의견 수렴

➤ 통기성과 보온성, 활동성, 관리성 등이 보장되는 학생 중심의 교복 선정

➤ 고정식 명찰 패용 금지(국가인권위원회 권고, 탈부착식 권장)

1

학교 교복 지원 사업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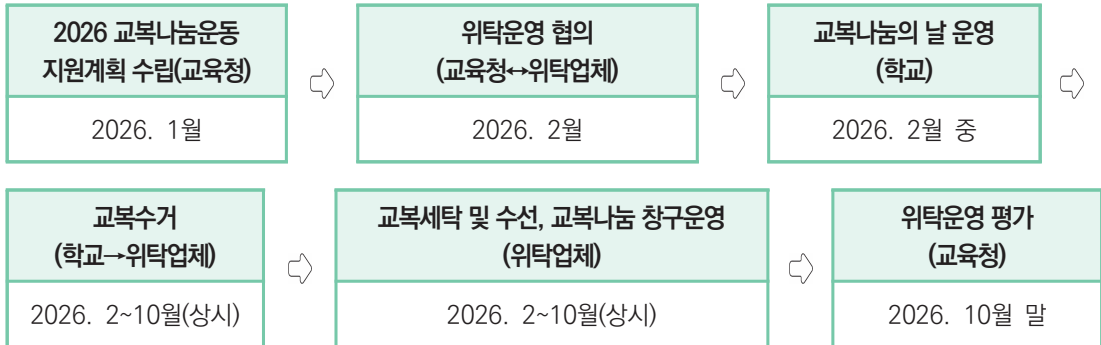
- 목적: 교복 구입에 따른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학생 복지 증진
- 근거: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교복 및 체육복 지원 조례」
- 지원대상
 - 교복을 착용하는 부산광역시 관내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 타 시·도 및 국외에서 교복을 착용하는 부산광역시 관내 중학교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 지원금액: 1인당 344,000원 이내 지원
- 지원항목: 동·하복 각 한 벌
- 지원방법: 현물 지급
- 추진 시 유의사항
 - 교복 지원 관계법령, 업무추진 시 계약관련 법규 및 교육청 계약지침 준수
 - 교복 학교주관구매 상한가 및 지원항목 준수
 - 교복 구입 후 1인당 지원단가 내에서 잔액 발생 시 교복 구입 목적에 맞는 추가 품목 지원 가능(추가 지원 여부는 학교에서 결정)

2

교복나눔운동 지원 계획

- 목적: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나눔 실천을 통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
- 근거: 「부산광역시교육청 교복나눔운동 지원 조례」
- 기본 방향
 - 교복 물려주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상점 등)
 - 다양한 홍보활동(웹호스팅 서비스 등)을 통한 참여율 제고
 - 학부모의 접근성과 학생의 자존감을 고려한 접수 창구 운영
 - 학교 업무경감을 위해 사회적 기업을 통한 위탁 운영
 - ※ 학교별 세탁비 및 수선비는 지원하지 않음(세탁 및 수선은 위탁업체에서 실시함)
 - ※ 근거: 「부산광역시교육청 교복나눔운동 지원조례」 제11조(업무의 위탁)

➤ 추진 일정



➤ ‘교복 나눔(물려주기)의 날’ 운영: 졸업식 전후(학교에서 자율 지정)

※ 재활용 가능한 깨끗한 교복을 선별하여 수거 바람

➤ 교복 나눔(물려주기)운동 지원

- 기간: 상시
- 배부 장소: 위탁업체
- 참여 방법
 - 먼저 업체에 해당 학교의 교복 보유 여부를 확인한 후 교복 구매
 - 저소득층 학생: 증빙서류(인근 시·군·구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제출하여 무상지원
 - 일반학생: 저렴한 가격으로 유상 구매(기존 가격에서 70~80% 할인)

➤ 학생 및 학부모 대상 홍보: 홈페이지, SMS문자, 가정통신문 등을 통한 홍보

➤ 교복 수거 및 배송: 학교가 일괄 수거 → 위탁업체로 택배 발송(착불)

- 대상: 전체 중·고등학교



유관기관 연계 사업 안내

1 통고제도 운영 활성화

통고제도 개요

➤ 근거: 「소년법」 제4조제3항

➤ 정의: 수사기관(경찰·검찰)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소년보호사건을 법원에 접수하여 비행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

➤ 대상 소년

- 범죄소년: 죄를 범한 소년(14세 이상 19세 미만)
- 촉법소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
- 우범소년: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 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소년(10세 이상 19세 미만)
 -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
 -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
 -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또는 선도(징계)위원회의 조치 이행 거부
 - 수업방해 및 교권침해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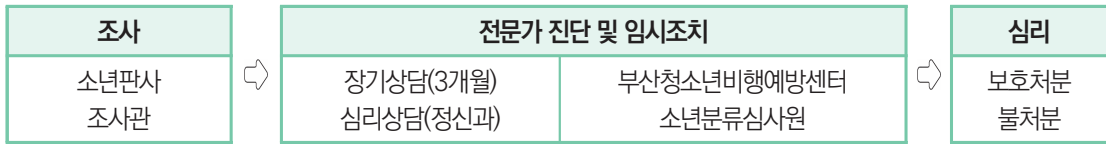
➤ 통고 주체: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지시설·보호관찰소의 장

➤ 관할 기관: 가정법원 소년부

➤ 효과

- 소년비행의 초기 단계에서 법원에 의뢰하여 문제 해결
- 수사기관에서의 수사 부담을 주지 않고 소년 문제 해결
- 범죄경력조회, 수사자료표에 불기재로 향후 불이익 가능성 배제

통고절차



➤ 조사: 통고 소년 및 보호자, 참고인에 대한 심문 및 조사

➤ 전문가 진단과 임시조치

- 장기간의 상담(3개월)을 통해 성행 변화를 실질적으로 관찰(보호자 동참)
- 장기 상담기관(5개소)에서 3개월간 주 1회 집중 상담 실시(심리상담)
- 심리 및 정신과적 상담(치료) 필요시 실시(정신과 의사 등 15명 위촉)
- 전문적 상담 및 치료로 근본치료 및 성행교정 기대(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위탁)
- 집중교육 및 상담(5일) 실시(보호자 동참)
- 보고서 제출: 환경조사, 심리검사, 보호자상담, 교육태도 비행분석(소년분류심사원 위탁)
- 비행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경우 소정의 교육 및 조사 실시
- 위탁 조사 기간은 학교 출석 기간으로 인정

➤ 심리 후 보호처분

- 보호자 특별교육 명령: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기타 화해권고 제도: 소년의 품행 교정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소년에게 피해 변상 등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할 수 있음

구분	보호처분의 종류	기간 / 시간	대상 연령
1호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10세 이상
2호	수강명령	100시간 이내	12세 이상
3호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이내	14세 이상
4호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1년	10세 이상
5호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2년(1년 연장 가능)	10세 이상
6호	「아동복지법」의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10세 이상
7호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소년의료보호 시설에 위탁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10세 이상
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1개월 이내	10세 이상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6개월 이내	10세 이상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2년 이내	12세 이상

학교에서의 통고제도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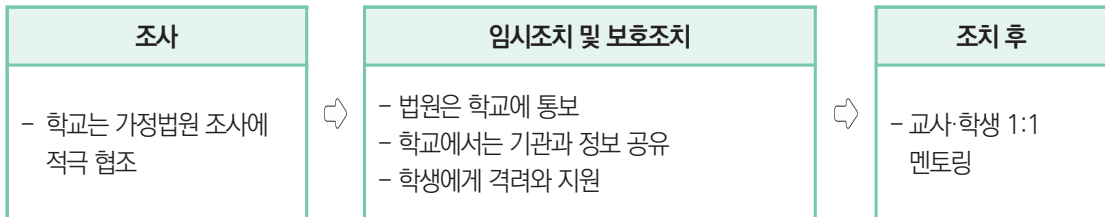
▶ 통고에 적합한 사안

- 형벌법규에 저촉되는 비행을 저지르는 경우
-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
- 교권침해의 경우
- 가정의 보호력이 미약한 경우
- 학교폭력의 경우

▶ 의뢰 절차

-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원에 통고(단, 학교장이 요청하기 전에 보호자가 직접 통고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
- 통고 방법은 서면 또는 구두로 가능
- 문의: 부산가정법원 (☎590-0085, 590-1542)
 - 홈페이지(<https://bsfamily.scourt.go.kr>)

▶ 통고 이후 절차 안내



※ 통고 이후 학교 측의 지원 필요성

- 학생의 긍정적 변화를 위하여 법원의 통고제도 활용 지도
- 학생·학부모의 부정적 인식 형성 예방을 위한 학교 측 지원 필요

서식

통 고 서(학교장용)

부산가정법원 소년부 귀중

통고인	학 교 장 성 명			
	학 교 명			
	전화번호(직장)	() -	휴대전화	() -
	담당교사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	() -

위 통고인은 다음과 같이 보호 대상 소년을 발견하였으므로 소년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귀 법원 소년부에 통고합니다.

소 년	성 명		주민등록번호	-
	학 년 , 반			
	주 소			
	전 화 번 호	() -		
소년의 보호자	성 명		소년과의 관계	
	주 소			
	전 화 번 호	() -		

통 고 사 유

○ 통고하게 된 사유의 요지(□에 √ 표시)

☐ 범죄를 저지름(14세 이상 19세 미만)	
☐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함(10세 이상 14세 미만)	
☐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음	☐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버릇)이 있음
	☐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함
	☐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촉하는 성벽(버릇)이 있음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또는 선도(징계)위원회의 조치 이행을 거부하고 있음
	☐ 수업방해 및 교권침해 행위가 있음
☐ 기타()	

○ 통고하게 된 사유의 상세(필요한 경우 별지 활용)

(일시, 장소 및 행위의 내용을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 해당 □에 √ 표시

1. 보호 대상 소년이 자신의 행위를 시인하고 있다.	☐ 예 ☐ 부분 ☐ 아니오
2. 보호 대상 소년과 피해 소년 사이에 화해(사과, 금전적 배상 포함)가 이루어졌다.	☐ 예 ☐ 아니오
3. 보호 대상 소년에 대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한다)가 개최되었다.	☐ 예 ☐ 아니오
3-1.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 ()	
4. 심의위원회에서 보호 대상 소년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졌다.	☐ 예 ☐ 아니오
4-1. 심의위원회에서 보호 대상 소년에게 취한 조치 피해소년에 대한 서면 사과 피해소년 및 신고·고발 소년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 ☐ ☐ ☐ ☐ ☐ ☐ ☐ ☐
5. 심의위원회에게 보호 대상 소년의 보호자도 특별교육을 받게 하였다.	☐ 예 ☐ 아니오
6. 심의위원회에서 피해 소년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졌다.	☐ 예 ☐ 아니오
6-1. 심의위원회에서 피해 소년에게 취한 보호조치 심리 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그밖에 필요한 조치 ()	☐ ☐ ☐ ☐ ☐

○ 첨부할 서류: 필요한 경우, 담임교사·책임교사·상담교사 등의 의견서

20 . . .

통 고 인 ○ ○ ○ ①11)

11) 통고인은 학교장이어야 함

▶ 청소년쉼터(5개소)

연번	시 설 명	운영자	소 재 지	전 화
1	일시(고정)	(학)박영학원	사상구 모덕로 82	303-9670
2	일시(이동)	(학)박영학원	사상구 모덕로 82	303-9677
3	남자단기	(학)박영학원	사상구 모덕로 82	303-9672
4	여자단기	(사)틴스토리	수영구 민락해변길 5	756-0924
5	여자중장기	(재)금정총림범어청소년동네	금정구 팔송로 39번길 109	581-1388

▶ 청소년자립지원관(1개소)

연번	시 설 명	운영자	소 재 지	전 화
1	청소년자립지원관	(학)박영학원	사상구 모덕로 82	303-9671



학생 생활교육 관련 Q&A

Q 흡연 등 교칙위반 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수업에서 배제하였다면?

- A**
- 학생인권 중 가장 핵심이 되는 기본권 중의 하나가 교육을 받을 권리이므로, 학생지도를 위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가능하다면 수업 외의 시간에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다만 즉시 조사하는 것이 선도와 교육에 있어 가장 합리적이며, 조사를 위한 다른 시간적, 방법적 대체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학생 조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장의 결재를 통해 조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Q 스마트기기 사용 규정을 위반하여 장기간 압수를 하였다면?

- A**
-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에 의거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이 제한됩니다.(2026.3.1. 시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교칙을 위반하여 스마트기기를 소지하였다면 스마트기기 사용교육을 포함한 생활교육과 기타 학칙으로 정한 교칙에 따라 지도한 후, 학생의 안전과 기본권을 고려하여 학부모 상담을 통해 학생에게 반환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불필요한 민원을 고려하여 가급적 당일 반환 권고)

Q 학생을 대상으로 한 불시 소지품 검사는 가능한가요?

- A**
- 학생의 동의 없는 소지품 검사의 경우, 학생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학교 규칙이나 법을 위반하였음을 보여주는 증거를 찾게 되리라는 합리적인 근거(정당한 이유)나 긴급한 상황에 대하여는 적절한 절차와 방법(교칙)을 통해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방법이 검사의 목적과 합리적으로 연관되어야 하며, 검사받는 학생의 나이, 성별, 법률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도한 방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겠습니다.

Q 상습적으로 지각을 한 학생에게 간접적인 체벌은 허용되나요?

- A** • 학생들에게 신체적·심리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모두 체벌입니다. 선생님이 도구나 신체를 이용하여 체벌한 것은 아니지만, 강압적인 방법으로 학생의 의사를 지배하여 학생 스스로를 체벌 도구화하였다는 점에서 직접 체벌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이는 아동학대 의심 사안으로 해석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Q 선생님이 학생에게 체벌이나 욕설을 하였을 때의 조치는?

- A**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8항 및 아동학대 관련 법률에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체벌이나 욕설, 모욕 등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아동학대(의심이 있는 경우 포함)의 경우, 인지 즉시 수사기관(112)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Q 학생에 대한 선도(징계)조치 시 학부모에게 진술기회를 주어야 하나요?

- A** • 「초·중등교육법」 제18조제2항에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미성년자이고 법률상 보호자가 학부모라는 점에서 함께 진술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타당 하리라 판단됩니다. 그리고 ‘적정한 절차의 이행’이란 단순히 ‘통지가 있었는가’와 ‘의견진술 기회가 제공되었는가’로만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전에 이루어졌는지, 어떠한 사유로 선도위원회에 회부되었는지를 알려주는 등 충분한 방어권과 항변권을 보장 하였는지에 대한 여부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Q 학생 선도조치 결과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나요?

- A** • 「행정절차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모든 행정 처분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특히 학생에 대한 선도조치는 향후 많은 민원이나 법적 다툼이 발생할 수 있어 우편(내용증명)으로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선도 조치 결정 통보 시 불복 절차를 안내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A** • 「행정절차법」 제26조에 따라 모든 행정적 절차의 불복에 대하여는 당사자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민의 권리 구제는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입니다. 선도위원회 조치결과 통지서(서식6) 서식 변경으로 불복 절차를 안내하지 않아 재심에서 효력이 상실된 사례가 있으니, 반드시 불복절차를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Q 학교의 선도(징계)조치를 수용할 수 없을 때의 절차와 방법은?

- A** •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2에 따른 징계처분 중 퇴학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퇴학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학생징계조정위원회(부산광역시교육청 인성체육급식과)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결과 통지서를 지참하여 교육청 방문)
- 그 외의 처분(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공립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부산광역시교육청 법무팀(예산기획과)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국립학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사립학교는 법원에 민사소송 제기)

Q 학교 규칙 제·개정 시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나요?

- A**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는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특히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청소년활동진흥법」 등에는 청소년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권을 적극 보장토록 하고 있습니다.
- 학교규칙 제·개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주체적 참여는 학교규칙의 준수 여부와 직결됩니다. 학칙을 지켜야 할 대상인 학생들의 의견 수렴과 교육공동체에 의해 숙고된 학칙은 학생들의 자율적 실천은 물론 학칙으로써의 권위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Q 고시와 학칙에 따라 학생에 대해 생활지도를 하였다면 아동학대 신고 등
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나요?

- A**
- 고시의 내용은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에 관한 기준이며, 고시에 의한 학생생활지도 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정당행위)에 해당됩니다.
 - 그러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가 법령·고시·학칙이 정한 범위를 벗어난 경우 또는 고시가 정한 학생생활지도의 범위를 벗어나 규정하고 있는 학칙에 근거하여 생활지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학칙을 제·개정할 때는 이 점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정규교육과정에 있는 봉사활동도 왜 봉사활동확인서를 만들어서 결재를
 받아야 하나요?

- A**
- 봉사활동을 최종 확인하기 위해서는 계획에 의한 승인과 봉사활동 결과에 대한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정규교육과정에 대한 승인은 계획에 대한 승인이며, 결석한 날은 누가기록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출석부(출석상황) 등은 직접적인 봉사활동 확인서류가 아니며 관련서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봉사활동 기록을 위해 봉사활동에 대한 승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Q 동아리활동 부서에서 동아리활동 시간에 실시한 활동을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나요?

- A**
- 동아리부서에서 동아리활동(자율동아리 포함)의 일환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한 경우,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동아리 활동 내용으로만 인정됩니다.
(방송반, 도서반, 학생회, 선도부 등의 활동)
 - 교내 봉사활동 모집 시 특정 동아리 소속 학생들에게만 활동 기회를 주지 않도록 모든 학생들에게 공개 모집하여야 합니다.

Q 교육기관 또는 행정기관에서 학생들의 봉사활동 실적을 개인별 확인서가 아닌
 공문으로 발송한 경우 봉사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나요?

- A**
- 인정할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 확인서는 기관장(단체장)의 직인을 받아 발급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며, 공문 자체가 기관장(단체장)의 직인을 날인하여 발송되는 것이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Q 평일 체험학습(출석인정)으로 공공기관(교육기관) 봉사활동에 참여한 학생의 경우 봉사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나요?

A • 수업시수로 반영된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만 봉사활동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당일 수업이 6교시인 경우는 2시간, 7교시인 경우는 1시간 등으로 인정)

Q 교복은 반드시 입어야 되나요?

A • 교복의 착용은 학생들의 개성발현권, 자기결정권, 평등권 등 인권과 관련된 사항이나, 「초·중등교육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의 7에 의거하여 학교장에게 위임된 사항입니다.

• 중·고등학교에서만 교복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는 법률적 근거는 없지만,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착용 여부 등에 대한 학교의 규칙을 학교장이 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Chapter

02

교육공동체 상호존중교육

- 교육공동체 인권교육의 기본 방향 94
- 학교 구성원 인권 보호 및 인권교육 활성화 98
- 자율적 참여와 소통의 학생자치활동 105



교육공동체 인권교육의 기본 방향

1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세계 인권선언과 국제 인권 규범

- 1948년 12월 10일 제3차 유엔총회에서 세계 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채택됨(우리나라는 1991년에 가입)
- 1965년 유엔 총회는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채택
 - 1966년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A규약, 사회권 규약)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자유권 규약)을 마련
- 1989년 11월 20일 유엔아동권리협약(United Natio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CRC) 채택
 - 아동을 권리의 주체자로 인정한 최초의 국제법으로 아동을 '18세 미만'으로 규정
- 2000년 5월 25일 유엔총회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관한 두 개의 선택의정서' 채택
- 2011년 12월 19일 유엔총회에서 '아동권리협약에 관한 세 번째 선택의정서'인 아동의 개인 청원권에 관한 선택의정서(OPCP)가 채택

▶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학교폭력, 자살, 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 등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학교 구성원의 상호존중 의식 부족, 인권을 존중하는 관점의 부족, 인권공동체로서의 학교 운영 미흡 등이 그 원인으로 제기(유병열, 2012; 구정화, 2023)
- 인권 관련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학교의 체계적인 인권교육 프로그램이 필요
- 인권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인권 감수성이 미흡하여 아동학대로 신고 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학생과 교원이 상호 존중하는 인권 친화적인 학교 문화 조성 요구

2

추진 근거

- ▶ 유엔아동권리협약(United Natio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CRC)
- ▶ 「대한민국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청소년기본법」,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복지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

- ◆ 「헌법」 제6조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 「교육기본법」 제3조(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 ◆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등) ①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6(보호자의 의무 등) ① 보호자는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 「청소년기본법」 제5조(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①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은 청소년 활동·청소년복지·청소년보호 등 청소년 육성의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3 학교 인권교육의 개요

➤ 인권의 의미와 성격

- 인권의 의미
 - 인권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수단이자 목표인 가치체계, 즉 인간의 기본적 권리 (차병직, 2006)
 - 개인과 집단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 존엄성을 보호하는 합법적 보장(OHCHR, 2006)
- 유엔아동권리협약 4대 기본권
 - 생존권(Survival Rights): 적절한 영양과 건강관리, 의료혜택, 위생, 안전, 사고예방 등
 - 보호권(Protection Rights): 차별로부터의 보호, 학대·착취·폭력으로 부터의 보호, 특별 보호조치가 필요한 특수상황에 처한 아동에 대한 보호
 - 발달권(Development Rights): 교육, 신체적·사회적·정서적·도덕적 성장, 휴식을 취하고 여가를 즐길 권리
 - 참여권(Participation Rights): 아동의 견해존중, 의사참여, 정보접근
- 인권의 성격
 - (천부성과 불가양성, 자연권성) 인권은 인간의 선천적인 권리이며,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함부로 포기할 수 없는 권리
 - (절대성과 보편성) 인권은 권리들 사이의 우선순위나 가치의 차이가 있을 수 없고, 국가와 개인에 따라 서로 다를 수 없음

➤ 인권교육의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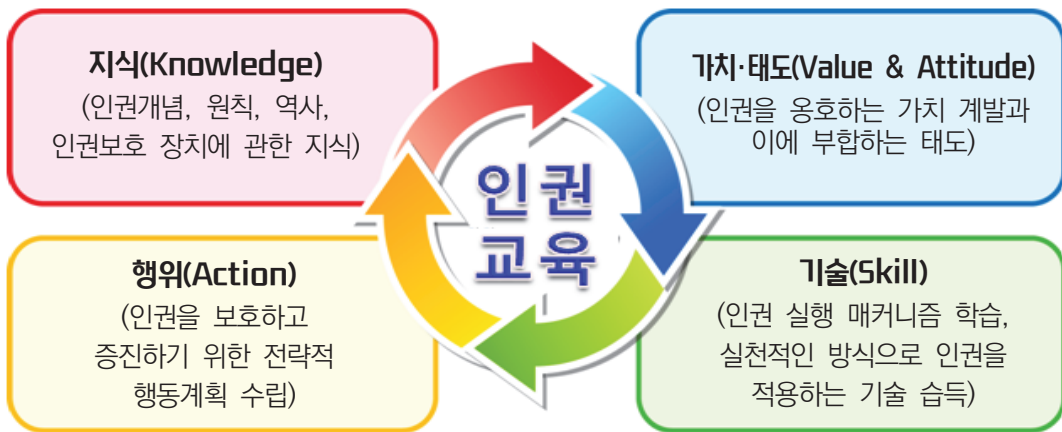
- 인권에 관하여 알게 하는 일련의 교육적 행위
 - 인권에 대해 배우는 그 자체가 권리이다. 인권에 대해 무지를 강요하는 것이나 내버려 두는 그 자체는 인권 침해이다. 교육은 인권과 자유의 머릿돌이다(UN, 인권- 새로운 약속).
- 인간이 가진 기초적이고 보편적인 권리로서 자신이 가진 권리를 알고,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한 행동양식과 기술,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의 형성을 동시에 추구하도록 하기 위한 일체의 교육적 노력(Starkey)
-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는 가치와 태도를 습득하여 개개인의 인성과 존엄성이 충분히 습득되도록 하는 교육활동(유엔인권교육 10년)

- 인권에 대한 교육(Education about human rights: 지식), 인권을 위한 교육(Education for human rights: 기술과 능력), 인권을 통한 교육(Education through human rights: 환경과 가치) (Lister)

종합적 정의(UN, 2012)

인권에 대한 지식(knowledge)과 정보(information)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권을 실천할 수 있는 기술(skill)과 인권을 옹호하는 태도(attitude), 그리고 행위(action)를 함양하여 일상적인 문화적 맥락 속에서 인권을 적용하고 실천하는 교육

▶ 인권교육의 내용



▶ 인권교육의 기본 방향

-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 교육 강화
- 인권에 대한 가치·태도 내면화와 인권 침해 대응 능력 함양
- 아동의 발달단계를 고려한 체계적인 인권교육 내실화
- 아동의 권리를 존중, 보호, 실현할 수 있는 의무이행자의 책임 강화
- 학생과 교원의 인권이 상호 존중되는 균형 잡힌 인권교육 강화
- 학교 구성원 인권 의식 및 상황 실태 점검을 위한 다양한 모니터링 강화
- 학교 인권교육 유관기관(정부, 지자체, 사회단체 등)과 연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
- 상호존중과 배려를 위한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학교 구성원 인권 보호 및 인권교육 활성화

비 전

언제나, 어디서나 부산 교육공동체 누구나 누리는 행복한 인권

목 적

교육공동체 인권교육 강화를 통한 인권 감수성 함양
소통과 배려의 상호존중교육을 통한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추진영역 및 주요과제

학교 문화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 인권 업무 담당 지정·운영
- 인권침해 대응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
- 우아한 상호존중학교 운영

역량 함양

인권역량 강화 지원

- 교육과정 연계 인권교육 내실화
- 현장·체험 중심 학생 인권교육 강화
- 교원 인권교육 역량 강화

지원 강화

인권교육 네트워크 운영

- 인권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강화
- 부울경교육청 인권교육협의회 운영

추진 방향

- 인권 업무 담당자 지정 및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한 인권 보호 책무성 제고
- 교육과정과 연계한 단위 학교 인권교육 지원 강화
- 교육공동체 대상 인권교육을 통한 인권 감수성 향상
- 학생참여 중심 프로그램 운영으로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지원
- 인권 유관기관과 소통과 협력으로 실질적인 학교 인권보장 방안 마련

1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 인권 업무 담당자 지정·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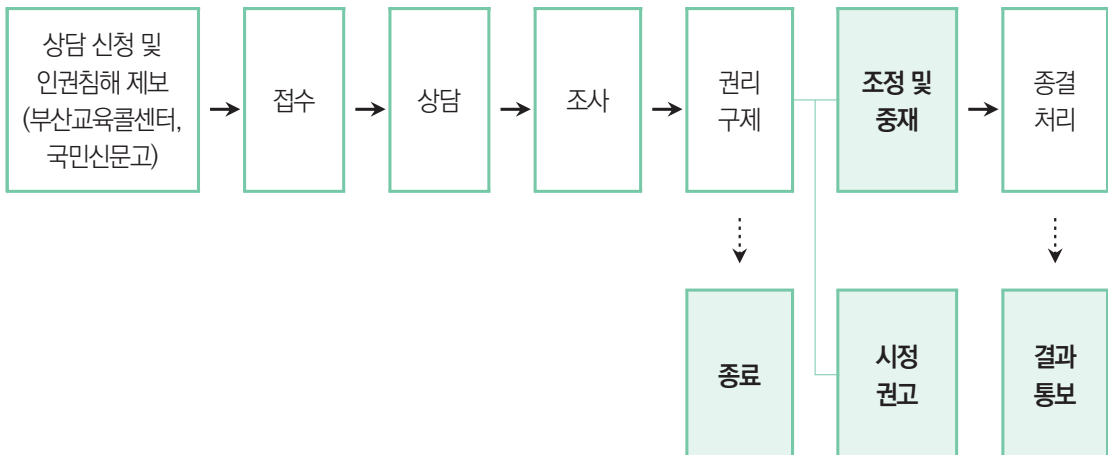
- (교육청) 학생인권 보호 전담기구 운영
 - 학생 인권교육 및 권리구제 지원을 위한 상시 운영 기구
 - 구성: 10명 내외



• 활동 내용

- 교육공동체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 교육과정 연계 학생 인권 보호 교육자료 개발·보급 및 홍보 지원
- 학생 인권침해 제보 접수·상담·조사 및 권리구제 지원
- 학생 인권 보호 모니터링 실시

-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권리구제 절차



- (학교별) 학생인권(교육) 담당자 지정(3월 초)
 - 학생 인권교육 업무담당자 지정(아르바이트 등 노동인권 교육 담당자 포함)
 - 학교 인권교육 기본 계획 수립·운영
 - 학생 인권 보호 및 증진 노력
 - 인권 침해 대응 및 구제 지원 등
 - 학교별 실정에 맞게 지정·운영하되, 학생인권 교육 담당자가 노동인권교육을 담당하여도 무방함(단, 특성학교·마이스터고의 경우에는 취업 관련 담당부서에서 별도 운영)

▶ 인권 침해 대응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

- 민주시민교육과(☎860-0483): 인권교육 총괄
- 디지털미래교육과(☎860-0368): 특성학교 노동인권
- 특수교육지원센터(☎605-3732): 특수교육대상자 및 장애학생 인권
- 교육지원청(유초등·중등교육지원과): 초·중학교 인권 침해 및 중학교 노동인권
-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710-9716): 인권 침해사례 접수
- 부산광역시 인권센터(☎853-2101): 인권 침해사례 접수
- 부산지방고용노동청(☎853-0009): 체불임금 등 부당노동행위 접수
- 노무법인 부산노동회(☎555-1944): 아르바이트 부당 행위 신고 및 상담

▶ 우아한(우리의 아름다운 한마음) 상호존중학교 운영

- 대상: 학교자율사업선택제 연계 운영 희망학교
- 운영 기간: 2026. 3월 ~ 12월
- 방법: 부산·울산·경남 교육청 및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와 공동사업 운영
- 주요 내용
 -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관계자 워크숍(학교관리자, 교사, 학생 등) 실시
 - 우리학교 인권 현장 만들기 및 선언식, 인권 보호 실천 서약식 등
 - 인권동아리 운영: 사례동행 인권 보호 캠페인, 인권법 만들기, 인권정책 연구 등
 - 인권 아카데미: 초청 특강, 주제 중심 심화 학습 프로그램 운영 등

2

인권역량 강화 지원

➤ 교육과정 연계 인권교육 내실화

- 학교 교육과정 내 인권교육
 - 학생 대상 연 2시간 이상 인권교육 학교 자체 실시(학기별 1회 1시간 이상 권장)
 - 사회, 윤리 등 관련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한 인권교육 가능
 - : 프로젝트 수업, 캠페인 등 학생활동 중심의 교육 권장

교과(예시)	내용(예시)
도덕·윤리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가치·태도 교육, 도덕적 삶과 타인의 인권 존중 의식 함양, 인간 존중의 전통사상, 인물학습을 통한 인권운동 선구자들의 인권옹호 노력 등 • 유관순, 김구, 마틴 루터 킹, 마하트마 간디, 넬슨 만델라 등 • 역할 놀이 수업, 갈등 사례 수업, 소집단 토의학습 등 인권 가치 교육 실시
사회	인권에 대한 기본적 인식과 역사적 변천 등
	일반 사회 인권에 대한 지식(기본권 및 국제조약, 국내법 등을 포함)·시민생활과 관련한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 등의 기본권과 민주시민의 의무침해 대응 및 구제 절차, 인종과 문화의 다양성을 바탕으로 한 다문화 이해교육, 탈북 및 장애인 인권교육
	지리 개인의 생존권과 관련된 자연환경과 생활 여건, 각국의 노동 여건과 환경, 국제 개발과 국제원조, 무역과 산업화, 지속 가능한 발전
	역사 인권운동의 변천, 인권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과 인권협약이나 각종 선언에 대한 배경, 위안부 문제와 분단의 역사, 민주화 과정에서 나타난 인권침해 사례 등에 대한 학습
국어	언어문화 개선 및 작품을 통한 인권교육 실시 • 일제강점기의 민족말살정책으로 인한 자유로운 문화 활동 및 모국어 사용에 대한 억압 • 인권의 기본 가치에 대한 듣기·말하기·읽기·쓰기 •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말하기 • 작품 속 인물들에 대한 공감 능력 향상을 통한 인권 감수성 함양 • <박타령>, <심청전> 등에 언급된 장애인에 대한 묘사와 소수자의 인권에 대한 사회적 시각을 성찰
	수학 특정 지역의 빈곤율, 인권실태에 대한 설문자료 등에 대한 통계자료 이해, 고용과 실업 그래프에 대한 분석 방법 등
과학	과학의 발전과 인권 존중, 지속가능한 개발, 기후 위기와 인권 등
정보·컴퓨터	인터넷 윤리와 타인의 인권 존중, 사이버 인권침해 사례 및 대응 등
체육	건강의 중요성, 스포츠 활동을 통한 규칙의 준수와 책임감, 타인의 권리와 성차별 극복 등
보건	흡연예방, 자살예방(생명존중)을 포함한 정신건강, 성(폭력)교육 및 성차별예방, 위생 및 안전교육
예능	예술을 통한 인권 감수성 향상, 표현의 자유 경험하기, 독립운동 및 저항 정신을 바탕으로 한 예술작품 감상, 인권 그림 그리기 및 개사곡 경연대회 등
직업과 진로, 전문교과	학생 노동인권 교육 등

➤ 현장·체험 중심 학생 인권교육 강화

- 「주제가 있는 다함께 배움교실」내 인권교육 운영
 - 대상: 희망 학교(초·중·고(특수)), 학급 단위 학생 대상 교육
 - 운영 방법: 학교로 찾아가는 인권교육
 - 기간: (신청) 3월, (운영) 4월 ~ 11월
 - 강사: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지방변호사회 등 전문 강사 활용
 - 활동 내용: 인권 감수성, 인권 침해, 노동인권 교육 등 학생활동 중심 교육
- 『학교공동체를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책자 활용(2022. 12월 책자 보급 완료)
 - 17개 시·도 교육청 공동 개발 인권교육 프로그램
 - 내용: 통합 주제 학교 구성원별 인권교육 프로그램 및 교수·학습자료
 - (학교장용) 관리자의 인권 감수성 및 인권 문해력 향상
 - (교감용) 교사 활동 7종을 포함하여 교사 다모임에 활용
 - (교사용) 학생 활동 30종을 포함하여 교육과정 연계 활용성 높임
 - (전문적학습공동체용) 인권 감수성 향상 및 인권교육 활동 역량 강화 지원
 - 파일 탑재: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지원서비스(BSSS)-도움자료-업무도움자료-교무학사-2129

➤ 교원 인권교육 역량 강화

- 교원 인권 감수성 향상 자체 연수(학교별 자체 연수 1차시 이상 실시)
 - ※ 부산교육연수원 ‘2026 교원 법정 의무교육 통합과정 I’ 이수
- 2026년 교원 원격직무연수 상시과정(부산교육연수원 주관)
 - 세대 간 커뮤니케이션: 교직문화의 이해(10차시, 유·초·중·고)
- 유관기관 연계 직무연수(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주관)
 - 과정명: 2026 학교관리자 인권리더십 과정
 - 대상: 희망하는 초·중·고 학교관리자
 - 내용: 인권의 이해, 학생인권 침해사례, 인권 가치가 존중되는 학교를 위한 액션 플랜, 학생인권과 교권의 이해 등
 - 운영 기간(15시간, 1학점 인정)
 - 1기: 2026년 7월 초순 예정(중·고등학교 관리자)
 - 2기: 2026년 7월 중순 예정(초등학교 관리자)
 - 인원: 기수별 30명 내외(선착순 접수)

- 장소: 부산인권교육센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0 국민연금 부산회관 8층, 지하철 1호선 시청역 2번 출구)

➤ 인권 감수성 함양을 위한 학부모 교육

- 학부모 대상 인권교육 실시
 - 학부모 상담 주간 또는 진학설명회 개최 시 학부모 대상 연수 실시 권장
 - 가정통신문 및 학교홈페이지를 활용한 인권교육 홍보
- 학생 아르바이트(취업 포함) 시 학부모 사전 상담 실시
 - 연소근로자 노동권리 침해, 침해 대응 및 구제 사전 안내
 - 신고전화: ☎1350(고용노동부), ☎1644-3119(청소년 근로권익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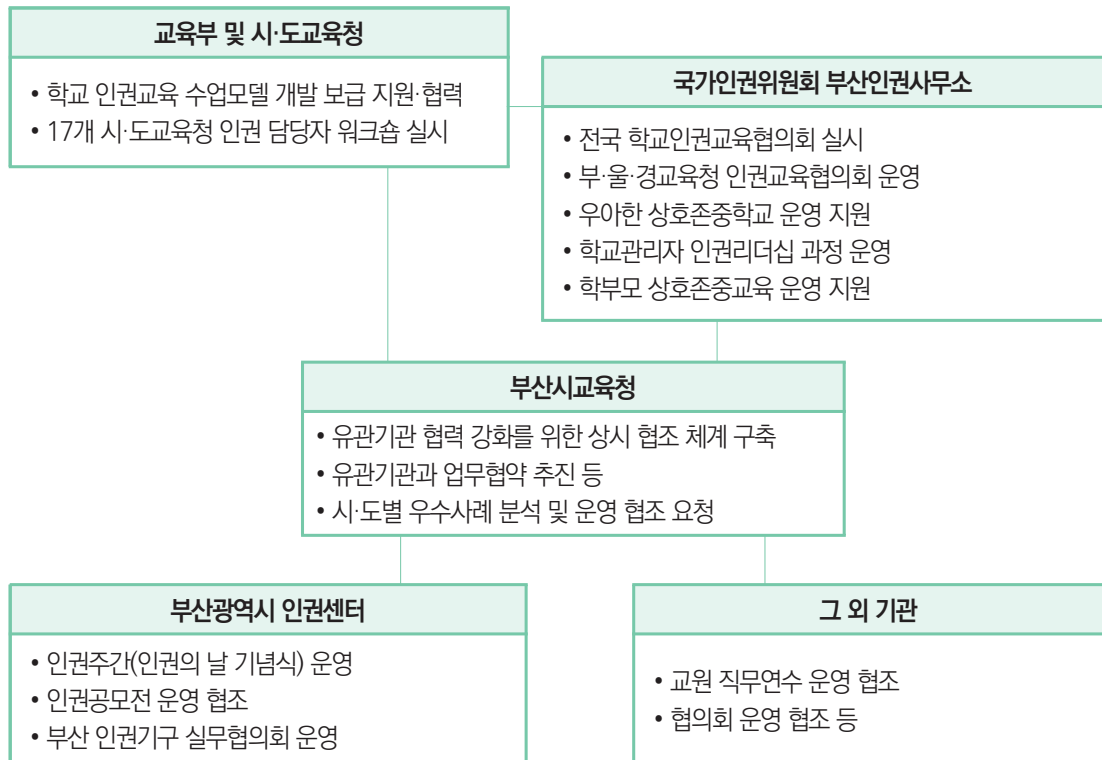
3 인권교육 네트워크 운영

▶ 부산·울산·경남교육청 인권교육협의회 운영

- 대상: 부산·울산·경남교육청 및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관계자
- 운영 방법: 연 4회 협의회, 국가인권위 및 3개 교육청 순환 개최
- 협의 내용: : 부·울·경 인권교육 현안 협의 및 학교 인권교육사업 공유 등

▶ 인권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강화

-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부산광역시 인권센터, 부산광역시청, 부산경찰청 등 연계 운영
 - 학교 내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한 공동 대응 및 협력
 - 학교 인권교육 강사 인력풀 지원
- 부산 인권기구 실무협의회 실시: 연4회 운영
 -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부산광역시 인권센터 공동 주관
- 인권 관련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성도





자율적 참여와 소통의 학생자치활동

Chapter
02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1

추진 배경 및 목적

> 추진 배경

- 학생을 자주적이고 능동적인 주체로 인식할 수 있는 교육 혁신에 대한 요구 확대
- 미래사회에 대응하고 삶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자기주도역량 중요성 증대

> 사업 목적

- 자율적 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학생 중심의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 학교 구성원으로서 학생 전체가 주체가 되고 존중받는 학교문화 조성
- 학생참여 보장 및 의견 수렴을 통한 소통과 공감의 교육정책 수립
- 자주적·자율적 실천을 통한 학생의 합리적 문제해결능력과 시민성 함양

> 근거

관련 법률

- ◆ 「교육기본법」 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 ② 학교 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 주민 등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 「초·중등교육법」 제17조(학생자치활동)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학생자치활동의 보장) 학교의 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 ◆ 「청소년기본법」 제5조(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③ 청소년은 외부적 영향에 구애받지 아니하면서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밝히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관련 법률

- ◆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①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 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청소년 관련 정책의 심의·협의·조정 등을 위한 위원회·협의회 등에 청소년을 포함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기본원칙) ① 학생은 다음 각 호에 대한 학생자치 및 학생참여(이하 “학생 자치 및 참여”라 한다)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은 학생자치 및 참여 활동에서 교사의 수업권 및 다른 학생의 학습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학교의 장은 교육정책 및 학교 운영 과정에서 학생 자치 및 참여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한다.

▶ 학생자치활동의 정의

- 학생자치: 학생이 주체가 되어 교내·외 관련 조직을 통해 학생과 관련한 학교생활을 스스로의 의사와 책임으로 운영하는 것
- 학생자치활동: 학교 구성원인 학생의 민주적 합의와 의사결정에 의해 운영되는 활동으로 학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민주적 학교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

▶ 학생자치활동의 원칙

- 학생 존중의 원칙: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존중되어야 하며, 교육과 학예를 비롯한 모든 학교생활에서 학생 인권은 우선해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함
- 활동 참여의 원칙: 학생은 수업, 선거, 행사 등 학교생활에 있어서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가족 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정치적 의견,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과 관계없이 참여할 권리를 가짐
- 자기 책임의 원칙: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고, 교사의 수업권 및 다른 학생의 학습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교의 교육에 협력하고 학생의 참여하에 정해진 학교 규범을 준수하는 책임을 짐

2

단위학교 학생자치활동 기반 조성

Chapter
02

단위학교 학생자치활동 기반 조성

➤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 대상: 전체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 주요내용
 - 학교교육계획에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본 계획 포함
 - 학급회 월 1시간(연간 8시간) 이상 시수 확보(창의적 체험활동 등 활용)
 - 학생회(대의원회 등) 월 1회* 이상 운영(학급자치와 연계 강화)
 - * 학교 자체 계획에 따라 일과 전, 방과 후 등 정규시간 외 활용 가능
 - 학교장과 학생 대표와의 대화 정례화를 통한 토의·토론 문화 확산
 - 학생과 관련된 학교활동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의견 수렴을 위한 학생회 대표의 학교운영 위원회참석 기회 제공

➤ 학생자치활동 예산 편성 및 학생 사용권 보장

- 대상: 전체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 주요내용: 학교 기본운영비에서 학생자치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
 - 학교 기본운영비(단, 기본적 교육활동비와 교육활동지원비의 합) 1%* 편성 권장
 - * 학급수, 학급당 인원수 등 학교 상황에 따라 구성원의 의견수렴을 통해 조정 가능
 - 학생회 선거·축제 등 학생회 주관 학교행사 활동비, 학생자치실 조성 및 운영비 등 편성, 학생 사용 권한 보장
 - 학생자치활동 관련 예산 심의 시 학생회 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석 기회 제공
 - 학생참여예산제* 도입을 통한 학생자치 및 참여 기회 확대

학생참여예산제란?

학생회, 동아리 등을 중심으로 학교의 학생자치 관련 예산 편성 과정에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여 스스로 사업을 기획하고 예산을 요청하면 학교회계 편성 절차에 따라 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학생선거공영제 실시

- 목적: 학생들의 선거 참여 활성화 지원 및 대표 선출 과정의 공정성 확보

학생선거공영제란?

학생선거공영제는 선거운동을 학교가 직접 관리·진행하여 선거운동에 있어서 공정성을 확보하고, 선거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학교가 부담함으로써 입후보자의 선거참여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는 제도

- 대상: 전체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 주요 내용
 - 학생선거관리위원회 구성·운영으로 학생 중심의 공정한 학생회 선거 실시
 - 학생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 확보, 학생관리위원 역량 강화 교육 실시
 - 학교가 학생 선거에 드는 비용을 사전 확보·지원하는 선거비용공영제 도입
 - 학생회 공약 이행 지원 및 운영 성과 평가 등으로 학생회 활성화 지원
 - 학생 자치회 출마시 교사추천서 제출 폐지 권장
 - ※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 및 학교 상황을 반영하여 학칙 개정
- 민주적 학생선거관리 역량 향상을 위한 학생선거교육 지원
 - 운영 협력 기관: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 대상: 희망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학급
 - 운영 기간: 2026. 4월 ~ 12월(신청은 11월까지)
 - 교육 방법: 선거교육 전문강사 학교 파견
 - 주요 내용: 선거관리위원회! 무슨 일을 할까요?, 이상한 마을의 이상한 선거, 게임으로 배우는 민주주의 등
 - 문의: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 051-851-7770)
- 학교 선거도우미 지원
 - 운영 협력 기관: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 대상: 관내 초·중·고 학생회의 임원 선거
 - 운영기간: 2026. 5월 ~ 2027. 2월
 - 지원내용: 당해 학교의 선거규정 자문 및 제·개정 지원, 투표함·기표대 등 선거장비 대여, 후보자등록, 투·개표 등 선거관리 절차와 사무처리방법 안내, 공명선거 강의 및 각종 선거 관련 자료 제공
 - 문의: 학교 소재지 소속 구·군 선거관리위원회

3

학생자치활동 역량 강화

▶ 중앙교육연수원 마이크로러닝 콘텐츠 활용 연수

- 학생자치 활동이란?
- 서로나눔학교 학생자치 운영 사례

▶ 2026년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 교원 원격직무연수 상시과정

- 루틴이 있는 학급경영(5차시, 중·고)
- 탄소중립학교를 꿈꾸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10차시, 유·초·중·고)

▶ 주제가 있는 다함께 배움교실

- 대상: 희망 초·중·고등학교 300학급 내외 선정
- 운영 기간: (신청) 3월, (운영) 4월 ~ 11월
- 운영 방법: 유관기관 전문 강사의 학교(학급) 방문을 통한 주제별 심화 교육
- 주요 내용: 세계시민, 민주시민, 인구, 법, 금융, 인권, 선거 등 교육과정 연계 다양한 민주시민교육 관련 주제별 찾아가는 강의 제공

▶ 학생자치 도움자료 개발·보급

- 자료명: (가칭) 함께 만드는 학교, 함께 자라는 우리: 학생 자치 활동 길라잡이
- 배부: PDF 자료, 공문 안내 및 BSSS탑재 예정(2026. 5월)
- 주요내용: 학생자치의 가치와 의미의 이해, 학생참여예산제 운영 방법, 실제 운영 사례 등

4

교육정책 수립 과정에의 학생참여 보장

▶ 학생대표협의회

- 목적: 학교 간 자치활동 사례 공유 및 효과적인 학생자치활동 방법 모색
- 대상: 학생회 대표 교당 1명 참가
- 운영기간: 2026. 5월 ~ 11월
- 주요내용

- 학교급별 지역별 운영: 초·중학교(교육지원청 주관), 고등학교(시교육청 주관)
- 학생회 대표 학생의 자치활동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소양 교육
- 학생자치활동 우수사례 공유와 학교 현장의 건의 사항 제언 등
- 교육감(장)과 학생대표의 대화 연계 운영으로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의회 운영**

- 목적: 학생과 관련된 교육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 수렴, 제언
- 대상: 초 5학년 ~ 고 2학년 60명 내외
- 운영 기간: 2026. 4월 ~ 12월
- 주요 내용
 - 학생의원 활동을 위한 기본 역량 강화 지원 소양교육 및 리더십캠프 실시
 - 학생의원 직접·비밀투표를 통한 의장단 선출(의장 1명, 학교급별 부의장 3명)
 - 분과위원회,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으로 체계적인 학생의회 활동 지원
 - 정례회(연 2회), 임시회 등을 통한 학생과 관련된 교육 정책 및 의견 제언
 - 교육감과의 대화(연 2회) 연계 운영을 통한 교육정책과 관련된 자유 토의·토론
- 활동 관리: 학생 활동상황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감**

- 목적: 교육감과 학생들의 직접 소통하는 교육문화 형성
- 대상: 3교(초·중·고 각 1교)
- 운영 기간: 2026. 3월 ~ 12월(분기별 1회 실시)
- 주요 내용
 - 교육감과 단위학교 학생들과의 자유 토의·토론을 통한 교육현장 의견 수렴
 - 단위학교 학생회가 직접 기획·운영하는 특색있는 학생자치 프로그램으로 활용

5

학생자치활동 프로그램 활성화

Chapter
02지역공동체
강화전략

▶ 소통과 참여의 학생자치활동 프로그램 운영

- 대상: 희망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 운영 기간: 2026. 3월 ~ 12월
- 운영 방법: 학교자율사업선택제 연계 운영
- 주요 내용
 -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 단위학교별 특색있는 학생자치활동 프로그램 개발·적용
 - 학교생활협약운동, 학생자치역량강화 리더십 프로그램 운영 등

▶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 목적: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이해 및 시민성 함양을 위한 교육 기회 제공
- 대상: 희망 중·고등학생 150명 내외
- 협조: 부산광역시의회
- 시기: 추후 공문 안내(연중 3회 예정)
- 주요 내용
 - 부산광역시의회 홍보관 및 본회의장 견학
 - 역할극을 통한 모의의회 체험, 자유 발언
 - 시의원과의 대화 등
- 활동 관리: 학생 활동상황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 고등학생 토의·토론 한마당 운영

- 목적: 자율적 주체인 시민으로서 비판적 사고력 및 토의·토론 역량 강화
- 대상: 희망 고등학생 20여팀
- 시기: 추후 공문 안내 예정
- 주요 내용: 주제별 토의·토론 관련 프로젝트 수행, 토론의 장 마련
- 활동 관리: 학생 활동 상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





Chapter

03

존중과 배려의 학교폭력예방 및 관계회복 지원

- 학교폭력 예방 및 회복 치유 역량 강화 114
- 특별교육 프로그램 운영 170
- 학교폭력 관련 Q&A 172



학교폭력 예방 및 회복 치유 역량 강화

먼저 예측하고 예방하는

“학교폭력 예방 「일기예보」 프로젝트”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

일 상적인
학교폭력
예방문화 조성

기 본에 충실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

예 외 없는
공정한 사안처리

보 호하고
치유하는
관계회복 지원

1

일상적인 학교폭력 예방문화 조성

➤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 내실있는 운영

- 근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 대상: 전체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 목적
 - 학교 구성원(학생, 학부모/보호자, 교사)이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는 책임규약 활동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실천 의지 및 바람직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책임 의식 강화
 - 학교 구성원의 학교폭력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책임 의식을 확립하여 학교 내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문화 조성

- 학교문화 책임규약 주요 내용
 - 학교폭력의 정의 및 유형
 - 가해학생 조치사항
 - 학교장 긴급조치
 - 피해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보복 금지
 - 학부모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이수 의무
 - 학생 생활지도의 이해 및 준수(수업 중/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 구성원의 책임(의견수렴을 통한 확정)
- 운영단계(예시)

단계	일정	세부 추진내용	비고
준비	3월 1주~2주	• ‘학교문화 책임규약’ 안내 - 대상별 도입 취지 및 필요성, 주요내용 안내 - 공감대 형성 - 자발적인 참여의식 고취	(p129~130 붙임1)
계획	3월 2주~3주	• 운영계획 수립 - 책임규약 주요 내용 확인 - 업무지원 및 협조 계획 - 운영시기 및 방법 결정(시기, 의견수렴 방법, 결과 공유 방법)	p131~139
의견수렴	3월 3주~4주	• 학교 구성원(학생, 보호자/학부모, 교직원)의 다양한 방법을 통한 의견 수렴	대면, 서면, 온라인
학교문화 책임규약 작성	3월 4주~5주	• 학생, 보호자/학부모, 교사 의견수렴을 반영하여 학교문화 책임 규약 확정 - 의견수렴 결과 및 내용 분석 - 초안 작성 - 학교문화 책임규약 협의회 개최 (학생, 학부모, 교직원) - 학교문화 책임규약 최종안 확정	예시안 활용 가능 원클릭
학교문화 책임규약 홍보 및 공유	4월 1주~2주	• 학교문화 책임규약 홍보 및 서명 캠페인 결과 공개 (가정통신문 및 홈페이지) • 실천사례 및 소감 공유를 통한 차기년도 반영사항 점검 • 기타 학교행사(학교설명회 및 학부모 총회 등) 연계 등	(붙임1~3)
환류	연중	• 지속적 활용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등하교시간 및 점심시간, 학교행사 연계, 학생 자치회 활동 연계 등) - 실천사례 및 소감 공유를 통한 내년도 반영사항 점검	대면, 서면, 온라인 (붙임1~4)

– 운영방법

- 어울림 프로그램 및 어깨동무학교 활동과 병행
- 학생·교직원: 예방교육·학급활동(자율활동) 등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추진
- 학부모: 가정통신문 활용 및 학부모 설명회 등 학교 행사 등과 연계하여 추진
- 학교가 자율적으로 명칭 변경 가능
예) OO초의 약속, 학교 구성원 다짐, 우리 모두의 책임 등
- 학교 여건에 따라 참여 범위 및 운영 방법 결정
예) 책임규약서 서명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 가능(학교구성원이 함께하는 선포식 또는 캠페인, 약속의 손도장 찍기 활동 등)
※ 학교문화 책임규약 설명 영상: YouTube → ‘학교문화 책임규약 설명영상’ 검색
※ 책임규약서 예시 다운로드: 원클릭 생활교육 홈페이지 → 학교폭력 자료실 → 공지
(부산광역시교육청 원클릭생활교육 - 학교폭력 - 자료실)

➤ **어울림 프로그램 중점학교 운영(예방역량 강화)**

- 대상: 전 초등학교(302교, 학급수별 교당 1,000~2,000천원 차등지원)
- 내용: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 영역: 어울림프로그램 기본 및 심층프로그램 운영, 교사연구회 운영 등
 - 교육과정 연계 어울림프로그램 학급별 연간 11차시(사이버어울림 3차시 이상) 이상 운영
 - ▶ 어깨동무활동, 또래상담 동아리 운영 등과 연계한 학생 참여중심 학교폭력 예방교육 추진
 - ▶ 학교폭력 추세와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예방활동 전개
 - 학교전담경찰관, 외부 강사를 활용한 예방교육 등
- ※ 예산 지원 방법: 통합사업비로 지원(재정결함보조금 미지급교: 학교 자체예산 편성)

➤ **학교폭력 예방 어깨동무학교 운영(예방문화 조성)**

- 대상: 전체 중·고등학교(316교, 학급수별 교당 1,000~2,000천원 차등지원)
- 내용
 - 단위학교 특색에 맞는 학생 참여형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
 - 교육과정 연계 어울림프로그램 학급별 연간 11차시(사이버어울림 3차시 이상) 이상 운영
 - 체험형 예방활동 프로그램, 사이버·언어문화개선 프로그램, 교사·학생 사제동행 프로그램, 지역기관 연계 프로그램 등 학생 참여중심 학교폭력예방교육 추진
 - 학교전담경찰관, 외부 강사를 활용한 예방교육 등
- ※ 예산 지원 방법: 통합사업비로 지원(재정결함보조금 미지급교: 학교 자체예산 편성)

▶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내실화

- 초·중등 맞춤형 ‘사이버어울림’ 프로그램(연간 3차시 이상 권장) 활용 교육
-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주간(6월)’을 활용하여 사이버폭력 예방 관련 특별수업, 캠페인 및 집중 상담 등을 계획하여 추진

·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주간 운영(6월) ※ 운영 시기 및 활동 내용은 학교별 자율 결정

-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관련 특별수업, 캠페인 등을 집중 실시
- 관련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활용 ‘사이버어울림 프로그램’ 활용 수업 실시
- 인터넷·스마트폰·SNS상에서의 바른 언어 사용 및 사이버폭력 예방활동
- 공모전, 학예활동, 홍보활동, 다양한 행사 활동, 선플 달기 활동 등

- 학생 친화적 교육매체(유튜브, 랩송 등) 및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사이버스*) 활용
 - * 메타버스 플랫폼 활용: 사이버 가상의 공간에서 아바타를 활용하여 갈등관리 및 문제해결 능력 등 사이버폭력 예방역량을 기르는 교육 콘텐츠
- SNS를 이용한 사이버상의 왕따 등 사이버폭력 예방활동 지원
 - ▶ 학생들의 사이버상 언어 순화 교육 실시
- 캠페인 활동, 홍보 등을 통한 사이버폭력 예방 문화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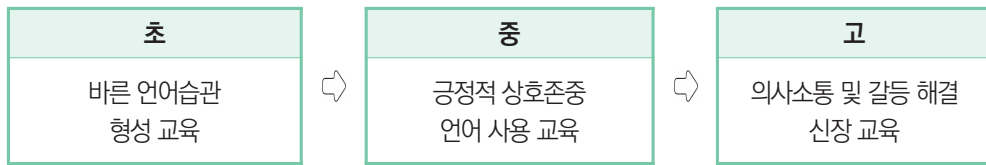
▶ 언어폭력 예방교육 내실화

- 언어문화개선 교육주간(9월 4주 ~ 10월 2주) 운영

· 언어문화개선 교육주간 운영 ※ 운영 시기 및 활동 내용은 학교별로 자율 결정

- 학생 실천 중심의 언어문화 개선 운동 전개
-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한 ‘언어문화개선 및 언어폭력 예방’ 관련 수업 실시
- 학생자치회, 동아리 등 자치활동을 통한 언어 순화 운동: 바른 언어 사용 캠페인, 행사(바른말 온도계, 우리가(내가) 듣고 싶은 말 공모전) 등
- 인터넷·스마트폰·SNS에서의 바른 언어 사용 및 언어폭력 예방활동
- 언어 순화를 위한 다양한 교내 행사 추진(UCC 공모전, 칭찬 릴레이, 편지쓰기 등)
- 바른 언어 사용 관련 교사용 지도자료, 언어습관 자가진단표 등을 통한 바른 언어 사용 강화

- 언어폭력 예방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 학교폭력 중 언어폭력 비율 증가 추세
- 욕설 금지에서 차별·편견 언어 및 비난 언어 금지 등 바람직한 의사소통·비폭력 대화 교육으로 확대
-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단계적으로 바른 언어 사용 교육 강화



- 학생동아리 활동을 통한 언어문화 개선 캠페인 활동
- 언어문화 개선 교육활동 온라인 자료 참고: 학교폭력 종합정보누리집
(<https://doran.edunet.net>)
- 집단따돌림 예방교육 내실화
 - 학교별, 학급별 특색있는 학생 중심의 집단따돌림 예방활동 기획·운영으로 건전한 또래 문화 확산
 - 학기초(3월, 9월)를 활용하여 집단 따돌림 예방을 위한 특별수업, 또래상담, 학생 중심 캠페인 등 실시

▶ 학교폭력 실태조사 실시

- 전국 온라인 학교폭력 실태조사 실시(연 2회): 전수 1회(4월), 표본 1회(9월)
 - 학생의 실태조사 참여 적극 안내
 - 실태조사 결과 홈페이지 공개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설문조사 전 조사 내용에 대한 교육 등 정확한 조사를 위한 노력
- 학교폭력 실태조사 연도별 피해 응답률 현황(단위: %)

실시 연차		'21년 1차	'22년 1차	'23년 1차	'24년 1차	'25년 1차
전국		1.1	1.7	1.9	2.1	2.5
부산		0.9	1.7	1.9	2.1	2.6
학교급	초등학교	2.2	3.7	4.0	4.4	5.4
	중학교	0.4	0.9	1.2	1.4	1.9
	고등학교	0.1	0.2	0.3	0.4	0.6

- 학교폭력 실태조사 연도별 피해 유형(단위: %)

년도	신체폭력	금품갈취	강요	언어폭력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스토킹
2021	13.1	6.5	5.3	41.0	4.4	13.8	9.9	6.0
2022	14.8	6.1	5.6	40.8	4.2	13.2	9.4	5.9
2023	17.1	5.4	8.4	36.8	5.1	15.4	6.5	5.3
2024	15.4	6.0	5.5	39.0	5.9	15.7	6.9	5.6
2025	15.5	5.3	5.9	38.2	5.9	16.2	7.1	5.8

- 학교폭력 실태조사 연도별 피해 장소(단위: %)

년도	교실안	운동장	화장실	복도	기숙사	교내 다른 장소	학원 주변	pc방 노래방	놀이터/ 골목	사이버	집	학교밖 체험장소	기타
2021	23.2	9.2	3.7	18.0	0.3	5.0	5.5	0.6	10.3	8.1	6.5	3.1	6.4
2022	26.5	10.4	4.3	18.1	0.4	5.6	4.7	0.5	7.8	7.9	5.0	3.1	5.9
2023	28.4	12.2	4.0	19.5	0.4	6.6	4.7	0.8	8.2	5.5	4.1	2.0	3.7
2024	30.0	9.6	5.5	17.7	0.4	3.1	5.7	0.9	5.6	5.5	3.9	3.5	3.5
2025	28.1	10.7	5.5	17.3	0.6	5.5	5.3	1.2	5.4	5.9	4.0	3.6	2.2

- 학교폭력 실태조사 연도별 피해 시간(단위: %)

년도	등교 시간	쉬는 시간	점심 시간	수업 시간	하교 시간	하교 이후	방과후 시간	학교 밖 체험활동시간	기타
2021	3.9	30.2	10.5	7.5	12.7	18.5	5.5	3.3	7.9
2022	4.3	31.4	14.3	8.7	11.2	14.6	5.2	3.9	6.4
2023	3.9	31.5	19.5	11.0	10.8	13.9	3.7	2.6	3.1
2024	3.8	31.6	20.9	10.5	9.2	12.0	4.4	4.3	3.2
2025	4.5	30.3	21.3	10.3	9.2	12.3	4.7	4.3	3.0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연계체계 구축

- 대상: 교육(지원)청 및 각 단위학교
 - 구축 시기: 2026. 3월
 - 주요 내용
 - 학교폭력(생활교육) 관련 유관기관 연계체계정비 및 실질적 연계방안 마련
 - 분기별 1회 이상 교육(지원)청·경찰·유관기관 협의체 운영
 - 학기 초 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한 공동 예방 활동 추진
 - 유해환경 점검, 학생 비행 예방, 부적응학생 지원, 학교폭력 예방환경 구축 지원
 - 취약시간대 및 취약지역 순찰활동 강화: 청년연합회, 지자체, 경찰 협조
- ※ 청소년 유해물질 판매 업소 및 출입제한 위반업소에 대한 신고 강화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청-경찰청-학교 전략 협의회

- 기간: 2026. 3월 ~ 12월(연 4회)
- 대상: 교육(지원)청, 경찰(서)청, 학교 업무담당자

– 주요 내용

- 경찰청·교육(지원)청: 확산될 우려가 있는 사안 공유
- 기관별 예방 및 공동 대응 방안 마련 협의
- 학교폭력 및 학생 비행 예방, 상담, 유해환경 점검 및 우범지역 순찰 강화

➤ 학교폭력 예방환경 조성 및 신고체계 구축

- 대상: 전체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각종학교
- CCTV확충, 학급게시판, 상설코너 설치, 홍보(캠페인)활동 등
- 다양한 학교폭력 신고 방법 활용 및 홍보
 - 117 학교폭력 신고 센터: 연중 24시간 운영
 - 가정통신문 발송, 홈페이지 배너 설치 등 홍보 철저
 - 단위학교 신고체계 구축 운영
 - ▶ 신고함, 신고 전화 및 문자, 홈페이지 상담방, 이메일 등
 - ▶ 목격자 신고 활성화 노력(방관자를 없애기 위한 예방교육 철저)
 - 신고자 신분 비밀보장 철저
- 학기 초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운영(3~4월 / 9~10월)

2 기본에 충실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

➤ 학교 특색에 맞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계획 수립 및 운영

〈학교폭력 예방교육 계획 수립 근거〉

-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교육감의 책무) ④ 교육감은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실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학교폭력의 개념·실태 및 대처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학교폭력 인식 정도 및 학교폭력 발생 양상 등을 고려하여 단위학교의 실정에 맞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계획 수립·운영
-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비 통합 교부(교당 1,000~2,000천원)에 따른 예산 편성

- '25학년도 학교폭력 발생 현황 및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분석·반영
※ 언어폭력·사이버폭력·신체폭력·집단따돌림 등 학교폭력 취약 분야 대처방안 포함
- 학생의 사회성·정서 역량 함양과 변화하는 폭력 양상, 지역 및 학생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별 특색있는 학교폭력 예방활동 운영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 사례 예시〉

· 언어문화 개선, 사이버폭력 예방, 상호존중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존중의 약속 만들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생 자치회 활성화, 문화·예술·체육 활동 중심 학교폭력 예방활동 등 학교 자율 주제 선정

- ▶ 학기 초(3월, 9월) 집중적인 학교폭력 예방 활동 강화
- ▶ 6월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 9~10월 언어문화 개선 운동 등 집중교육 시기에 관련 프로그램 편성·운영

〈학교별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선택 주제 예시〉

학교폭력 예방교육 (학기초: 3월, 9월)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6월)		언어폭력 예방교육 (9월)
· (대상) 학생, 교직원, 학부모 · (내용) 적극적인 방어자가 되기 위한 우리들의 약속 · (방법) 등갓길 및 하갓길 캠페인	+	· (대상) 학생, 교직원, 학부모 · (내용) 사이버공간에서 지켜야 할 예절 · (방법)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 규칙 홍보	+	· (대상) 학생, 교직원, 학부모 · (내용) 언어폭력 예방문화 조성 · (방법) 전교생 대상 긍정의 말 캠페인

- 학교폭력 예방교육 계획 수립(학교 자체서식 사용 가능)

2026학년도 학교폭력 예방 계획(예시)

○○○학교

- I. 목적
- II. 현황 및 실태분석
- III. 방침
- IV. 학교폭력 예방 세부 추진계획
 1. 추진일정
 2.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예방교육
 3.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예방교육
 4. 학교문화 책임규약 운영
 5. 교직원 예방교육 및 역량강화 연수계획
 6. 학부모 예방교육 계획
 7.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
 8. 예산계획
- V. 특색있는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1교 1특색 프로그램 운영)
- VI. 기대효과

➤ 교육과정 연계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

- 목적: 모든 학교에서 학생의 사회성·정서 역량과 학교폭력 인식 및 대처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연계 예방교육 강화
- 단위학교 학교폭력 양상 및 실태를 파악하여 학교 교육계획(학교, 학년, 학급 교육과정)에 어울림 프로그램 활용을 위한 수업시수 편성, 교과 진도 계획 등에 반영
 - (운영 대상/교과) 모든 학급/모든 교과(초·중·고·특수학교)
 - (수업 운영)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학급별 연간 11차시 이상** 편성·운영

※ 11차시에 사회정서교육 6차시,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3차시 포함

(예) 어울림(2차시) + 사회정서교육(6차시) + 사이버폭력예방교육(3차시)

※ 사회정서교육 학급별 교육과정 기반 부산형 사회정서교육 자료 개발, 보급(5종, 각 17차시)

※ 디지털 시민교육, 도박예방교육 등과 연계 범교과 학습 주제로 편성·운영

• 내용

- ① 어울림(사이버어울림 포함)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사회성·정서 역량이나 학교폭력 인식 및 대처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수업 전개
- ②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를 활용한 월별 활동 강화
- ③ 중학교 자유학기 ‘주제선택활동’ 시간에 ‘교과연계형’, ‘주제선택형’ 어울림 프로그램 등 연계
- ④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의 ‘폭력예방’ 영역에 어울림 프로그램 연계
- ⑤ 단위 학교 특성에 맞는 ‘어깨동무활동’ 운영(언어폭력 예방 및 학교폭력예방 캠페인활동, 회복적 생활교육, 또래상담동아리 등)

※ 관련자료: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https://www.stopbullying.re.kr>)

(ID: Stopbullying051, 비밀번호: qntks051!@)

- 단위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예방교육 계획 수립 → 수업운영 → 평가 환류가 체계적으로 선순환될 수 있도록 구성·운영

➤ 학교폭력 예방교육 자료 탑재 안내(p146~157, [붙임4~7])

〈 학교폭력 예방교육 자료 탑재 〉

- 부산광역시교육청 원클릭 생활교육 ☞ <https://home.pen.go.kr/oneclick/main.do>
-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 누리집 ☞ <https://www.stopbullying.re.kr>
- 도란도란 학교폭력예방 누리집(에듀넷·티-클리어) ☞ <https://doran.edunet.net>

-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 누리집 계정(로그인)

	구성방법	부산
아이디	알파벳 대/소문자 + 숫자(지역번호)	Stopbullying051
비밀번호	알파벳 소문자 + 숫자 + 특수기호 자판을 영문으로 해 두고 한글로 부산051!@	qntks051!@

-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 누리집 탑재 자료

구분	자료 형태
학생 어울림 프로그램(46종)	PPT, 학생용 학습지, 안내서
학부모 어울림 프로그램(24종)	PPT, 안내서
사이버어울림 프로그램(36종)	PPT, 학생용 학습지, 안내서
교과연계 어울림프로그램(15종)	PPT, 학생용 학습지, 안내서
교과연계 사이버어울림 프로그램(16종)	PPT, 학생용 학습지, 안내서
어울림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7종)	PPT, 학생용 학습지, 안내서
자유학기(학년)제 연계프로그램(5종)	PPT, 학생용 학습지, 안내서

➤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 소통콘서트, 체험 연극 지원

- 대상: 희망 초·중·고등학교(20교)
- 내용: 학교폭력 예방 연극관람 및 역할 체험, 강연 등
- ※ 공문으로 신청 안내

➤ 학교폭력 예방 선도학교 운영

- 대상: 희망 초·중학교(15교)
- 지원예산: 교당 2,000천원
- 지정기준: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 신고·심의 건수, 학교장 자체해결 건수, 학생·교사·학부모 인식조사 결과, 학교폭력 예방교육 참여율 등
- 내용: 학생 구성원 간의 책임 의식 강화 및 학교폭력예방, 사회성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운영방법
 - 학교문화 책임규약 운영 내실화 및 학교 내 자체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
 - 학생 사회성 함양을 위한 학교 내 자체 프로그램 운영 또는 전문기관(전문가) 연계 프로그램 운영
 - 학생 주도의 갈등해결 및 방어 행동 실천을 위한 또래상담 동아리 운영
 - 학생 관계형성 강화를 위한 체험캠프 및 각종 교내행사, 마음 챙김 프로그램, 감정코칭, 회복탄력성 등 전문기관(단체) 개발 프로그램, 학교 자체 개발 프로그램 활용 가능

> 초등 1~3학년 관계회복 숙려제 운영

- 제도: 경미한 사안이 많은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간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심의 이전에 관계회복 프로그램 실시로 교육적 회복 노력을 우선하고, 종료 시까지 전담기구 심의 유예
- 대상: 전체 초등학교 1~3학년 학생 간 발생한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
 - * 학교장 자체해결 가능한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안 대상
- 관련 학생이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동 프로그램 참여를 거부할 경우에는 피·가해 관련학생 개별 맞춤형 상담 실시
- ※ 관련 학생 중 1명이라도 4학년 이상이면 미적용

> 『학교폭력 Zero! 만들기』 교육청-시청 협력사업 추진(2년차)

- 목적: 교육청과 시청의 협력을 통한 부산형 학교폭력예방 우수모델 확산
- 세부 내용
 - 기간: 2026. 3월 ~ 12월
 - 대상: 초등학교 10교, 중학교 5교
 - 사업추진 기관: 학교폭력예방회복조정센터
 - 주요 내용
 - ▶ 1년차 기본과정 이수 후 2년차 심화과정 운영
 - ▶ 신뢰서클 실습을 통한 신뢰관계 형성 및 학생 주도 책임 중심의 공동체 문제해결력 향상
 - ▶ 회복적 생활교육·도래조정 양성교육 및 추수지도
 - ▶ 교사 대상 도래조정자 양성 및 운영방법, 회복적 대화 기법 교육
 - ▶ 학부모 대상 갈등상황 발생 시 관계회복을 위한 의사소통 교육 및 회복적 실천 기술 교육
 - ▶ 개인/집단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문화 조성

> 초등학교 학교폭력예방 보직교사 증치

- 목적: 학교폭력예방 보직교사의 증치를 통해 사안 대응의 전문성과 연속성, 사안 처리의 신속성과 정확성 제고
- 기간: 2026. 3. 1. ~ 2027. 2. 28.
- 대상: 초등학교 252교
- 내용: 학교폭력 예방교육, 사안처리 및 후속조치, 실태조사 등 운영

▶ 학교폭력 위기 대응 지원을 위한 『푸른꿈교실』 운영 지원

- 대상: 전체 중·고등학교(316교)
- 내용
 - 학교폭력 책임교사 또는 생활교육부장 수업경감 강사비 지원
 - 학교폭력예방 및 사안처리, 부적응학생 집중지도를 통한 학교폭력 위기대응 지원
- 추진방법: 단위학교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통합사업비 교부
- 지원금액: 7,333천원
 - 산출내역: 시간당 강사비 30,810원(산재·고용보험료: 강사비의 2.7% 포함) × 7시간 × 34주
- 운영방법
 - 주당 지원 시수 및 기간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탄력적 운영
 - 수업지원 강사의 주당 최대 시수는 14시간 이하(타교 포함)
 - 강사 선정은 「2026년 유·초·중등(특수)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교원인사과)」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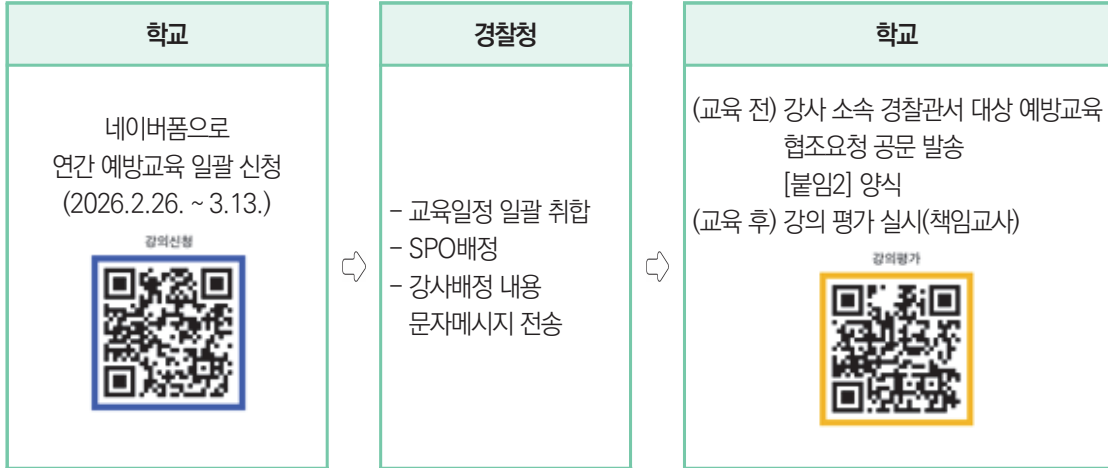
▶ 대상별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교육 추진

- 학생, 학부모, 교직원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

구 분	내 용	방 법	빈 도
학 생	학교폭력의 개념, 실태, 대응 요령, 토의/토론을 통한 갈등해결 및 문제해결 방법 등	소규모 학급 단위	학기별 1회 이상
교직원	학교폭력 관련 법령, 대응 요령,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학생 대상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운영 방법 등(시행령 제17조제2항제5호)	자체 교육, 직무연수 적극 이수 ※ 부산교육연수원 통합직무연수는 1학기만 인정, 별도 교육 실시 필수	
학부모	학교폭력 징후 판별 및 대응요령, 가정에서의 인성 교육 등(시행령 제17조제2항제6호)	학부모총회나 방과 후 학부모 교육 시 실시 ※ SPO, 학교폭력예방교육 컨설턴트 활용	
기타	• 학급 단위 예방교육을 실시함이 원칙(시행령 제17조제2항제2호) • 학생, 교직원, 학부모를 별도로 교육함을 원칙으로 하되, 내용에 따라 함께 교육할 수 있음 • 학교폭력 실태,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인 예방교육 프로그램 구성·운영 • 자치법정, 또래활동, UCC 경진대회, 학급회의, 역할극 등 체험적인 방법 적극 권장 •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을 활용하여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프로그램 실시 ※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은 「학교폭력 예방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17조의 학교폭력 예방 교육 실적으로 간주 • 기타 각 교과(성)폭력 예방교육 내용 요소 분석 후 수업 실시		

▶ 학교전담경찰관(SPO)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

- 학생 및 학부모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
- 학부모 교육은 학부모총회 등 학교 행사와 연계
- 신청 방법



※ 강의 진행 관련 문의: 부산경찰청 여성청소년과 담당자(☎051-899-2448)

※ SPO예방교육 강사비: 어울림, 어깨동무 사업비 사용

※ 신청 기간 이후, 수시 SPO 학교폭력 예방교육도 QR로 동일하게 신청

- 청소년 경찰학교 운영(부산 5개소)

- 부산경찰청과 협력을 통한 학교폭력예방 청소년 경찰학교 운영 지원
- 주요 활동: 학교폭력예방교육, 학교폭력 피·가해자 역할극, 학교폭력 가해조치를 위한 조사 체험, 학생 심리상담, 과학수사 및 경찰관 역할 체험 등을 통해 학생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 지원
- 『교육감 지정 외부 특별교육 이수기관』으로 운영

연번	명칭	위치	교육문의
1	부산남부청소년 경찰학교	남구 용호동	610-8720
2	부산동래청소년 경찰학교	동래구 사직동	559-7118
3	부산진청소년 경찰학교	부산진구 당감동	890-9140
4	부산사상청소년 경찰학교	사상구 모라동	329-0017
5	부산해운대청소년 경찰학교	해운대구 좌동	665-0117

➤ 학교로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 및 연수 운영

- 구성: 2026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턴트 선정 지원
- 대상: 희망 초·중·고등학교
- 지원영역: 업무담당교사 컨설팅, 교직원·학부모 연수
 - 유형1) 어울림 프로그램, 사회정서교육 운영 담당교사 컨설팅
 - 유형2) 학교폭력예방 교직원 연수
 - 유형3) 학교폭력예방 학부모 연수

➤ 교원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 역량 강화

- 부산광역시교육연수원: (원격)교(직)원 필수통합연수 이수 시 법률상 의무교육 1회 인정
※ 1회는 별도 학교 자체 연수 실시
- 부산광역시교육연수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관계조정 전문가 양성(기본과정) 개설
- 중앙교육연수원:(학교폭력예방)사이버어울림 프로그램 관련 연수(14종)

➤ 학부모(보호자) 대상 예방교육 강화

- 교육지원청, 지자체 직장교육 연계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 운영
- 실제 사례를 담은 「학교폭력 궁금증 해소 사례집」 배포
- 분기별 발송되는 ‘학부모 소식지’ 적극 활용(가정통신문)
- 학교 구성원으로서 학부모의 학교폭력에 대한 이해 및 책임감 제고를 위해 단위 학교별 『학교문화 책임규약』에 예방교육 의무 명시(학기당 1회 이상)

〈참고〉 ‘자녀 관계개선을 위한 학부모용 어울림 프로그램’ 원격교육(총 5차시)

- ▶ 내용: ① 공감 및 의사소통 ② 감정조절 ③ 자기존중감
 ④ 자기의 감정을 읽는 대화기술 감정코칭
 ⑤ 학교폭력 인식과 대처 및 갈등해결
- ▶ 방식: 한국어·영어·중국어·일어·베트남어·러시아어 등 6개 언어(자막) 및 수화 제공
- ▶ 탑재: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 누리집(<https://www.stopbullying.re.kr>)
 학부모On누리(<https://www.parents.go.kr>)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기 초 밀착상담 실시

- 학기 초 담임교사 밀착상담 및 상담(교)사 연계 상담 운영

- 학기 초 집중적인 상담을 통한 위기학생 조기 파악 및 우호 관계 형성
- 조례 및 종례시간 활용
 - ▶ 언어·행동을 통한 학생들과의 공감대 형성
 - ▶ 학생 표정, 복장, 상태 관찰 등 개별학생 파악 및 관심 가지기
 - ▶ 심리검사·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별 상담
 - ▶ 필요시 교내 전문상담(교)사 상담 연계 및 교육지원청 위(Wee)센터 연계
- 매학기 1회 이상 학생과 1:1 면담 실시 및 면담 결과 학부모에게 통지 (전화, 문자 등 다양한 방법 활용)
 - ▶ 신학기 상담주간 활용 학부모와 학생 상태 정보 공유
- 학생생활교육 누적 기록관리
 - ▶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의 관련 사실, 상담, 치료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별로 누적 기록·관리 하고, 생활교육 자료로 활용

▶ 교육부·관계 기관 연계 학생 참여 중심 학교폭력 예방활동 지원

- 또래 상담,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활동, 다양한 학교폭력 예방 학생동아리 구성·운영 등 학생 참여 중심 예방활동 지원
- 학교폭력 추세 대응을 위한 예방교육 자료 및 원격콘텐츠 개발·보급

2026학년도 교육부-17개 시도 공동 학교폭력 예방 추진 사업

- 학교폭력 예방 컨설팅단·학생서포터즈단 구성 및 운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어울림 프로그램 자료 보급(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언어문화 개선 프로그램 고도화(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또래상담자 등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 또래관계 개선 프로그램 보급(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사이버스 운영 및 기능 개선, 사이버어울림 프로그램 재구조화 및 재개발(한국교육학술정보원)
 - 참여형 연극·강연회, 학생 참여형 연극 프로그램 보급(푸른나무재단)
 - 그 외 다양한 학교폭력 예방활동 운영 관계 기관 연계 추진
- ※ 관련 사업은 공문 등을 통해 안내

붙임1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 서식

1. 『학교문화 책임규약』 안내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 안내

제 2026 - 00 호
 배부대상: 전학년
 담 당: ○○○○부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올해 우리 학교는 무엇보다 학생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총한 학교폭력 예방과 안정적인 학생 생활지도를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만 교육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학부모와 학교도 관심을 가지고 책임을 나누어야 합니다.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은 교육공동체(학생, 학부모/보호자, 교사)가 함께 학교폭력 및 학생생활지도와 관련한 내용을 이해하고, 학교 구성원으로서 가져야 할 책임을 확인하며, 실천을 다짐하는 약속입니다.

『학교문화 책임규약』은 학교 구성원 간 공감대 형성을 통해 학교폭력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학교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여 각자의 책임을 정하고 실천을 다짐하는 책임규약 활동을 통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모두의 학교'를 만들고자 합니다.

◆ 『학교문화 책임규약』은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 ▶ 학교 구성원 모두가 주도성을 가지고 참여하여 연대함으로써 긍정적인 학교 문화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 ▶ 학교폭력 및 생활지도와 관련한 문제를 학생의 개인적인 문제로만 보지 않고, 학교 구성원 모두가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협력하고자 하는 실천적 학교문화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 ▶ 학교 구성원 모두가 각자의 책임을 인식하고 실천하여 행동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바람직한 학교 문화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 주요내용

※ 필요한 경우 가정통신문의 붙임으로 활용

1. 책임규약 목적

- 학교폭력 및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학교 구성원의 이해를 돕고, 각자가 책임 의식을 가지고 규약을 실천함으로써 모두의 학교를 위한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학교폭력에 대한 이해

-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에게 신체·정신·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는 행동을 말합니다. 학교에서는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학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방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학교폭력을 당하거나 목격한 경우에는 학교 또는 경찰(112)에 신고해 주세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 제2조(정의) 1.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 ▶ 제15조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3. 행동에 대한 책임 인식

-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의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결정 전이라도 가해학생으로 신고될 경우 피해학생과 즉시 분리되며, 사안에 따라 학교장 긴급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 피해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해 보복하는 경우, 위의 조치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 가해학생 조치사항: 1호(서면사과), 2호(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교내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이수),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퇴학_고등학교만 해당)

4. 교육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책임

- (학생) 학칙 준수, 타인 존중 및 배려, 가해행위 금지, 학교폭력 목격 시 신고 등
- (학부모/보호자) 가정에서의 인성교육 및 학교폭력 예방·대응 교육
- (교사) 안전하고 비폭력적인 학교문화 조성, 학생 참여·체험 중심의 예방교육 실시, 학교폭력 발생 시 신고·적극 대응 등

5.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이해 및 준수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란 학생들의 학습권 및 인권의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시 법령에 따라 학생을 지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 ▶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 ▶ [생활지도 분야] 학업 및 진로, 보건 및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 학생생활 전반
- ▶ [학생생활지도 방법]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지도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 의견 수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바람직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학교 구성원인 학생과 보호자/학부모, 교직원이 함께 학교폭력 및 생활지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구성원별 책임을 확인하고 실천을 다짐하는 ‘학교문화 책임규약’을 맺고자 합니다. 학생과 보호자/학부모, 교직원이 함께 참여하여 학교 구성원별 책임을 담은 규약서를 만들고 규약 체결을 통하여 모두의 학교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책임 의식을 공고히 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 제시를 부탁드립니다.

1. 의견 수렴 내용

학생으로서 자신의 성장과 건전한 학교문화 형성을 위한 책임(행동과 자세)

보호자/학부모로서 학생의 성장과 학교의 건강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책임(행동과 자세)

2.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 의견 제안 방법

가. 학교 누리집 공지사항 또는 학교 자체 알리미 서비스에 첨부된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 필수

내용 확인 후 학교 구성원별 책임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써서 제출하기

나. 기 간: 2026. 0. 0.(요일) ~ 2026. 0. 0.(요일)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

다. 대 상: 학생, 보호자/학부모

라. 제안방법: 가정통신문 회신

----- < 절 취 선 > -----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 의견 수렴

()학년 ()반 학생 성명 ()
보호자/학부모 성명 ()

학생	희망하는 내용	(예) 학교 규칙을 존중하며, 준수한다.
	이유	
보호자 학부모	희망하는 내용	(예) 학교의 교육활동을 존중하며 문제 발생 시 평화롭게 소통한다.
	이유	

2026. 0. 0.

○○○○ 학교장

※ [모두의 학교를 위한 우리 학교 구성원으로서의 책임] 문구 예시(안)

학생

- 학교규칙을 존중하며, 준수한다.
- 학교에 있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한다.
- 친구를 괴롭히거나 따돌리는 등 학교폭력을 하지 않는다.
- 친구를 괴롭히는 사람을 본다면, 방관하지 않는다.(신고하기, 주변인에게 도움 요청하기)
- 다른 학생들을 존중하며, 인권과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선생님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 안전하고 서로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

보호자/학부모

- 학교규칙을 존중하며, 아이가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아이가 학교에서 선생님과 친구를 존중하도록 독려한다.
- 학교의 교육활동을 존중하며, 문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평화로운 해결을 위해 학교와 소통한다.
- 학교 안팎의 자료를 활용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도록 노력한다.
- 안전하고 서로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함께한다.

학교

- 학교 구성원이 서로 존중할 수 있는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교육활동을 실시한다.
- 안전하고 비폭력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 학교에서 문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평화로운 해결을 위해 소통한다.



【비대면 의견 수렴】 온라인-안내글 및 문항(예시)

온라인-안내글

○ 학생 대상(설문 프로그램 입력 내용 예시)

(학생)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위해 학생으로서 지켜야 할 행동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친구, 선생님, 학교를 위해 지켜야 할 예절과 자세를 떠올려 써 봅시다. (예) 친구를 괴롭히지 않고, 배려하며 존중하겠습니다. 선생님을 존경하며 예의를 지키겠습니다.	〈주관식〉 학생으로서 지켜야 할 행동을 써 봅시다.
안내글	문항

○ 교사 대상(학교자체 메신저 입력 내용 예시)

(교사)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촘촘한 학교폭력 예방과 교사들의 안정적인 학생생활지도를 위해서는, 학생들만 교육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학부모와 교사도 관심을 가지고 책임을 나누어야 합니다. 이에 학생, 학부모, 교사가 각자의 책임에 대한 문장을 모아 우리 ○○초의 ‘학교문화 책임규약’을 만들고자 합니다. (현재 학생과 학부모들의 책임문장은 잘 모아지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함께 동참해 주세요.) 모두가 행복한 ○○초를 만들기 위해 교사로서의 책임과 자세에 대한 다짐이 담긴 문장을 써 주시면 됩니다.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0월 0일까지)	〈주관식〉 모두가 행복한 ○○를 만들기 위한 교사로서의 책임과 자세를 써 주세요. (예: 안전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학생의 마음을 공감하고 존중하겠습니다 등)
안내글	문항

○ 학부모/보호자 대상(학교자체 알리미 서비스 입력 내용 예시)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 학부모 의견 수렴	제 2026 - 00 호 배부대상: 전학년 담 당: ○○○○부
---	--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올해 우리 학교는 무엇보다 학생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촘촘한 학교폭력 예방과 안정적인 학생 생활지도를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만 교육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학부모와 학교도 관심을 가지고 책임을 나누어야 합니다.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은 교육공동체(학생, 학부모/보호자, 교사)가 함께 학교폭력 및 학생생활지도와 관련한 내용을 이해하고, 학교 구성원으로서 가져야 할 책임을 확인하며, 실천을 다짐하는 약속입니다. 이에 교육공동체인 학생, 학부모, 교사가 각자의 책임에 대한 의견을 모아 **우리 ○○초등학교의 ‘학교문화 책임규약’**을 만들고자 합니다.

모두가 행복한 ○○초등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부모로서의 책임과 자세에 대한 의견**을 써 주세요.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0월 0일까지)

모두가 행복한 00초를 만들기 위한 학부모로서의 책임과 자세

★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좋은 의견을 작성해 주세요. ★

✓(예시) 학교의 생활지도 규칙과 선생님의 전문성을 존중하겠습니다.

✓ _____

2026. 0. 0.

○○○○학 교 장

【대면 의견 수렴】 학생의 책임 공모전 활동지(예시)

학생의 책임 공모전 활동지



모두의 학교를 위해
학생으로서 지켜야 할 행동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예시) 선생님을 존경하고 친구들에게 예의를 지키겠습니다.
장난으로라도 친구를 괴롭히지 않고, 존중하겠습니다.

★ 위의 예시와 같이 자신의 생각을 써 주세요.

〈내가 만든 문장〉 학년 반 이름:

-----〈 절 취 선 〉-----



모두의 학교를 위해
학생으로서 지켜야 할 행동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예시) 선생님을 존경하고 친구들에게 예의를 지키겠습니다.
장난으로라도 친구를 괴롭히지 않고, 존중하겠습니다.

★ 위의 예시와 같이 자신의 생각을 써 주세요.

〈내가 만든 문장〉 학년 반 이름:

【대면 의견 수렴】 학교문화 책임규약 학급회의 활동지(예시)

‘학교문화 책임규약’ 회의 활동지(학급회의, 전교회의 활용)

※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이란?

교육공동체(학생, 학부모/보호자, 교사)가 함께 학교폭력 및 학생생활지도와 관련한 내용을 이해하고, 학교 구성원으로서 가져야 할 책임을 확인하며, 실천을 다짐하는 약속입니다.

※ 모두의 학교를 위해 학생으로서 지켜야 할 행동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예시)를 참고하여 내가 생각하는 적절한 책임을 떠올려 봅시다.

나의 의견	
친구를 위해 지켜야 할 일	✓(예시) 장난으로라도 친구를 괴롭히지 않고, 사이 좋게 지내겠습니다. ✓ _____
선생님을 위해 지켜야 할 일	✓(예시) 선생님을 존중하고 예의를 지킵니다. ✓ _____
학교를 위해 지켜야 할 일	✓(예시) 학교 규칙을 잘 이해하고 준수하겠습니다. ✓ _____

※ 모둠친구들과 각자 나의 의견을 말하고, 함께 협의하여 모듬의견을 만들어봅시다.

모듬 의견	
친구를 위해 지켜야 할 일	✓ _____ ✓ _____
선생님을 위해 지켜야 할 일	✓ _____ ✓ _____
학교를 위해 지켜야 할 일	✓ _____ ✓ _____

※ 모둠별로 만든 문장을 공유하고 전체의 의견을 모아봅시다.

전체 의견	
친구를 위해 지켜야 할 일	✓ _____
	✓ _____
선생님을 위해 지켜야 할 일	✓ _____
	✓ _____
학교를 위해 지켜야 할 일	✓ _____
	✓ _____

여러분이 함께 모은 문장이 우리 ○○○○학교의
'학교문화 책임규약'으로 만들어집니다.

3. 책임규약 확정 활동지

책임규약 확정(스티커 부착용 활동지)

○ 학생 대상

모두의 ○○초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

우리가 직접 뽑는 학생으로서의 책임!

친구/선생님/학교별로 가장 마음에 드는 문장에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친구를 위해 지켜야 할 책임		선생님을 위해 지켜야 할 책임		학교를 위해 지켜야 할 책임	
(예)아무리 친한 친구여도 예의와 양심의 선을 지키겠습니다.	스티커	(예)선생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존중하겠습니다.	스티커	(예)학교폭력이 없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스티커
(예)서로 다른 의견일지라도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겠습니다.	스티커	(예)선생님께 예의를 지키고 무례한 행동을 자제하겠습니다.	스티커	(예)학교 시설과 물건을 소중히 다루겠습니다.	스티커
(예)내 인권을 존중하듯 친구의 인권도 존중하겠습니다.	스티커	(예)선생님의 가르칠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스티커	(예)깨끗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스티커

○ 교사 대상

모두의 ○○초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

우리가 직접 뽑는 교사로서의 책임!

마음에 드는 문장에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예)학생의 마음에 공감하고, 존중하며 책임있는 자세로 가르치겠습니다.	스티커	(예)학교폭력이 없는 평화롭고 행복한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스티커
(예)학생의 바람직한 성장을 위해 동료교사, 학부모와 소통하고 협력하겠습니다.	스티커	(예)배려하고 공감하는 대화로 소통하며 따뜻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스티커
(예)학생과 교사 모두가 행복한 학교가 되도록 교육하겠습니다.	스티커	(예)공감하고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스티커

4. 『학교문화 책임규약』 결과 공유용 가정통신문 예시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 가정통신문 예시

(항목별 내용 제시 방식 및 서명란은 변경하여 활용 가능)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교육공동체(학생, 학부모/보호자, 교사)가 함께 학교폭력 및 학생생활지도와 관련한 내용을 이해하고, 학교 구성원으로서 가져야 할 책임을 확인하며, 실천을 다짐하는 ‘학교문화 책임규약’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학교에서 가정으로 안내드리고, 가정에서 학교로 제안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선정된 우리 학교의 약속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우리가 함께 만든 약속이 잘 지켜져 모두가 행복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 ○○○ 학교의 약속: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

학생의 약속

✓ 학교 규칙을 존중하고 준수하겠습니다. (예시)

✓ _____

학부모/보호자의 약속

✓ 학교 규칙을 존중하며, 선생님의 전문성을 존중하겠습니다. (예시)

✓ _____

교사의 약속

✓ 학생의 마음에 공감하고 진심으로 존중하겠습니다. (예시)

✓ _____

□ 책임규약 실천 동참 서명 (다른 활동으로 대체 가능)

나는 위의 내용을 모두 이해하고 있으며, 모두를 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함께하겠습니다.

학생	학부모/보호자
(서명/인)	(서명/인)

2026.00.00.

000학교장

붙임2

○○초등·중·고등학교

수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강사가 경찰서 소속일 때)
부산경찰청 생활안전부 여성청소년과장(강사가 경찰청 소속일 때)
(경유)
제목 학교폭력 예방교육 의뢰요청

1. 귀 서(또는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교에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가. 일시 및 장소 : 0. 0. 00:00~00:00, 00초·중·고등학교 대강당/각 교실 등
나. 교육대상 및 인원 : 전교생(000명) / 0학년(000명)
다. 교육방법 : 대강당 집체교육 / 반별 교육
라. 교육 요청강사 : 00경찰서(부산경찰청) 여성청소년과 00(계급, 생략가능) 홍길동

○○초등·중·고등학교장

기안 결재
시행 접수
우 /
전화번호 팩스번호 비공개(6)

붙임3

학부모(보호자) 학교폭력 예방교육 가정통신문 예시

교표	학부모(보호자) 학교폭력 예방교육	담당부서
		생활안전교육부 000-0000

학부모님의 가정에 평안함이 항상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평화로운 학교 공동체를 구성하고 학교폭력 걱정이 없는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관계회복프로그램 및 자주 발생하는 학교폭력 사례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

담당	학교			심의위원회	학교	
단계	초기대응 ※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안내할 수 있음		사안조사	학교장자체 해결 여부 심의	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조치이행
업무	▶인지감지 노력 -징후파악 -실태조사, 상담, 순찰 ▶신고접수 -신고접수 대장기록 -학교장 보고 -보호자, 해당학교 통보 -교육청 보고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분리 -피해학생의 의사확인을 통해 가해학생 즉시분리 ▶초기개입 -관련학생 안전조치 -보호자 연락	▶긴급조치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 ▶사안조사 (전담조사관, 전담기구) -사안조사 -보호자 면담 -사안보고	▶전담기구 심의 -자체해결 요건충족 여부 심의 -피해학생 및 보호자의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 서면 확인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심의위원회 개최 -조치심의 의결 -분쟁조정 ▶교육장 조치결정 -학교장 통보 -피해학생 서면통보	▶조치이행 -피해학생 보호조치 -가해학생 선도조치 ▶가해학생 조치사항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 ▶가해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

3. 학교장 자체해결제

▶ 학교장 자체해결제란?

-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제도

※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란?

-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 위원회에서 사안 심의를 통해 피·가해학생을 조치하는 제도

피해 학생에 대한 조치	1호	심리상담 및 조언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1호	서면 사과	6호	출석정지
	2호	일시보호		2호	접촉, 협박, 보복 행위금지	7호	학급교체
	3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3호	학교에서의 봉사	8호	전학
	4호	학급교체		4호	사회봉사	9호	퇴학
	6호	그밖의 조치		5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5. 관계회복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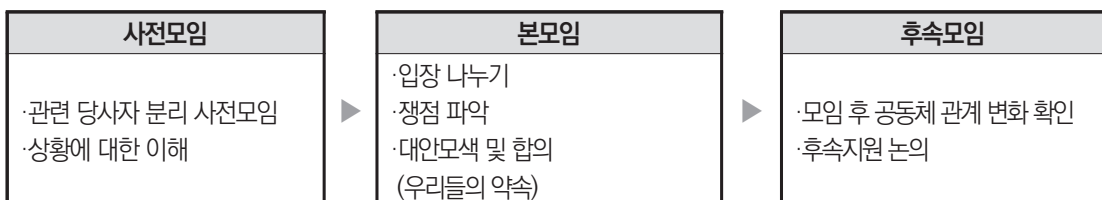
▶ 관계회복프로그램이란?

- 두 명 이상의 관련대상자들이 발생상황에 대하여 이해, 소통, 대화 등을 통해 원래 상태 또는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
- 제삼자가 개입하여 대화를 통해 학교폭력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

※ 모든 갈등 당사자의 동의 시 조정 가능

※ 모든 갈등 발생 시, 학교폭력 접수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에서 적용 가능

▶ 관계회복 프로그램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관계회복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피해 측	· 아픔과 요구를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자리에서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으로 마음 회복에 도움을 준다. · 교육보호자의 학교에 대한 신뢰 향상에 도움이 된다.
가해 측	· 대화를 통한 갈등 해결의 기회가 제공된다. · 잘못을 스스로 바로잡을 기회가 제공된다.

6. 학교폭력 피해 징후 파악방법 [학부모 체크리스트]

- 예전과 달리 늦잠을 자고 몸이 아프다며 학교 가기를 꺼린다.
- 학교 및 친구 관계에 대한 대화를 시도할 때 예민한 반응을 보인다.
- 밖에 나가는 것을 힘들어하고, 집에만 있으려고 한다.
- 갑자기 전학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꺼낸다.
- SNS의 상태 글귀 등이 부정적으로 바뀐다.
- 불안한 기색으로 정보통신기기를 자주 확인하고 민감하게 반응한다.

7.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가정에서의 역할

- 자녀의 하루 일과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 가지기
- 자녀의 친구 관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대화 나누기
- 자녀의 사이버상 메시지를 주의 깊게 보고 대화 나누기
- 담임선생님과 자녀에 대해 꾸준히 의논하기

8. 언어폭력

▶ 언어폭력의 종류

모욕	협박	명예훼손	언어적 성희롱
여러 사람 앞에서 타인에 대한 구체 정보가 없는 모욕적인 용어(욕설, 비하하는 말 등) 말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한 언행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성격, 능력, 배경 등)을 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을 퍼뜨리는 행위	음란한 농담, 외모에 대한 성적인 평가,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등

▶ 언어폭력 피해증상

- 자녀가 자신의 외모나 이름에 대해서 비하하는 말을 자주 한다.
- 낯선 단어(욕설, 비속어 등)에 대해 질문한다.
- 갑자기 핸드폰을 잠가 놓거나 핸드폰 문자가 자주 지워져 있다.
- 일기장, 메모장 등에 언어폭력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표현한다.

▶ 언어폭력 대처방안

- 자녀의 마음을 공감해 주면서, 위축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전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 언어폭력 상황에 대해서 육하원칙에 따라 객관화하여 기록하도록 한다.
- 언어폭력이 드러난 문자, 이메일, 메신저 내용을 캡처하여 저장하고, 통화 내용을 녹음하여 증거물로 가지고 있게 한다.
- 학교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에 신고한다.
- 심각한 언어폭력에 노출된 경우 전문 상담사의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의사소통

〈상황〉 저녁 식사에 함께하기로 한 자녀가 연락도 없이 약속 시간보다 1시간 늦게 도착했다.

비폭력대화 4단계 실천하기

1단계	관찰: 자신의 관점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보고 들은 것을 있는 그대로 말합니다. → (적용) “우리 OO, 왜 이렇게 늦었어?”
2단계	느낌: 생각이나 해석을 하지 말고 감정 단어로 나의 느낌을 그대로 말합니다. → (적용) “1시간이나 연락도 안 되어서 엄마랑 얼마나 걱정했는데... 무슨 일 있었니?”
3단계	바람: 느낌의 근원인 욕구(바람)를 ‘~중요해’, ‘~필요해’, ‘~원해’의 형식으로 말합니다. → (적용) “시간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
4단계	요청: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명확하고, 긍정적이며 구체적인 행동 언어로 부탁드립니다. → (적용) “우리 딸 다음부터는 늦을 것 같으면 미리 연락해줄래?”

9. 사이버폭력

▶ 사이버폭력의 종류

최신 유형	설명
SNS를 통한 괴롭힘	오프라인에서 벌어지는 왕따 행위를 모바일 공간으로 옮겨와서 자행하는 것. 예) 단체 채팅창에서의 욕설, 인신공격성 댓글, 유언비어 생산 등
SNS를 통한 성폭력	성적인 의도가 있는 상황에 고의적·무의식적으로 노출되는 것. 예) 낯선 사람과의 성적인 내용의 대화, 신체 사진 교환, 만남, 성적인 내용의 댓글, 음란 동영상과 사진 공유, 협박을 통한 신체 사진 요구 등
와이파이 셔틀	스마트폰의 테더링 기능을 이용해서 피해 학생의 스마트폰을 와이파이 공유기처럼 사용하는 것으로, 무선데이터 갈취를 통해 피해를 주는 것
게임 아이템 사이트 ID 갈취	게임을 하기 위해 필요한 아이템을 상납받기. 불법도박 사이트 등의 ID 개설 강요 후 갈취

▶ 가정에서의 사이버 폭력 예방 방안

1. 자녀의 일상생활에 대해 **정기적으로** 대화를 나눈다.
2. 바른 언어사용이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모범**을 보인다.
3. 사이버 폭력 피해가 발견되었을 때 직접 해결하기보다는 **학교에 도움을 요청**한다.
4. 자녀의 온라인 활동(**카카오톡, 페이스북 메신저, 틱톡** 등)에 관심을 가진다.
5. 컴퓨터 및 스마트폰에 **음란물과 폭력물**을 걸러주는 프로그램 혹은 앱(그린 i-net 등)을 설치한다.
6. 자녀에게 문제가 생길 경우 **직접 해결하지 말고 어른과 상의**할 것을 강조한다.
7. 스마트폰 및 인터넷 **사용 시간을 자녀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지킬 수 있게 격려한다.
8. 사건이 발생했을 때의 처벌보다는 그 전의 **예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9. 일상에서도 자신이 한 행동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알려준다.

2026년 00월 00일

OOOO학교장

※ 각종 양식은 원클릭 생활교육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붙임4

교육과정 연계 학교폭력 예방교육 편성·운영 방안

- (운영 대상/교과) 모든 학급* / 모든 교과
 -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7조에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급 단위로 실시(원칙)
- (운영 주체) 담임교사, 교과교사(초등의 교과전담교사 포함) 등
 - ※ 다만 전문상담(교)사의 단독 수업은 지양하고, 협력 수업 등으로 진행
- (수업 운영)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학급별 연간 11차시 이상 편성·운영 권장 (※ 사회정서교육 6차시, 사이버폭력 3차시 이상 포함하여 운영)
- (수업 방법) 어울림(사이버어울림)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사회성·정서 역량이나 학교폭력 인식 및 대처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수업 전개
 -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를 활용한 월별 활동 강화
- (평가) 교육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26.3.1. 시행) 등을 토대로 학교폭력 민감성 향상 정도* 등을 다면적으로 평가하여 기록
 - * 타인 이해 및 정서적 공감 정도, 의사소통 기술 및 타협과 설득 능력, 갈등 상황 인식 및 합리적 대처 능력, 소속감과 자존감, 정서 인식 및 부정적 정서 조절능력 향상 정도, 언어 사용 습관 정도 등
- (기타) 현장 중심의 탄력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예방교육 프로그램(‘어울림·사이버어울림’)을 타 수업내용*과 연계 시 해당영역의 수업시수를 모두 인정
 - * 인성교육, 안전교육, 다문화 교육, 장애이해교육, 성교육(양성평등교육), 정보통신윤리교육, 중학교 자유학기(학년)제 등

어울림·사이버어울림 프로그램과 연계 가능한 중복시수 인정 범위(예시)

- (안전교육)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의 ‘폭력 예방’ 영역에 어울림·사이버어울림 프로그램, ‘사이버중독 예방’ 영역에 사이버어울림 프로그램 등 연계
- (인성교육) 인성교육 시간에 어울림·사이버어울림 프로그램을 연계
- (중학교 자유학기(학년)제) 중학교 자유학기(학년) ‘주제선택활동’ 시간에 ‘교과연계형’, ‘주제선택형’ 어울림 프로그램 등 연계
- (정보통신윤리교육) 정보통신윤리교육 시간에 사이버어울림 프로그램 연계 등 다양
- 중복시수 인정 예시

구분	교과	성취기준	관련 요소	운영시수	활용 프로그램	시수인정 범위
중학교	국어	[9국03-08] 영상이나 인터넷 등의 매체 특성을 고려하여 생각이나 느낌 경험을 표현 한다.	·학폭예방교육 ·인성교육 ·안전교육 ·정보통신윤리교육	4H	· 어울림(기본): 공감 1H · 사이버어울림(기본): 사이버 의사소통 2H, 인터넷윤리: 1H	학폭예방교육: 4H 인성교육: 4H 안전교육: 4H 정보통신윤리교육*: 3H

* 정보통신윤리교육은 사이버어울림 프로그램을 활용한 시수만 인정

붙임5

학교급별 학교폭력 예방교육 중점 운영 사항

Chapter
03

준중과 배려의 학교폭력예방 및 관계회복 지원

◆【기본방향】

학교 특성에 맞게 어울림·사이버어울림 프로그램(기본·심화 교과연계·재구성 등)을 선택하여 운영

▶ 학교별 연간 11차시 이상 편성·운영

※ 11차시에 사회정서교육 6차시, 사이버폭력 3차시 포함

(예) 어울림(2차시)+사회정서교육(6차시)+사이버폭력 3차시

※ 학교급별 교육과정 기반 부산형 사회정서교육 자료 개발·보급(5종, 각 17차시)

※ 사회정서교육이란?

- 개념: 학생들의 긍정적 성장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학교 기반 교육

- 프로그램 내용

학습자료(4종)	초등 저	초등 고	중	고
대상	1~2학년	3~6학년	1~3학년	1~3학년
교육목표	나의 감정과 행동을 이해하고 조절하며, 타인과 건강한 관계를 맺고 갈등을 적절하게 다루는 역량 함양			
핵심역량	자기인식, 자기조절, 관계인식, 관계관리, 공동체 가치 인식관리, 마음건강 인식관리			
운영시간	교과(연계)수업, 조종레시간, 자율(시간)과제, 중학교 자유학기제, 동아리활동 등 활용 가능			
운영교과	관련 교과, 학교(급) 문화 조성			
개발자료	총 6차시 분량(학생용 워크북, 교사 지도서, 교수 학습 자료 등)			

▶ 특히, 중·고는 교과 간 협력으로 수업시수 편성이나 수업 운영 등을 유연하게 추진하되, 어울림(사이버어울림) 교과연계 프로그램 활용* 권장

◆【학교급별 운영 예시】

- **(초등학교)** 학생의 학교폭력 예방 역량 제고를 위해 학년별 어울림·사이버어울림 프로그램을 교과 및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에 지속적 적용 권장
 - 한 학생이 어울림(사이버어울림) 역량을 6년간 고르게 함양할 수 있도록 학년별 협의 등을 거쳐 교육과정에 반영
 - 사이버어울림 심층프로그램은 초등 3학년 이상에서 운영할 것을 권장하며, 사이버폭력 예방에 대한 사례 중심으로 사이버폭력 위험성 인식 및 행동 변화 유도에 초점
- **(중학교)** 공격성과 적대감 등 감수성이 예민해지는 발달시기를 고려하여 타인에 대한 친밀감과 공감 능력을 높이는 예방교육에 초점
 - 중학교 1학년은 자유학기(학년)제 취지를 살려 쉽게 개발한 '자유학기제 선택 활동을 위한 어울림 프로그램' 활용을 권장
 - ※ 자유학기(학년) 담당 교사가 학생부에 관련 내용을 쉽게 기재할 수 있도록 학생부 자유학기 활동 상황의 하위 영역별(주제선택활동, 동아리활동)로 기재 예시, 학생 자기 성찰 평가 양식 등을 개발
- **(고등학교)** 입시 준비 등으로 인해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교육과정과의 연계 철저
 - 국어·윤리·통합사회·영어·체육·기술·가정·한문·진로와 직업 수업(어울림·사이버어울림 교과 연계 프로그램 활용)에서의 연계를 우선 적용 권장

메인 6

한티폭력 예방교육 어버리프로그램 구성 체계도

구분	공통(어울림·사이버어울림)			어울림 프로그램			사이버어울림 프로그램		
	학교급	대상	중점사항	유형	종류	종수/차시	유형	종류	종수/차시
기본 프로그램	초·중·고 공통	일반 학생	역량 중심	① 공감 ② 의사소통 ③ 갈등해결 ④ 감정조절 ⑤ 자기존중감 ⑥ 학교폭력 인식 및 대처	① 초등 1-2학년군 ② 초등 3-4학년군 ③ 초등 5-6학년군 ④ 중학교용 ⑤ 고등학교용	30종/ 90차시	① 사이버 공감 ② 사이버 의사소통 ③ 사이버 갈등해결 ④ 사이버 감정조절 ⑤ 사이버 자기존중감 ⑥ 사이버 자기조절 ⑦ 인터넷 윤리의식 및 활용 ⑧ 사이버폭력 인식 및 대처	① 초등 저학년용(초 1-3학년) ② 초등 고학년용(초 4-6학년) ③ 중등용	24종/ 71차시
		학부모	역량 중심		① 초등 저학년용(초 1-3학년) ② 초등 고학년용(초 4-6학년) ③ 중학교용 ④ 고등학교용	24종/ 48차시	-	-	-
심층 프로그램	초·중·고 공통	가·피해 우려가 높은 관심군 학생 또는 학급	문제 유형 중심	① 신체·물리적 폭력 ② 언어폭력 ③ 따돌림 ④ 사이버폭력	① 초등 저학년용(초 1-3학년) ② 초등 고학년용(초 4-6학년) ③ 중학교용 ④ 고등학교용	16종/ 32차시	① 사이버 언어폭력 ② 사이버 명예훼손 ③ 사이버 따돌림 ④ 사이버 갈취 ⑤ 사이버 스토킹 ⑥ 사이버 영상유괴	① 초등학교용 ② 중등용	12종/ 32차시
교과연계 프로그램	중·고등학교	중·고등학생	교과목 중심	중학교 (국어, 도덕, 사회, 영어, 체육, 기술·가정, 한문, 진로와 직업)	① 국어 ② 도덕 ③ 사회 ④ 영어 ⑤ 체육 ⑥ 기술·가정 ⑦ 한문 ⑧ 진로와 직업	15종/ 394차시	중학교 (국어, 도덕, 사회, 영어, 체육, 기술·가정, 한문, 진로와 직업)	① 국어 ② 도덕 ③ 사회 ④ 영어 ⑤ 체육 ⑥ 기술·가정 ⑦ 한문 ⑧ 진로와 직업	16종/ 339차시
				고등학교 (국어, 통합사회, 영어, 체육, 기술·가정, 한문, 진로와 직업)	① 국어 ② 통합사회 ③ 영어 ④ 체육 ⑤ 기술·가정 ⑥ 한문 ⑦ 진로와 직업	고등학교 (국어, 윤리, 통합사회, 영어, 체육, 기술·가정, 한문, 진로와 직업)	① 국어 ② 윤리 ③ 통합사회 ④ 영어 ⑤ 체육 ⑥ 기술·가정 ⑦ 한문 ⑧ 진로와 직업		
자유학기(학년)제 연계 프로그램	중학교	중학생	중학교 자유학기(학년)제 중심	주제선택 활동 (주제형, 교과연계형), 동아리 활동 연계형	① 주제형 ② 국어 교과연계형 ③ 사회 교과연계형 ④ 도덕 교과연계형 ⑤ 동아리 활동 연계형	5종/ 118차시	-	-	-
누리집	http://doran.edunet.net			http://stopbullying.re.kr			http://cyberethic.edunet.net		

출처: 교육부(2022). '22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추진 계획(2022. 2. 15.).

붙임7

'어울림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 프로그램

구분	시기	주요 역량	내용
초 1·2 학년	3월	학교폭력 인식 및 대처	평화로운 우리 반을 만들어요
		관계중심 생활교육	친구 이름을 불러주세요
	4월	의사소통	친구와 이렇게 대화해요
	5월	자기존중감	나를 아끼고 사랑해요
	6월	사이버폭력 인식 및 대처	사이버폭력을 알고 올바르게 행동해요
		사이버 공감	따뜻한 사이버 공간! 친구의 마음을 느껴요
	7월	감정조절	화난 감정을 건강하게 조절해요
	9월	공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어요
		사이버 의사소통	사이버공간에서 쓰는 바른말 고운말을 배워요
	10월	사이버 감정조절	사이좋은 감정온도 찾기
	11월	갈등해결	친구와 갈등이 생길 때 이렇게 말해요
	12월	자기효능감프로그램	나는 나의 가장 좋은 친구예요
초 저학 년	3월	자기존중감	나를 소개해요
	4월	학교폭력 인식 및 대처	너랑 나랑
	5월	갈등해결	갈등! 슬기롭게 해결해요
	6월	인터넷 윤리의식 및 활용	나는 디지털 예절인
		사이버폭력 인식 및 대처	사이버폭력이 뭐예요?
	7월	의사소통	통하는 우리! 통하는 마음!
	8월	학교폭력 인식 및 대처	사이좋게 지내요
	9월	감정조절	나의 감정을 이렇게 말해요
	10월	공감	공감 대화를 나눠요
	11월	사이버 공감	사이버 공간에도 공감이 필요해요
		사이버상의 갈등관리 및 문제해결	이럴 때 사이버 갈등이 생겨요
	12월	자기존중감	칭찬으로 나를 알아가요
초 고학 년	3월	학교폭력 인식 및 대처	학교폭력 바르게 인식하기
	4월	공감	당신의 이야기에 공감합니다
	5월	감정조절	감정조절, 나도 할 수 있어요
	6월	사이버 자기조절	난 스스로 조절할 수 있어요
	7월	학교폭력 예방활동	또래와 상담해볼까요?
	8월	사이버폭력 인식 및 대처	이것도 폭력이 될 수 있나요?
	9월	의사소통	마음을 잇다
	10월	사이버 언어폭력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11월	갈등해결	영킨 마음을 풀어요
	12월	자기존중감	나를 바라보는 출발점
	1~2월	학교폭력 예방활동	방어자가 되어볼까요?

Chapter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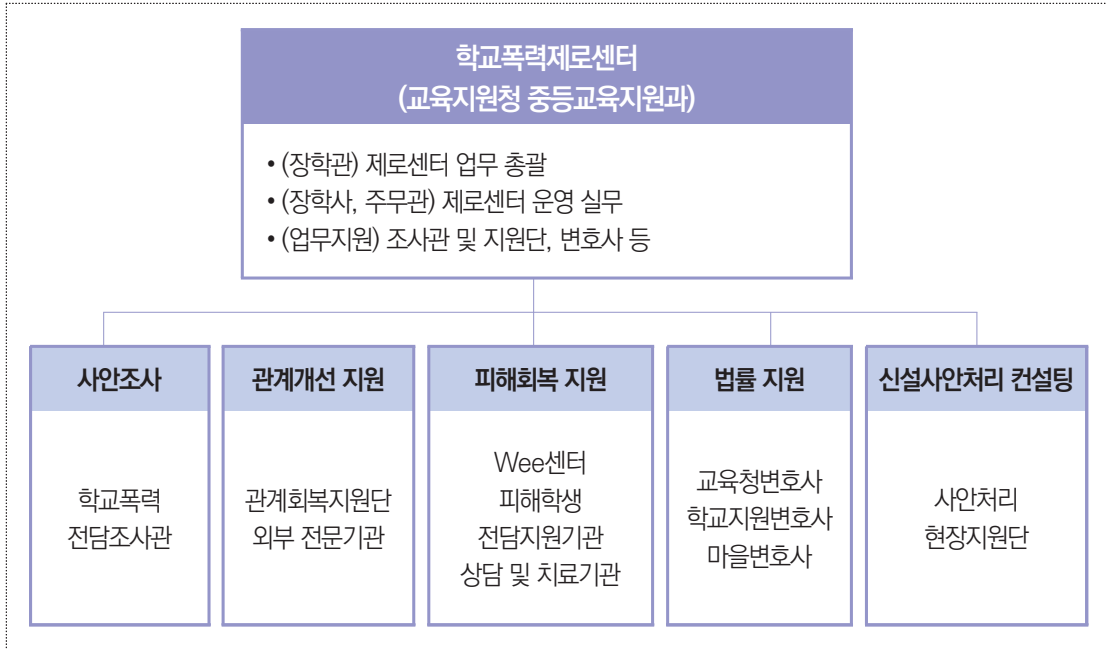
존중과 배려의 학교폭력예방 및 관계회복 지원

구분	시기	주요 역량	내용
중1	3월	학교폭력 인식 및 대처	긍정 넋지로 학교폭력 대처하기
	4월	공감	공감의 렌즈로 교실 바로보기
	5월	감정조절	디스크골프로 감정을 조절하는 사회화 체험
	6월	사이버 공감	넌 혼자가 아니야
		사이버 자기조절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하기
	7월	자기존중감	공동체 안에서 나와 나 알아가기
	8월	대인관계	소통의 기술로 친한 친구되기
	9월	의사소통	(-) 의미왜곡, (+) 반언어·비언어 표현 (=) 빛나는 의사소통
		사이버 의사소통	우리 사이를 바꾸는 한마디!
	10월	인터넷 윤리의식 및 활용 역량	인터넷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중	11월	갈등해결	소외 없는 공감 축구 선(善)수 되기
	12월	관계중심 생활교육	회복적 서클 활동으로 학년말 따뜻한 추억 만들기
	3월	공감	나, 너 그리고 우리
		학교폭력 인식 및 대처	학교폭력 예방의 첫 걸음
	4월	공감	공감의 비결? 잘 듣고 감정을 알아주는 것!
	5월	감정조절	감정은 생각에 따라 달라져요
	6월	사이버 자기조절	사이버 공간에서의 자기조절
	7월	자기존중감	우리는 협력 공동체
	8월	사이버폭력 인식 및 대처	꼼짝 마, 사이버폭력!
	9월	의사소통	평화로운 의사소통, 연습이 필요해
	10월	인터넷 윤리의식 및 활용	슬기로운 사이버 예절
	11월	갈등해결	갈등을 술술 풀어요
	12월	자기존중감	긍정의 언어로 '나·비' 날다
	1~2월	사이버상의 갈등관리 및 문제해결	우리는 학교폭력 방어자

구분	시기	주요 역량	내용
고1	3월	감정조절	인사이드 아웃(Inside Out), 나와 너의 감정 살피기
	4월	의사소통	너에게 가장 고운 말을 주고 싶다
	5월	자기존중감	우리는 너의 서포터즈
	6월	사이버 의사소통	사이버 어울림 대화법
		사이버폭력 인식 및 대처	사이버폭력 사례 분석 및 모의 판결
	7월	회복탄력성 프로그램	회복탄력성? 함께 알아보아요!
	8월	관계중심 생활교육	나와 너의 선(線)을 지키다
	9월	학교폭력 인식 및 대처	학교폭력 예방법령, 직접 찾아볼까요?
		인터넷 윤리의식 및 활용	너와 나의 소중한 개인정보 지키기
	10월	사이버 자기존중감	사이버 공간 속 진정한 나다움
	11월	공감, 감정조절	너도 그랬었구나, 나도 그랬어
	12월	갈등 해결	갈등을 통해 성장하는 우리
고2	3월	사전활동	학교폭력 인식 조사
		학교폭력 인식 및 대처	학교폭력이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
	4월	공감	공감할 수 있는 용기와 힘 기르기
	5월	자기존중감	우리를 사랑하는 시간
	6월	사이버폭력 인식 및 대처	그림자방에서 친구를 구출하라
		사이버상의 갈등관리 및 문제해결	사이버폭력 예방 정책 제언
	7월	학교폭력 인식 및 대처	우리만의 에티켓
	8월	감정조절	효과적인 감정조절 방법
	9월	학교폭력 인식 및 대처	평화로운 공동체를 향해, 한 걸음 더
	10월	의사소통	우리가 함께 만드는 언어 청정학급
	11월	사이버상의 갈등관리 및 문제해결	그림책으로 공감하는 사이버폭력
	12월	사후활동	학교폭력 예방활동 운영평가
	1~2월	사전활동	새 학년 교육과정 준비

3 예외없는 공정한 사안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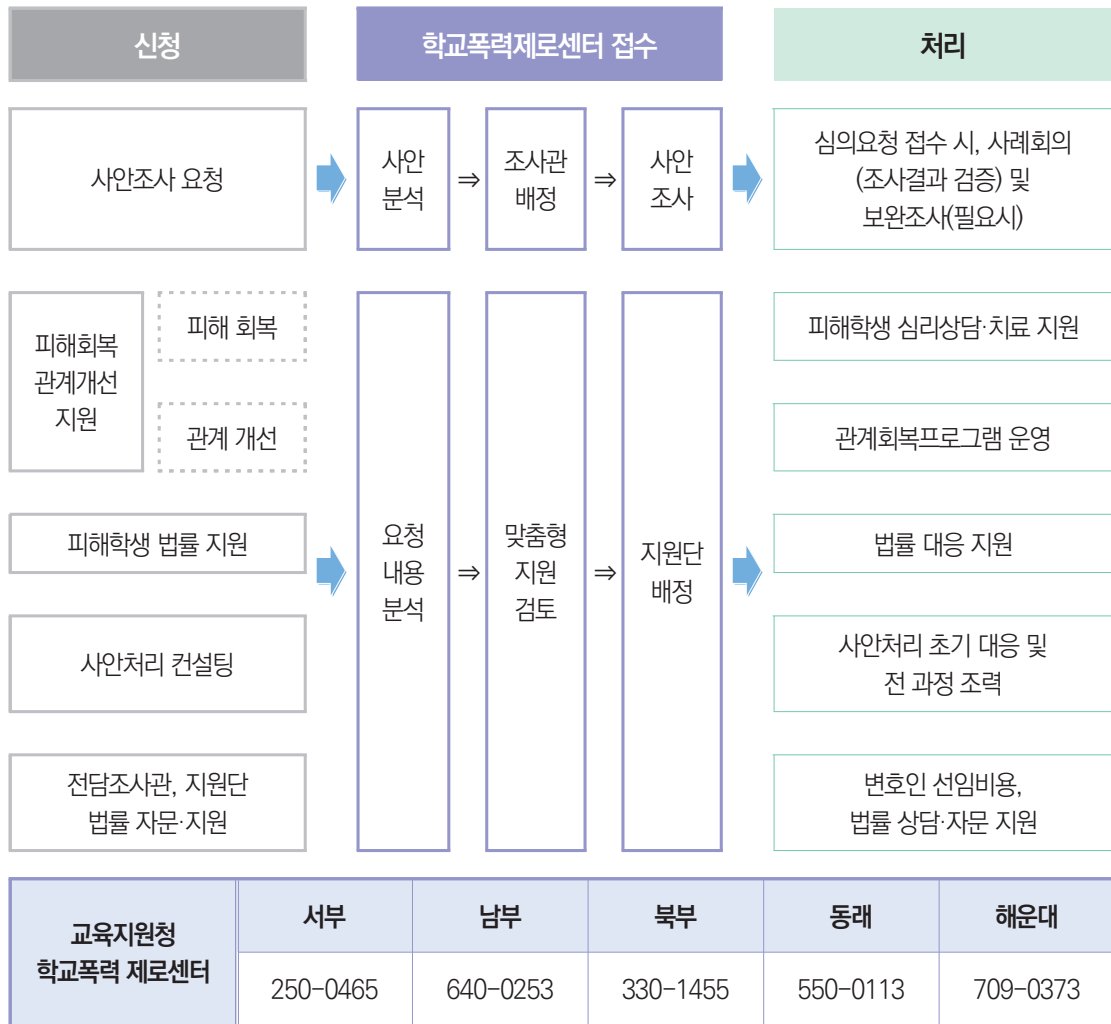
➤ 학교폭력제로센터를 통한 One-Stop 지원



➤ 주요 사업

- (사안조사)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위촉·관리
- (관계개선 지원) 관계회복지원단 위촉·관리, 피·가해학생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학교생활 정상화·적응 지원
- (피해회복 지원) 피해학생 심리상담 및 치료비 지원
- (법률 지원) 교육청변호사 위촉·관리, 가해학생측이 심의위원회 조치 결과 불복 시 피해학생 대상 법률 자문 등 지원
- ^{신설}(사안처리 컨설팅) '학교폭력 사안처리현장지원단'을 활용하여 학교 사안처리 초기 대응 및 사안처리 전반에 대한 조력
- ^{신설}(전담조사관, 지원단 법률 자문·지원) 전담조사관, 지원단 등이 정당한 업무 수행 중 아동학대로 신고·고발되어 입건 또는 피소 시 법률지원(변호인 선임비용, 상담·자문 등)

학교폭력제로센터 주요 사업 단계



➤ 학교폭력 사안처리 현장지원단 운영 및 컨설팅 실시

- 목적: 현장밀착형 학교폭력 사안처리 지문 및 지원체계 강화
- 운영방법: 고경력-저경력(2년 미만) 생활교육부장 멘토링 및 컨설팅
- 구성: 전문성을 갖춘 고경력 생활교육부장
- 운영 기간: 2026. 3월 ~ 12월
- 현장방문 컨설팅 및 수시 컨설팅(유선, 이메일 등)을 통한 현장밀착형 지원
- ※ 컨설팅 희망교 및 현장지원단 희망자는 자료집계로 신청(3월 중 공문발송)

▶ 사안 단계별 조치사항

단계	처리내용
학교	교사, 학생, 보호자 등의 신고 접수, 117 신고센터 등을 통해서 학교폭력 사건 발생 인지
학교폭력 사건 발생인지	※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안내할 수 있음 ※(초등 1~3학년) 관계회복 숙려제 운영



학교	- 신고 접수된 사안을 학교폭력 신고 접수대장(양식1-1)에 반드시 기록 - 학교장 보고 및 담임교사 통보 - 초기 사실확인 실시 - 관련학생 확인서(양식2-1)
신고 접수 및 초기 사실확인 등	- 신고접수된 사안 관련학생 보호자 통보 -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분리(양식1-2) - 가해학생에게 제2호 조치 시행 - 분리 및 제2호 조치 시행 사실을 관련 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 - 교육지원청에 48시간 이내에 보고(양식1-3), (양식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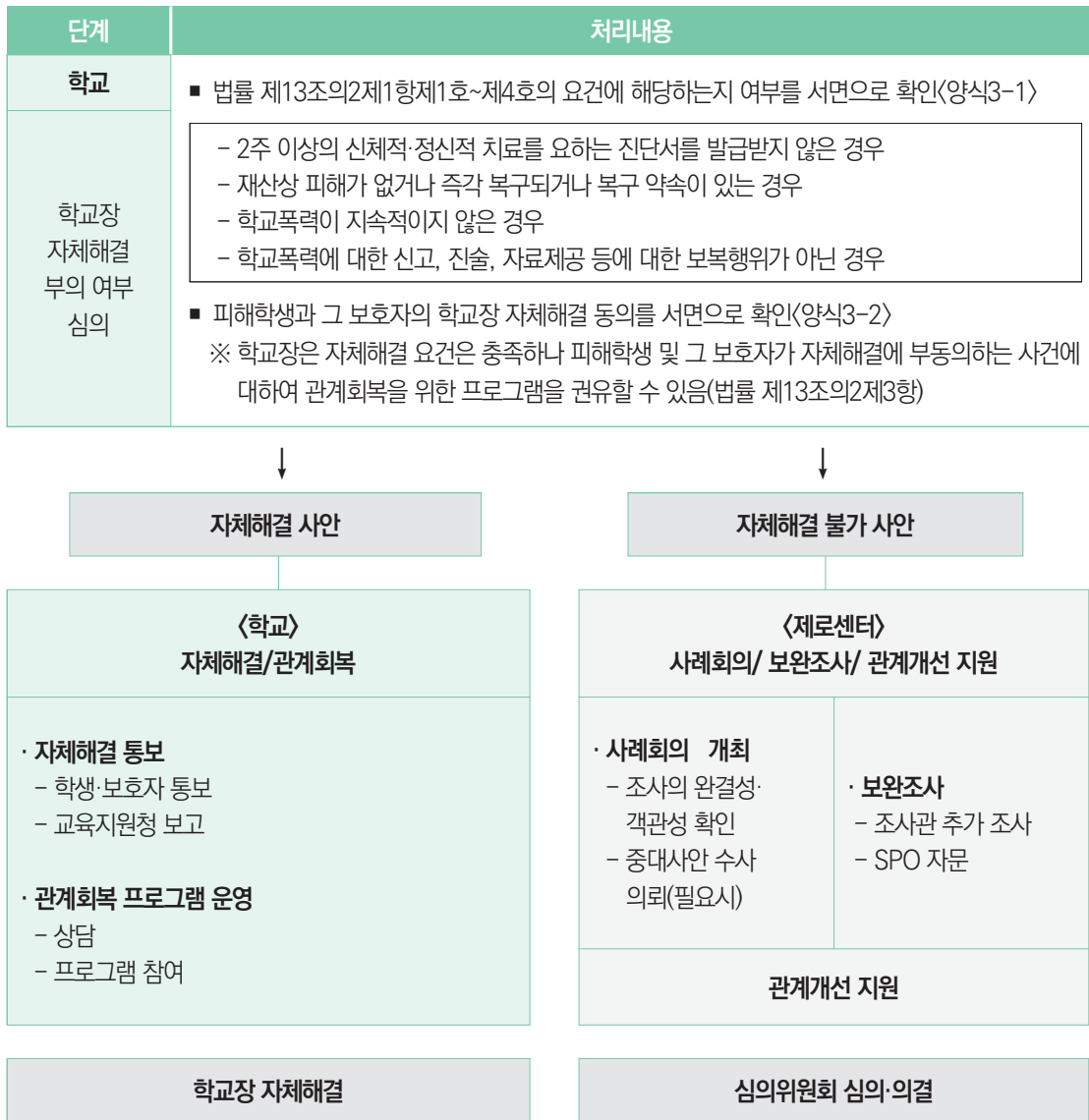


학교	관련학생 안전조치(피해학생-보건실 응급처치·119 신고·병의원 진료 등, 가해학생-격리·심리적 안정 등)
즉시조치 (필요시 긴급조치 포함)	- 피해학생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한 조치 우선 실시 - 성범죄인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성폭력 전문상담기관 및 병원을 지정하여 정신적·신체적 피해 치유 - 사안처리 초기에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긴급조치 실시 가능(양식2-3)



제로센터 (조사관) (자체조사 시 전담기구)	- 피해 및 가해사실 여부 확인을 위한 구체적인 사안조사 실시(양식2-1), (양식2-2) - 관련학생의 면담, 주변학생 조사, 설문조사, 객관적인 입증자료 수집 등 - 피해 및 가해학생 심층면담 -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육하원칙에 따라 사안조사 보고서 작성(양식2-4)
사안조사	- 성폭력의 경우, 비밀유지에 특별히 유의 - 장애학생, 다문화학생에 대한 사안조사의 경우, 특수교육 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학생의 진술 기회 확보 및 조력 제공 - 필요한 경우, 보호자 면담을 통해 각각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사안과 관련하여 조사된 내용을 관련 학생의 보호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 * 학교장 자체해결 동의 시 관련 동의서를 전담기구에 제출할 수 있음을 포함 - 추가로 발견된 피해 사실 및 쟁점에 대해 파·가해학생 등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추가로 학생 확인서 및 보호자 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음





※ 전담기구 심의결과와 자체해결 요건에 모두 해당하더라도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함

※ 사안 처리의 전 과정에서 필요시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학교는 학교폭력 관련학생 및 보호자에게 관계회복 프로그램에 대해 안내함

※ 각종 양식은 「2026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및 원클릭 생활교육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참 고

학교폭력이 아닌 사안의 종결처리

• 사안조사 결과 학교폭력이 아닌 사안(예시)

- 제3자가 신고한 사안에 대한 조사결과, 학교폭력이 아니었던 경우(오인신고)
- 학교폭력 의심사안(담임교사 관찰로 인한 학교폭력 징후 발견 등)에 대한 조사 결과, 학교폭력이 아니었던 경우
- 피해학생(보호자)이 신고한 사안에서 피해학생(보호자)이 오인신고였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조사 결과 학교폭력이 아니었던 경우

• 학교폭력이 아닌 사안의 처리

- 학교장은 초기 사실확인이나 조사관으로부터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후 전담기구 회의를 통해 학교폭력이 아님을 확인한 경우(양식 3-6) 교육지원청으로 보고
- ※ 다만,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경우 반드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해야 함. 심의 위원회에서 '학교폭력 아님'으로 결정할 경우 '조치없음'으로 처리 가능

참 고

가해자가 학생이 아닌 사안의 처리

- 가해자가 학생이 아닌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 대상 사안이 아니며, 학교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해야 함. 다만,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원하지 않을 경우, 학교장은 심의위원회를 요청하지 않을 수 있음(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미개최 동의를 받아 교육지원청에 보고) (양식 3-7)

▶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역할 및 조사관 조사 시 학교의 역할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역할

○ 학교폭력 사안조사

- 학교폭력 제로센터로부터 사안을 배정받은 후 학교폭력 파·가해사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 조사의 방법

- 현장조사 및 문서열람
- 파·가해학생·목격학생·관련교사·보호자 등 관계인에게 출석·진술·조사협조 요청
- 파·가해학생·목격학생·관련교사·보호자 등 관계인에게 자료제출 요청

(법률 제11조의2제4항)

- 관련학생 보호자와 면담을 할 수 있다.
- 학교장 자체해결 동의 시 관련 동의서를 전담기구에 제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한다.
※ 면담과정에서 자체해결 동의서를 조사관에게 제출하는 경우, 조사관이 학교에 전달할 수 있음
- 필요시, 관련 교사와의 면담을 진행할 수 있다.

○ 관계회복 프로그램 안내

- 학교폭력 사안조사 후 관련학생 및 보호자에게 관계회복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를 할 수 있다.

○ 사안조사보고서 작성 및 조사 결과 보고

- 신고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전담기구 및 제로센터에 보고한다.

○ 사례회의 참석

- 사례회의 참석하여 조사 결과를 설명한다.

○ 학교전담경찰관과의 정보 공유 및 조사에 대한 학교전담경찰관에 자문 요청

○ 그 밖에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정하는 사항

-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 학교폭력 사례회의 및 심의위원회에 참석한다.

조사관 사안조사 시 학교의 역할

■ 전담조사관 사안조사 시 교원 및 학부모 동석

- (원칙) 학생의 심리적 상태, 나이, 성별, 사안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교원 동석
- (예외) 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 판단하에 학부모 동석 가능

■ 학교장 자체해결 및 파·가해학생 간 관계개선·회복

■ 교육(지원)청에 사안접수 보고 시, 관련학생의 조사가 가능한 시간 기입

■ 책임교사 등 학교 관계자는 조사관의 사안조사 준비 지원

■ 조사관의 사안 조사 시, 학생들이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지 않도록 지도

■ 조사관이 학부모 면담 요청 시, 장소 제공 ex) 학부모 상담실 등

■ 조사관이 관련교사 등에게 출석·진술·조사협조 및 자료제출 요청 시 협조

■ 조사관이 접수한 학생 확인서 원본·증빙자료 관리 및 조사관에게 사본·스캔본 제공

※ 관련 문서에 암호를 설정하거나 보안문서로 저장하는 등 보안에 유의

※ 담당교사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자료 관리 대장' [양식2-7]을 작성·관리

※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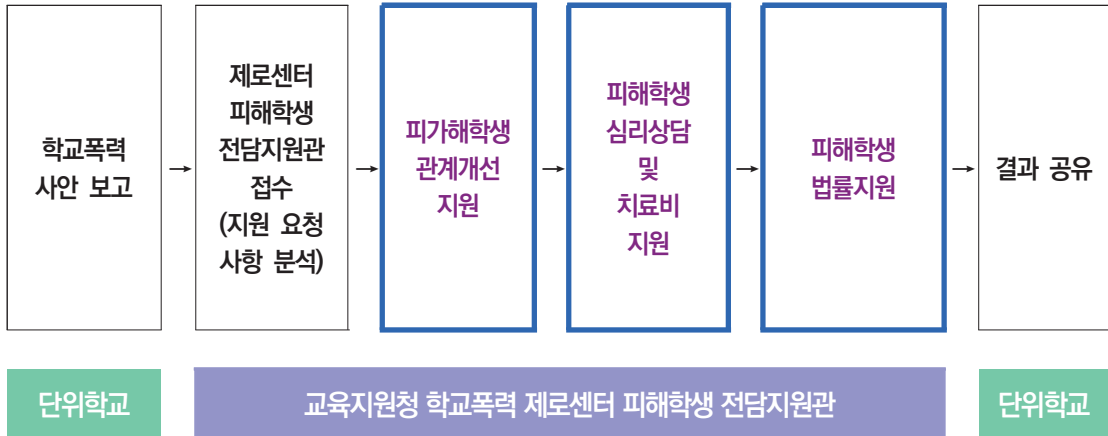
학교장은 사안접수 보고 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을 배정해줄 것을 요청하거나,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자체 사안 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음

▶ 단위학교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

구성 권자	- 학교의 장(전담기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함, 운영계획 수립 필요) ※ 필요한 사항: 심의방법, 업무분장, 임기 등								
구성원	- 교감, 학교폭력 책임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학부모 등 ※ 전담기구 전체 구성원의 1/3 이상을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학부모로 구성								
	전담기구 전체 구성원	4	5	6	7	8	9	10	
	학부모 위원	2	2	2	3	3	3	4	
임기	- 학교장이 정함(1년 권장)								
학부모 추천 방법	- 다양한 방법으로 모집(지명)된 학부모를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학교장이 위촉								
학부모 여비	- 학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지급 가능(전담기구 운영계획에 포함)								
역할	- 사안접수 및 보호자통보: 신고접수대장 기록, 보호자 통보, 학교장 보고 - 분리: 피해학생과 가해자(교사 포함) 분리(최대 7일) - 학교폭력 사실 확인 및 사안조사: 피해 및 가해사실 여부 확인 - 사안보고: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48시간 이내 보고(중대사안: 즉시 유선보고) -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심의: 객관적 요건 충족 여부 및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14일 이내) - 학교장 긴급조치 여부 심의: 법률 제17조제6항에 따른 피해학생 요청이 있는 경우 가해학생 6호, 7호 조치 여부 - 졸업 전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 심의: 4호, 5호, 6호, 7호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9호
	서면 사과	접촉, 협박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 단, 2023.2.28.이전 신고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4호, 5호, 6호, 8호 삭제심의 ※ 1호, 2호, 3호는 별도의 전담기구 심의 없이 절차에 따라 졸업과 동시 삭제 - 집중보호 또는 관찰대상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 - 학교폭력 실태조사								

4 보호하고 치유하는 관계회복 지원

▶ 학교폭력제로센터 피해학생 전담지원관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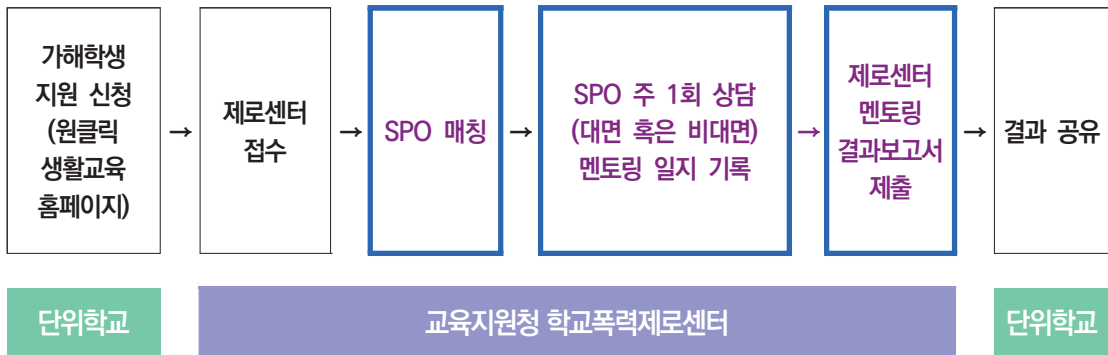
▶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

- 피·가해 학생 관계회복 프로그램 참여 희망 의사를 확인하고 단계별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사전-본-후속 모임)
- 피·가해 학생 및 학부모 대상 맞춤형 상담 운영
- 학급 내 학교폭력 및 갈등 발생 시 집단상담 운영
- 신청방법: 원클릭 생활교육 홈페이지 신청
(「원클릭 생활교육」 홈페이지 > 학교폭력 > 관계회복프로그램 신청)



▶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SPO멘토링 운영

- (대상) 7호 이상 조치 받은 가해학생
- (운영내용) 7호 이상 조치 받은 가해학생 재발방지 및 선도를 위한 SPO 멘토링(2개월 이상)
- 교내생활, 교우관계, 진로지도, 방과후 생활 등에 대한 1:1 상담
- 8호(전학) 받은 가해학생 전학 후 학교적응 지원
- (운영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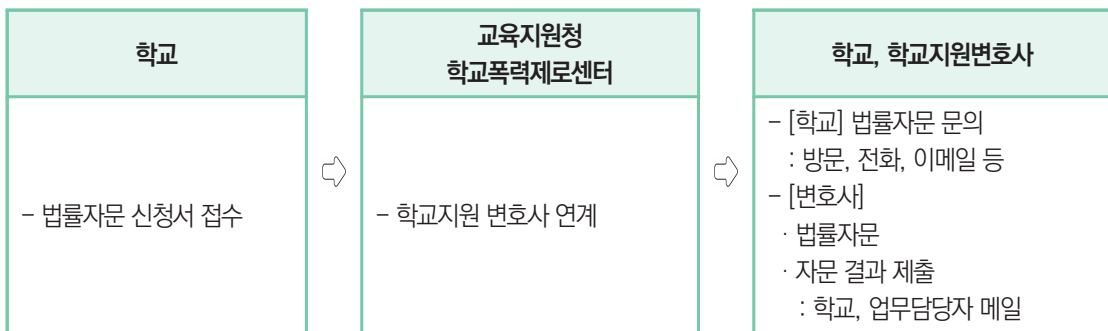
▶ 피해학생 심리상담 및 치료비 지원

지원요건	- (학교장 자체해결 종결 사안) 피해학생 심리상담 및 치료 필요시 - (심의위원회 조치완료 사안) 피해학생 1, 3호 미조치되었으나, 사안 종료 후 심리상담 및 치료 필요시
지원내용	- 심리상담 및 통원치료비(심리검사비 포함): 150만원 - 입원치료비: 300만원 ※ 단, 답페이크 성폭력의 경우 자체 내부심의 통해 추가 지원 가능
신청방법	(1차) 원클릭 생활교육 홈페이지 신청 - 「원클릭 생활교육」 홈페이지 > 학교폭력 > 피해 상담·치료 서비스 신청 - 학부모 신청서 및 동의서 제출 (2차) 심리상담 및 치료비 신청(공문 제출) - 심리상담 및 치료비 확인서, 영수증 학교 제출

▶ 피해학생 법률지원

- 조직: 교육청 변호사(5명) 및 학교지원번호사(54명, 지원청별 9~13명), 마을번호사(44명)

지원요건	-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학교 업무담당자
지원내용	- 학교폭력 사안처리 법률 자문 -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법률 자문 - 가해학생의 조치 불복 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법률 자문 및 소송 지원 - 법률자문: 20만원 이내 - 소송을 위한 변호사 수임료: 200만원 이내
신청방법	원클릭 생활교육 홈페이지 신청 - 「원클릭 생활교육」 홈페이지 > 학교폭력 > 법률지원 신청(학교지원번호사) 법률자문 신청서 제출



➤ 학교폭력 피해학생 선(先)치료비 지원(학교안전공제회)

- 학교폭력 심의 결과 피해학생 치료비 가해자 부담 조치 시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치료비 선지원 후 구상권 청구
- 근거 및 대상

근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4항
대상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호~2호 (교육감이 정한 기관), 제3호까지의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받은 학생

- 절차



– 지원내용

구분		내용	인정 가능 기간
1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교육감이 정한 전문 심리상담기관 에서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는 데 드는 비용	2년 (보상심사위원회 심의로 1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
2호	일시보호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일시보호를 받는 데 드는 비용	30일
3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받거나 의약품을 공급받는데 드는 비용	2년 (보상심사위원회 심의로 1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

– 교육감이 정한 피해학생 심리상담 및 치료기관

• Wee센터(5개)

구 분		센 터 위 치	전 화
Wee 센터	서 부	교육지원청(서대신동)	250-0454~8
	남 부	교육지원청(대연6동)	640-0205
	북 부	교육지원청(구포동)	330-1461~5
	동 래	연산중학교(연산1동)	801-9190~5
	해운대	교육지원청(좌동)	709-0481~5

• 교육감이 정한 피해학생 대상 심리상담 및 치료기관 지정(25개)

연번	기관명	주소	전 화
1	온몸심리상담센터	부산시 사상구 대동로 18, 3층	322-3450
2	봄길심리상담센터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3로 26 센텀스퀘어오피스텔 1712호	753-6549
3	은재심리상담센터	부산시 금정구 장전온천천로 109-1, 2층	915-6321
4	갈등회복센터 비상	부산시 동래구 총렬대로 380-1, 2층(안락동)	203-8116
5	사단법인 한국다문화청소년부산협회	부산시 영도구 절영로 448, 2층	417-0693
6	바로, 심리센터	부산시 동래구 사직북로 7, 세미프라자 801호	717-2886
7	온위로 심리상담센터	부산시 중구 광복중앙로 32-1, 건목빌딩 5층 502호	010-9607-7153
8	몸마음상담센터/부산트라우마 치료교육원	부산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40, 2층	900-0004
9	토닥토닥심리상담센터	부산시 해운대구 재반로 256번길 27, 3층	010-4823-0207
10	허그맘허그인 심리상담센터 해운대점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남대로 50, 센텀임페리얼타워 3층	703-4375
11	참그루아동가족심리상담 연구소	부산시 사하구 낙동대로 394-10, 4층	010-3152-3680
12	참사람창의놀이심리상담 연구소	부산시 수영구 연수로 324(망미동)	996-9696
13	아이사랑심리상담센터	부산시 북구 만덕대로 60, 2층	338-0900
14	허그맘허그인심리상담센터 부산연제점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90, 601호 (프라임시티)	866-0770
15	연세주니어상담센터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794, 엘리움 504호	791-0679
16	(주)마음의봄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217, 국제신문 2층 209호	506-7040
17	한양아이소리심리상담 부산서부점	부산시 사상구 가야대로 276, M-square 메디컬센터 11층	717-2833
18	부산예술심리교육센터	부산시 북구 산성로12번길 21, 3층	916-3003
19	연세심리상담센터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125, 시티타워 A동 407호	918-9559
20	온마루아동가족상담센터	부산시 강서구 명지국제 2로 28번길 3, 동건프라자 802호	791-1203

연번	기관명	주소	전 화
21	함께심리상담센터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130, 1304호 (연산동, 연산 SK VIEW(2단지))	010-8639-0822
22	마인드온심리언어발달센터	부산시 사하구 낙동대로 172, (연호빌딩) 3층	292-0075
23	나눔심리발달센터	부산시 서구 망양로 15, 2층 나눔심리발달센터	246-1619
24	부산정검다리심리상담센터	부산시 강서구 명지국제 6로 90, B동 15층 1506호(명지동, 오션퍼스트)	010-8789-7377
25	조은미 심리상담센터	부산시 부산진구 서면문화로 27, 818호 (부전동, 유원 골든타워오피스텔)	808-0806

※ 추가 지정기관 안내: 공문시행(2월 중) 및 원클릭 생활교육 홈페이지 탑재

• 교육감이 정한 가해학생 대상 심리상담 및 치료기관 지정(5개)

연번	기관명	주소	전 화
1	하트온심리언어발달센터	부산시 기장군 일광읍 해송1로 33 상가동 210, 211호	723-9700
2	부모온 부모교육심리상담센터	부산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27-2, 2층 부모온	852-5507
3	Find Me 상담연구센터	부산시 사상구 운산로 9 (2층)	070-4038-4240
4	나래심리상담센터	부산시 동래구 사직로 80, 223동 412호 (사직동, 사직쌍용예가 상가 4층)	506-6066
5	우리아이발달심리상담센터	부산시 사하구 낙동대로 392 정도빌딩 5층	208-6326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5초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심리치료)를 받은 경우 심리 치료 이수 시간 인정

※ 단, 피해학생이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 한해 가해학생과 상담일시 및 장소를 분리하면 상담 가능

• 피해학생 대상 일시보호기관(1개)

연번	기관명	주소	전 화	비고
1	갈등회복센터 비상	부산시 동래구 총렬대로 380-1, 2층(안락동)	203-8116	- 일시보호 기간: 10일 - 일시보호 가능인원: 2명 - 보호대상: 초, 중, 고 - 보호장소: 개인·집단상담실 - 심리검사, 식대는 수요자 부담

• 교육청 협약 전문 병·의원(13개): 정서케어시스템과 연계 운영

연번	병·의원명	주소	전 화
1	온종합병원	부산진구 가야대로 721(당감동)	607-0114
2	강병구정신건강의학과의원	동래구 총렬대로 132(온천동)	504-3171
3	서면나눔정신건강의학과의원	부산진구 서면문화로8(부전동), 영광도서 옆 빌딩 4층	807-9978
4	아이원 의원	부산진구 가야대로 715, 위너스빌딩 5~6층 (부암역 부산은행 빌딩)	714-5275
5	아이공감정신건강의학과의원	해운대구 해운대로 369(우동), 해운대 센텀메디컬센타 7층	742-7515
6	연세소울정신건강의학과의원	해운대구 해운대로 794(좌동), 엘리움 504호	791-0675
7	연세정신건강의학과	연제구 중앙대로 1125(연산동), 시티타워 4층	911-7779
8	사상 우리병원	사상구 사상로 237(괘법동)	323-6613
9	마음튼튼정신건강의학과의원	사상구 사상로 194, 경남메디컬타워 9층(사상역 4번 출구)	711-2711
10	라라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연제구 중앙대로 1077, 6~7층	515-9900
11	이든 정신건강의학과의원	남구 수영로 260, 612호	621-1077
12	아이누리&박정신건강의학과의원	연제구 고분로 2(연산4동), 중앙메디컬 빌딩 3층	851-8875
13	거북이정신건강의학과의원	수영구 수영로 693, BNK수영타워 901호	957-0001

▶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 기관 위탁 운영(1개)

연번	기관명	주소	전 화	비고
1	갈등회복센터 비상	부산시 동래구 총렬대로 380-1, 2층(안락동)	203-8116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부산·영남센터

-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가족 맞춤형 상담 지원
- 개인상담(학생·보호자), 집단상담(학생),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

▶ 청소년 회복지원시설(3개소)

연번	관할 구·군	시설명	대표자	소 재 지
1	북구	예람	임미영	북구 소재
2	금정구	등지	(사)보물상자	금정구 소재
3	금정구	푸른열매	옥연호	금정구 소재

➤ 피해학생 및 위기학생 가족 스캐치 프로그램

지원대상	-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가족 - 위기학생(우울, 자해·자살 시도 학생) 및 가족 - 심리·정서 치유 필요 학생(학교폭력, 학교부적응 등)				
지원내용	- 숙박비 및 프로그램비(강사비 및 참여비) 지원				
신청방법	원클릭 생활교육 홈페이지 신청: 프로그램 참여 신청서 및 동의서 제출 ※ 「원클릭 생활교육」 홈페이지> 학교폭력> 가족스캐치 프로그램 신청				
프로그램	- 가족스캐치: ‘가족 스스로 캐치하고 치유한다’는 의미, 체험과 힐링을 통한 회복치유 프로그램 - [주중형] 자연휴양림 연계 가족 스캐치 ▸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 관리소				
	기관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자연휴양림			
	구분	달음산	용지봉	신불산(꼭포)	운문산
	위치	부산 기장군	경남 김해시	울산시 울주군	경북 청도군
	프로그램	숲속체험 프로그램, 목재문화체험교실 프로그램			
	운영시기 (3월~11월)	매월 월요일~목요일(1박 2일)			
	- [주말형] 자연휴양림 연계 가족 스캐치 ▸ 양산시시설관리공단 「숲애(愛)서」				
	기관	양산시시설관리공단 「숲애(愛)서」			
	위치	양산 대운산(※ 전국 최초 공립 힐링서비스 체험관)			
	프로그램	산림치유(명상, 사운드 테라피 등), 건강치유(요가, 동작테라피)			
	운영시기 (3월~11월)	매월 금요일~일요일(1박 2일)			
	- [관리자 위기대응 워크숍] ▸ 양산시시설관리공단 「숲애(愛)서」				
	대상	희망 초·중·고 학교장			
	장소	양산시시설관리공단 「숲애(愛)서」			
	프로그램	산림치유(명상, 사운드 테라피 등), 건강치유(요가, 동작테라피)			
	신청방법	3월 중 신청 공문 발송(선착순 마감)			
	운영시기 (4월 중)	1박 2일			

붙임1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가정통신문(예시)

Chapter
03

존중과 배려의 학교폭력예방 및 관계회복 지원

학교폭력 발생 후, 학생의 일상회복을 위한 관계회복

- 학교폭력 관계회복을 위한 가정에서의 협조 요청 -

존경하는 학부모님께

학교 교육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교에서는 학교폭력 예방과 대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혹여 학교폭력 발생 시,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하고 일상회복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가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하고자 관계회복 프로그램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오니 숙지하시고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학교폭력 발생 후, 학생의 일상회복을 위한 관계회복

학교폭력 발생 이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같은 환경에서 생활을 이어가야 한다면 불편하고 어색한 관계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학교생활을 함께 해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도 관계가 편안해지기 위한 시도를 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본교에서는 관계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외부 전문가(교육지원청 관계개선 지원단)에 의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관계회복은 무엇인가요?

관계회복은, 두 명 이상의 관련 대상자들이 발생한 학교폭력 상황에 대하여 상호 동의 하에 이해, 소통, 대화 등을 통해 원래 상태 또는 일상생활로 돌아가도록 최선의 상태를 되찾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학교폭력, 관계회복은 꼭 해야 하나요?

교육 현장에서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그리고 가정에서 관계회복을 조력할 때에는 학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관계회복을 위해 용기 내어 어떤 말과 행동을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해 보다 섬세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이를 통하여 힘든 학생의 마음을 위로하고 건강한 관계회복과 일상으로 신속하게 돌아갈 수 있는 시작이 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 발생 사안을 중심으로 양측 관계의 회복
- 상호 이해 및 소통, 대화 과정을 통해 진심어린 사과를 위한 목적
- 화해와 가해 측의 반성, 관계 개선과 회복
- 심리·정서적 안정 및 학교와 일상생활, 또래 관계 등의 안정적 적응과 신속한 복귀, 회복의 조력을 위한 목적

 관계회복은 무엇보다 당사자인 학생의 속도가 중요합니다.

피해학생의 경우,

- 가해측을 만나 소통하는 데 불안, 우울, 공포 등 심리적 어려움은 없는지 탐색해주세요.
- 가해측과 관계를 회복할 의사가 있는지 충분히 탐색한 후 신중하게 결정해 주세요.
- 관계회복을 원하지만 시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충분한 안정을 취하도록 하여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가해학생의 경우,

-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피해측에게 사과할 충분한 준비가 되었는지 점검해주세요.
- 미안함을 표현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관계회복을 시도할 경우 서로 간 오해 및 관계가 더욱 악화될 수 있어요.

 관계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관계 회복을 시도하고자 마음먹고 실행에 옮겼던 학생들의 용기에 대한 충분한 공감과 지지가 중요합니다. 가해학생을 마주하고 이야기 나누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어 소통을 시도한 피해학생과 자신의 잘못을 용기 내어 피해학생에게 전달하고자 마음먹은 가해학생의 태도에 진심어린 응원의 마음을 보내주어야 합니다.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는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학부모님께서도 위 안내해 드린 내용에 대해 숙지하시고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 O. O.

○○학교장

학교폭력 사안 보고(공문 수신처)

□ 학교폭력 사안 보고 수신처

- 초등학교: 해당 심의위원회개최 교육지원청교육장(유초등교육지원과장, 중등교육지원과장)/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장(수기입력)
- 중학교: 해당 심의위원회개최 교육지원청교육장(중등교육지원과장)/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장(수기입력)
- 고등학교: 해당 심의위원회개최 교육지원청교육장(중등교육지원과장)/시교육청 인성체육급식과장/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장(수기입력)
- 특수학교: 해당 심의위원회개최 교육지원청교육장(중등교육지원과장)/시교육청 인성체육급식과장/시교육청 초등교육과장/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장(수기입력)



특별교육 프로그램 운영

1

단위학교 특별교육 프로그램 지원

➤ 교육대상

- 학교선도위원회에서 특별교육 이수 처분을 받은 학생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특별교육 이수 처분을 받은 학생 및 보호자

➤ 신청절차



※ 위탁교육경비: 교육청에서 위탁교육기관으로 운영비 지원

2

2026학년도 특별교육 위탁교육기관(24기관)

연번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1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강서구 대저로89번길 11	971-8502
2	부산동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연제구 법원북로 33, (연제우체국) 5층	507-4030
3	남부청소년경찰학교	남구 용호로42번길 27, 용호1치안센터	610-8720
4	동래청소년경찰학교	동래구 사직북로63번길 22, 사직2치안센터	559-7118
5	부산진청소년경찰학교	부산진구 백양대로 50, 당감1치안센터	890-0078
6	사상청소년경찰학교	사상구 모덕로 84, 덕포2치안센터	329-0340
7	해운대청소년경찰학교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20, 좌3치안센터	665-0620
8	부산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부산진구 서전로 43, 6층	714-4022
9	동래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동래구 중앙대로 1523, A3동 05, 06호	555-1388
10	부산진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부산진구 동평로405번길 85, 2층	868-0950
11	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서구 시약로 125, 1층	714-0701
12	영도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영도구 절영로 321	405-5224
13	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중구 남포길 39-2, 3층	245-1388
14	해운대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해운대구 제반로 151-21, 4층	715-1382
15	다함께 성·가정상담센터	수영구 연수로 392, 2층	753-1377
16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성·가정통합상담소(성)	동구 중앙대로196번길 12-3, 부산장애인종합회관 4층	583-7735
17	청소년폭력예방재단	동래구 총렬대로 91, 3층	583-8295
18	학교폭력예방회복조정센터	사상구 모덕로 82, 청소년종합지원센터	303-9675
19	가족상담센터 희망의전화	남구 황령대로 488, 원자빌딩 5층	623-1399
20	그린닥터스	부산진구 가야대로 721, 6층	816-2320
21	파인드미 상담연구센터	사상구 삼덕로46번길 108, 3층	070-4038-4240
22	부산진구부전청소년센터	부산진구 범전로5번길 13	807-4864
23	하트온심리언어발달센터	기장군 일광면 해송1로 33, 상가동 2층	723-9700
24	부산울산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도박)	동구 중앙대로 197(초량동), 뉴포트 빌딩 5층	441-2190

※ 법무부 소속 특별교육 위탁교육기관은 법무부 지침에 의해 권역별 공문 신청(학교 주소지 기준)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신청가능 지역 -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부산진구, 영도구, 서구, 동구, 중구)
 (부산동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신청가능 지역 - 남구, 수영구,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금정구, 기장군)

※ 청소년경찰학교는 5시간 미만의 특별교육만 이수 가능



학교폭력 관련 Q&A

Q 정확한 사실 확인이 안 된 사안도 인지 즉시 접수하고 48시간 이내에 보고하여야 하나요?

A • 48시간은 은폐와 축소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초기에 정확한 사실 확인이 되지 않았더라도 신고 대장에 기록하고, 양식1-2(사안접수보고서)를 교육(지원)청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Q 전담기구의 사안접수 및 조사 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 • 전담기구는 학교폭력 가·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실태조사와 예방프로그램 구성 및 실시, 조사결과 등 활동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합니다. 초기의 객관적인 자료 수집과 인권이 침해되지 않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안 조사가 문제 해결의 핵심입니다. 특히 성사안의 경우에는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 학교폭력 신고는 실명으로 하되, 성폭력 사안의 경우 피해학생이 원하는 경우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Q 「학교폭력 예방법」 제5조제2항에 ‘성폭력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성폭력을 학교폭력 사안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A •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에는 성폭력을 학교폭력의 정의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성폭력은 인지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동시에 학교폭력 사안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즉 학교폭력에서 성폭력을 배제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와 교육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 성폭력: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을 매개로 가해지는 모든 폭력(신체적·심리적·언어적·사회적)행위로 성추행, 성폭행뿐만 아니라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 성희롱: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양성평등기본법' 제2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의 라)

Q 폭행과 상해로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도 학교폭력으로 다루어야 하나요?

- A • 예) 법률이 다르면 조치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생의 인권보호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 하기 위한 법률로, 「형법」 등 사법(司法)적 절차와는 입법 목적과 조치 내용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법적 조치와는 별도로 학교폭력 사안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Q 학교장이 긴급조치를 내릴 때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 A • 학교장은 심의위원회가 개최되기 이전 긴급한 필요에 의해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게 우선 조치 가능하며, 조치 시행 후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심의위원회에서 '학교폭력 아님' 결정이 났을 경우, 학교장의 조치가 위법하지는 않지만 피해학생 긴급조치의 효력은 상실되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 학교장이 우선 출석정지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학교장이 해당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으려 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시행령 제21조제2항).

※ 학교장이 긴급조치를 한 때(내부결재 시행)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Q 어떤 학부모가 일방적으로 학교폭력 피해를 주장할 경우에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나요?

- A • 심의위원회 소집 요건에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개최하여야 합니다. 학교폭력의 여부는 정확한 사실관계와 파·가해 측 주장을 바탕으로 심의위원회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 심의위원회의 소집

- 심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Q 심의위원회에서도 분쟁 조정이 가능한가요?

- A** • 심의위원회에서도 분쟁조정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실적 측면에서 분쟁 조정이 성립되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 부산교육청과 부산광역시청이 공동으로 외부 전문기관을 정하여 분쟁 조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직접 개입할 경우 공정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가급적 심의위원회 개최 전·후에 외부전문기관에 의한 화해·갈등·분쟁 조정을 적극 권장합니다.

- 푸른나무재단: ☎1588-9128, 582-9275
- 학교폭력예방 회복조정센터: ☎315-7942, 324-7942, 303-9675

Q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모든 학생들이 참여해야 하나요?

- A** •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제8항에 의거 학교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연 2회(전수 1회, 표본 1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합니다. 특히, 학교폭력 실태조사에는 예방교육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모든 학생의 참여를 원칙으로 합니다.

Q 정해진 학교폭력 예방교육 시간이 있나요?

- A** • 학교장은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의무(법률 제15조)가 있으며, 예방 프로그램의 구성 및 실시는 전담기구에서 담당(법률 제14조제4항)합니다. 학생·학부모·교직원 대상 교육은 따로 교육하는 것이 원칙이나, 내용에 따라 함께 교육할 수 있습니다. 예방교육의 실시 주기는 법령상 학기별 1회로 정해져 있습니다.

Q 학교폭력 회복지원단이란?

- A** • 관계개선을 통한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을 위해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구성한 관계회복(분쟁조정) 전문가들을 의미합니다. 파·가해 학생 및 보호자 간의 진정한 화해 및 관계회복을 통한 치유지원이 목적이며, 퇴직교원, 상담전문가, 화해 분쟁조정 전문가 등 60여 명으로 구성되어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Q 관계회복 프로그램 신청은 언제 하나요?

- A** •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 전 과정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심의위원회 개최 예정 및 개최 전후는 물론 학교폭력으로 접수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관계회복 프로그램 참여가 학교폭력 사안처리에 영향이 있나요?

- A** • 관계회복 프로그램 참여 여부 및 결과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진행 및 심의위원회 개최와는 무관합니다. 다만 가해학생의 진심이 담긴 사과와 피해학생의 온전한 용서를 통해 관계를 회복하고 화해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학교폭력 사안처리 결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Chapter

04

모든 학생의 마음돌봄을 위한 학생 맞춤형 마음건강 지원

- 예방·발견·치유·회복을 위한 맞춤형 통합 지원 강화 178
- 생명존중 및 사회정서 교육 강화 199
- 학교상담 활성화 지원 202



예방·발견·치유·회복을 위한 맞춤형 통합 지원 강화

1

학생 마음건강 지원 추진 개요

➤ 학생 마음건강 통합 지원 체계 구축

추진 목표 : 모든 학생의 심리·정서 안정을 통한 마음이 건강한 학교 만들기

추진
방향

- 예방-발견-개입-치유의 통합 지원체계 구축으로 심리·정서 지원
- 학교 기반 통합적 마음성장 지원으로 학생 마음건강 증진

4대 영역



▶ 마음건강 지원을 위한 단계별 대응 방안

단계	내 용	대상자	학교의 대응	구체적인 대처방안
예방 활동	자존감 및 생명존중의식 함양 등 정신건강 증진	모든 학생	예방교육 및 상담활동 강화	· 학교장 중심 학교위기관리위원회 운영 · 전 학년 대상 생명존중·사회정서교육 운영 · 정서행동특성검사 및 마음EASY 수시 검사 · Wee클래스 중심 예방 상담 및 또래상담 활성화 · 보호자 대상 마음건강 교육 및 가정 연계 프로그램 · 생명존중 문화 확산 캠페인 및 실천 활동 운영
위기 관리	자살위험 학생 조기발견 및 관리	자살·자해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학생	학교위기 관리위원회, 지역 전문기관 연계	· 교원 대상 생명지킴이 및 위기대응 역량 강화 연수 · 수시 마음EASY 검사 및 상시 관찰 체계 운영 · 학생 참여형 조기 발견 체계 구축(또래상담) · 학교위기관리위원회 즉시 개최 · 정신건강전문가 긴급지원팀 현장 지원 요청 ·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전문기관 연계 상담 지원
	자살시도자 관리	자살·자해 시도학생과 영향을 받은 학생들	학교위기 관리위원회, 교육(지원)청 위기관리팀, 전문기관 연계	· 학생 안전 확보 및 즉각적인 의료·심리 치료 연계 · 학교위기관리위원회 중심 긴급 대응 체계 가동 · Wee센터 중심 통합 사례관리 및 병원 연계 치료 · 가족스캐치 프로그램을 통한 가족 회복 지원 · 교육청 연계 맞춤형 학교 안정화 프로그램 운영 · 정신건강전문가 지속 자문 및 사후 모니터링
사후 대응	자살발생 후, 주위학생 (유가족)케어	영향을 받은 학생(유가족)	학교위기 관리위원회, 교육(지원)청 위기관리팀, 전문기관 연계	· 교육청 선보고 및 위기대응 지원 체계 즉시 가동 · 위기지원단 현장 지원 및 공동 대응 · 학교 구성원 대상 심리 안정 프로그램 운영 · Wee센터 및 전문기관 연계 집중 상담 지원 · 장기 모니터링 및 재발 방지 계획 수립

2

학교위기관리위원회 운영

▶ 목적 및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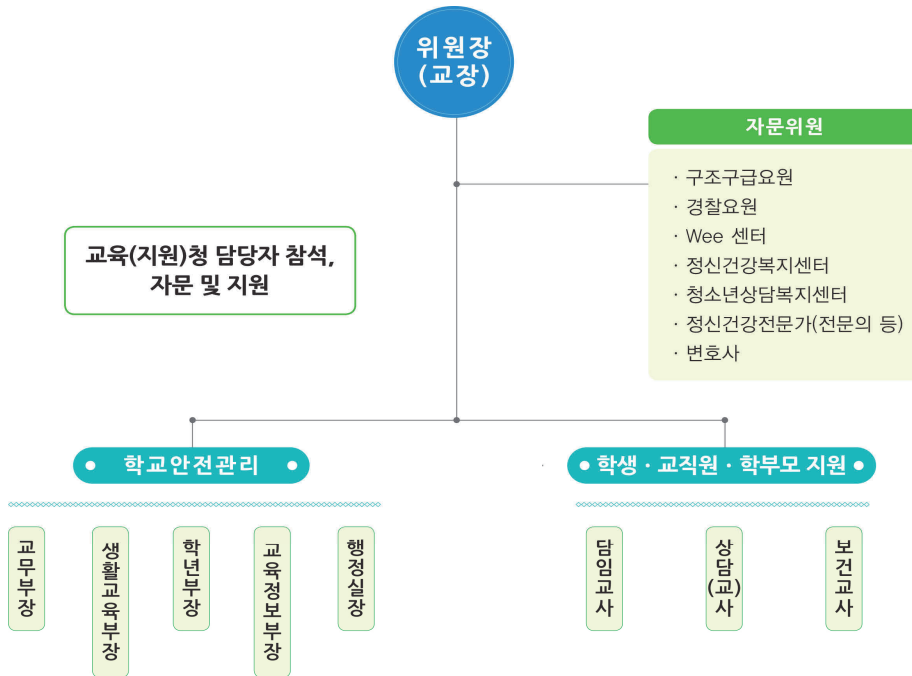
- 학교 내 위기대응체계를 통한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 위기학생 사전 예방 및 위기발생에 대한 신속한 대처 및 지원
- 정서적 응급처치를 통한 위기 확산 방지 및 사후 안정화 방안 마련

▶ 운영

- 학교장을 위원장으로 지정
- 월 1회 의무 개최 및 분기별 1회 교육(지원)청 보고
(단, 방학 기간에는 별도의 방법으로 위기학생 관리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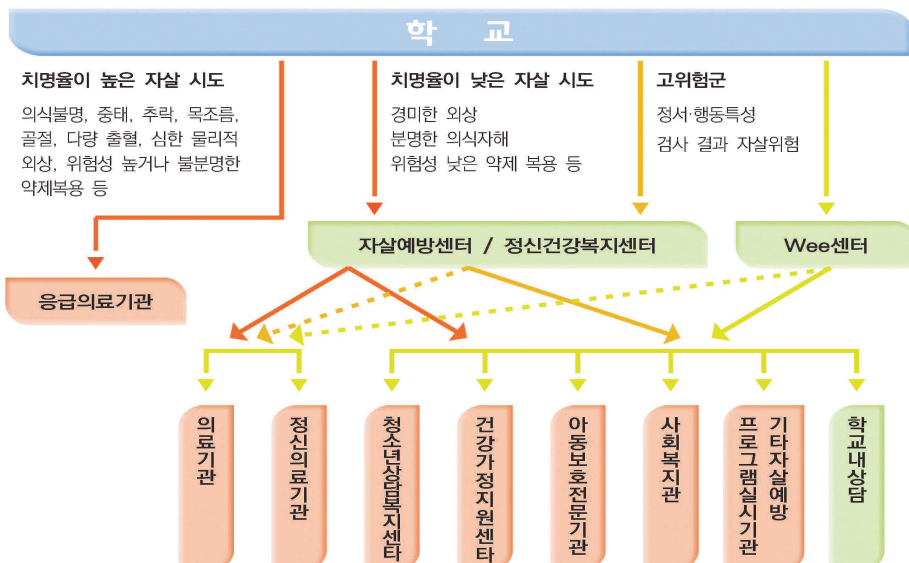
▶ 학교위기관리위원회 조직

- 학교위기관리위원회 조직(예시)



- 행정실장: 사안에 따라 참석 여부 조정
- 자문위원: 사안에 따라 필요시 참석
- 학교 내 담당교사가 홀로 전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장은 체계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교직원 모두가 함께하는 통합지원체계로 개선하여 사후 조치의 효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함

- 학교 밖 연계시스템(예시)



▶ 참고사항

- 학교위기관리위원회 개최 시 해당 학생의 학부모 참석 독려(필요시)
- 적극적 치료가 필요한 학생에 대해 학부모가 치료를 방임할 경우 아동학대 사안으로 신고 대상임을 안내
- 위기사안에 따라 필요시 SPO,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 실장, 단위학교 마음건강위원회, 자문 의사 등 지역 전문가 참석 권장
- 긴급 자문 필요시 교육청 담당장학사 참석 요청

▶ 행정사항

- (학교) 위기학생 관리 현황 분기별 제출
 - ▶ 내용: <붙임3> 서식
 - ▶ 방법: 교육행정데이터통합관리 파일 제출
 - ▶ 누적관리 기간 및 제출 기한

구분	누적 관리 기간	제출기한
1차	2026. 3. 1. ~ 2026. 4. 30.	2026. 5. 8.(금)
2차	2026. 3. 1. ~ 2026. 7. 31.	2026. 8. 7.(금)
3차	2026. 3. 1. ~ 2026. 10. 31.	2026. 11. 6.(금)
4차	2026. 3. 1. ~ 2027. 2. 3.	2027. 2. 5.(금)

- (지원청) 분기별 초·중학교 자료집계 개설, 취합 및 제출
 - ▶ 학교 제출 기한 일주일 전 자료집계 개설
 - ▶ 제출 자료 취합 및 시교육청으로 공문 제출
 - ▶ 제출 기한: (1차) 5.15.(금), (2차) 8.14.(금), (3차) 11.13.(금), (4차) 2.17.(수)
 - ▶ 담당자: Wee센터 실장

▶ 학교위기관리위원회 업무 분장(예시)

업무 담당	업 무 분 장	비 고
위원장(교장)	- 학교위기관리위원회 총괄 - 위기상황 진단 및 정책 판단, 대응책 판단	
부위원장(교감)	- 학교위기관리위원회 소집 및 운영 - 학교위기관리위원회 업무분장 - 대외협조, 언론보도 대응 - 교육(지원)청 유선 보고(인성체육급식과 학생상담팀) ※ 안전사고: 학교안전총괄과 학교안전팀에 유선 보고(☎860-0502)	대외 창구 단일화 위원장 보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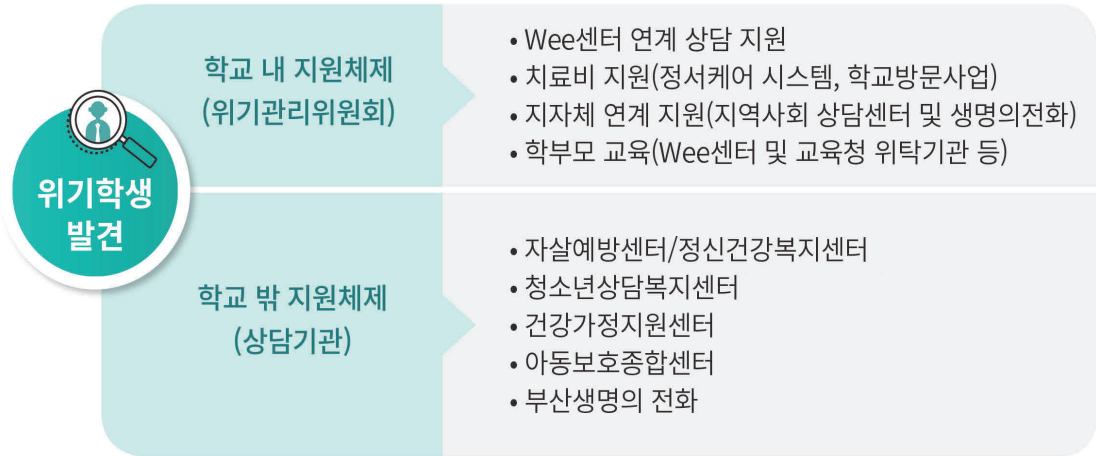
업무 담당	업 무 분 장	비 고
부위원장(교감)	- 유가족 협의 - 교내 위기대응센터 운영 - 학생유품 보관 및 전달: 경찰과 협조(연계)	대외 창구 단일화 위원장 보좌
교무부장	- 위기대응 상황판 관리 - 학생 출결 및 가정학습 관리 - 외부 전문기관 역할 지원 - 위기대응 매뉴얼 관리 - 학부모 상담 창구 담당, 유가족 협의 참여	
생활교육부장 (안전부장)	- 생명존중 예방교육 계획 수립 및 운영(상시) - 사실관계 규명 및 상황 통제(조치) - 교육청 사안 보고서 작성 관리 - 교내 안전체계점검 및 교내순시를 통한 위기상황 감시 - 사건관련 경찰 협조 및 장례 일정 진행(필요시) ※ 학생보호인력: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표준가이드라인 준수	사안 처리
학년부장 및 담임	- 학년 통제(출결, 생활, 애도교육, 안전공제 신청, 상담 중재 등) ※ 담임교사는 학부모와 긴밀한 의사소통(사실확인)	
전문상담교사 전문상담사 교육복지사	- 고위험군 스크리닝 및 상담 - 학생, 교사, 학부모 상담 핫라인 제공 - 외부 상담 기관 연계 체제 구축 - 해당 학생의 상담 기록 정리 (필요시)특별상담실 설치 운영	협조
보건교사	- 신체적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 의뢰 - 지역소방서, 의료기관 연결 - 해당 학생의 건강관련 기록 정리	협조
행정실장	- 예산지원 및 필요 물품 제공 - 교내 시설점검 및 보수	사안에 따라 참석여부 조정

3 위기학생 조기발견·치유·회복 지원

➤ 사전 예방 및 조기발견 강화를 위한 다중 안전망 구축

- 담임-Wee클래스-Wee센터-지역사회 연계(상담센터, 병의원)
- 원활한 학생상담 및 연계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가정통신문 발송

- 자살위기체크리스트 활용 <서식1>
- 학생상담결과를 NEIS 상담실적에 입력
- 유관기관 연계 위기관리



▶ 상시적 마음EASY 검사 활용

- 운영 시기: 연중 상시(언제든지 검사 참여 가능)
- 대상: 초·중·고 희망학생 누구나
- 방법: 온라인 또는 서면 검사 병행 운영
- 검사 내용: 정서불안, 대인관계, 사회성, 심리이상, 학교적응 등 37문항 내외

**마음이 힘들때
마음 EASY 검사
받아요**

- ➔ 초·중·고등학교에서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마음건강 검사 가능**
- ➔ 검사결과는 학생·학부모 상담 및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연계 기초자료로 활용

➤ 위기학생 맞춤형 회복지원 ‘마음침표’ 프로그램

- 대상

- 최근 3년간 학생 자살 사안 2회 이상 발생 학교
- 자해 및 자살시도 고위험군 학생이 있는 학교 중 희망교

- 운영 내용

- 변증법적 행동치료 원리 기반 마음챙김, 정서 조절, 충동 억제, 대인관계 기술 훈련 등을 통한 집중 스트레스 관리 및 회복 지원
- 위기학생의 정서 안정 및 학교 적응력 회복, 재발 위험 완화 및 사후 모니터링 연계를 통한 학생 자살 예방 기능 강화
- 학급별·소그룹·개인별 탄력적 적용, 총 8차시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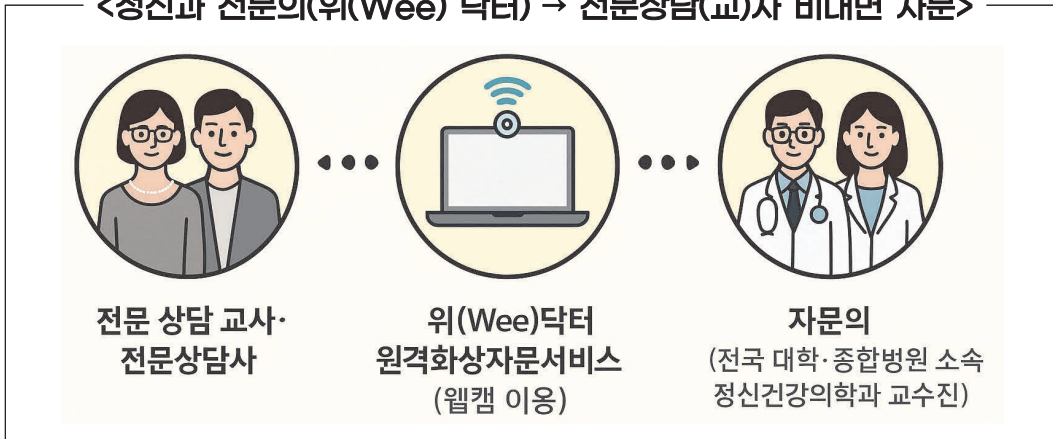
➤ 10대 특성을 고려한 온라인·비대면 상담



▶ 원격화상자문 서비스 Wee클래스 지원

- 원격화상자문 서비스를 통해 고위기 학생 지도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자문 제공
- 전문상담(교)사가 현 소속기관 회원가입을 통해 이용(www.weedoctor.co.kr)

<정신과 전문의(위(Wee) 닥터) → 전문상담(교)사 비대면 자문>



▶ 자해·자살 위기학생 전담 지원기관 위탁운영(별도 안내)

- 기간: 2026. 3. ~ 12.
- 대상: 자해·자살 위기학생 및 학부모
- 방법: 학교에서 기관으로 신청서 송부 또는 내담자 개별 연락 가능
- 내용
 - 자해·자살 위기 학생·보호자 심리검사 및 상담 실시
 - 개인상담(학생·보호자), 집단상담(학생), 예방교육(보호자) 실시

▶ 정신건강전문가 학교지원사업

- 운영기간: 2026. 3. ~ 2027. 2.(연중)
- 지원대상: 초·중·고·특수·기타학교 정신건강 위기학생(휴학생포함)
- 주요사업
 - 자해·자살 고위험군 및 정신건강 위기학생·보호자 학교 방문 상담, 교직원 자문
 - 자해·자살 고위험군 및 정신건강 위기학생 치료비 지원
 - 위기관리위원회 전문의 자문
 - 교직원·학부모 대상 전문의 특강
 - 긴급지원팀 역량강화 사례회의 및 연수 지원

- 지원내역
 - 심리검사 및 상담·통원치료비 1인 150만원 이내, 입원치료비 1인 500만원 이내
- 신청절차: 학교 신청 → 교육지원청 Wee센터 → 긴급지원팀 학교방문 → 학생(학부모, 교사 등) 상담 지원 → 병(의)원 치료 → 임상적 변화 관리

〈추진 단계〉	〈주요 사항〉
1단계 [단위학교]	• 회의 개최(학교위기관리위원회, 마음건강위원회 등) • 학교 방문 상담 신청(해당 교육지원청 Wee센터)
↓	
2단계 [교육지원청]	• 상담 신청서 접수 및 위기 학생 관리 대장 작성 • 긴급지원팀 방문 일정 안내
↓	
3단계 [긴급지원팀, 교육지원청]	• 긴급지원팀: 상담 및 자문(학생, 학부모, 교사), 학교 방문 상담 내용 작성 및 교육지원청 제출 • 교육지원청: 병(의)원 치료 연계 지원
↓	
4단계 [병(의)원]	• 위기 학생 병원 진료 • 종결 보고서, 상담 및 진료비 내역 제출 및 치료비 청구
↓	
5단계 [교육지원청]	• 보고서 및 치료비 청구서 접수 • 학교 방문 상담수당 및 병원 치료비 지급
↓	
6단계 [교육지원청, 단위학교]	• 교육지원청: 위기 학생 임상적 변화 및 서비스 만족도 평가 등 • 단위학교: 위기 학생 추수 모니터링

➤ 위기학생 및 학부모 대상 「가족스캐치」

- 대상: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위기학생 가족
- 시기: 2026. 3. ~ 11.
- 내용
 - 학생·가족 대상: 숲체험, 목재문화체험교실, 산림치유, 건강치유
 - 관리자 대상: 위기 대응 워크숍(2회)

➤ 자존감 회복을 위한 가족치유 캠프

- 대상: 자해·자살 위기학생 및 학부모 25팀 내외
- 시기: 5월, 9월 예정(1박 2일)
- 내용: 음악치유, 집단상담, 소시오드라마 등 힐링 프로그램으로 구성

➤ 정신건강 장기입원학생 학습지원 플랫폼(하트포유) 구축

- 목적: 정신건강 입원학생 대상 원격수업 지원을 통해 학업 연속성 유지 및 학습권 보장
- 대상: 유급 위기 중학생(정신건강 입원학생)
- 시기: 2026. 4분기 시범 운영
- 내용
 - 원격수업 플랫폼 ‘하트포유’ 구축 (KEDI 위탁)
 - 정신건강 특화 학습 콘텐츠 개발·보급
 - 원격수업 기반 학습 지원 체계 마련

➤ 전문기관 연계 찾아가는 위기지원단 운영

• 찾아가는 위기지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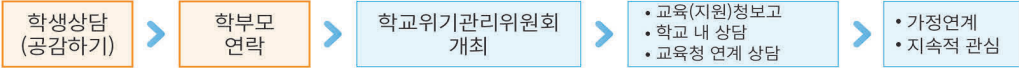
- 교육(지원)청 담당 장학사, Wee센터 실장, 정신건강복지센터 담당자, 소아청소년과전문의,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 위기상황 발생 시 긴급 투입, 필요시 학교위기관리위원회 참석
- 상시 긴급지원 및 사후 안정화·애도 프로그램 지원
 - 전문인력 연계 사후 개입, 학교의 대처방안 지원
 - 청소년 위기개입 긴급 파견 상담(학생, 가족)
 - 사후개입 애도 프로그램(집단상담)
 - 긴급지원 생명존중 특강(집단교육)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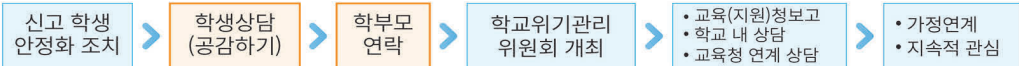
학생자해 대응 매뉴얼

교사 대응 매뉴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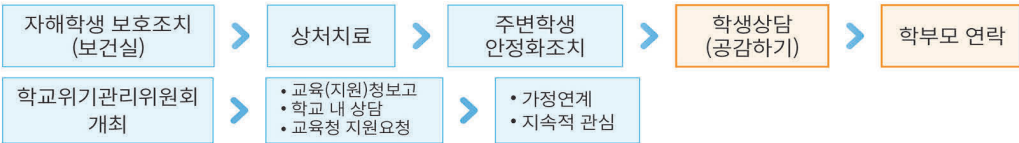
○ 일정시간 경과 후 자해학생을 교사가 인지한 경우



○ 일정시간 경과 후 주변 학생의 신고로 자해학생을 인지한 경우



○ 자해학생 발견 즉시(경미한 상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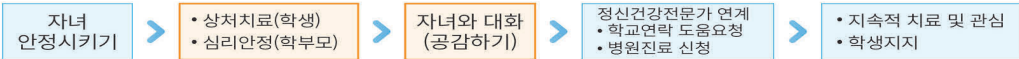


○ 자해학생 발견 즉시(심각한 상처)



학부모 대응 매뉴얼

○ 자녀의 자해 사실을 직접 알게 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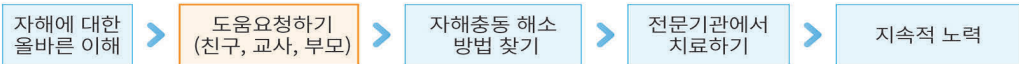


○ 자녀의 자해 사실을 학교로부터 통보받아 알게 된 경우



학생 대응 매뉴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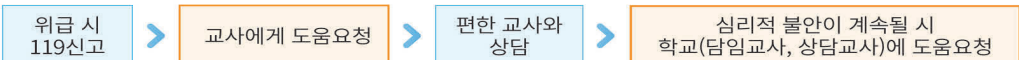
○ 스스로 자해하는 경우



○ 자해하는 친구를 알게 된 경우



○ 자해하고 있는 친구를 발견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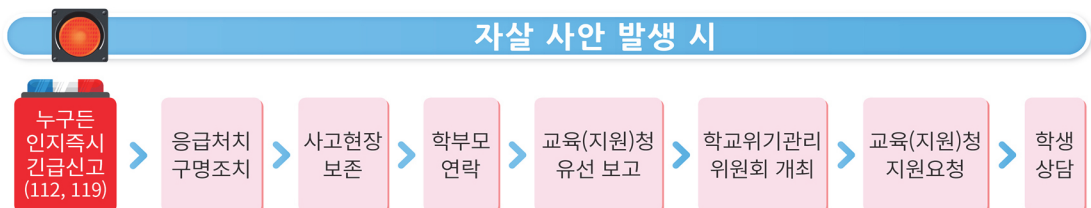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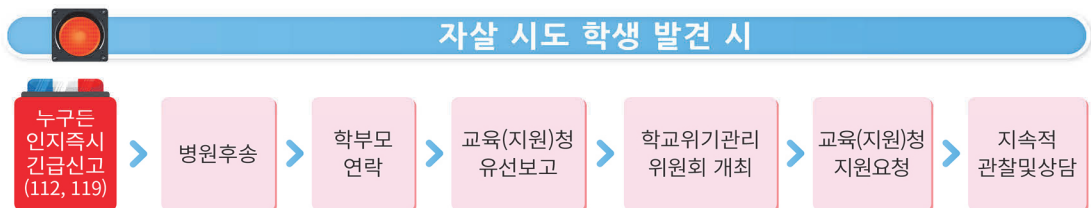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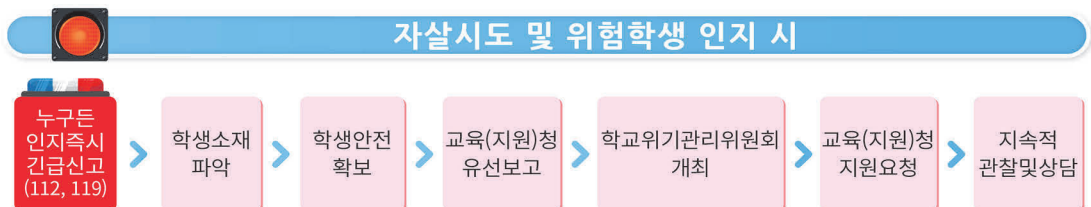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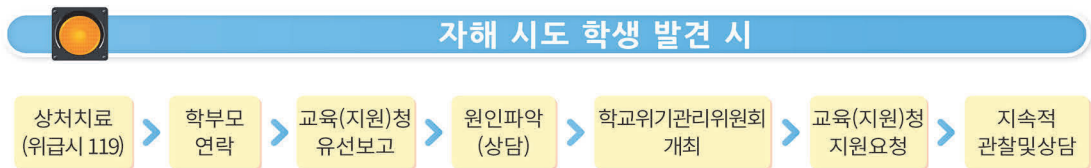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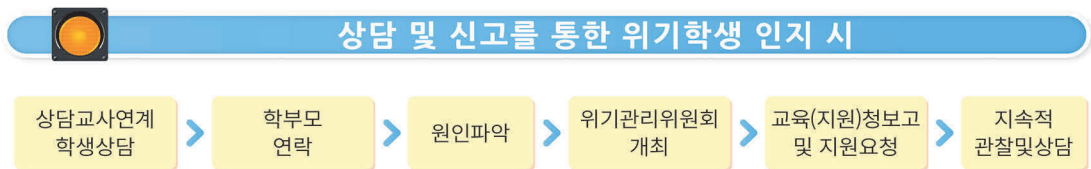


학생자살예방 상황별 처리 매뉴얼

● 평상시, 사전예방활동

● 준위험상황, 상담활동강화

● 위급상황, 신고(112, 119)부터



▶ 학생 위기사안 보고 및 대응체계

- 학생자살 발생 시 대응체계

사안발생 학교	위기관리위원회 학교 교육(지원)청	위기개입 유관기관	추후관리 학교 유관기관
▶ 인지 즉시 긴급신고 (112, 119) ▶ 교육(지원)청 유선보고 ▶ 사건 파악 ▶ 대책 회의 소집	▶ (학교)위기관리위원회 위원 등 관계자 ▶ (교육청)위기지원단 - 교육(지원)청 담당자 - Wee센터 - 유관기관 참여	▶ 위기학생 스크리닝 ▶ 애도프로그램 ▶ 개인상담, 집단상담 ▶ 유가족, 교직원 상담	▶ (학교)지속스크리닝 및 지원요청 ▶ (유관기관 및 교육청) - 생명존중교육 - 지속 연계 지원
인지 즉시	24시간 이내	위기관리위원회 이후	종결 시까지

- 학생자살 발생 시 보고체계

상황 보고	경과 보고	사안 보고	추가 보고
▶ 유선보고(인지즉시) - 학교 - 교육(지원)청 - 교육부 ▶ 사안 업무보고서 제출 (담당장학사) - 교육(지원)청 - 시교육청	▶ 사망사안 경과 보고서 (서식3)내부메일 제출 - 학교 - 교육(지원)청 - 교육부	▶ 사망사안 보고서 (서식4)공문 제출 - 학교 - 교육(지원)청 - 교육부	▶ 경찰서 조사 결과 등에 따라 변동 사항 발생 시 보고(서식3) - 학교 - 교육(지원)청 - 교육부
24시간 이내	2일 이내	5일 이내	확인 즉시

- 사안 발생 시 유선보고 및 보고서 제출 방법

구분	유선보고	보고서 제출	비고
초·중학교	해당 교육지원청	해당 교육지원청 및 본청 인성체육급식과	※ 특수교육대상자는 특수교육지원센터 동시 보고
고·특수학교	본청 인성체육급식과 (☎860-0414)	본청 인성체육급식과	

- 보고서 서식 탑재처: 원클릭생활교육 홈페이지-생명존중자료실 탑재

붙임1

(교사용) 학생 자살징후 체크리스트

※ 2개 이상 해당되는 학생과 면담(자살 생각, 자살 계획 질문**) → 명확한 자살 시도·계획이 있는 경우 즉각 보호자에게 연락, 전문기관(위센터, 병·의원 등) 연계 조치

**자연스럽게 직접적으로 ‘자살 생각’, ‘자살 계획’이 있는지 물어봐 주세요.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학생들은 편안하게 생각을 말합니다.

예)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니?’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니?’

학교에서 식별되는 학생의 주요 자살징후입니다.

구분	자살징후 내용
언어	☐ 자살이나 살인, 죽음에 대한 말을 자주 함
	☐ 신체적 불편함을 호소함
	☐ 자기비하적인 말을 함
	☐ 자살하는 방법에 대해 질문함
	☐ 자살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꺼냄
행동	☐ 편지, 일기, 노트 등에 죽음에 관련된 내용을 적음
	☐ 수면 상태의 변화(평소보다 너무 많이 자거나 적게 잠, 또는 잠들기 어려워하거나 일찍 깸)
	☐ 식사 상태의 변화(평소보다 덜 먹거나 더 많이 먹음. 체중이 급격하게 감소하거나 증가함)
	☐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거나 주어진 일을 끝까지 못 마침
	☐ 집중력 저하, 사소한 일에 대한 결정의 어려움
	☐ 자해행동이나 물질남용(술, 담배 등)
정서	☐ 감정상태의 변화(죄책감, 외로움, 무기력 또는 평소보다 화를 잘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멍한 모습)
	☐ 대인기피, 흥미상실(평소 기쁨을 느끼던 활동을 더는 즐기지 않는 모습, 타인과의 관계를 피함)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으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자살징후입니다.

☐ 사후 세계를 동경하는 말을 함
☐ 주변 정리(마지막을 정리하고 마음을 정리함, 받았던 상상이나 기념품을 버림)
☐ 자살에 대한 계획을 세움
☐ 외모 관리에 대해 무관심함
☐ 죽음 관련 음악, 시, 영화 등의 과도한 몰입
☐ 어긋났던 인간관계 개선, 노력, 신변정리
☐ 평소 소중히 여기던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줌

Chapter
04

모든 학생의 마음건강을 위한 학생 맞춤형 마음건강 지원

붙임2

학교위기관리위원회 개최에 따른 참석 요청서

학교위기관리위원회 개최에 따른 참석 요청서

()학부모님 귀하

존경하는 학부모님

부모님의 자녀교육에 대한 노력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학생과 관련하여 우리 학교 위기관리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학부모님께서도 바쁘신 중에도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생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꼭 참석을 바라며, 적극적 치료가 필요한 학생에 대해 치료를 방임할 경우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아동학대 사안으로 신고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0조(상담)

④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1. 일 시: 2026. 00. 00.(0) 00:00

2. 장 소: 우리학교 회의실(1층)

3. 담당자: (T. 051-0000-0000)

2026. 00. 00.

00학교장(직인생략)

(우 00000) 부산광역시 00구..... 주소 기재

붙임3

학부모 가정통신문(예시)

자녀 사랑하기 제0호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에 대한 8가지 오해와 진실

1 ‘정신질환’은 성격의 결함으로 생기는 병이다?

‘정신질환’은 의지가 약해서 생기는 병이 아니며 단순히 부모의 양육에 문제가 있거나 아이의 성격에 문제가 있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흔한 신체질환인 고혈압이나 당뇨병처럼 정신질환도 한 가지 원인으로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아청소년의 정신질환 역시 유전적 요인과 기질적 요인, 심리적 스트레스,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납니다. 이러한 다양한 원인이 뇌 신경 전달물질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뇌 기능에 지장을 주어 자녀의 생각과 감정, 행동에 어려움을 일으키게 됩니다.

2 ‘정신질환’은 성인에서 흔하다?

WHO에 따르면 소아청소년의 약 20%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성인 정신질환의 약 50%가 14세 이전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인지, 정서, 행동 문제는 소아청소년에서 흔하고 자녀가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 큰 어려움을 줍니다.

3 ‘정신질환’의 경우 병원 치료는 최대한 늦추는 것이 좋다?

정신건강의 문제가 반드시 심각한 정신질환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마치 감기도 초기에는 기침이나 열로 시작해 가볍게 낫는 때도 있지만 악화하면 폐렴까지 진행하기도 합니다. 정신건강도 일시적인 어려움부터 일상생활에 지속적인 문제를 주는 상태까지 다양합니다. 무슨 병이든 빨리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이 빠른 회복을 돕고 후유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녀의 인지, 정서, 행동 문제가 학교나 가정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을 주고 있다면 검증된 의학적 지식을 가진 정신건강 전문가와 정확한 평가와 상담을 거쳐 향후의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Chapter
04

모든 학생의 마음과 몸을 위한 학생 맞춤형 마음건강 지원

4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으면 기록이 남아서 불이익을 받는다?

부모님이나 가족이라 하더라도 성인이 된 환자의 의료기록을 열람할 수가 없습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환자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절대 타인에게 환자의 의료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만 14세 미만의 경우, 직계가족이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또한 개인의 질병정보는 건강보험공단에서 5년 보관하지만 이후 폐기되며 의무기록은 10년까지만 보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군 입대나 취업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취업 시에 요구되는 건강검진에는 주로 결핵과 같이 전염성이 있는 질환의 여부에 대한 검사가 주가 되기 때문입니다.

5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으면 보험에 가입할 수가 없다?

개인보험의 경우 회사마다 약관이 매우 다양합니다. 보험회사의 상품에 따라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에 대해서 중증으로 분류되어 보험에 제약을 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가 완료되어 3년이 지난 후 증상이 없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가입이 가능한 경우가 많으니 회사마다 약관을 잘 살펴보시는 일이 필요합니다.

6

정신건강의학과에 가면 약만 준다?

병원에 간다고 해서 무조건 약을 처방받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의가 진료를 통해 자녀가 가진 문제의 종류나 심한 정도 그리고 치료에서 우선순위를 파악하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단계적 약물치료나 다양한 비약물적 치료(놀이치료, 가족치료, 특수교육, 인지행동치료 등을 포함한 정신치료 등)를 단독 혹은 병행으로 처방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중등도 이상의 우울 증상이 있거나 만성 혹은 재발성 우울증, 자살 생각이나 행동이 동반된 경우, 정신증 증상이 있는 경우 등에서는 약물치료를 반드시 포함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표준치료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7

정신건강의학과 약을 먹으면 몸(뇌)에 해롭다?

적절한 약물 사용은 오히려 아이의 뇌가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뇌가 다시 균형 있게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게 도와주는 것이 정신건강의학과 약입니다. 이러한 약들은 여러 단계의 과학적인 연구 과정을 거쳐서 그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되어야만 처방할 수 있지요. 즉 아이의 성장과 발육에 해가 되거나 신체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복용하는 약에 따라서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이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치료시기를 놓치는 것이 때로는 훨씬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작은 불이 났을 때 집 안이 더럽혀지더라도 소화기로 불을 끄면 해결할 수 있지만 바로 끄지 않으면 큰불이 되어 진압이 어려워지는 것과 같습니다.

약의 불편함에 대해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면 대부분은 심한 부작용 없이 치료할 수 있습니다.

8

정신건강의학과 약은 중독된다?

정신질환 치료가 다른 질환보다 비교적 치료 기간이 길어 생긴 오해입니다.

약물은 증상이 호전되면 감량하여 중단하면 되므로 중독에 대한 염려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증상이 충분히 치료되지 않았는데, 조금만 마음에 선부르게 치료를 중단하게 되면 나중에 증상 악화와 2차적인 문제들로 인해 치료가 더 어렵고 치료 기간도 길어질 수 있습니다.



**아이가 마음 건강히 성장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오해의 문턱을 넘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도와주세요.**

2026. ○. ○.

○○ 학교 장

Chapter
04

모든 학생의 마음건강을 위한 학생 맞춤형 마음건강 지원

붙임4

학부모 가정통신문(예시)

자녀 사랑하기 제〇호
내 아이 마음 건강 바로 알기

부모는 처음으로 자녀를 품에 안았을 때 새로운 생명체의 탄생에 감동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는 아이가 점차 성장하면서 아이의 존재만으로도 감격했던 처음의 마음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자녀는 각각의 속도로 성장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의 몸과 마음의 건강관리를 위해 확인할 내용과 마음 건강 정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자녀의 몸 건강과 마음 건강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 지금부터 시작해 두면 성인이 되어서도 유익한 우리 자녀의 몸 건강을 돕는 기본적인 생활 습관이 있습니다.
 - 자녀가 계획된 예방 접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저녁에 충분히 수면을 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 균형 잡힌 식습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세요.
 - 자녀가 규칙적인 운동 습관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세요.
 - 학습 이외의 목적으로 스마트기기 등을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해 주세요.
- 몸 건강과 마음 건강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이는지 세심하게 살펴봐 주세요. 아이들의 마음이 건강하지 않을 때는 수면 변화(과수면, 불면, 자주 깬), 식습관의 변화(과식, 초절식 등), 지나친 몰두(스마트 기기, 게임 등)의 좋지 않은 생활 습관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2

아이가 자신과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있나요?

-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은 몸과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서 생겨납니다.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이 되어야 자신의 가치와 소중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께서는 자녀의 신체적 건강 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에도 관심을 보여주세요.

- 자녀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태도와 마음을 가졌는지 살펴보면, 자녀 스스로에 대한 태도와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친구나 형제들에게 심한 행동을 하고도 미안해하지 않는 등 다른 사람에게 가혹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에는, 자녀가 자기 자신에게도 가혹하지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과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은 근본적으로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자녀가 자신을 존중하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회성과 공감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아이들은 부모님과 주위의 어른들을 보며 배웁니다. 부모님께서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모습, 어려운 일을 포기하지 않고 주위로부터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는 것도 자녀의 사회성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우울한 아이의 상태를 어떻게 파악하고 도와줄 수 있을까요?

- 먼저 아래의 우울증 증상들을 살펴보며 확인해 주세요.
 -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내거나 울음을 터트린다.
 - 특별한 의학적인 원인이 없이 신체 여기저기가 아프다고 한다.
 - 행동이 과격해지고 극단적인 표현을 한다.
 - 표정이 침울하고 혼자 방에만 있으려고 한다.
 - 말수가 적어지고 일상에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
 - 사소한 실수에 '죄송하다'라는 말을 자주 한다.
 - 집중이 잘되지 않아 학습 능력이 떨어진다.
 - 스스로 바보가 된 것 같다고 말한다.
 - 일기장이나 친구와의 대화에서 외로움, 죽음과 같은 내용을 언급한다.
 - 식사량이 많이 줄거나 늘고, 잠을 너무 적게 자거나 너무 많이 잔다.
- 우울증을 경험하는 아이들을 조기에 파악하고 적절히 치료하면 곧 회복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본인의 상태를 마음 열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자녀의 말을 경청하고 공감하며 비판 없는 태도로 들어 줍니다.
- 자녀의 기분을 이해하고 싶고, 자녀를 돕고 싶다는 뜻을 자녀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자녀를 돕기 위해 학교 선생님과 학생의 모습에 대해 상의하거나 정신건강 전문가를 찾아 도움을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Chapter
04

4

마음 건강 상담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 학교에서 상담받을 수 있는 곳
 - 위 클래스(Wee Class)
- 학교 외에서 상담받을 수 있는 곳
 - 교육청 위 센터(Wee Center), 부산건강증진센터 내 Wee상담실
 - 지역의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 지역의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 전화나 문자로 상담받을 수 있는 곳
 - 청소년 상담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들어줄게’, 전화상담 109, SNS상담 라임



이런 부분을 확인해 주세요

- 부모님께서 얼마나 자녀를 사랑하고 있는지, 아이가 그 존재 자체만으로 얼마나 소중한지 알려주세요.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건강하든 아프든 어떤 경우라도 너를 사랑하고 네 편이 될 거야”라고 말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는 부모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아이한테는 살아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 무슨 병이든 조기에 치료받는 것이 빠른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전문의에게서 정확한 평가와 상담을 받은 후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아울러 어떤 기관이나 검사에서 추가 평가를 권유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아이의 문제가 치료되지 않는 심각한 질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6. ○. ○.

○○ 학교 장



생명존중 및 사회정서 교육 강화

1

생명존중교육 내실화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교육 실시(연간 6시간 이상)

- 생명존중교육계획 수립 및 추진
- 전교생 또는 학년 단위 ‘찾아가는 생명존중교육’ 실시(강사비는 학교 자체예산 확보)

➤ 학급단위 생명존중교육 프로그램 「I LOVE YOU」(학교자율사업선택제)

- 기간: 2026. 3. ~ 12.
- 교육 시간: 1일 연속 3시간(학년단위 신청, 학급별 강사 투입하여 교육)
- 교육 장소: 신청학교의 각 교실
- 운영내용: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I), 너와 나는 함께 해(YOU), 우리 반은 할 수 있다(We)

➤ 생명존중 문화 조성

- 학년초(3월)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활동 강화
- 단위 학교 운영 내용(예시)
 - 학교 홈페이지를 활용한 홍보
 - 24시간 상담채널 홍보(다 들어줄 개)
 - 또래상담 동아리, 마음챙김 동아리(희망교 공모 예정) 중심 캠페인 활동
 - 플래카드 게시(생명존중 관련 표어 등)
 - 생명존중교육 가정통신문 발송(정신건강증진 뉴스레터 등)
- 생명존중교육 내실화
 - 관련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한 예방교육 실시
 - 조·중례를 이용한 훈화 및 생명존중교육자료 학급 게시
 - 학부모 교육 및 교직원 자체 연수 실시
 - 교사·학생·학부모 생명지킴이(게이트키퍼) 역할 안내

Chapter 04

모든 학생의 마음건강을 위한 학생 맞춤형 마음건강 지원

- 생명존중교육 자료 탑재처
 - 교육부 학생건강정보센터(schoolhealth.kr),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smhrc.kr), 청소년모바일상담센터 홈페이지(teentail.or.kr)
 - 원클릭생활교육홈페이지-생명존중자료실(home.pen.go.kr)

➤ 단위학교 생명존중교육 책무성 강화

- 생명존중교육 계획수립 및 위기관리위원회 구성(3월)
- 위기관리위원회 의무 개최(월 1회)
- 위기관리 대상 학생 누적 관리 및 현황 제출(연 4회)

➤ 교사대상 '찾아가는 생명지킴이(게이트키퍼)' 교육 필수 운영(2시간, 대면)

- 운영 기간: 2026. 3. ~ 12.(연중)
- 운영 내용 및 방법
 - 학생 자살 징후 발견의 민감성 제고 및 위기 상황 발생 시 대처 능력 향상
 - 학교: 강사연락-교육실시-실시결과 교육행정데이터통합관리 제출
 - '26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찾아가는 생명지킴이 교육 강사비(180천원) 확보
 - 강사인력풀: 원클릭생활교육 홈페이지(<https://home.pen.go.kr/oneclick>)> 생명존중자료실 탑재

2 마음성장 「프로젝트 B30」

☑ 마음성장 「프로젝트 B30」

- Busan 30만 학생 모두의 마음성장을 위한 보편적 예방교육으로서 사회정서역량(자기이해, 소통·협력, 책임, 마음돌봄)을 체계적으로 강화하는 사회정서교육 모델
- 사회정서교육의 교육과정 내 운영으로 정신건강 위기 사전 차단
- 아울러 교육청-부산시-유니세프 협력을 통한 학생 마음건강 안전망 강화

➤ 학생 마음성장 사회정서 교육 전면 확산

- 교육과정 기반 사회정서교육 자료 개발·보급(5종, 17차시 내외)
- 사회정서교육 교육과정 반영(6차시 이상 필수 반영)
 - ※ 학교폭력예방 어울림 프로그램(11차시)과 상호연계 가능

➤ 마음챙김학교(사회정서교육 집중 운영학교) 운영(145교)

- 중점학년(초5, 중1, 고1): 사회정서교육 10차시 이상 운영
- 활용자료: 학생 워크북 및 교사용 17차시 수업 운영 가이드 5종 제작 및 배포
- 집중운영 시기: 사회정서교육 주간(5월), 생명존중 주간(10월) 연 2회

➤ 사회정서교육(5월) 및 생명존중교육(10월) 주간 운영

- 운영 목적
 - ▶ 사회정서교육 주간(5월): 학기 초 적응 스트레스, 계절성 우울감 등 심리적 변화에 따른 예방교육 집중
 - ▶ 생명존중 주간(10월): '세계 마음건강의 날'을 기념한 정서 인식 고취
- 운영 방법
 - ▶ 학생 참여형 체험활동 중심 운영: 관계회복 수업, 감정표현 워크숍, 생명존중 역할극, 마음건강 캠페인 등
 - ▶ 아침대화 프로그램, 교과연계 수업, 창의적체험활동 활용

➤ 마음링크 프로그램('친구-교사-자신'을 연결하는 정서적 관계 형성 상담 프로그램)

- 또래상담(학교자율사업선택제)
- 한끼상담(전체 학교)
- 마음챙김동아리(초·중·고 희망 21팀)
- 맞춤형 집단상담 프로그램(학교자율사업선택제)
- 학급단위 생명존중 프로그램 「I LOVE YOU」(학교자율사업선택제)





학교상담 활성화 지원

1

학생 상담 내실화를 통한 심리정서 지원

▶ 상담 운영 강화

- 목적: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 및 학교 적응력 제고 및 맞춤형 상담으로 다양한 위기 상황 사전 예방
- 방법: 시기, 기간, 대상 등은 학교 실정에 맞게 자율적 운영(단, 학부모 상담은 교원의 학생 생활 지도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3-28호] 제10조에 따라 운영)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0조(상담)

- ④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 내용

- 학생 개별 상담시간을 확보하여 흥미 및 관심, 심리상태 등을 파악
- 학급 (집단)상담시간 확보를 통한 학생 파악 및 라포 형성
- 학교폭력 가·피해 징후, 자살 위험 및 정서·행동 고위험군 학생 대상 집중 상담 및 기관연계
- 관찰 및 대면·비대면 등 다채널 상담을 통한 학생 파악
- 신학기 맞춤형 상담 강화를 통해 학교 적응 지원 및 위기 신호 조기 발견

▶ 표준화 심리검사 결과 활용

- 목적: 표준화된 검사척도를 활용한 학생 개인별 심층적 특성 이해와 학교 부적응 유형별 맞춤형 상담 지원
- 표준화검사 결과 활용
 - 학생: 학생의 자기 이해력 제고
 - 교사: 학생의 특성 이해 및 맞춤형 상담
 - 보호자: 자녀에 대한 객관적 이해력 제고를 위한 해설 제공

– 유의 사항

- 실시 전: 검사의 목적, 활용 등 인식제고를 위한 사전 교육 실시
- 실시 후: 학생, 보호자, 담임교사에게 객관적인 결과 전달 및 해석 연수 실시
- 형식적인 검사로 인한 예산낭비 및 결과 활용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자 안내 철저

➤ **도래상담 동아리 운영(학교자율사업선택제)**

- 목적: 학생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도래상담 프로그램 운영으로 위기학생 조기발견 및 학교폭력 예방문화 조성
- 방법
 - 부산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외부기관 연계를 통한 도래상담의 질 제고
 - 도래상담 지도자 연수 및 도래상담자 연수(연중) 실시
 - 도래상담동아리(10~15명) 운영(전문상담인력 배치학교 필수 실시)
 - 도래상담 운영 계획서 및 운영 우수사례 제출

➤ **마음챙김 동아리 운영**

- 목적: 마음건강증진 활동을 통한 학생들의 마음돌봄 경험 확대 및 마음성장 문화 확산
- 대상: 초·중·고 희망 21팀(팀별 활동비 1,000천원, 2~3월 공모 예정)
- 기간: 2026. 3. ~ 12.
- 방법
 - 학교당 지도교사 및 학생 10명 내외 구성
 - 교내·외 학생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 수행

➤ **한끼상담 프로그램 운영**

- 목적: 교사와 학생 간 식사를 통한 상담으로 라포 형성 및 상호 존중과 이해, 깊이 있는 상담 기회 제공
- 방법
 - 초·중·고·특수학교 기본운영비 100만원 이상 편성·운영
 - 교사와 학생 1:1 또는 소규모(3명 내외) 그룹 상담
 - 식사비 등 1인 기준 15,000원 사용 가능
 - 방과후 교내·외 실시 가능

- 유의 사항: 상담의 비밀유지 및 허용적 분위기를 위한 적절한 장소 선정, 물품구입비 사용 불가
- 복무처리: 근무지내 출장(여비 부지급), 16:30 이후는 시간외 근무 가능

▶ 맞춤형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학교자율사업선택제)

- 목적: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학년 전체, 위기학생 대상 집단(모둠)상담으로 자존감 향상, 교우관계 개선, 학급 응집력, 회복탄력성, 대인관계 기술 함양을 통한 학교 적응력 제고
- 방법: 학교 자체 프로그램 구성 또는 외부상담전문가 연계 운영
- 운영예시

대상	집단상담 프로그램	비고
1학년 해당반	학교폭력 예방 및 관계 회복프로그램	1~2교시 운영
2학년 해당반	자해·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프로그램	3~4교시 운영
위기 학생	미술, 음악, 관계회복 치유 프로그램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

2 학교 Wee클래스 기능 및 역할 강화

▶ 목적

- 위기 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의 특성별 맞춤형 상담 지원
- 학생의 고민, 고충을 풀어내는 학생 상담 공간 확보로 건강한 성장 지원

▶ 전문상담교사 및 전문상담사의 역할과 직무

- 예방교육: 성장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적극적인 학교상담 활동
- 교육·상담: 문제 상황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개입 활동으로 교육 및 심리검사, 개인상담, 집단상담, 보호자·교사 대상 자문 등
- 행정·관리: 학교상담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홍보, 사례관리, 기록 및 결과보고 등의 기타 업무 추진

영역	직무	세부업무
상담	개인상담	· 학교 적응력 향상을 위한 상담 · 심리 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집단상담	· 자존감 향상 및 사회성 증진 · 학생 욕구에 따른 집단상담 주제
	심리검사	· 성격 및 대인관계 영역 · 학업 및 자기 관리 영역 · 심리 및 정서 관련 영역
	상담지원	·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상담지원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후속 상담지원 · 학업중단숙려제 상담지원
	자문	· 보호자, 교사 대상 자문
교육	교육 및 연수	· 학생교육(예: 특별교육) · 상담관련 보호자 및 교사 연수
	상담행사	· 학생 성장과 학교문화 개선을 위한 상담행사 기획 및 운영
연계	연계협력	· 학생, 보호자, 교직원 협력 · 교육지원청 Wee센터, 지역사회상담기관 연계
행정	상담환경조성	· Wee클래스 시설, 비품구입 및 관리 · 상담·심리검사 자료 구입 및 관리
	연간계획 수립	· 학생, 보호자, 교직원 상담 관련 요구조사 · Wee클래스 운영 연간계획 수립
	홍보	· 연중 Wee클래스 운영 홍보 · 각종 프로그램 소개
	사례관리 및 평가	· 상담기록 및 관리 · 상담활동 결과보고 및 평가 · Wee클래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행정

※ Wee클래스 업무는 학교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Wee클래스 운영 관련 자료 탑재: <https://www.wee.go.kr>

▶ 연간 운영계획서(예시)

영역	추진내용	목표	실시시기													
			3	4	5	6	7	8	9	10	11	12	1	2		
Ⅰ. 환경정비	1. Wee 클래스 환경 조성	1회	●													
	2. 자기성장 관련 각종 자료 비치	수시	●	●	●	●	●	●	●	●	●	●	●	●		
Ⅱ. 학생 이해자료 수집 및 활용	1. 학생실태조사	1회	●													
	2. 도울 학생조사	2회		●				●								
	3. 표준화 검사 실시와 활용	1회	●											●		
Ⅲ. 상담활동의 전개	1. 개인상담(학생·학부모)	연중	●	●	●	●	●	●	●	●	●	●	●	●		
	2. 전출입 학생 상담, 복교생 상담	연중	●	●	●	●	●	●	●	●	●	●	●	●		
	3. 학교폭력 가해자/피해자 상담	연중	●	●	●	●	●	●	●	●	●	●	●	●		
	4. 대안교실 운영	연중	●	●	●	●	●	●	●	●	●	●	●	●		
	5. 또래상담동아리 운영	연중	●	●	●	●	●	●	●	●	●	●	●	●		
	6. 상담함 설치 및 운영	연중	●	●	●	●	●	●	●	●	●	●	●	●		
	7. 비대면 상담실 구축 및 운영	연중	●	●	●	●	●	●	●	●	●	●	●	●		
	8. 집단상담 안내 및 실시	수시														
	9. 심리검사를 통한 학생 이해	수시														
	10. 지역사회 타 기관과의 연계	수시														
Ⅳ. 교육활동	1. 학생 교육	수시														
	2. 교사 교육(자문)	2회					●					●				
	3. 학부모 교육	2회		●						●						
	4. 계시물 교육	수시														
Ⅴ. 타부서 연계 활동	1. 1인 1교사 결연 및 운영	수시														
	2. 타 부서 결연지도	수시														
	3. 학교폭력 가·피해, 징계학생 사후 지도	수시														
	4. 학생상담지원단 교육 및 관리	4회	●		●				●					●		
Ⅵ. 기타	1. 사례연구의 실시	2회						●						●		
	2. 상담결과 입력 및 활동 분석	수시						●				●				
	3. 상담활동 평가 및 요구조사	1회										●				
	4. 상담활동 보고서	1회												●		

3

Wee센터 중심의 학교 마음건강 지원 강화

➤ 목적

-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 및 각종 위기학생 상담을 통한 건강한 성장 도모
- 단위학교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청 차원의 지원 시스템 구축(2차 안전망)

➤ Wee센터 개요

- 전문상담인력 배치(5명)
 - 전문상담교사 1명, 임상심리사 1명, 전문상담사 2명, 사회복지사 1명 구성
- 교육지원청별 센터 안내
 - 개인상담실, 심리검사실, 집단상담실, 놀이치료실 구축

구 분	센터 위치	전 화	홈페이지
서 부	서부교육지원청 5층	250-0454~9	seobu.pen.go.kr/학교마당/Wee센터
남 부	남부교육지원청 5층	640-0305~7	nambu.pen.go.kr/학교마당/Wee센터
북 부	북부교육지원청 1층	330-1361~5	bukbu.pen.go.kr/학교마당/Wee센터
동 래	연산중학교 묘봉관 2층	801-9190~5	dongnae.pen.go.kr/학교마당/Wee센터
해운대	해운대교육지원청 2층	709-0481~5	haeundae.pen.go.kr/학교마당/Wee센터

- Wee센터별 중점 프로그램 안내

구 분	중점 프로그램	내용
서 부	‘자람’ 집단상담(함께자람, 사랑자람) 집단상담	회복탄력성 향상
남 부	관계성 향상 교실세우기, 마음봄 심리지원 등	관계향상, 학폭예방, 위기지원
북 부	‘다해’(다같이 성장해), ‘빠빠옹’ 프로그램	위기예방 및 지원
동 래	자아성장 집단상담, 마음챙김 집단상담	자존감 향상
해운대	‘드림’(벗드림, 공간드림, 안정드림) 프로그램	학폭예방 및 위기학생 지원

Chapter
04

모든 학생의 마음건강을 위한 학생 맞춤형 마음건강 지원

➤ 상담 신청

- 의뢰 대상: Wee클래스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고위험군 학생
- 단위학교에서 1차 상담 진행 후 Wee센터에 의뢰
- 위기 상황일 경우에는 Wee센터에 바로 의뢰(자살 등)

➤ 상담 지원

- 상담 절차
 - 상담의뢰(전화/팩스/이메일)
 - 초기 상담: 1차 사례 회의로 담당자 지정
 -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상담·심리평가·멘토링, 사례평가
 - 심층 심리평가: 2차 사례 회의
 - 전문기관 연계
 - 사례평가 및 종결: 종결 후 사례 관리
-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
 - 심리상담·의료지원·법률지원을 통합적으로 지원
 - ▶ 전문상담 및 의료 지원: Wee센터 연계기관
 - ▶ 법률 상담 지원: 교육청 법률지원단(변호사) 연계
 - 학교폭력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쉼터, 보호센터 연계
 - 학교폭력피해학생 유형별 치유 프로그램 운영

4 학생상담지원단 운영 활성화

➤ 목적

- 학생들의 원만한 교우관계와 정서적 안정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효과
- 찾아가는 학생 맞춤형 개인상담·집단상담을 통한 학생 마음건강 지원으로 학교 적응력 향상

➤ 인력풀 구성: 학생상담지원단 250명

➤ 대상: 희망 초·중·고(※ 특수·각종·고등기술·학력인정고 포함)

▶ 운영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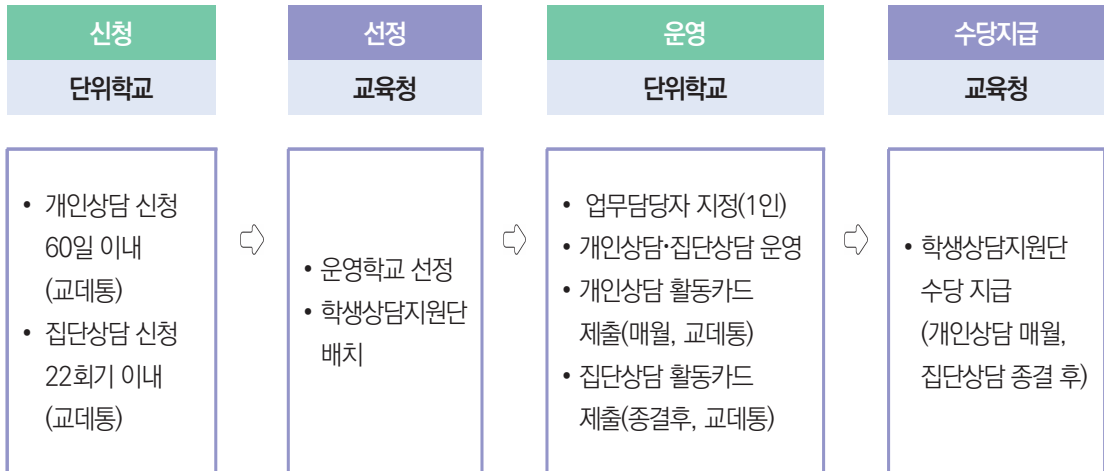
- 집단상담 운영

- 학교당 2~3명의 학생상담지원단을 배치
- 학급 단위 8명 내외 소집단을 구성, 1일 2회기 운영(회기별 다른 학급 진행 가능)
- 집단상담 연간 22회기 이내 실시(1회기 2시간)
- 집단상담 운영을 통하여 상담 필요 학생 발견 시 학교차원에서 유관기관 연계
- 집단상담 종결 후 활동카드 제출 및 만족도 조사

- 개인상담 운영

- 교당 1명의 학생상담지원단을 배치, 주 2~3일, 총 60일 내외(1일 4시간)
- 자살·자해 등 위기학생 발견 시 학교차원에서 대응 및 전문기관 연계 실시
- 개인상담 활동카드(매월) 및 만족도 조사(종결 후)

▶ 신청 및 운영 절차



행정사항

1 Wee클래스 행정 업무

- 운영계획 수립
 - 연간 프로그램 운영, 상담 개입 활동, 심리평가 등의 계획 수립
 - 교육 공동체의 요구와 실태 조사, 학교의 교육과정에 맞추어 수립
 - 상담 인식의 변화 및 상담 문화 기반을 다지기 위한 프로그램
 - Wee클래스 운영비 편성 및 확보
(전문상담인력이 배치된 경우 2,000천원 이상 편성, 전문상담교사, 전문상담사 연수비 300천원 편성)
 - 시설 유지비: Wee클래스 환경 개선 및 제반시설 유지 등
 - 프로그램 운영비: 개인 상담 의뢰, 집단 프로그램 운영비 등
 - 강사 수당 및 교통비: 강사로 및 원고료, 강사 교통비 등
 - 자료 구입비: 심리검사 도구/도서 구입비, 프로그램 구입 등
 - 업무협의회비: 교사 간 또는 지역 연계를 위한 업무 협의 등
- 예산 결산
 - 예산 집행 시 연말 정산을 고려하여 계획에 따라 집행

2 나이스 상담 실적 입력

- Wee클래스 전문상담교사 및 전문상담사는 상담실적 의무 기록 및 학교장 결재
- * Wee클래스 운영 관련 도움자료
 - 2023학년도 Wee클래스 운영 길잡이(부산광역시교육청)
 - 초등학교 위(Wee)클래스 운영 가이드(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 중등 위(Wee)클래스 운영 가이드(교육부, 인천광역시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
- * 탑재처: 원클릭생활교육홈페이지-학생상담-상담자료실

자해·자살 위기학생 도움기관

□ 5개 교육지원청 Wee센터

- 단위학교에서 선도 및 치유가 어려운 학생 관내 Wee센터로 의뢰
- 위기학생에 대한 전문적인 진단·상담·치유 One-stop 서비스 지원

□ 정신건강전문가 학교지원사업

- 심리검사 및 통원·입원치료비 150만원, 입원비 500만원이내 지원(☎ 860-0416)

연번	병원명	지원범위	연번	병원명	지원범위
1	양산 부산대학교병원*	입원	14	연세아이 정신건강의학과의원*	통원
2	부산대병원		15	연세소울 정신건강의학과의원*	
3	고신대학교복음병원*		16	마음튼튼 정신건강의학과의원*	
4	부산백병원*	입원 · 통원	17	강병구 정신건강의학과의원*	
5	해운대백병원*		18	이든 정신건강의학과의원*	
6	봉생병원		19	아이원의원*	
7	온종합병원*		20	라라 정신건강의학과의원*	
8	밝은마음병원		21	김규호 정신건강의학과의원	
9	한사랑병원		22	김동진 정신건강의학과의원	
10	더힐러스병원		23	김민철 정신건강의학과의원	
11	우리병원*	통원	24	마음의정원 정신건강의학과의원	
12	서면나눔 정신건강의학과의원*		25	부산아이 정신건강의학과의원	
13	아이공감 정신건강의학과의원*		26	센텀숲 정신건강의학과의원	

* 표시는 소아청소년정신과전문의 상근 병·의원

□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16개 구군)

- 자살예방 및 정신질환 조기발견을 위한 상담, 치료 등 사업 운영
-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http://www.busaninmaum.com/> ☎242-2575)

□ 청소년상담복지센터(16개 구군) 및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자살·자해, 불안·우울, 다문화, 은둔형외톨이 부모개입 등 상담 프로그램 운영
- 부산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http://www.cando.or.kr/> ☎804-5001)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https://www.kyci.or.kr/> ☎662-3139)

□ 건강가정지원센터(<https://bsfc.familynet.or.kr/center/> ☎330-3406)

- 가족교육, 가족상담, 긴급위기지원 등

□ [교육청 위탁] 자해·자살 위기학생 전담 지원기관(추후 안내 예정)

마음건강 지원 유관기관

□ 교육청 상담기관

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서부교육지원청 Wee센터	서구 꽃마일로 33 서부교육지원청 5층	250-0454~9
남부교육지원청 Wee센터	남구 못골로 29 남부교육지원청 5층	640-0305~7
북부교육지원청 Wee센터	북구 백양대로 1016번다길 북부교육지원청 1층	330-1461~5
동래교육지원청 Wee센터	연제구 고분로56번길 39 연산중학교 묘봉관 2층	801-9190~5
해운대교육지원청 Wee센터	해운대구 세실로 137 해운대교육지원청 2층	709-0481~5

□ 교육청 상담기관

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부산광역시교육청지정 전문상담기관	위탁 운영 예정	추후안내
사회복지법인 부산생명의전화	부산진구 동성로 143 신우빌딩 410호	1588-9191 051)804-0896

□ 정신건강복지센터

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부산광역시정신건강복지센터, 부산광역시자살예방센터	남구 수영로 299, 루미너스타워 12층	242-2575
강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강서구 공항로811번길 10, 강서브라이트센터 내 보건소 2층	973-3418
금정구정신건강복지센터	금정구 중앙대로 1777, 금정구청별관 5층	518-8700
기장군정신건강복지센터	기장군 정관면 용수로 4	727-5386
남구정신건강복지센터	남구 유엔평화로4번길 61, 왕비빌딩 3층	626-4660(~1)
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동구 구청로 1, 동구청 보건소동 3층	911-4600
동래구정신건강복지센터	동래구 명륜로187번길 56, 동래구보건소 4층	507-7306
부산진구정신건강복지센터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30, 부산진구청별관 부산진구건강증진센터 내	638-2662
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북구 만덕대로89번길 9, 북구보건소 덕천지소 3층	334-3200
사상구정신건강복지센터	사상구 가야대로196번길 51, 다누림센터 3층	314-4101
사하구정신건강복지센터	사하구 장림번영로 41, 한국메디컬빌딩 5층	265-0512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서구 부용로 30, 서구보건소 2층	246-1981
수영구정신건강복지센터	수영구 수영로 637-5, 수영구보건소 2층	714-5681
연제구정신건강복지센터	연제구 연제로 2, 연제구보건소 3층	861-1914
영도구정신건강복지센터	영도구 동삼북로 3, 상가동 209호	404-3379
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	중구 흑교로 48, 2층	257-7057
해운대구정신건강복지센터	해운대구 양운로37번길 59(보건소 내)	741-3567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부산광역시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부산진구 서전로 43, 6층(전포동)	804-5001
금정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금정구 기찰로96번길 47, 금정청소년수련관 2층	581-2084
기장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기장군 기장읍 차성서로 86, 대라다목적도서관 4층	792-4880
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남구 유엔평화로 24, 5층	621-1389
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동구 범곡로 9(범일교회 비전센터 3층)	632-1388
동래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동래구 중앙대로 1523(SK허브스카이 A3동06호)	555-1388
부산진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부산진구 동평로405번길 85, 양정청소년수련관 2층	868-0956
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북구 덕천로 3(구포1동 610-1)	343-1388
사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상구 백양대로 952, 사상아동보건센터 3층	327-1388
사하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하구 동매로 161	207-7169
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서구 시약로 125, 1층~3층	714-3013
수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수영구 수영로521번길 77, 수영구청소년문화의집 3층	759-8413
연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연제구 월드컵대로243번길 19, 거제동원타워상가 503호	506-1386
영도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영도구 절영로 321, 함지골청소년수련원	405-5605
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중구 남포길 39-2, 3층	231-1388
해운대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해운대고 재반로 151-21, 4층	715-1388



Chapter

05

공존과 협력의 양성평등 문화조성

- 양성평등 문화조성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 216
- 학교 성폭력 근절 및 안정화 지원 218
- 성사안처리 관련 Q&A 222
- 성사안처리 참고 서식 227
- 성사안 피해 전문 상담기관 현황(행위자 교육기관 포함) 234



공존과 협력의 양성평등 문화조성

1 교육공동체 양성평등 인식 강화

➤ 교육공동체 성인지감수성 향상

- 성별 고정관념 및 성차별적 업무 분장, 발언, 행동 지양
- 양성평등교육포털 「공감」 활용 교육자료 및 각종 서식 안내

➤ 대상자별 필수 연수 운영·지원(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 주관)

- 학교(기관) 고위직·성고충상담원 대상 성인지감수성 향상 연수
- 2026년 교원(행정) 필수연수 통합과정 내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 연수 포함 운영

➤ 디지털 성폭력(딥페이크 성범죄 포함) 없는 학교 조성

- 학교자율사업선택제 「(디지털)성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 운영(희망교)
-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화장실 내 안심스크린 설치비 지원(희망교)
- 화장실 내 불법촬영 카메라 전문기관 불시점검(전 학교, 연 2회)
- 불법촬영 카메라 합동점검단 운영(10회): 교육(지원)청, 경찰청, 학교 공동 참여
- 학교지원서비스(BSSS)를 통한 불법촬영카메라 탐지기 대여 안내 및 확대

2

존중과 배려의 성교육 및 양성평등교육

➤ 교육과정 연계 맞춤형 학생 성교육 및 양성평등교육 지원

- 범교과 학습 주제 양성평등교육 계획 수립·운영(15차시)
 - 교육과정 내 성인지, 성교육, (디지털)성폭력 예방교육 등 통합 운영(답페이지 성폭력 예방교육 필수, 학기별 1차시 이상 편성 운영·결과 제출)
- 성교육 집중이수학년제 실시(초5학년·중1학년 5차시, 고1학년 3차시)
- 찾아가는 양성평등 문화예술 콘텐츠 지원(초·중·고 25교)
- 찾아가는 (디지털)성폭력 예방교육 지원(초·중·고 64교)
- 유관기관 연계한 디지털 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 예방교육 지원
- 성인지교육 전문강사단 운영 및 명단 탑재(업무관리)업무지원>일반게시판>업무공지게시판> 게시번호 25-1705777)





학교 성폭력 근절 및 안정화 지원

1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절차

- 학생 간(피·가해) 사안: 학교폭력사안 처리
- 교원(피)-학생(가) 사안: 교권보호위원회
- 교직원(피)-학생(가) 사안: 교직원(성고충심의위원회로 피해자 지원), 학생(선도위원회로 처벌)
- 학생(피)-일반성인(가) 사안(성매매 포함): 만 18세 미만 아동학대사안 처리
- 교직원 간(피·가해)사안: 성고충심의위원회(단, 고위직관련 상급성고충심의위원회) 개최

주관	단계	내 용 (*2026년 개정판 학교 내 성사안 대응 업무 가이드 참조)
학교	① 상담 및 신고 · 접수	• 인지 및 성고충 상담 - 신고인이 상담만을 원하고 접수를 원하지 않으면 미접수(상담으로 종결) • 수사기관 신고 - 학생 피해자의 경우 인지 즉시 수사 기관 신고, 성인은 피해자 의사 따름)
		• 긴급보호 조치 - 신고인(피해자) 긴급 보호 조치 - 분리 조치 및 필요시 신고인 심리 상담·의료 연계
		• 성사안 발생 보고 및 심의 의뢰 - 초·중·학교: 학교 → 교육지원청, 시교육청 인성체육급식과 보고 - 고·특수학교: 학교 → 시교육청 인성체육급식과 보고 - 피해자 명시적 반대 없을 시 성평등가족부 성폭력방지과로 통보 필수
		• 신고인의 명시적 요청이 있을 시 조정 및 중재 가능 - 조정중재는 가급적 성고충심의위원회 개최 7일전까지 가능 - 기관 내 담당자 및 관리자에 의한 임의 조정중재로 2차피해가 되지 않도록 절대 유의

주관	단계	내 용 (*2026년 개정판 학교 내 성사안 대응 업무 가이드 참조)
교육 (지원)청	② 사실 확인 (조사) 지원 (교육 (지원)청)	접수 • 성사안처리 외부전문가(시민조사관, 조사위원) 지원 신청서 접수 - 초·중학교(교육지원청 주관), 고·특수학교(시교육청 주관)
		사실 확인 (조사) • 관련자 전수조사(시민조사관) 및 심층 상담 • 관련자(신고인/참고인/피신고인) 조사 - 사안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필요시 10일 연장 가능) • 학교급별 조사 기관 - 초·중학교: 교육지원청, 고·특수학교: 시교육청 인성체육급식과
		결과 보고 • 조사문답서 및 조사의견서 보고 - 초·중학교: 교육지원청 → 시교육청 인성체육급식과 - 고·특수학교: 시교육청 인성체육급식과 자체 보고
	③ 심의 및 조치 결정 (시교 육청)	심의위원 구성 및 통보 • 성사안관련자별 성고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심의위원 및 성사안 관련자 참석 통보 - 회의자료 및 관련 서류 작성
		심의 결과 보고·통보 • 성희롱 인정 시 심의 결과·자료를 관련부서에 제출·보고 • 심의 결과 통보 - 성사안 관련자(신고인/피신고인) 결과 통보
학교	④ 조치 결과 이행	심의 결과 이행 • 심의 결과 이행 - 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후속 조치 이행
	⑤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제출	재발방지 대책 수립·제출 • 재발방지대책 수립·제출 - 신고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제출부서 · (초·중학교) 교육지원청, 시교육청 인성체육급식과, 성평등가족부 성폭력방지와 · (고·특수학교) 시교육청 인성체육급식과, 성평등가족부 성폭력방지와

※ 2026년 3월부터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는 시교육청으로 전체 이관하여 운영

2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지원

➤ 성인권 시민조사관

- 학생(피)-교직원(가) 사안 신고 시 전수조사 지원
- 조사 범위 결정 후 설문 실시
- 피해 사실 확인 시 추가 심층 조사 및 2차 피해 모니터링 실시

➤ 성사안처리 전문가

- 변호사 및 공인노무사
- 학교 요청 시 교직원 관련 사안 조사 지원
- 조사문답서, 조사의견서 작성 지원 및 법률·노무 자문

➤ 성고충상담원 역량강화 연수

- 성고충상담원 필수 교육(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연수원 주관 연수, 1회)
* 해당연수 미이수 시 '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이러닝센터-성고충상담원 연수' 이수
- 2026년 개정판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 대응 업무 가이드 보급(3월)
- 양성평등교육포털 「공감」 학교·기관 내 성사안처리 지원자료 탑재

3

사안발생교 회복 및 안정화 지원

➤ 피해자 지원

- 피해자 개인 심리상담 및 의료비 지원(학생-교직원 사안, 교직원 간 사안, 사안 발생 시점 기준 1년 이내)
* 성사안 접수 후 50만원 이내, 성고충심의위원회 성희롱 인정 시 추가 50만원이내 지원가능
- 피해자 법률상담지원(1회, 30만원 이내, 사안 발생 시점 기준 1년 이내)
- 성매매 피해학생 전문기관 연계
※ 드림스텝 ☎ 303-9623 / 살림 여성인권지원센터 ☎ 246-8297

➤ 행위자 성인지감수성 향상 교육

- 행위자 대면교육 비용 50% 지원
- 찾아가는 성문제 행동 상담교육 50%지원(차상위·한부모·기초수급 대상자 100%지원)

➤ 성인지감수성 향상 워크숍 실시

- 성 비위 사안 발생교 및 희망 학교
- 공동체 회복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례중심 다모임 형식 워크숍
- 강사비의 50% 지원

4

양성평등교육포털 「공감」 운영(<http://bgen.pen.go.kr>)

- 양성평등교육 및 성희롱·(디지털)성폭력 예방교육 콘텐츠, 디지털 성범죄 신고센터, 수업사례, 학교 내 성사안처리지원자료 등 포괄적 정보 제공





성사안처리 관련 Q&A

Q 성고충심의위원회가 모두 교육청으로 이관하여 운영하더라도 학교에서는 성고충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나요 ?

A • 구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학교에서는 성사안이 발생하면 상담 및 신고접수, 분리조치 후 성사안 조사와 성고충심의위원회 개최를 교육청으로 요청하면 됩니다.

Q 성범죄를 발견한 즉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즉시’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즉시’에 대하여 물리적인 시간개념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는 신고의무기관에서 ‘신고를 하기 위하여 수사의 단서가 되는 가해자와 피해자 등의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소요되는 최단시간’을 의미합니다. 학생이 피해자인 경우 학교폭력 사안으로도 접수해야 하므로 48시간 이내 신고 및 보고하도록 합니다.

Q 피해자 측에서 신고를 거부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A • 피해자(학생)나 피해자(학생)의 보호자가 거부하더라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시설장이나 종사자는 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 피해자나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신고 필요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하고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 피해자(성인)가 명시적으로 신고를 반대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는 신고할 수 없으나, 기관의 관리자나 교육(지원)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후 피해자의 반대가 지속될 경우 조사나 사안처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Q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방법은 어떻게 되며, 신고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신고’는 수사의 단서로서 수사기관에 범죄 발생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 신고의 방법은 112 신고 뿐만 아니라 관할 경찰서 민원 담당 경찰관의 상담 등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신고는 수사기관에 수사의 단서로서 가해자와 피해자, 사실관계 등 수사가 개시될 정도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12에 신고를 하면 그에 대한 기록이 남는데 신고 의무자는 실제로 신고를 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며, 그 후 수사절차와 재판절차에서의 성범죄 사건으로 유무죄 확정 여부와는 관계없습니다.

Q 학생이 성인과 성매매를 한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A • 학생과 일반성인의 성매매가 이루어진 경우는 아동학대 사안 및 학교폭력 성착취 피해자로 처리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2020. 5. 19.)에 따라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처벌은 폐지되었습니다.
학생이 자발적으로 성인과 성매매를 한 경우에는 피해학생 보호조치 및 전문기관 연계를 통한 교육상담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드림스텝, ☎ 303-9623 / 살림 여성인권지원센터 ☎ 246-8297)

Q 대면(對面)으로 실시하는 폭력예방교육은 전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해야 하나요?

A • 폭력예방교육(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은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되, 대면(對面)으로 실시하는 교육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전 종사자 대상으로 실시할 수도 있으며, 고위직이나 신규자 등 일부 종사자에 대해서만 실시하여도 대면교육이 실시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Q 고위직 대상 맞춤형 별도 성인지감수성 향상 교육은 반드시 별도로 진행해야 하나요?

A • 네, 맞습니다. 학교 내 고위직(교장, 교감, 행정실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 영역에 대해서는 전체 교직원 연수에도 참여하지만, 반드시 고위직 대상으로 별도로 운영하는 연수를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수가 안 될 경우 해당 학교는 부진기관으로 등재됩니다. 다만,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영역은 교직원 대상 연수 시 참여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만일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별도 연수에 미참여할 경우 해당 학교에서는 반드시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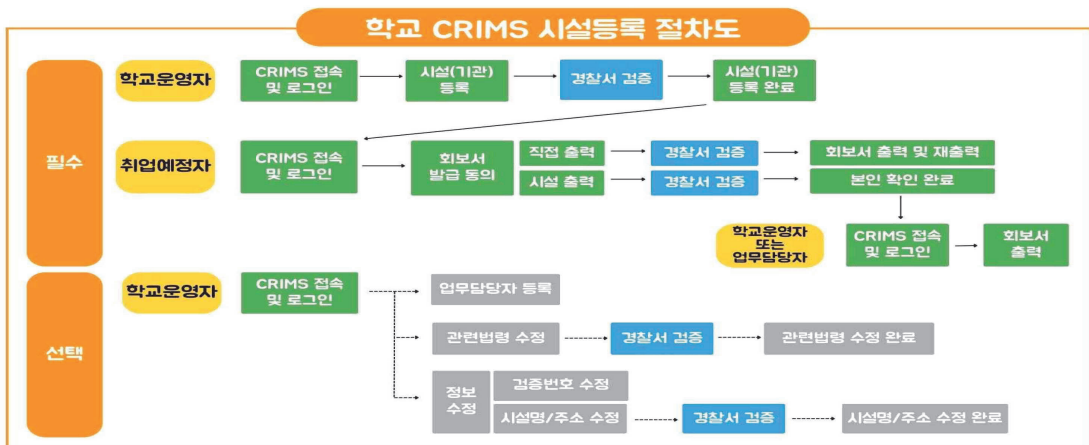
Q 학교에서 실시하는 1회성 특강의 강사도 성범죄 경력조치 대상이 되나요?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5항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해 성범죄 경력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장에게 성범죄 경력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이처럼, 제56조제5항의 법문에서 노무제공의 횟수와 시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실상의 노무”를 제공하는 용역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정기적 제공 여부나 제공시간의 길고 짧음에 관계없이 성범죄 경력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다만 성인만 대상으로 운영하는 강좌는 ① 아동·청소년의 접촉여부, ② 사실상 노무 제공자에 대한 취업제한 기관 관계자의 감독 여부 등에 따라 성범죄 경력조치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 학교 활용: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 (CRIMS)



Q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상 노무’의 해석기준은?

-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성범죄 경력조치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상 노무제공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우선 “사실상의 노무”를 **가. 아동·청소년 대상 직접 노무 제공**과 **나. 간접 노무(단순 노무) 제공**으로 구분한 후, 제공하는 노무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강사, 교생실습 등)는 정기적 제공여부나 제공시간의 길고 짧음에 관계없이 성범죄 경력조치의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반면, 간접 노무 제공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유사한 아동 복지법의 사실상 노무와 관련한 최근의 법제처 법령해석(20-0322)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동 해석에서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라고 규정한 것은 노무를 제공하는 형태는 다양하므로 일률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할 경우 구체적 타당성 측면에서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노동이나 사무 등 활동의 성격, 내용 및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으며 아동과 접촉 또는 대면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 등만으로 반드시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범죄 전력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간접 노무 제공의 경우 ① 보호대상 아동·청소년과의 접촉 가능성, ② 취업제한 기관 관계자의 노무 감독 여부, ③ 노무가 제공되는 주기, ④ 노무제공 시간(취업제한 기관에 머무는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범죄 경력조치 대상 여부를 해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따라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서 아동·청소년과 대면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강사, 청소, 식당, 운전기사, 교생 등은 성범죄 경력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Q 자원봉사자는 성범죄 경력조회의 대상인가요?

- A** • 자원봉사자의 경우 ① 금전적 대가를 받지 않고(실비 성격의 교통비나 식사비는 대가로 보지 않음) 순수한 자원봉사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상 노무”에 해당하지 않아 성범죄 경력조회 대상이 아닙니다. ② 그러나 자원봉사자가 금전적 대가를 받거나, 금전적 대가를 받지 않더라도 자원봉사행위가 자격증 등의 취득에 필수적 요건사항에 해당한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상 노무”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자원봉사자가 ②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위 “사실상 노무(p217)” 해석기준에 따라 판단하셔야 합니다.

※ 관련 판결: 자원봉사자로 업무를 수행하며 실비 외에 소정의 지원금을 받은 자원봉사자에 대해 업무 내용,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상당한 지휘 감독 등을 근로자성의 징표로 보아 해당 자원봉사자의 근로자성 인정.(대법원 2019. 5. 30. 2017두62235판결)



성사안처리 참고 서식

* (공문) 학교내 성희롱성폭력 발생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서식변경 안내, 인성체육급식과-4542, 2025.3.17.(첨부: 엑셀서식)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사실 통보서(성평등가족부 통보)

학교명	000학교
담당자(직급)	000 부장
연락처	000-000-0000

□ 사건 개요

구분	내 용	응답값
시점	◦사건 발생일(최초 발생)	☐ 특정일 (날짜 2026-00-00) ☐ 특정기간 (2026-00-00 ~ 2026-00-00) ☐ 특정불가
	◦사건 인지일 ※ 피해자로부터 사건 신고를 접수하고 기관장에게 이를 보고한 날	날짜 기재 (2026-00-00)
	◦사건 통보일	날짜 기재 (2026-00-00)
사건 유형	◦사건발생기관명	(피해) 000 학교 (가해) 000 학교
	◦사건발생기관 유형	☐ 각급학교 ☐ 유치원 ☐ 어린이집
	◦기관의 장에 의한 사건 여부	해당없음
	◦행위자 다수 여부	☐ 행위자1인 ☐ 행위자2인 ☐ 행위자3인 ☐ 행위자4인이상
	◦피해자 다수 여부	☐ 피해자1인 ☐ 피해자2인 ☐ 피해자3인 ☐ 피해자4인이상
	◦행위자와 피해자 관계	☐ 기관장-하급자 ☐ 상급자-하급자 ☐ 하급자-상급자 ☐ 동료교사-학생 ☐ 학생-교사 ☐ 학생-학생 ☐ 기타()

구분	내 용	응답값
사건 유형	◦ 행위자와 피해자 성별	☐ 남성-여성 ☐ 여성-남성 ☐ 남성-남성 ☐ 여성-여성
	◦ 위계·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일 경우, 수사기관 신고 여부	☐ 신고 (신고일 날짜:) ☐ 신고 예정 ☐ 미신고 (미신고 사유 선택: ☐ 피해자 의사 ☐ 기타) ☐ 해당없음
보호 조치 사항	◦ 피해자가 보호조치를 원하는지 여부	☐ 예 ☐ 아니요
	◦ 행위자와 분리 여부 (예시) 행위자 업무 공간 이동, 행위자 전보, 피해자 휴가 등	☐ 예 ☐ 아니요 ☐ 조치예정 - ☐ 행위자 업무공간 이동 ☐ 행위자 전보 ☐ 피해자 휴가 ☐ 기타 ()
	◦ 피해자 회복을 위한 지원 여부 (예시) 심리상담, 의료지원, 법률지원, 외부기관 연계	☐ 예 ☐ 아니요 ☐ 조치예정
		- ☐ 심리상담 ☐ 의료지원 ☐ 법률지원 ☐ 외부기관 연계 ☐ 기타 ()
주요 내용 (사건 신고· 접수 개요 등)	※ 육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기재하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행위자·피해자 신상정보(이름, 나이 등)는 익명으로 처리하여 300자 미만으로 기재	
기타	※ 외부기관(수사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등 외부기관) 사건처리상황, 언론보도사항, 2차 피해 관련 사항 등 100자 미만으로 기재하여 작성(익명처리 동일)	

※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없이 사건을 성평등가족부로 통보

성희롱·성폭력 사건 재발방지대책(성평등가족부 통보 필수)

학교명	000학교
담당자(직급)	000 부장
연락처	051-860-0123

□ 사건 개요

구분	내 용	응답값
사건 통보 여부	◦성평등가족부로 통보된 사건 여부	☐ 통보 ☐ 미통보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사유	☐ 피해자 의사 ☐ 착오 ☐ 누락 ☐ 기타 (사유)
시점	◦사건 발생일(최초 발생)	☐ 특정일 (날짜 2026-00-00) ☐ 특정기간 (2026-00-00 ~ 2026-00-00) ☐ 특정불가
	◦사건 인지일 ※ 피해자로부터 사건신고를 접수하고 기관장에게 이를 보고한 날	날짜 기재(2026-00-00)
	◦재발방지대책 제출일 ※ 사건 인지일부터 3개월 이내	날짜 기재(2026-00-00)
사건 유형	◦사건발생기관명	(피해) 000학교 (가해) 000학교
	◦사건발생기관 유형	☐ 각급학교 ☐ 유치원 ☐ 어린이집
	◦기관의 장에 의한 사건 여부	해당없음
사건 유형	◦행위자 다수 여부	☐ 행위자1인 ☐ 행위자2인 ☐ 행위자3인 ☐ 행위자4인이상
	◦피해자 다수 여부	☐ 피해자1인 ☐ 피해자2인 ☐ 피해자3인 ☐ 피해자4인이상
	◦행위자와 피해자 관계	☐ 기관장-하급자 ☐ 상급자-하급자 ☐ 하급자-상급자 ☐ 동료교사-학생 ☐ 학생-교사 ☐ 학생-학생 ☐ 기타()
	◦행위자와 피해자 성별	☐ 남성-여성 ☐ 여성-남성 ☐ 남성-남성 ☐ 여성-여성
	◦위계·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일 경우, 수사기관 신고 여부	☐ 신고 (신고일:) ☐ 신고 예정 ☐ 미신고(미신고 사유 선택: ☐ 피해자 의사 ☐ 기타) ☐ 해당없음

□ 사건 처리 경과 및 조치 사항

구분	내용	응답값
사건 상담, 신고 및 조사	◦사건 조사 신청서 접수일	날짜 기재 (2026-00-00)
	◦사건 조사 기간(신청서 접수일부터)	☐ 20일 이내 ☐ 30일 이내 ☐ 30일 초과 (일)
	◦사건 조사 방식	☐ 기관(고충상담원, 조사위원회 등) ☐ 외부전문가 조사 ☐ 인권위 조사 ☐ 상급기관 조사
	◦조사 진행 상황 피해자 고지 여부	☐ 고지 ☐ 미고지
	◦사건 수사기관 수사 여부	☐ 해당 ☐ 미해당
사건 심의 (교육청 협조)	◦심의위원회 개최여부	☐ 개최 (고충심의위원회 개최) ☐ 개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또는 교권보호위원회개최) ☐ 미개최 (사유 기재)
	◦심의위원회 외부위원 참여 여부	☐ 참여 ☐ 불참(사유 기재)
	◦심의위원회 결과 성희롱·성폭력 해당 여부	☐ 인정 ☐ 불인정 ☐ 타 비위 행위로 판단 ☐ 기타 (구체적 사항 기재)
	◦심의위원회 결과 2차 피해 해당 여부	☐ 인정 ☐ 불인정 ☐ 해당없음
	◦이외 의결 내용 (복수 체크 가능)	◦ ☐ 피해자 보호 조치 권고 - ☐ 공간분리 ☐ 유급휴가 ☐ 배치전환 ☐ 해당없음 ☐ 기타() ◦ ☐ 행위자 조치 사항 권고 - ☐ 징계 ☐ 근무장소 변경 ☐ 행위자 인식개선 교육 ☐ 기타 (기재) ☐ 해당없음 ◦ ☐ 2차피해 예방 또는 중지 - (구체적인 사항 기재) ◦ ☐ 재발방지를 위한 기타 조치사항 - (구체적인 사항 기재)

구분	내용	응답값
사건 심의	◦심의결과 당사자(피해자, 행위자) 통지 여부	☐ 통지 ☐ 미통지
(성고충심의 위원회만 해당) 후속 조치 * 예정인 사항도 포함	◦피해자 조치 사항 (복수 체크 가능)	☐ 행위자와 공간분리 ☐ 유·무급휴가 ☐ 심리상담 ☐ 상담/의료/법률 지원기관 연계 ☐ 해당없음
	◦행위자 조치사항 (복수 체크 가능)	☐ 징계 ☐ 부서/근무장소 변경 ☐ 업무배제/대기발령/직위해제 ☐ 인식개선 교육 ☐ 상급기관에 행위자 인사조치 요청 ☐ 해당없음
	◦2차 피해 방지 등 기타 조치사항	(구체적 사항 기재) 예) 전직원 폭력 예방교육 실시 2차 피해 방지 홍보 강화

※ 사건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시 엑셀 서식 활용 가능

□ 재발방지 강화 방안(개선방안 관련 참고자료는 별첨 제출)

구분	내 용	응답값 (최근 1년 기준 현황 기재)	응답값 (사건 발생 계기 개선 계획)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	◦연간 기본계획 수립	☐ 수립 (날짜 기재) ☐ 미수립	☐ 개선방안 있음 (계획 별첨) ☐ 없음
			개선방안 있을 경우 세부기재 및 별첨
	◦예방교육 실시/횟수	☐ 실시(몇 회) ☐ 미실시	☐ 개선방안 있음(세부 기재) ☐ 없음
			개선방안 있을 경우 세부기재 및 별첨
	◦직원 참여율	☐ 90% 이상 ☐ 80~90% ☐ 70~80% ☐ 70% 미만	☐ 개선방안 있음(세부 기재) ☐ 없음
			개선방안 있을 경우 세부기재 및 별첨
	◦기관장 참여	☐ 참여 (총 0회 중 0회) ☐ 불참	☐ 개선방안 있음(세부 기재) ☐ 없음
			개선방안 있을 경우 세부기재 및 별첨
성희롱, 성폭력 방지 조치 등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제·개정	☐ 있음 (수립시기 기재) ☐ 없음	☐ 개선방안 있음(세부 기재) ☐ 없음
			개선방안 있을 경우 세부기재 및 별첨
	◦고충상담원 지정	☐ 지정 (여 0명, 남 0명) ☐ 미지정	☐ 개선방안 있음(세부 기재) ☐ 없음
			개선방안 있을 경우 세부기재 및 별첨
	◦고충상담원 교육 이수	☐ 이수 ☐ 미이수	☐ 개선방안 있음(세부 기재) ☐ 없음
			개선방안 있을 경우 세부기재 및 별첨

구분	내 용	응답값 (최근 1년 기준 현황 기재)	응답값 (사건 발생 계기 개선 계획)
성희롱, 성폭력 방지 조치 등	◦ 고충상담창구 설치	☐ 설치 ☐ 미설치	☐ 개선방안 있음(세부 기재) ☐ 없음 개선방안 있을 경우 세부기재 및 별첨
	◦ 사이버 신고센터 설치 (종사자 30인 이상일 경우)	☐ 설치 ☐ 미설치	☐ 개선방안 있음(세부 기재) ☐ 없음 개선방안 있을 경우 세부기재 및 별첨
	◦ 고충심의위원회 설치 (교육청 설치이므로 모두 설치로 표시)	☐ 상설	☐ 없음
	◦ 고충심의위원회 구성 (교육청 운영, 동일하게 입력)	(총 7명) (내부 3명, 외부 4명) (여성 4명, 남성 3명)	☐ 없음
	◦ 기타 개선 계획 (해당될 경우 기재)		* 자율 기재 예) 대상자별 성교육 운영 횟수, 방법, 성인지감수성 향상 인식조사, 실태 조사, 컨설팅 실시, 징계 양정 강화 등



성사안 피해 전문 상담기관 현황 (행위자 교육기관 포함)

순	소 속	전화	주 소	지원내용	행위자 교육
1	경찰	국번없이 112	각 구별	성폭력피해신고	×
		051)899-2548	지방경찰청 여·청범죄수사계	장애학생, 초등학교 사안	×
2	동부 해바라기센터	051)501-9117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359 부산의료원 지하1층	성폭력·성매매·아동학대· 가정폭력 상담, 의료, 수사, 법률지원 등	×
3	부산 해바라기센터	051)244-1375	서구 구덕로 187 융합의학연구동 3층	성폭력·성매매·아동학대· 가정폭력 상담, 의료, 수사, 법률, 심리지원 등	×
4	이젠센터 (부산여성 폭력방지 종합지원센터)	국번없이 1366	부산진구 중앙대로 845(부전1동)	24시간 상담 상담, 보호시설연계	×
	이젠센터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	051)802-2082		자치경찰 상주, 원스톱지원 디지털성범죄 긴급지원	×
5	(사)부산성폭력 상담소	051)558-8832	동래구 중앙대로 1523 SK 허브스카이 A3동 06호	상담의료 및 수사지원연계, 법률, 심리지원 등	×
6	(사)부산여성의 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051)817-6464	부산진구 가야대로607	상담의료 및 수사지원연계, 법률, 심리지원 등	×

순	소 속	전화	주 소	지원내용	행위자 교육
7	강서 가족상담센터	051)204-8896	강서구 명지국제 2로	상담의료 및 수사지원연계, 법률, 심리지원 등	×
8	늘함께청소년 성문화센터	051)558-1224	동래구 중앙대로 1523(온천동)		×
9	(사)다함께 성·가정상담센터	051)753-1377	수영구 연수로 392 (광안동)	상담, 의료 및 수사지원연계, 법률, 심리지원 등	○
10	부산광역시청소년 종합지원센터 (청소년 성문화센터)	051)303-9623/9626	사상구 모덕로 82 (덕포동)	성매매피해 아동·청소년 상담, 의료·법률지원, 학업·자립지원, 전문멘토 연계	○
11	(사)부산여성장애인 연대 부설 성·가정통합상담소	051)583-7735	동구 중앙대로 196번길(초량동) 부산장애인 종합회관 4층	상담, 의료 및 수사지원연계, 법률, 심리지원 등	○

»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시 설 명	전화	소 재 지	운영자	비고
드림스텝	051)303-9623	사상구 모덕로 82	(학)박영학원	





Chapter

06

아이들을 지키는 관심과 용기 아동학대예방

• 아동학대 개념 및 유형	238
•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242
• 아동학대 사안처리 개요	249
• 아동학대 대응 절차별 학교의 역할	251
• 아동학대 관련 주요 제도 및 정책	256
• 아동학대 관련 Q&A	260
• 아동학대 관련 각종 서식(예시)	264



아동학대 개념 및 유형

1 아동학대의 정의

- **‘아동’**
18세 미만인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제1호)
-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제2호)
-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
-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제4호)
 - ▶ 「형법」에 의한 죄: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체포, 감금, 협박, 약취, 유인, 인신매매, 강간, 추행, 명예훼손, 모욕, 강요, 공갈, 재물 손괴 등
 - ▶ 「아동복지법」에 의한 죄: 신체적·정신적·성적 학대, 유기, 방임 등
 - ▶ 「아동학대처벌법」에 규정된 범죄: 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중상해, 상습범

※ ‘아동학대범죄’는 아동학대 행위 주체를 ‘보호자’로 한정함으로써 아동복지법상 아동 학대보다 좁은 개념(「아동학대처벌법」 제2조제4호)

아동학대 관련 개념 비교

구분	아동학대	아동학대범죄	학교폭력	가정폭력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아동학대처벌법」), 「형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해자	보호자를 비롯한 성인	보호자	제한 없음	가정구성원 (동거친족 포함)
피해자	아동 (18세 미만)	아동 (18세 미만)	학생	가정구성원 (동거친족 포함)

▶ 아동학대와 학교폭력

- 학교폭력은 가해 주체에 대한 제한이 없으나, 아동학대는 가해 주체가 보호자를 비롯한 성인으로 제한

참 고	아동학대와 학교폭력 사안처리
	• 아동학대로 신고·접수된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예방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학교폭력사안처리 적용을 제외할 수 있음. 다만, 피해아동 및 그 보호자가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의 보호조치를 원하는 경우, 학교폭력 사안처리 적용 가능.(반드시 피해아동 및 그 보호자에게 의사확인 필요)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학대행위자(교사 포함)에 대한 조치는 불가능 • 유의사항: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적용 시 민감하게 보호해야 할 피해아동의 정보가 관계자에게 공개되어 외부에 유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아동학대 관련 정보 누설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함 ※ 아동학대 관련 정보 누설 금지 규정: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

▶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 가정폭력 피해자가 18세 이상일 경우에는 가정폭력 관련법 적용, 18세 미만일 경우에는 아동학대 관련법을 적용하여 처리

2 아동학대의 유형 4가지

- 신체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 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
- 정서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함
- 성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 방임 및 유기: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방임) 및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유기)

3 아동학대 조기 발견을 위한 노력

➤ 관찰

- 매일 아동의 건강과 안전 살피기
- 평상시와 다른 상흔 또는 감정의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기
-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거나 비위생적인 신체 상태 확인하기
- 아동의 신체 또는 정서적 이상 징후에 대해 꼼꼼하게 기록하기

➤ 상담

- 아동의 이상 징후 발견 시 상담하기
-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할 경우 Wee 클래스 및 Wee 센터에 상담 의뢰하기
- 건강상 문제가 발견될 경우 보건교사에게 상담 의뢰하기
- 아동의 상담 내용 등을 기록하기

➤ 지속적인 관심

- 학생, 학부모, 동료교사 등의 제보에 대한 관심 갖기
- 주변의 이야기에 주의를 기울이고 기록하기

아동학대 징후 체크리스트

‘아동학대 징후 체크리스트’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직무 중에 학대로 의심되는 아동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 활용하도록 제작되었음.

번호	체크항목	체크란□	
1	사고로 보이기에는 미심쩍은 멍이나 상처가 발생한다.	예□	아니오□
2	상처 및 상흔에 대한 아동 혹은 보호자의 설명이 불명확하다.	예□	아니오□
3	보호자가 아동이 매를 맞고 자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나 체벌을 사용한다.	예□	아니오□
4	아동이 보호자에게 언어적, 정서적 위협을 당한다.	예□	아니오□
5	아동이 보호자에게 감금,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당한다.	예□	아니오□
6	기아, 영양실조, 적절하지 못한 영양섭취 징후가 보인다.	예□	아니오□
7	계절에 맞지 않는 옷, 청결하지 못한 외모를 보인다.	예□	아니오□
8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방치한다.	예□	아니오□
9	성학대로 의심될 성 질환이 있거나 임신 등의 신체적 흔적이 있다.	예□	아니오□
10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 및 해박하고 조숙한 성지식을 보인다.	예□	아니오□
11	자주 결석하거나 결석에 대한 사유가 불명확하다.	예□	아니오□
12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 혹은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다.	예□	아니오□
13	보호자에 대한 거부감과 두려움을 보이고, 집(보호기관)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두려워한다.	예□	아니오□
14	아동이 매우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모습 등의 극단적인 행동을 한다.	예□	아니오□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1 아동학대 예방교육

아동 대상 교육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아동복지법」 제31조제1항)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별표 6]의 교육기준에 따라야 한다.(「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 교육 대상

- 취학 전 아동, 각급 학교(유·초·중·고) 및 특수, 각종 학교 학생

➤ 교육 방법

-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6개월에 1회 이상, 연간 8시간 이상 실시
 - ※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표 1], [별표 2], 시도교육청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따라 학교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
 - ※ 학교 상황 및 여건에 맞추어 진행
- 안전 관련 교육 및 학교교육과정과 연계 통합 실시 가능
- 학생의 발달수준을 고려하여 교육내용 구성 및 선정
- 교내·외 체험교육 또는 현장학습 연계
- 일상생활을 통한 지도 및 부모 교육 연계

➤ 교육 내용

- 아동의 권리, 유엔아동권리협약
- 아동학대 정의 및 개념

- 아동학대 유형
- 아동학대 신고
- 위기상황별 대처 및 예방법
- 아동학대 처리 절차 및 처벌
- 아동학대 후유증 및 회복 방안
- 아동학대 관련 전문(도움)기관 정보

▶ 학교급별 교육내용 및 교육기준

①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별표6)

아동에 대한 안전 교육	실시주기 (총 시간)	교육대상 및 교육내용			교육방법
		초등학교 취학 전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6개월에 1회 이상 (연간 8시간 이상)	1. 내 몸의 소중함 2. 내 몸의 정확한 명칭 3. 좋은 느낌과 싫은 느낌 4. 성폭력 예방법과 대처법	1. 성폭력을 포함한 아동학대 개념 2. 성폭력의 위험상황 3. 성폭력 예방법과 대처법 4. 나와 타인의 권리인식	1. 학대 및 성폭력의 개념 2. 위험상황에 따른 대처법 및 예방법 3. 학대·성폭력 범죄 신고 요령 4. 나와 타인의 권리 존중하기	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 장소, 상황별 역할극 실시 3. 시청각 교육 4. 사례 분석

② 학교안전교육 실시기준 등에 관한 고시(별표 1, 2)

아동에 대한 안전 교육	실시주기(총 시간) 교육대상 및 교육내용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생활안전교육	13	12	10	10
교통안전교육	10	11	10	10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교육	8 •아동학대 신고 및 대처방법 알기	8 •아동학대의 유형 및 대처방안 알기 •가족폭력의 개념과 대처방안 알기	10 •가족과 올바른 의사소통 방법과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제도 알기 (아동학대 포함)	10 •가정폭력 예방 지침을 알고, 보호하기 (아동학대 포함)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교육	10	10	10	10
재난안전교육	6	6	6	6
직업안전교육	2	2	3	3
응급처치교육	2	2	2	2

학부모 대상 교육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 방안 및 아동학대 인식 개선을 위한 보편적 부모교육 확대(관계부처합동, 2021.08.19.)

➤ 교육 대상

- 초등학교 취학 전 유·초·중·고등학교 학부모

➤ 교육 방법

- 입학설명회, 학교 설명회 등 학부모 대상 행사 시 부모 교육 실시
- 교육자료, 가정통신문 배포, 자녀양육 관련 교육 동영상 상영, 강의 등
-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취약계층 가족상담 및 부모교육
- 아동학대 인식 제고와 신고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 강화
- 학교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아동학대예방 홍보영상 및 홍보물 탑재
- ※ 학교 상황 및 여건에 맞추어 진행

학생·학부모 예방교육 시 활용 자료

관련부처	자료현황
교육부	• 교육부 - 교육부소식 - 홍보자료 - 홍보동영상- 아동학대 예방 • 교육부 > 교육부소셜미디어(교육TV) > YouTube - 아동학대의 모든 것, 그것이 알고 싶다! [교육부 국민 서포터즈] -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의 첫걸음!! 우리 모두의 관심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 존중받는 어린이 어린이보건복지부 - 아동학대, 이제는 예방해요 - 아동학대를 알아보아요 -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이렇게 해요
아동권리 보장원	〈학생〉 • 아동권리보장원 - 교육·평가-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자료실-아동학대/ 아동권리 • 아동권리보장원-교육·평가-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교육·홍보자료-동영상·인쇄물 - EBS 훈육과 학대사이, 우리 아이의 미래 〈학부모〉 • 아동권리보장원 - 캠페인 - 부모교육 강의실 • 아동권리보장원-교육·평가-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교육·홍보자료-동영상·인쇄물 - (일반인) 아동학대 종류, 후유증, 신고방법 (영상) - EBS 훈육과 학대사이, 우리 아이의 미래, 각종 아동학대예방 홍보 공익광고 -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바람직한 훈육방법 소책자

관련부처	자료현황
경찰청	- 경찰청 유튜브(YouTube)채널: 대한민국 경찰청 - 토닥토닥 꼬모와 함께 아동학대 캠페인 - “아빠가 집에 오시면 숨바꼭질을 한다.” - 아이가 위험해요 송♪우리동네 안전한 노란 동그라미가 있다고?! 아동학대 예방교육 - [아동학대예방캠페인]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 “나의 꿈을 지켜 주세요” -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끔찍한 실화...우리 곁의 아동학대 - 훈육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아동학대 - [아동학대예방-안아줌Talk]박지선, 심현규의 가정 방문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 유튜브(YouTube)채널: 행정안전부 - 아동학대에 상처받는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 주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	- 유튜브(YouTube) - 법구공TV - 초등학생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 교육 영상 Part 1, 2, 3 - 아동학대 예방 교육 영상 Part 1, 2, 3(이수정 교수)
대법원	- 유튜브(YouTube) - 법구공TV - 아동학대 예방교육 - 아동보호 절차 알아보기!(신고부터 사건 진행 절차,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까지! 가정 법원 탐구생활)
대검찰청	- 대검찰청 유튜브(YouTube)채널: 대한민국 검찰나우 - 아동학대 1편 - 사랑의 매는 없다! - 아동학대 2편 - 이럴 땐 신고하세요!
복지로	- 복지로 유튜브(YouTube)채널: 복지로 - 아동학대 예방 부모교육 영상
학부모 On누리	- 학부모On누리(parents.go.kr/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전국학부모지원센터) - 자녀교육 전문가와 함께하는 아동학대 예방교육 - 부모가 주고 싶은 사랑, 자녀가 받고 싶은 사랑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 유튜브(YouTube)채널: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 [아동학대 예방]①, ②, ③, ④

▶ 학부모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 「대화가 있는 밥상」 자료(가정 내 대화법) 보급: 초등 12종, 중등 12종
 - 쉽게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대화, 말하기 예시 자료 제공
 - 웹툰, 삽화 등의 형식으로 학부모 친화형 자료 개발
- 「존중 받는 아동, 행복한 가정」 교육영상 보급(3편)
 - 대화가 있는 밥상과 연계하여 효과 극대화
 - 아동학대 인식 개선을 위한 보편적 부모교육 확대

※ 원클릭생활교육 홈페이지(<https://home.peng.go.kr/onedick>) > 생활교육 > 생활교육자료실에 탑재 예정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아동복지법」 제4조)
-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

➤ 교육대상

- 학교의 장과 종사자(정직원, 계약직, 시간제, 파견자, 용역직원 등 시설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함)

➤ 교육방법

- 매년 1시간 이상 실시
- 집합교육(집합 강사교육, 집합 온라인교육), 인터넷 강의

➤ 신고의무자 교육방법 및 증빙자료

- 집합교육
 - 집합 강사교육: 교육계획, 교육사진, 참석자 서명, 강사 프로필(자격기준 검증 필수), 교육 콘텐츠 자료(교육내용 검증)
 - 집합 온라인교육: 교육계획, 교육사진(참석자 및 동영상 화면 포함), 참석자 서명 제출, 복지부 제공(또는 복지부 승인) 콘텐츠 사용
- 인터넷 강의
 - 복지부 위탁·운영 기관: 개인 교육 수료증 취합 및 학교 보관
 - 복지부 제공·승인 콘텐츠를 탑재한 기타 기관: 교육운영 기관명, 콘텐츠 탑재 사이트 주소, 해당 교육 사이트에서 발행한 교육 이수증 취합 및 학교 보관

관련부처	개설과정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 (https://edu.beti.go.kr)	교원 법정의무교육 통합과정, 행정 법정의무교육 통합과정,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영문)
중앙교육연수원 (https://www.neti.go.kr)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https://sll.seoul.go.kr)	
경기도지식 (https://www.gseek.kr)	
나라배움터 (https://e-learning.nhi.go.kr)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https://lms.educare.or.kr)	검색하기 - '아동학대' 검색 - 온라인 교육 / 집합교육 - (신고의무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아동권리보장원 (edu.ncrc.or.kr)	아동학대예방 법정의무교육(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수어포함 아동학대예방 법정의무교육(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Educational program on child abuse prevention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미실시 시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불이행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아동복지법」 제75조제3항제1호의2,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8조)

[과태료 부과 기준]

구분	1차 위반	2차 이상 위반
과태료 금액	150만원	300만원
부과주체	교육감 또는 교육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
부과대상	기관장(학교장)	기관장(학교장)

3 가정폭력 예방 교육

▶ 가정폭력예방 교육(연수) 실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및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실시주기: 연 1회(1시간) 이상
- 연수방법: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대면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교육이 포함되어야 함.
※ 4대 폭력 예방교육(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으로 통합하여 실시가능
- 연수 대상
 - 유·초·중·고·특수·각종 학교: 전 교직원
 -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전 직원
 - 초·중·고·특수·각종 학교 학생(학생 교육방법은 아동학대 예방교육 참조)
- 교육내용: 정상적인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구성원 관계의 유지 및 발전에 관한 사항, 성인지(性認知) 관점에서의 가정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관련 법령의 소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그밖에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가정폭력 예방에 필요한 사항



아동학대 사안처리 개요

1

아동학대 신고 및 사안처리 흐름도

아동학대 최초 인지(신고의무자 등)



수사기관(112) 신고 및 학교장, 교육(지원)청 보고

● 수사기관(112) 즉시 신고

- 학대행위자가 보호자로 의심되는 경우 보호자에게 미리 알리지 않기
- 학교장에게 보고 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긴급한 경우(학생의 신변이 위급한 경우)는 수사기관에 우선 신고 후 학교장 보고
- 수사기관 신고 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동행 요청 가능
※학교 명의로 신고 가능

● 응급상황 시 아동의 안전 및 신변 확보

● 학교장 및 교육(지원)청 사안 보고

- 아동학대 의심 징후 확인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긴급 대책 마련
- 아동학대 의심 사안 학교장 결재 및 교육(지원)청에 사안 보고(〈서식3, 3-1〉 참고)

※ 교육(지원)청 보고 시 주의사항

- 1) 초·중학교 ⇒소속 교육지원청, 고등·특수·각종학교 ⇒시교육청 공문발송
- 2) 보고 과정에서 최소한의 필수 관계자 외 피해아동 및 신고자에 대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주의 요망
- 3) 사안관련 공문 작성 시 주의
 - 대국민공개여부: 비공개 6호, 목록 비공개
 - 열람범위: 열람불가
 - 열람제한기간: 설정 안 함

※ 아동학대와 중복하여 일어난 사안 처리방법(학교폭력, 성사안)

- 아동학대-학교폭력: 「학교폭력예방법」 제5조에 따라 학교폭력으로 처리하지 않을 수 있으나 피해아동 및 그 보호자가 「학교폭력예방법」상(제16조)의 보호조치를 원하는 경우, 학교폭력 사안처리 적용 가능. (의사확인 필요)
- 아동학대-성사안: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절차도 따라야 함

★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학교 자체 종결, 신고를 늦추는 일 등이 없도록 주의



현장출동 및 조사(피해아동이 상담 받을 수 있도록 협조)



피해아동: 응급조치 및 (일시)보호조치, (일시)보호명령 / 학대행위자: (긴급)임시조치



사후지원, 사례관리 및 서비스 협조



학생에 대한 지속적 경과 관찰 및 다각적 지원 방안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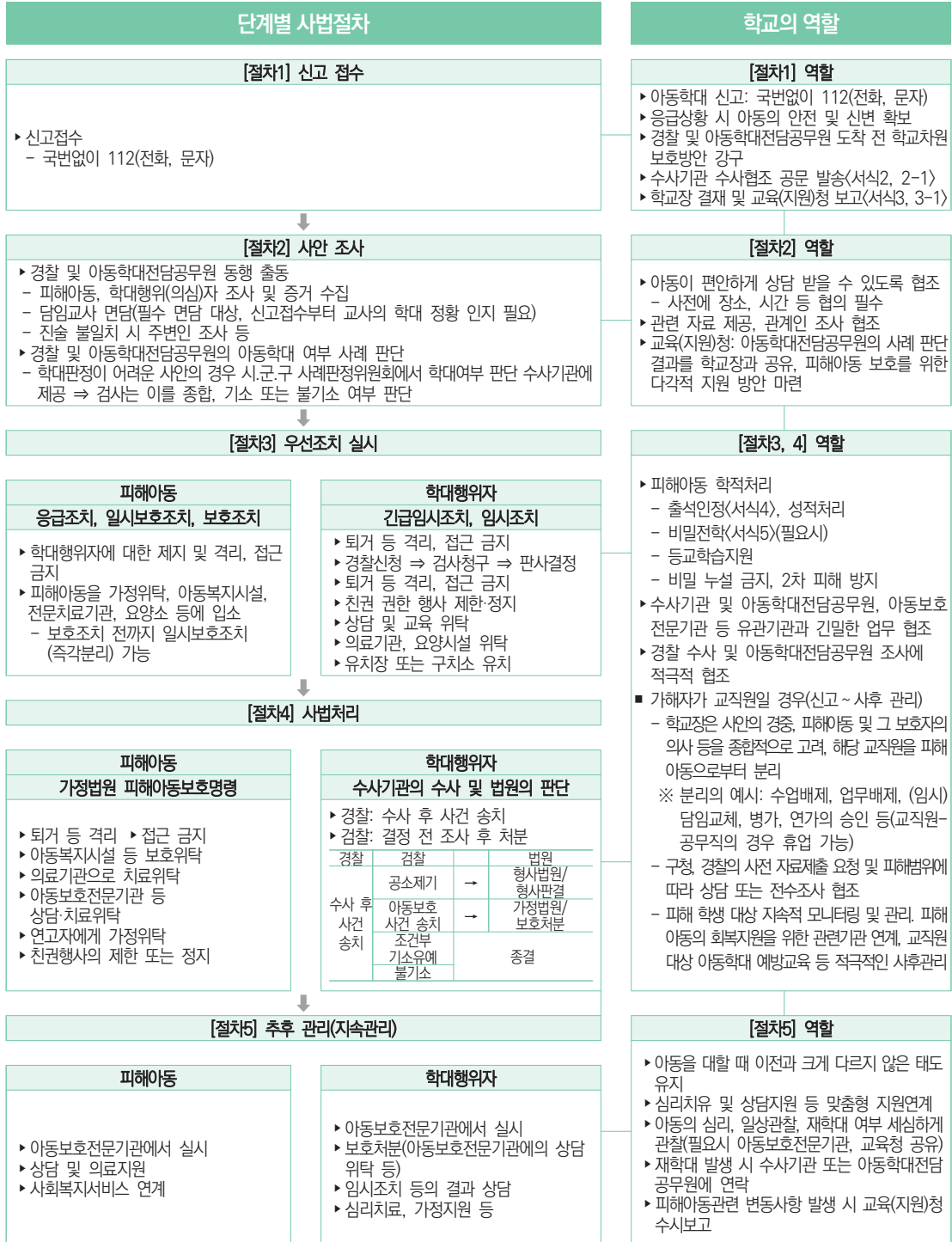


아동학대 신고 및 최초 보고 이후 변동 사항 발생 시 교육(지원)청 수시 보고

Chapter
06

아이들을 지키는 관심과 용기 아동학대 예방

2 단계별 사법절차에 따른 학교의 역할





아동학대 대응 절차별 학교의 역할

1 조기 발견

관찰	- 매일 아동의 건강과 안전 살피기 - 평소시와 다른 상흔 또는 감정의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기 -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거나 비위생적인 신체 상태 확인하기 - 아동의 신체 또는 정서적 이상 징후에 대해 꼼꼼하게 기록하기
상담	- 아동의 이상 징후 발견 시 상담하기 -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할 경우 Wee 클래스 및 Wee 센터에 상담 의뢰하기 - 건강상 문제가 발견될 경우 보건교사에게 상담 의뢰하기 - 아동의 상담 내용 등을 기록하기
지속적인 관심	- 학생, 학부모, 동료 교사 등의 제보에 대한 관심 갖기 - 주변의 이야기에 주의를 기울이고 기록하기

2 아동학대 신고

신고	- 교육현장 직무수행 중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 (112 유선 신고 후 수사기관에 공문발송) • 아동에 대한 폭력·방임·유기 등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된 경우 •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 면담을 거절하여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 출석이 확인되지 않거나 이유 없이 2일 이상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온라인 수업기간 포함) • 보호자 연락, 영상통화, 가정방문 등으로 아동학대 의심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 학생으로부터 SNS 등을 통해 자신이 학대받았다고 호소하는 경우 등 •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 등 아동 보호가 시급한 경우 • 기타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 아동학대가 맞는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아동학대 징후 체크리스트'로 점검해 본 뒤 1개 문항 이상 '예'인 경우 아동학대 의심 - 아동학대 신고 후 학대 증거를 확보하고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 엄수 - 학교장 결재 및 교육(지원)청 보고
----	--

신고시 주의점	• 아동학대 최초 인지 시 즉시 신고 • 응급 상황 시 아동의 안전 및 신변 확보(학교 차원의 아동보호 방안 강구) • 학대(의심) 행위자에게 신고내용 미리 알리지 않기 • 가능한 한 증거사진, 동영상 등을 확보(성학대의 경우 증거 확보를 위해 씻기거나 옷을 갈아 입히지 않음) • 당장 위급상황이 아닌 경우 수사기관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동행 출동 요청 • 아동이 불안에 빠지지 않도록 큰일이 난 것처럼 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대함 • 기억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조사 전 피해학생에게 캐묻거나 유도질문하지 않도록 유의 • 신고 후에도 지속적으로 수사기관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조 •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 발생 시 나머지 학생들에 대한 트라우마 상담, 치료 고려 • 피해아동에 대한 정보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 - 2차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비밀엄수 - 언론 대응 창구 단일화(관리자, 생활교육부장)
관리자의 역할	-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신고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임을 평상시에도 공개적으로 강조 - 신고의무자인 교직원이 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 환경 마련

➤ 학교의 장과 종사자는 신고 의무자로서 아동학대범죄가 의심만 되어도 신고

신고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제1항)

➤ 신고 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정당한 사유없이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아동학대처벌법」 제63조(과태료))

➤ 신고 요령 안내

- 신고처: 국번 없이 112, 수사기관 공문발송<서식2, 2-1>
- 유선 신고 방법(예시)

1. 00학교에서 아동학대(의심) 사안에 대하여 신고합니다.
2. 00학교 재학 중인 아동이 아동학대를 당한 것 같아 신고합니다.
3. 아동의 현재 상황은 합니다.
 - 아동의 안전 여부, 응급조치 필요 여부, 아동의 심신 상태, 가정 상황 등
4. 아동의 인적 상황은 입니다.
 - 이름, 성별, 연령, 주소, 연락처 등
5.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은 입니다.
 - 이름, 성별, 나이, 연락처 등 / 단, 학대행위자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 가능
6. 그 외 당부사항은 입니다.
 -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동행 출동 당부
 - 추후 연락이 필요한 경우 통화 가능한 번호 제공(학교대표 전화번호 등)

※ 학교장 또는 교육(지원)청에 대한 사안 보고만 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로 인정되지 않음

3 현장 조사

➤ 학교와 교사의 역할

학교의 협조	- 아동학대 신고 이후 전문기관의 조사 진행시 적극적 협조 필요 • 학생 조사 시 학교 내 장소제공 협조, 피해아동에 대한 관련자료 제공 등 • 피해아동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 - 교사의 동석 가능 여부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요청(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동석 여부 판단 및 결정) - 현재 담임교사 또는 아동이 원하는 친밀감이 있는 교사(작년도 담임교사, 상담교사, 동아리 담당 교사 등)가 동석 시 아동의 의사 존중, 편안한 분위기 조성에 도움 - 수사기관 혹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상담시간 및 장소 등에 대하여 사전 협의하여 상담 장면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 - 학생을 보호하고 있는 위탁기관을 보호자로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생의 회복지원에 대한 정보 공유 및 협력
교사의 역할	- 학대가 일어난 것이 학대받는 아이의 잘못이 아니라는 점을 아이에게 알리고 아이의 안전을 위해 교사가 도움을 줄 것을 알리며 신뢰를 구축하는 과정이 필요 - 학교생활 중 아이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측할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알려주고, 사소한 것이라도 스스로 선택할 기회를 주어 안전하다는 느낌과 스스로 일상을 조절할 수 있다는 느낌을 갖도록 도와 주는 과정이 필요

➤ 경찰/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사안 조사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범죄가 행하여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

-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신고현장 또는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학교 등)에 출입하여 피해아동과 아동학대행위자를 분리하여 조사 실시함
- 아동학대 조사 또는 면담 대상은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담임교사·상담교사, 주변인 등임
- 신고·접수된 아동학대(의심) 사안 조사 시 담임교사·상담교사 등이 필수 면담 대상으로 추가됨(관계부처 합동 '20. 9월~)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진술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의2제1항)

면밀한 조사 이후 아동학대 여부에 대한 사례판단(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혐의판단(수사기관)이 이루어짐.

4 조치 결정

➤ 학교 및 교사의 역할

학적처리 및 신변보호, 2차 피해 방지	- 피해학생의 응급조치 및 일시보호 중 학적처리에 적극적 협조 - 학대행위자로부터 피해학생의 신변보호와 비밀보장을 위한 노력 진행 - 피해아동의 불안하고 위축된 심리를 고려하여 신고 전과 후 동일한 태도 유지 - 피해아동의 지속적 관찰을 통해 심리적·신체적 어려움을 탐색하고 보호를 위한 노력 진행 - 타 교사 및 학생들에게 피해학생 관련 및 신고자에 대한 정보 등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주의 (신변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	--

5 사후 관리

➤ 학교 및 교사의 역할

비밀 엄수 및 피해아동 지원	- 교육현장 관계자는 피해아동은 물론 아동학대 신고자에 대한 비밀 엄수 - 피해아동에 대한 지속적 관찰을 통해 재학대 여부 탐색. 의심스러운 상황 시 신속하게 112 신고 - 피해아동 회복을 위해 Wee센터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 및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상담, 심리치료, 보호 지원 - 피해아동은 자신이 겪은 사건으로 불안 및 우울을 호소할 수 있음. 피해아동의 심리 변화를 파악하고, 피해아동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는 과정 필요
----------------------------	--

➤ 피해아동 회복 지원 기관

구 분	내 용
Wee센터, Wee클래스 Wee닥터	-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 학생 관련 상담 및 심리치유 프로그램 제공
학대피해 아동 센터	- 아동학대사건 발생 시 학대 재발 위험이 높아 현재 생활 중인 가정의 보호가 바람직하지 않은 18세 미만 피해아동 대상 지원 -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등 생활, 교육, 정서 지원 - 심리검사, 심리치료, 건강검진 및 병원 치료 지원
아동보호 기관	-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 가족에 대한 사례 관리 - 학대피해아동 상담 및 교육, 치료 등 서비스 지원, 가정의 기능 회복서비스 제공 - 원가정 양육환경 점검 및 가정복귀 프로그램 실시 등 가정복귀절차 진행, 가정복귀 아동에 대한 사후 관리



아동학대 관련 주요 제도 및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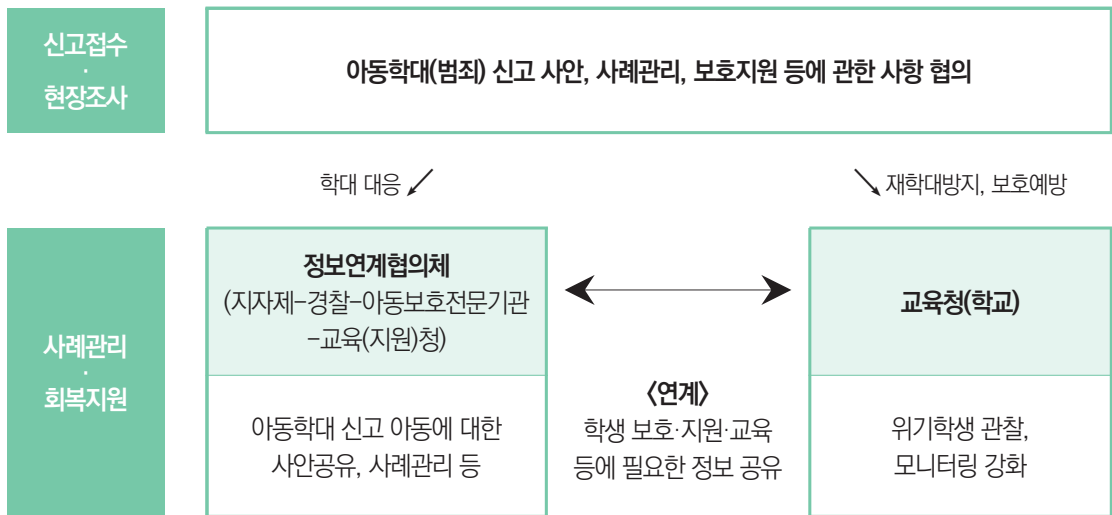
1 취학 및 등교학습 지원, 비밀전학

제도	내용
취학지원	- 학대피해아동이 주소지 외 지역에 취학(입학, 재입학, 전학, 편입학 등)할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우선적으로 취학 지원
피해아동의 출결 및 성적 처리	• 「아동복지법」 제15조(보호조치)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5조(학생 등에 대한 학대예방 및 지원 등)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교육부 훈령) 제8조 1)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위탁된 피해 학생이 평가에 미응시할 경우 우리교육청 학업성적 관리지침과 학교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따라 인정점 부여 2) 출결 및 성적처리를 위한 절차 및 방법 •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학교로 공문 발송 • 학교에서 기관의 공문을 근거로출석인정(내부결재) • 학교에서 기관 또는 보호시설로 위탁학생 관리를 위한 '학생관리기록 양식'을 공문으로 제공
등교학습지원	- 피해아동의 등교학습 결손 예방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피해아동이 거주하고 있는 보호시설 등 지리적 요건이나 재학 중인 학교의 비대면 수업 진행 여부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지자체장의 요청에 따라 원적교가 아닌 학교에서 임시적으로 교육 활동을 지원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의4) - 긴급한 학습지원으로, 안정적인 학습권 보호를 위해서는 (비밀)전학 등 필요
비밀 전학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피해학생을 학대행위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해당학교에 비밀전학을 요청하면 학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아동학대 피해학생이 주소지 외 지역에 취학(입학, 재입학 및 편입학 포함)할 경우 우선적으로 취학을 지원 • 학교와 교육(지원)청은 피해학생 및 그 가족이 전학한 학교명 등 취학 관련 일체 자료를 비공개로 처리하여야 함 • 학교장은 아동학대 행위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그 사실을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2 피해아동보호 및 학대위기아동관리시스템

▶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의 구성과 운영

- 시·군·구-경찰-교육청-아동보호전문기관 협의체를 통해 아동학대 조기발견, 초동대응, 행위자 수사, 피해아동 보호 및 회복 등 아동학대 대응 전 단계에서 유기적 협력 도모('20. 7. 관계부처 합동)



▶ 교육현장의 조기발견·신고 역할 강화

- 취학단계 아동 예비소집 시 전수점검 및 입학단계 이후 소재·안전 이중확인 지속 실시
※ 방학기간·신학기 위기아동 적극 발굴·지원을 추진하되, 필요시 지자체, 경찰 수사 의뢰 등 병행
-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소재·안전 확인 현황 지속 모니터링
※ 아동학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시도별 정원외관리 현황 점검 등 추진
- 학대 의심 아동 발견 시 적극 신고

3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대응 교육감 의견 제출

▶ 아동학대와 아동학대범죄

	아동학대	아동학대범죄
근거법률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제4호
정의	①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②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제4호에 열거된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폭행 상해 유기 협박 등)
가해자의 범위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 ※ 보호자: 친권인,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교원 포함)	보호자
조사주체	지자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
조사·수사 후 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피해아동 가족에게 상담·교육 실시 (「아동복지법」 제29조의2) → 정당한 사유 없이 미참여 시 과태료 부과 ② 친권 제한 또는 상실 (「아동복지법」 제18조)	형사처벌 등
포함관계	 ← → 아동학대 아동학대범죄	

〈조사·수사기관의 아동학대 처리 담당자〉

-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학대 업무(아동학대 신고접수 / 현장조사 및 응급 보호 /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조사 등)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군·구 단위에 배치한 공무원
- ▶ (사법경찰관) 가정폭력 및 아동·노인 학대 등에 대한 예방, 수사연계, 사후관리 등의 업무 총괄, 학대 전반에 대한 현장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전담 경찰

▶ 아동학대 관련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방안: 교육감 의견서 제출

- ▶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아동학대 관련 법령에 따라 조사·수사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정당한 교육활동 또는 생활지도’ 판단 여부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함

-「교원지위법」 제17조, 「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의2, 제17조의3-

- 조사·수사기관으로부터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사안 정보 공유
- 교육지원청은 신고사향을 공유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사안 확인
- 신고사향을 공유받은 날부터 5일 이내 교육청으로 ‘교육활동 확인서’ 상신
- 교육감은 교육지원청이 신고사향을 공유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조사·수사기관으로 ‘교육감 의견서’ 제출



아동학대 관련 Q&A

Q 초·중·고등학교는 신고의무자 교육과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둘 다 해야 하나요?

A • 아닙니다. 신고의무자 교육만 하면 됩니다. 「아동복지법」 제26조 및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제2항제20호에 따라 초·중·고등학교는 신고의무자 교육대상에 해당하지만,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대상 기관(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은 아닙니다. 또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20.10.1. 시행)으로 기존 '교직원, 전문상담교사, 산학겸임교사 등'에서 '학교의 장과 종사자'로 신고의무자 교육대상 범위가 변경되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 중 종사자의 범위가 어떻게 되고, 자원봉사자도 교육 대상인가요?

A • 종사자란 '일정한 직업이나 부문, 일 따위에 종사하는 사람¹²⁾'으로 종사자의 범위를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해당 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정직원, 계약직, 시간제 등 포함, 다만, 휴직자는 제외), 외부에서 파견 온 상주 인원, 용역 직원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해당 해의 12월 31일자로 근무하고 있는 학교의 장과 종사자를 현원을 기준으로 교육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교육방법별 증빙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신고의무자 교육 시행 당시 대가를 지급받지 않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해당 교육은 실시하되 만약 교육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Q 아동학대 신고 결정을 도와주는 명확한 기준이 있나요?

A • 아동학대는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합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제2항). 특히 신고 의무자는 아동학대를 인지하거나 의심될 경우 즉시 수사기관(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12) 네이버 어학사전

Q 아동학대가 의심되어 신고를 하려고 하는 데, 신고 전에 학대 징후인지 확인하기 위해 학생과 상담을 하려고 합니다. 아동과 어떻게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까요?

A • 우선 학대가 의심이 되면 112에 즉시 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학대 의심 징후 인지 확인이 필요하여 아동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한다면, 학대 의심 징후에 대해 “누군가 네 몸을 만졌니?”, “혹시 성폭력을 당했니?”와 같이 “예, 아니오”로 대답하게 하는 질문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대를 가정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아동은 질문 의도에 맞는 대답을 하게 만드는 암시효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 좀 아파 보이는구나, 무슨 일 있어?”, “어떻게 상처가 난 것인지 말해주면 좋겠어.”와 같이 개방형 질문으로 물어보는 것이 좋고, 진술의 오염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학대에 대해 계속 캐묻거나 유도질문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또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 “몸은 만지는 이유가 뭘까?” 등 이유를 묻는 질문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아이는 가해자가 한 행위의 이유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마치 자신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Q 학교에서 아동학대에 대해 신고했을 때, 학대행위자 또는 가족에게 이를 고지해야 하나요?

A • 거짓 진술을 준비할 시간이 주어져 진술오염이 있을 우려가 있으므로 학대행위자 또는 가족에게 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신고자도 신고 사실을 발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Q 신고 사실이 노출될까 걱정이 되는데, 아동학대 신고자는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나요?

- A** • 아동학대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내용은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부터 제13조 규정 준용에 따라, 필요시 신고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아동학대 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서도 신고자에 관한 비밀보장, 신변보호, 구조금* 신청 등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등

- ▶ 공익신고자 보호법 유권해석, 정책질의: 044-200-7752(보호보상정책과)
- ▶ 공익신고 사건 접수: 044-200-7123(심사기획과)
- ▶ 공익신고자 보호: 044-200-7772~7780(신고자보호과)
- ▶ 공익신고자 구조금: 044-200-7739~7748(신고자보상과)

특히 아동학대를 신고한 교원이 교육활동을 침해당하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조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교육활동보호매뉴얼 참고

Q 아동학대 조사와 판정은 누가 하나요?

- A** • 아동학대 조사는 수사기관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실시합니다. 경찰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의견을 참고하여 신속하게 수사한 후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Q 피해(의심)아동 조사 시 보호자에게 사전 동의를 필수로 받아야 하나요?

- A** • 피해(의심)아동 조사를 위하여 보호자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법률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피해(의심)아동은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자로서 스스로의 피해사실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27조제5항 형사피해자의 진술권) 따라서 보호자라는 이유로 이러한 피해 진술권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아동학대행위(의심)자가 보호자인 경우 피해(의심)아동을 통한 신빙성 있는 피해 진술 확보와 아동의 안전 확보가 어려운 상황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해(의심)아동을 우선 조사한 후, 피해(의심)아동에 대한 안전이 확보된 후에 보호자인 학대행위(의심)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Q 아빠와 엄마와 함께 살고 있는 초등학교 아동의 경우입니다. 아빠가 지속적으로 학생을 학대해서 비밀 전학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보호자의 동의는 아빠, 엄마 모두에게 받나요?

A • 학생 보호자 1인인 엄마의 동의만 받으시면 됩니다. 초등학교의 장은 아동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해당아동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으며, 교육장은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Q 초등학교 아동이 엄마와 단둘이 살고 있는데 엄마가 아동학대를 했습니다. 아동학대로 인해 비밀 전학을 하려고 하지만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기 어렵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A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제7항에 의하면 아동의 친권자에 대하여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가 청구되고,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하거나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는 학교장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장에게 해당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Q 어머니에 의한 아동학대로 비밀전학을 시켰을 때, 어머니가 학교를 알고 찾아와 아동을 만나겠다고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학대 행위자인 어머니의 친권이 상실·제한·정지되거나 접근금지명령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아동을 만나게 할 수 없으며, 아동이 만남을 거부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위의 경우가 아니라면 학교는 다른 친권자나 (임시)후견인 등에게 동 상황을 신속하게 알려 해결 방안을 협의하도록 합니다.

Q 아동학대 보호시설에서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결석한 경우 출결 상황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A •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해당학교에 출석인정을 위한 협조 공문을 보내면 학생의 출석을 인정하도록 하며 해당학교에서는 피해아동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관련 각종 서식(예시)

[관련 서식 활용 시 유의점]

- 1) 본 양식은 예시 안이므로 각 학교 상황에 따라 수정 활용 가능
- 2) 「아동복지법」(2020. 10.) 개정에 따라 각 지역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기존의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하던 현장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됨. 그러나 **지역별 상황에 따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미배치된 곳도 있으므로 학교에서는 아동학대 업무를 추진하기 전에 해당 지역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여부와 유관기관(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업무 범위에 대하여 미리 파악 필요**
- 3) 공문 작성 시 문서에 ‘비공개 6호’, ‘열람제한’ 등을 설정하여도 문서 제목은 그대로 노출되므로 공문 제목만 보고도 누구나 ‘아동학대사안’을 유추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따라서 서식의 제목을 참고하되, 기관 상황을 고려하여 **제목만으로는 ‘아동학대’를 추측하기 어렵게 공문 제목 작성이 필요함.**
 ※ 단 공문 발송전 해당 내용을 교육(지원)청, 지방자치단체(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 관계기관에 사전 고지 필요

예) 문서 제목

‘아동학대 사안 보고’ → ‘**학생 생활 관련 사안 보고**’,
 ‘학생 출결 인정 협조 요청’ → ‘**재학생 학적 업무 협조 요청**’
 ‘비밀전학 협조 요청’ → ‘**재학생 학적변동 요청**’ 등

서식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예시)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 제출 안내(11월 중 공문발송)

※ 보고 시 주의사항

- 병설유치원이 있는 초등학교의 경우 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 각각 교육(지원)청 해당과로 보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			
시설 또는 기관명			
소재지 (시도 및 시군구)		시설장 (기관장) 성명	
교육일시	ex) 2026.3.21.~2026.11.21.	강사명(소속)	*집합 강사교육일 경우만 작성
총 인원수 *2026.12.31.기준	50명	교육 수료인원	50명
교육시간	1시간	교육방법	(집합) 강사교육(10), (집합) 시청각교육(10), (인터넷) 복지부 위탁 기관(20), (인터넷) 복지부 콘텐츠 탑재 기타 기관(10), 중 1개 이상 선택
* 교육방법 중 '인터넷'복지부 콘텐츠 탑재 기타 기관'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 작성			
교육(탑재)운영 기관 명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	탑재 사이트 주소	edu.beti.go.kr
〈교육방법에 따른 증빙자료 목록〉 ○ 교육방식에 따라 아래 증빙자료를 1차 취합기관(교육지원청 또는 시교육청)에 제출 ※ (집합 교육) 결과보고서, 교육 참석자 명부 제출 - (집합 강사교육) : 교육계획, 교육사진, 참석자 서명, 강사 프로필, 교육 콘텐츠 자료 * 자격기준, 교육내용 검증 - (집합 온라인교육) : 교육계획, 교육사진(참석자 및 동영상 화면 포함), 참석자 서명 제출 * 복지부 제공(또는 승인한) 콘텐츠 사용 ※ (인터넷 강의) 결과보고서, 인터넷 강의 이수자 명단 제출 - (복지부 위탁 운영 기관) 개인 교육 수료증 취합 및 학교 보관 - (복지부 제공 승인 콘텐츠를 탑재한 기타 기관) 교육운영 기관명, 콘텐츠 탑재 사이트 주소 결과보고서에 기록, 해당 교육 사이트에서 발행한 교육 이수증은 학교 보관			

서식2

아동학대 수사의뢰 공문(예시)

(학교장 → 경찰서장)

수신 ○○○○경찰서장

(경유)

제목 학생 생활 관련 업무 협조 요청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6 제1항 제4호
3. 본교에 재학 중인 아동에게 아동학대 사안이 발생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수사를 의뢰하고자 합니다.

붙임 아동학대 수사의뢰서 1부. 끝.

서식2-1

아동학대 수사의뢰를 위한 경찰 제출 서식(예시)

(학교장 → 경찰서장)

(아동학대) 수사의뢰서

피해자* 인적사항	이 름		주민등록번호	-	
	성 별		연락처 (보호자 연락처)		
	주 소				
	외상 유무	[]있음	[]없음	외상 정도	[]중상 []경상
피혐의자* 인적사항	이 름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보호자 연락처)		
	주 소				
	피해자와 관계				
인지경위	상담교사가 면담 중 사안 인지 유무 등 확인				
특이사항	※ 재학대 여부, 언론보도 및 특수교육대상자 여부 등				
피해사항 및 주요내용*	※ (6하 원칙) - 최대한 6하 원칙에 가깝게 기재요망				

* 관련근거: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6 제1항 제4호(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에 의거, 학생과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정보제공 가능

서식3

아동학대 사안 보고 공문 (예시)

(피해아동이 현재 재학 중인 학교 → 교육(지원)청)

수신자 ○○교육지원청교육장

(경유)

제 목 학생 생활 관련 사안 보고

1. 관련: 인성체육급식과-1234(20○○.○○.○○)호의 관련입니다.
2. 우리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에게 아동학대 사안이 발생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피해학생 인적사항(생략가능)

학대피해아동			학대행위자		비고
학교명	학년 반	성명	관계	성명	
○○학교	○학년○반	○○○	부	○○○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제1항에 따른 비밀 누설 금지

나. 세부 내용: (붙임1) 아동학대 사안 보고서 참고

붙임 아동학대 사안 보고서 1부. 끝.

○ ○ 학교장

담 당 ○○○

부장 ○○○

교감 ○○○

교장○○○

협조자

시 행 ○○○(20 . . .)

접 수 (. . .)

우

/

전 화

/전송

/E-mail

/비공개(6)

서식3-1

아동학대 사안 보고서 (예시)

(피해아동이 현재 재학 중인 학교 → 교육(지원)청)

아동학대 사안 보고서

※ 사안에 따라 보고 양식, 보고 횟수, 보고 방법을 달리할 수 있음

○○학교

구 분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유기 및 방임	기타
체크(○)					
					〈중복체크 가능〉

업무 담당자	성명:	교감	성명:	교장	성명:
--------	-----	----	-----	----	-----

피해 학생	()학년 ()반 ()번 성명: ()				
발생 일시	2000.00.00 (00시)	신고 일시	2000.00.00.(00시)	(00경찰서)	
			2000.00.00.(00시)	(00구청)	

피해 사항 및 주요 내용	※ 육하원칙에 따라 서술
---------------	---------------

특이 사항	※ 가해자가 교직원인 경우 분리조치 여부, 성사안 여부, 재학대 여부, 언론보도 및 경찰 신고 내용, 특수교육대상자 여부 등
-------	---

□ 보호조치 및 처벌 현황

대 상	조치 사항	조치 일자	조치 기관
피해아동	피해아동 일시보호	2000.00.00.	○○시청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행위자	경찰조사 진행 중	2000.00.00.	○○경찰서 등

□ 향후 계획

상담 등의 보호 조치로 인한 출석인정, 비밀전학 추진, 학교폭력 사안 처리 희망으로 보호조치 등

서식4

출결인정 관련 내부 결재 기안문 (예시)

(피해아동이 현재 재학 중인 학교)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재학생 학적 업무 협조

1. 관련: 00000-1234(2000.00.00)호의 관련입니다.
2. 000000에서 본교에 재학 중인 아래 아동의 보호장소 변경과 관련하여 피해아동이 출결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여 온 바, 해당 학생의 출결을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 가. 아동명: 000 (00년 00월 00일생)
 - 나. 보호기관명: 피해아동전용쉼터(00도 00시 소재)
 - 다. 쉼터 입소일: 2000년 0월 0일
 - 라. 기간: 2000년 0월 0일 - 학생 출석 시까지
 - 마. 결석사유: 아동학대 발생에 따라 「아동학대처벌법」에 근거하여 피해아동전용쉼터에 응급 조치하였음
 - 바. 유의사항: 아동 출결인정 및 본 상황에 대한 비밀보장
 - 사. 출결인정 근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붙임 000000 요청공문 1부. 끝.

○ ○ 학교장

담 당 000	부장 000	교감 000	교장 000
협조자			
시 행 000(20 . . .)	접 수 (. . .)		
우			/
전 화	/전송	/E-mail	/비공개(6)

서식5

비밀전학 관련 교육(지원청) 보고 기안문 (예시)

(피해아동이 현재 재학 중인 학교 → 교육(지원)청)

○○ 학교

수신자 ○○교육지원청교육장
(경유)

제 목 재학생 학적 변동 협조 요청(※ 원제목: 피해아동 비밀전학 건)

1. 관련: ○○○○○○-1234(20○○.○○.○○)호의 관련입니다.
2. 본교에 재학 중인 다음 아동이 「아동학대처벌법」에 의거 응급조치됨에 따라 아동이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에서 비밀전학을 요청하여 온 바,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 제73조, 제89조,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제3항, 「아동복지법」 제22조의4(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등), 「아동복지법」 제29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제5항,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의4(피해아동의 취학에 대한 지원)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전학을 요청합니다.

학년 반	성명	전학일자	전학사유	전학지정학교	비고
○학년○반	○○○	20○○.○.○	아동학대로 인한 아동보호	○○도 ○○시 ○○학교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비밀엄수 등의 의무)에 따른 비밀 누설 금지

- 붙임 1. 비밀전학 요청공문 1부.
2. 피해아동 비밀전학 요청서 1부. 끝.

○○ 학교장

담 당 ○○○ 부장 ○○○ 교감 ○○○ 교장○○○
 협조자
 시 행 ○○○(20 . . .) 접 수 (. . .)
 우
 전 화 /전송 /E-mail /비공개(6)

Chapter
06

아이들을 지키는 관심과 용기 아동학대 예방





Chapter

07

학교부적응 및 다문화 학생 학교 적응 지원을 위한 학업중단 예방

- | | |
|--------------------|-----|
| •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 274 |
| • 학업중단 예방 및 숙려제 운영 | 279 |
| • 학업중단 숙려제 Q&A | 288 |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1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및 기관 안내

»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위탁 절차



▶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위탁 시 유의사항

- 소속학교에서는 위탁생을 재적 상태[학적-위탁학생관리]로 관리하며, 진급 시 재위탁을 희망할 경우 위탁 절차를 준수하여 위탁한다.
- 위탁학생이 다른 일반 학교로 전입학을 희망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한 후 소속학교에서 전입학 절차대로 진행한다.
- 위탁학생이 소속학교로 복교를 희망하는 경우와 부득이한 사유로 수탁이 취소되는 경우 소속학교에서는 지체 없이 복교 절차대로 진행한다.
- 소속학교장은 위탁교육 대상자의 학교생활기록부(위탁일 현재까지의 출결사항기록), 건강 기록부, 기타 학생 이해에 도움이 되는 자료 사본(원본대조필)을 위탁교육기관에 송부한다.
- 소속학교에서는 위탁학생을 성적처리 재적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단, 소속학교의 시험에 응시할 때는 재적수에 포함한다.)
-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참고
- 소속학교에서는 위탁교육기관을 학기별 2회 이상 방문하고, SNS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학생들의 출결 및 수업 상황을 수시로 점검·격려하며, 위탁교육기관과 제반 사항을 협의·조치함에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한다.
- 소속학교에서는 위탁학생을 지속적으로 지원·격려하며, 위탁학생이 학교 적응력을 길러 소속학교에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위탁교육기관에서 위탁학생의 소속학교에 위탁교육비(학교운영비, 급식비, 수학여행비 등)를 청구하면 위탁학생의 소속학교에서는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위탁교육비를 7일 이내에 위탁교육기관에 지급한다.
- 소속학교에서는 위탁학생이 위탁교육을 졸업 시까지 이수한 경우 소속 학교의 졸업장을 수여하도록 한다.
- 자세한 내용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지침을 참고한다.
- ※ 원클릭 생활교육 홈페이지-학업중단예방-자료실 탑재

»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 학교부적응 분야 [부산 소재]

기관명	기관 현황		교육과정
학생인성교육원 부속 한빛학교	소 재 지	부산 금정구 북문로 178	테마활동, 생활체육, 동아리활동, 수련 및 극기체험활동, 봉사활동, 자연친화적 체험활동, 직업체험,
	전화번호	580-3151	
	홈페이지	http://school.busanedu.net/hanvit	
	학 급 수	3학급(중)	
마 리 학 교 (미혼모 대상)	소 재 지	부산 서구 천해남로 7	심리상담 및 치료, 직업훈련, 자립지원, 문화체험, 아동양육지원, 산전산후 관리교육, 부모교육
	전화번호	253-7543	
	홈페이지	http://marymosungwon.or.kr	
	학 급 수	3학급(초중고 통합)	
부산자유학교	소 재 지	부산 동래구 안남로 23	해양레저스포츠, 생활체육, 생활원예, 제과제빵, 바리스타, 골프, 당구, 조형, 영상제작, 보컬, 공예, 네일아트, e스포츠, 드론, 볼링
	전화번호	521-0922	
	홈페이지	http://free-school.or.kr	
	학 급 수	5학급(고)	
다 온 학 교	소 재 지	부산 부산진구 동평로405번길 85	1인1악기교육(난타, 우쿠렐레, 단소), E스포츠실습(게임대회), 밴드, 등산 생활체육(당구, 배드민턴, 탁구), 문화예술체험, 금연상담, 공예체험,
	전화번호	863-4214	
	홈페이지	http://www.daonschool.kr	
	학 급 수	3학급(고)	
부 경 보 건 고 부설 행복학교	소 재 지	부산 사하구 두송로 53(장림동)	컴퓨터시스템일반, 헤어미용, 네일미용, 합주, 영유아놀이지도, 골프, 응급처치, 기초간호임상실무, 인체구조와 기능
	전화번호	261-4611	
	홈페이지	http://bkd.hs.kr	
	학 급 수	2학급(중 1, 고 1)	
문 화 예 술 조 은 학 교	소 재 지	부산 중구 구덕로34번길 4, 8층	연극감상과 비평, 미술전공실기, 공연실습, 합창, 드로잉, 연기, 전공기초일본어, 한국사회의 이해
	전화번호	241-2230, 256-2757	
	홈페이지	http://www.joeunschool.net	
	학 급 수	3학급(고)	
부 산 경 호 고 부설 미래학교	소 재 지	부산 금정구 서금로 91-5	스포츠마사지, 응급처치, 유도, 태권도, 탁구, 제과제빵, 바리스타, 컴퓨터일반, 기본간호
	전화번호	523-0209	
	홈페이지	https://school.busanedu.net/bsgh-h	
	학 급 수	3학급(중 1, 고 2)	

▶ 학교부적응 분야 [전국 소재]

기관명	기관 현황		교육과정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소재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각궁로 252-76	(정서 치유 대상 청소년) 체험학습, 진로체험, 치료, 개별상담, 집단상담, 공동체교육, 정규집단
	전화번호	031-333-1900	
	홈페이지	http://www.nyhc.or.kr	
	학급수	6학급(초 1, 중 4, 고 1)	
국립대구청소년디딤센터	소재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단남로 609	(정서 치유 및 인터넷 과의존 대상 청소년) 미술치료, 음악치료, 놀이치료, 유튜브제작, 바리스타, 문화예술, 목공예
	전화번호	053-665-6900	
	홈페이지	http://www.youthfly.or.kr	
	학급수	6학급(초 2, 중 2, 고 2)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소재지	전라북도 무주군 안성면 장무로 1599-11	(인터넷 과의존 대상 청소년) 문화공감수업, 진로탐색, 상담, 미술치료, 영화치료, 사진치료, 명상, 마음수련, 감정코칭, 역할극, 리더십특강
	전화번호	063-323-2282	
	홈페이지	https://nyit.or.kr	
	학급수	3학급(중고 통합)	
해맑음센터	소재지	충청북도 영동군 상촌면 물한4길 8	(학교 폭력 피해 대상 청소년) 음악치유, 미술치유, 축구교실, 북아트, 미술, 프로젝트수업, 미디어, 캘리그래피, 중독예방교육
	전화번호	070-7119-4119	
	홈페이지	http://www.uri-i.kr	
	학급수	1학급(초중고 통합)	

* 국립대구청소년디딤센터: 위탁학생 교육비 교육청 예산 범위 내 지원

▶ 다문화 분야

기관명	기관 현황		교육과정
글로벌국제학교	소재지	부산 수영구 광남로 46(남천동)	한국어, 한국문화, 이중언어, 진로와 직업
	전화번호	051-818-0087	
	홈페이지	http://gischool.net	
	학급수	2학급(중 1, 고 1)	
부산다문화국제학교	소재지	부산 동구 중앙대로 303	한국어, 제2외국어, 인성교육, 진로와 직업, 미술여행, 독서, 실용 영어 회화 등
	전화번호	051-717-0346	
	홈페이지	http://www.bmis.or.kr	
	학급수	3학급(초 1, 중 1, 고 1)	
아시안아동체교	소재지	부산 남구 우암로362번길 24-10	한국어, 문화예술, 생태(흙공예), 세계문화, 언어 등
	전화번호	051-633-1381	
	홈페이지	http://ac-school.net	
	학급수	3학급(초 1, 중 1, 고 1)	

➤ 부산 공립 대안학교

기관명	기관 현황		교육과정
송정중학교	소재지	부산 강서구 가락대로 230-72	정규교과, 대안교과(문화예술체험, 프로젝트, 산악 등반, 미래주제연구, 소통 공감, 성공적인 직업생활, 생활체육 등) ※ 기숙사 운영
	전화번호	051-979-6700	
	홈페이지	https://school.busanedu.net	
	학 급	6학급(중)	

➤ 부산 사립 탈북학생 대안학교

기관명	기관 현황		교육과정
장대현 중고등학교	소재지	부산 강서구 신호산단4로76번길 71	정규교과, 대안교과(민주시민, 철학, 독서논술, 앱과코딩, 생활영어, 생활독일어, 건강과운동, 한국어 등) ※ 기숙사 운영
	전화번호	051-974-0320	
	홈페이지	http://jdhschool.org	
	학 급	4학급(중, 고)	



학업중단 예방 및 숙려제 운영

1

학업중단 위기학생 관리 및 학업중단예방 프로그램 안내

» 학교생활 부적응 및 학업중단 위기학생 발생 시

» 단위학교 학업중단 예방 체크 리스트 활용을 통한 학업중단 예방활동 강화

항목		검토내용	실시	미실시	실행방법
학 업 중 단 위 기	담임교사	학생, 학부모와 2회 이상 의견을 나누셨습니까?	☐	☐	자체양식이용
	상담교사	학생, 학부모와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한 학업중단 예방 노력이 있었습니까?	☐	☐	자체양식이용
	부장교사	학업중단 학생 상황을 충분히 알기위해 학생, 학부모, 담임교사 등과의 상담이 있었습니까?	☐	☐	자체양식이용
	관리자	학생, 학부모, 교원 등과 학업중단예방에 대한 상담 및 논의가 있었습니까?	☐	☐	자체양식이용
학 생 발 생	숙려제 안내	학생, 학부모에게 학업중단예방 숙려제에 대한 안내를 하하셨습니까?(「초·중등교육법」 28조 3항 7호)	☐	☐	자체양식 근거보관
		학업중단예방위원회를 통하여 숙려제를 결정하고 시행 하하셨습니까?	☐	☐	회의록 내부결재, 원클릭 생활교육 홈페이지에서 신청
	학업중단 예방 숙려기관	학업중단에 대해 숙려할 수 있는 학업중단예방 숙려기관에 대해 알렸습니까?	☐	☐	

항목		검토내용	실시	미실시	실행방법
학 업 중 단 위 기 학 생 발 생	대안교육 위탁교육 기관안내	부산광역시교육청 지정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안내가 있었습니까?	☐	☐	원클릭 생활교육 홈페이지에서 검색
	스쿨 119 안내	학업중단 숙려제로 학생들의 상담을 지원하는 스쿨 119 긴급지원단에 대해 설명하고 신청하셨습니까?	☐	☐	원클릭 생활교육 홈페이지에서 신청
	학업중단 학생 발생	위의 절차를 이행하고 학업중단 관련 학적 처리를 하셨습니까?	☐	☐	나이스
학 업 중 단 학 생 등 록	학업중단 학생 등록 (기한준수)	학업중단학생 등록을 기한 내(10일 이내) 하셨습니까? ※ 개인정보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학업중단학생 등록(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 15조 1항에 따른 의무 사항)	☐	☐	나이스 등록 NEIS [학업중단-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연계 관리-학교밖청소년 연계관리및전송]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안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프로그램 안내 및 유인물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달했습니까?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 15조 1항)	☐	☐	홍보 팸플렛
	복교 및 사후관리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연락망을 안내 하고 있습니까?	☐	☐	담당자 연락처 안내

2 학업중단예방 집중지원학교 운영

- 대상: 학업중단 다수발생학교(부적응사유 학업중단학생수 및 비율로 선정)
- 컨설팅: 학업중단예방 집중지원학교의 학업중단 예방 계획, 업무체계, 학교 환경 등을 점검하고 발전방안을 제안하여 학업중단 예방 역량 강화
- 교원협의체 운영: 학업중단예방 우수사례 공유 및 확산

3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 개념

- 학교 내에서 학업중단을 예방하며, 다양하고 특별한 교육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일반 학급과 구분하여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급

▶ 운영방향

- 초·중·고 희망학교 10교
- 전일제/부분 운영제(반일제, 요일 선택제, 기수제)
- 정규 교육과정 운영시간 내에서 학교 자체 계획으로 운영
- 학교 부적응 및 느린학습자, 잠재적 학업중단위기학생 등에 대한 맞춤형 대안교육 프로그램 운영

4

스쿨119 긴급지원단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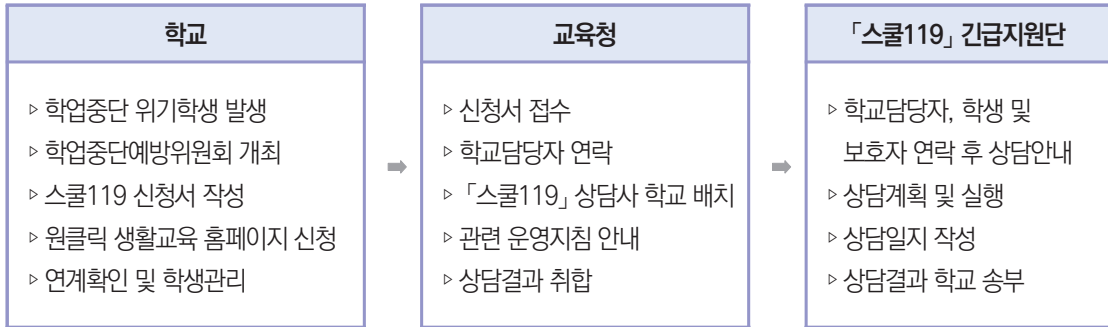
▶ 지원대상

- 미인정결석이 잦은 학생
-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학생
- 구두로 학업중단 의사를 표시하거나 자퇴원을 제출한 학생
- 학교부적응, 가정사정 등 학업중단 위기에 처해 있다고 판단되는 초·중·고등학생
- 기타 긴급히 상담을 필요로 하는 학생

▶ 지원내용

- 신청서 접수 확인 후 교육청에서 담당교사 연락
- 스쿨119 긴급지원단 상담사 배치 후 상담 실시
- 학생 학교부적응 및 학업중단예방, 숙려제 등 맞춤형 상담 및 활동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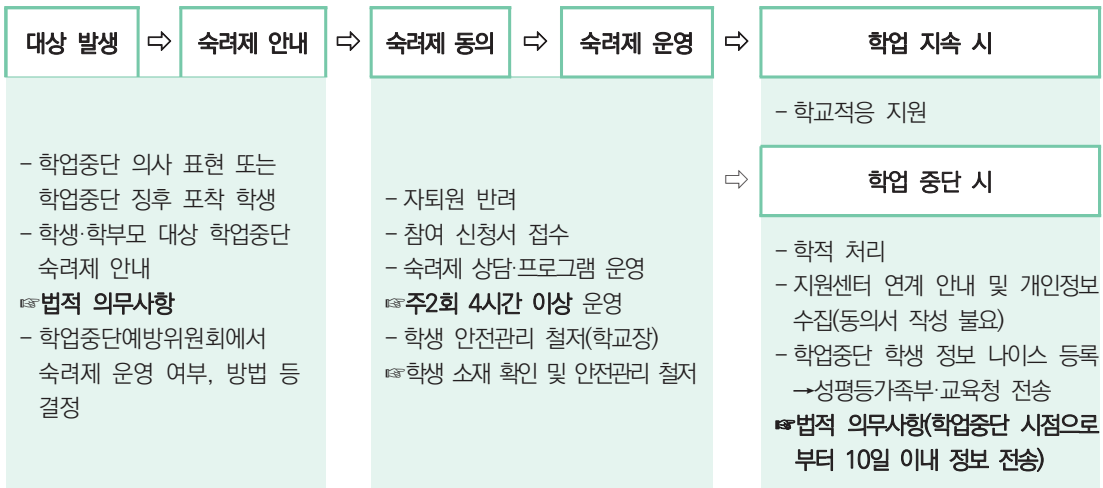
▶ 진행절차



5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 정의: 학업 중단 징후 또는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1주 ~ 7주(49일)의 숙려 기회를 부여하고 상담 등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성급하게 이루어지는 학업중단을 예방하는 제도

▶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흐름도



※ 학업중단 숙려제에 참여하지 않고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 **학업 중단 절차대로 진행**

※ 학업중단 숙려제 안내는 법적 의무 사항,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는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

➤ 적용 대상

- 학교에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초·중·고·특수 학생
 - 학업중단 의사를 구두로 표시한 학생, 유예신청서나 자퇴원을 제출한 학생
 - ※ 특수교육 대상자가 학업중단 숙려제를 희망하면 특수교육 관련 전문가가 포함된 학업중단 예방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 학업중단 위기에 처해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
 - 학업중단예방위원회에서 학업중단 위기학생으로 판단한 학생
 - 미인정결석 연속 5일 이상 또는 연간 10일 이상인 학생

➤ 제외 대상

- 연락 두절, 행방불명 등으로 숙려제 운영이 불가능한 학생
- 질병 치료, 발육부진, 사고, 해외출국(유학) 등 부득이하게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
- 학교폭력, 교칙위반, 교권보호위원회 행정처분 등으로 출석정지, 퇴학처분을 받은 학생
-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재학 학생

➤ 숙려 기간

- 학년도 기준 최소 1주 ~ 최대 7주(49일)까지 운영
- 주말, 공휴일, 휴업일 포함(방학 제외)
- 숙려기간에는 정기고사, 영어듣기평가 기간 반드시 제외
- 부여된 기간 내에서 연장 가능(연장 횟수 제한 없음)

➤ 출석 기준

- 1주 2회, 4시간 이상 이수 시 **주단위**로 출석인정
- 1회 숙려제 상담·프로그램 참여 출석인정 기준: 2일 또는 3일로 설정

예시	숙려 상담	참여 여부	출석인정 기준요일	출결처리	비고
	월	참여	월, 화, 수	3일 출석인정결석	출석인정 기준 요일은 학업중단예방위원회에서 결정
	목	불참	목, 금	2일 미인정결석	

- 부득이하게 숙려기간이 일 단위로 설정된 경우 출석인정 기준은 학교장 재량
- 숙려기간 중 결석의 발생 사유에 따라 질병, 미인정, 기타결석 등으로 처리
- 매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일단위로 출석인정결석 처리

출결처리 예시

■ 3주 숙려제 부여, 매주 수·금요일 숙려제 상담에 참여하기로 한 경우

- 수요일 숙려제 상담: 월·화·수 출결처리(3일 해당)
- 금요일 숙려제 상담: 목·금 출결처리(2일 해당)

※ 출석인정 기준 요일 등 출결처리에 대한 구체적 방법은 학업중단예방위원회에서 결정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인정결석	3 인정결석	4 〈상담참여〉 인정결석	5 인정결석	6 〈상담참여〉 인정결석	7
1주 차 숙려 기간						
8	9 미인정결석	10 미인정결석	11 병원진료 〈상담불참〉 질병결석	12 인정결석	13 〈상담참여〉 인정결석	14
2주 차 숙려기간						
15	16 미인정결석	17 병원진료 질병결석	18 〈상담불참〉 미인정결석	19 미인정결석	20 〈상담불참〉 미인정결석	21
3주 차 숙려기간						

※ 출석인정 결석 외의 출결 처리는 사유에 따라 처리하고 증빙서류 첨부

▶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 교내 프로그램: Wee 클래스, 학업중단예방 집중지원학교 프로그램, 학교 내 대안교실, 학생 맞춤형 교내 숙려제 프로그램 등
- 교육청 지원 프로그램: 학업중단예방 숙려기관, 스쿨119 긴급지원단

【2026학년도 학업중단숙려기관 목록】

연번	기관명	주소(교육장소)	연락처
1	감 성 공 간 연 구 소	동래구 금강공원로 39-1(온천동) 3층	809-7705
2	나 눔 심 리 발 달 센 터	서구 망양로 15(서대신동3가), 2층	246-1619
3	나 래 심 리 상 담 센 터	동래구 사직로 80(사직동, 사직쌍용예가상가 4층), 223동 412호	506-6066
4	다함께성가정상담센터	수영구 연수로 392(광안동), 2층	753-1377
5	더 나 아 짐	동래구 명륜로112번길 108(수안동)	555-8823
6	동래심리상담센터협동조합	동래구 동래로136번길 25(북천동) 4층	553-2931
7	동지청소년회복지원시설	금정구 금샘로 389-1(구서동)	923-1009
8	미 타 선 원	중구 광복로77번길 5(광복동2가)	253-8687
9	아 이 맘 심 리 발 달 센 터	동래구 총렬대로137번길 20(온천동), 1층	504-5007
10	예람청소년회복지원시설	북구 만덕대로90번길 13(대방아파트, 1동 301호)	336-7025
11	청 소 년 폭 력 예 방 재 단	동래구 총렬대로 91(온천동), 3층	583-8295
12	클 래 식 라 디 오	사하구 을숙도대로709번길	204-3753
13	틴 스 토 리	부산진구 범전로5번길 13(부전동), 4층	804-5391
14	한 국 가 속 학 습 협 회	해운대구 해운대로 814, B-617호 (좌동, 세종월드프라자)	704-0940
15	한국문화예술협동조합	남구 수영로 312(대연동), 센츨리빌딩 1302호	933-9923
16	행 복 두 드 림	동래구 사실로 129(명장동), 동래구진로교육지원센터	070-4571-7881
17	화 명 종 합 사 회 복 지 관	북구 금곡대로199번길 21(화명동)	338-2233
18	가족상담센터 희망의전화	남구 황령대로 488(대연동), 원자빌딩 5층	623-1399
19	그 린 닥 터 스	부산진구 가야대로 721, 6층	816-2320
20	파인드미 상담연구센터	사상구 운산로 9, 2층	070-4038-4240
21	부산통합심리상담센터	수영구 수영로 410, 정암빌딩 12층	626-9091

- 학교장 지정 외부 기관 연계 프로그램

【연계절차】

운영 과정	주요 내용
학생이 외부기관 연계 희망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에 관한 적절성 판단(기관 점검 및 확인)
외부기관과의 협의	학업중단 숙려제의 안내와 협조 사항 논의
협조 요청 공문 발송	학교에서는 학업중단 숙려제 협조 요청 공문 발송 외부기관에서는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여부 공문 제출
프로그램 학생 참여	사전 안전교육 실시(학교 및 외부기관), 프로그램 실시
출결 및 안전 관리	학생의 출결, 안전, 학생 변화에 대한 사항 등 정기적 확인
출결 등의 내용 회신	외부기관으로부터 학업중단숙려제 참여확인서, 운영 소견서등 일체 서류 회신
학생 학업복귀 지원	추수 상담 및 지도 (※ 학업중단 학생의 경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안내)

➤ 유의사항

- 학교장은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 학생의 소재 및 안전을 정기적으로 확인
- 지필평가, 영어듣기평가 기간은 학업중단 숙려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 지필평가, 영어듣기평가에 미응시 할 경우 학교별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름

➤ 숙려제 종료

- 학업복귀 학생
 - 학생이 학교 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 학업중단 숙려제 대상 학생 나이스(NEIS) 등록 및 제출

- 학업중단 학생

- 학업중단 학생이 학업 지속 및 상담·자립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적기 연계 필요
- 학업중단 발생 시점으로부터 10일 이내에 성평등가족부에 정보 전송

【지원센터 연계 절차(초·중·고 모두 해당)】

① 지원센터 연계 안내 및 개인정보 수집(서식 활용)

- 초·중·고교에서 학업중단 발생 시, 해당 학생과 학부모 등 법정대리인에게 **지원센터 연계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 안내***

* 「학교 밖 청소년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의무 사항임

※ 지원센터 연계를 위한 안내 서식은 나이스-학교밖청소년연계및관리전송 메뉴에서 다운로드 가능

-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수집 항목, 보유·이용기간 및 파기방법을 고지하고 학생 및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작성 불요)

※ 단, 질병·출국 사유의 학업중단 학생은 학생 본인 및 법정대리인이 지원센터 연계를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붙임1 안내서 내 동의서식을 작성하고 개인정보 수집 필요

② 학업중단 학생 정보 나이스 등록 → 성평등가족부·교육청에 전송

- 학업중단 학생 및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를 나이스*에 입력하고, 학교 내부 결재 후 성평등가족부 및 교육청에 전송

* 메뉴경로 : 학업중단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연계관리 > 학교밖청소년연계관리및전송

※ 단, 질병·출국 사유의 학업중단 학생은 지원센터 연계를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본인 및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나이스에 등록 후 정보 전송 가능



학업중단 숙려제 Q&A

Q 학업중단 숙려제를 시행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 A**
- 첫째, 학업중단 학생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 둘째, 청소년기에 성급한 판단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학생들이 학업중단으로 인한 여러 문제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생각해 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셋째, 학업중단 숙려제를 시행함으로써 외부의 관계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학업중단 후에도 지속적으로 학생의 동태를 파악하고 상담을 시도하여 복교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한 것입니다.

Q 학업중단 숙려제의 대상은 어떤 학생입니까?

- A**
- 학업중단 숙려제의 대상은 학업중단 징후가 보이는 학생과 유예원이나 자퇴원을 제출한 초·중·고·특수학생입니다.
 - 학업중단 의사를 담임교사 등에게 밝힌 학생 또는 유예원이나 자퇴원을 제출하지 않고 구두로 밝힌 학생도 포함됩니다.
 - 미인정결석을 연속 5일 이상, 누적 10일 이상 한 초·중·고·특수학생입니다.
 - 검정고시 응시를 위하여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초·중·고·특수학생입니다.

Q 학업중단 숙려제의 제외 대상은 어떤 학생입니까?

- A**
- 연락 두절 및 행방불명 등으로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이 불가능한 학생입니다.
 - 질병 치료, 해외 출국이나 미인정 유학 등의 사유를 밝힌 학생은 학업중단 숙려제 대상이 아닙니다.
 - 학교폭력심의위원회, 학교선도위원회 및 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로 출석정지 또는 퇴학 처분을 받은 학생은 학업중단 숙려제 대상이 아닙니다.

Q 학업중단 숙려제 제외 대상 학생에게도 숙려제를 안내해야 하나요?

- A • 예. 학업중단 숙려제 적용 제외 대상 학생의 경우, 사유에 따라 증빙 서류(질병 및 해외 출국 등)를 제출하므로 학업중단 숙려제에 대해 안내하고 ‘학업중단 숙려제 제외 대상 확인서’를 받아 학교에 보관하면 됩니다.

Q 학업중단 숙려제를 안내했음에도 학생이 학업중단 숙려제를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 여부는 학생과 보호자의 선택 사항이므로 참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업중단 숙려제를 학생에게 안내했음에도 신청하지 않을 경우, 학업중단 숙려제를 안내한 증빙 서류(미신청서)를 자퇴(유예)원에 첨부하도록 합니다.
- 행방불명 또는 가출로 인하여 보호자가 자퇴(유예)를 원하는 경우에도 보호자에게 학업 중단 숙려제를 안내하고, 안내한 결과를 자퇴(유예)원에 첨부해야 합니다.

Q 학업중단 숙려제 기간 어떻게 되나요?

- A • 학업중단 숙려제는 당해 학년도에 최소 1주 이상 최대 7주 이하(토·일요일, 공휴일 포함, 7일 ~ 49일)의 기간 내에서 횟수에 상관없이 실시할 수 있습니다.
- 학업중단예방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1주 또는 2주, 3주 등의 주 단위로 시행합니다.
-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 학생은 최대 7주 범위 내에서 출석인정(출석인정결석)을 합니다.

Q 학업중단 숙려제 시작 후 연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 처음 실시할 때와 같이 학업중단예방위원회를 열고 내부결재를 득하고 당해 학년도 숙려 기간 허용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최초 회의 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제반 사항에 대해 협의한 경우, 예방위원회 미개최 가능하며, 대신 내부결재를 통해 숙려제 연장 실시)

Q 학업중단 숙려제 기간 동안 출결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 A**
- 주 단위로 1주 2회, 4시간 이상 숙려제 상담 또는 프로그램을 참여해야 하며 1회 참여를 기준으로 출석을 인정하는 범위(출석인정 기준일수)는 학교가 2일 또는 3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학생이 화요일과 금요일에 숙려제 상담을 받기로 한 경우, 화요일 상담은 월, 화(2일)를 출석으로 인정하고, 금요일 상담은 수, 목, 금(3일)을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학생이 금요일 상담에 불참하면, 수, 목, 금 3일은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목요일 병원진료를 받고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목요일은 '질병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출석인정 기준일(인정 요일)은 학업중단예방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됩니다.

Q 학업중단 숙려제 기간 중 정기고사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 학업중단 숙려제 기간을 정할 때에는 정기고사 기간을 피하여 실시할 것을 권장합니다.
 - 정기고사 기간을 피하여 실시해야 한다는 안내에도 불구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시험기간에 학업중단 숙려제 실시를 희망한다면 '정기고사에 응시해야 하며 응시하지 않았을 경우' 출결은 '미인정결석', '성적 처리는 해당 학교의 성적관리 규정 및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과에 따름'을 사전에 미리 안내합니다.
- ※ 숙려제 승인 시 시험 기간 포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Q 1학기에 학업중단 숙려제에 참여한 학생이 2학기에 전학을 갔습니다. 전학을 간 학교에 학업중단 숙려제에 참여한 내용을 알려야 하나요?

- A**
- 네, 알려야 합니다.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기준은 당해 학년입니다. 따라서 전출교에서는 전입교에 해당 학생의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 현황(기간 및 일수)을 별도 공문으로 알려 주어야 합니다.
 - 단, 학교생활기록부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만일 전입교에서 해당 학생이 다시 학업중단 숙려제를 신청할 경우 전출교의 공문에 따라 나머지 기간 동안 적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1학기에 참여한 주와 2학기에 참여한 주를 합산하여 7주가 초과되지 않도록 주의 합니다. 만약 초과될 경우,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 등에 따라 출결 처리해야 합니다.
 - 아울러 부산시 외의 타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해당 지역의 교육청 지침에 따라 학업중단 숙려제를 운영하게 됩니다.

Q 타시도 및 해외에서의 숙려제 프로그램 참여도 인정되나요?

- A**
- 네, 인정됩니다. 학생의 출석인정과 관련된 서류 확인이 가능한 경우 학업중단예방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인정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타시도의 경우 숙려제 관련 지침이 상이한 경우가 있으니 확인 후 반드시 부산광역시 교육청 숙려제 지침에 따라 출석인정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계획하여야 합니다.

Q 학업중단 숙려제 안내 시 학업중단예방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야 하나요?

- A**
- 네, 작성하여야 합니다. 학업중단을 하려는 학생 및 학부모에게 학업중단예방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상황에 맞는 절차 및 안내가 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학업중단예방 체크리스트는 위기학생 발생 및 학업중단 학생등록에 관한 내용을 단계별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Q 학업중단 숙려제의 프로그램은 어떻게 구성하나요?

- A**
- 학업중단 숙려제는 학생을 Wee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전문상담기관에 단순 위탁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학업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은 다양한 고민을 안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두 가지 획일적인 프로그램에만 참여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 학업중단 숙려제 시작 전 담임교사와 주무부서는 학생과 충분히 의논하여 학생에게 맞는 프로그램의 종류와 기관, 스케줄을 세부적으로 정해 나가야 합니다.

Q 학생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학교나 전문상담기관에 없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

- A**
- 학생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학교나 전문상담기관에 없다고 해서 지원을 못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하거나,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외부기관을 찾아 연계하면 됩니다.
 - 부산광역시교육청 지정 학업중단숙려기관(21기관)을 연계하여 숙려제 프로그램을 진행할 경우 학생 상담비가 지원되며, 그 외 기관 연계는 자비 부담입니다.

Q 위탁교육기관에 위탁한 학생에 대한 학업중단 숙려제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 A**
- 위탁교육기간에 수탁 중에는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이 불가하며, 원적교 복귀 후 가능합니다.

Q 홈스쿨 희망 학생에 대해서도 숙려제 안내를 해야 할까요?

- A**
- 네, 홈스쿨 시작 전에 안내하여 학업중단 예방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 초등의 경우 홈스쿨, 미인가 교육시설에 나가는 학생의 경우 학교에서는 미인정 결석 처리되므로,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숙려제를 안내하여 학업중단 예방의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Q 2개 이상의 숙려기관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나요?

- A**
- 네, 가능합니다.
 - 단, 교육청에서 지정한 프로그램(학업중단 숙려기관, 스쿨 119)은 동시에 2개 이상 이용이 불가합니다. 외부기관 이용 + 학교 위클래스 이용은 가능합니다.

Q 숙려제 참여기간 동안 수행평가 성적처리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 A
- 숙려제 참여로 수행평가(학업성적)에서 불이익을 받으면 안됩니다.
 - 숙려제 종료 후 수행평가를 실시하거나, 수행평가 실시가 불가능할 경우, 교과협의회 및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성적처리를 합니다. 학생과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Q 방학 시작 전 숙려제 신청은 가능한가요?

- A
- 숙려제는 1주 단위로 설정을 합니다.(방학은 숙려제 제외 기간입니다.)
 - 예를 들어 방학 2~3일 전 숙려제를 신청하면, 방학 이후 학교 등교일을 포함하여, 숙려제 1주를 잡아서 시행하시면 됩니다.[방학전(2일) - 방학 - 개학(5일)]

서식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연계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 안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연계(법정의무사항)

학교	→ (학업중단 학생 정보제공 연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학교장은 소속 학교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경우, 해당 청소년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을 안내하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연계해야 합니다.

지원센터에 연계하는 경우 학교장은 해당 청소년 및 법정대리인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 항목, 보유·이용 기간 및 파기방법을 고지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지원센터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병 또는 출국을 사유로 학교 밖 청소년이 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고지사항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및 항목 등

수집·이용 목적	수집 항목	보유·이용기간 및 파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연계	청소년의 성명 및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청소년 법정대리인 연락처	- 보유·이용기간 : 5년 - 파기 방법 : 보유기간이 종료되거나, 본인 등 정보제공 동의 주체가 파기를 요청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및 제37조에 따라 파기

2.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 확인

청소년 성명	청소년 생년월일	청소년 성별
청소년 주소	청소년 연락처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법정대리인 연락처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고지사항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제공정보 항목	보유·이용기간 및 파기
·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연계	- 청소년의 성명 - 청소년의 생년월일 - 청소년의 성별 - 청소년의 주소 - 청소년의 연락처 - 청소년의 법정대리인 연락처	- 보유·이용기간 : 6개월 - 파기 방법 : 개인정보 제공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청소년 및 청소년의 법정 대리인에게 개인정보처리 동의를 받지 못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정지를 요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및 제37조에 따라 파기

※ 아래 동의서식은 질병 또는 출국 사유 학교 밖 청소년이 지원센터 연계를 희망하는 경우 작성 (해당없을 시 작성불요)

☐ 질병 또는 출국 사유의 학교 밖 청소년 및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질병 또는 출국 사유의 학교 밖 청소년이 지원센터 연계를 희망하는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가 필요하며, 연계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청소년 및 법정대리인 본인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이용기간 및 파기 방법을 안내받았으며,

- (청소년) 위 안내서에 작성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 □부동의), 제3자 제공에 (□동의, □부동의)합니다.

- (법정대리인) 위 안내서에 작성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 □부동의), 제3자 제공에 (□동의, □부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참고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17개소)

연번	구분	지정기관(법인명)	소재지	전화번호
1	시 센터	부산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한국청소년부산광역시연맹)	부산진구 서전로 43 (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내)	804-5001
2	중 구	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단법인 영도문화복지재단)	중구 남포길 39-2, 3층 (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내)	245-1388
3	서 구	서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재)내원청소년단)	서구 시약로 125	0507-1468-0724
4	동 구	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동남자식서비스산업연합회)	동구 범곡로 9, 3층 (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내)	632-1388
5	영도구	영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내원청소년단)	영도구 절영로 321 (영도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내)	405-5224
6	부산진구	부산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안국청소년도량)	부산진구 동평로 405번길 85 (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내)	868-0950
7	동래구	동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부산성폭력상담소)	동래구 중앙대로 1523, SK허브스카이 A3-06호	555-1386
8	남 구	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금정총림범어청소년동네)	남구 유엔평화로 24 (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내)	621-4831
9	북 구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북구청장)	북구 덕천로 3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내)	334-3000
10	해운대구	해운대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부산YMCA)	해운대구 재반로 151-21 4층	715-1388
11	사하구	사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회복지법인 이로운)	사하구 대티로 59, 3층	207-7179
12	금정구	금정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금정총림범어청소년동네)	금정구 기찰로 96번길47 (금정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내)	581-2072
13	강서구	강서구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법인 YWCA복지사업단)	강서구 대저로 63번길 31	972-4591
14	연제구	연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안국청소년도량)	연제구 화지로52번길 7, 4층(해맞이동지)	506-1386
15	수영구	수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틴스토리	수영구 수영로521번길 77	759-8411
16	사상구	사상구 청소년수련관 (☎(재)부산YMCA)	사상구 덕상로 129 (사상구 청소년수련관내)	316-2214
17	기장군	기장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기장군도시관리공단)	기장군 기장을 차성서로 86	0507-1325-4880

• 도움주신 분들 •

총괄	권혁제	교육국장
책임	이기원	인성체육급식과장
주간	류은정	학생상담담당장학관
	차동현	인성교육담당장학관
기획	박수진	학생상담담당장학사
집필	조동석	학생상담담당장학사
	이지나	학생상담담당장학사
	안효정	학생상담담당주무관
	정신유	학생상담담당주무관
	김혜성	학생상담담당상담사
	김순미	인성교육담당장학사
	박지숙	인성교육담당장학사
	이수희	인성교육담당장학사
	김은주	인성교육담당장학사
	심정아	인성교육담당장학사
	김흥연	인성교육담당장학사
	조은영	인성교육담당주무관
	김보경	학교보건담당장학사
검토	강희정	교리초등학교 교감
	박병규	명덕초등학교 교감
	전기홍	신도고등학교 교감
	남교극	부산진고등학교 교장

2026학년도 **학생 생활교육 기본계획**

발 행 일 2026. 2.

편집·발행 부산광역시교육청

주 관 인성체육급식과

* 이 자료는 부산광역시교육청 원클릭 생활교육 홈페이지에서 파일을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원클릭 생활교육 홈페이지: <https://home.pen.go.kr/oneclick>